

Territory and Seas

영토해양연구

Vol. 12 Winter 2016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차례

연구논문

- 김명기 | 국제법상 기죽도약도의 법적 효력 6
유미림 | '이소타케시마' 어원에 관한 일고(一考) 44
송휘영 | 근대 일본의 지학잡지에 나타난 울릉도·독도 인식 74
이석용 | 남중국해 중재판정의 국제해양법상 도서제도에 대한 영향 102

연구노트

- 장원석, 손명철 | 고등학교 한국지리 수업에서 이어도 교수-학습에 대한 연구 14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사료해제

정영미 | 사료로 본 독도 논쟁사—새로운 자료 발굴의 방향성 모색을 위한 전사(前史)로서 170

서평

양기호 | 『만남의 바다—독도와 센카쿠, 국경지대에서 바라본다』 208

영토·해양 일지

도시환 | 영토·해양 일지 220

규정 및 규칙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칙 224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연구-서면



- **김명기** | 국제법상 '기죽도약도'의 법적 효력
- **유미림** | '이소타케시마' 어원에 관한 일고(一考)
- **송휘영** | 근대 일본의 지학잡지에 나타난 울릉도·독도 인식
- **이석용** | 남중국해 중재판정의 국제해양법상 도서제도에 대한 영향



동북아역사재단
NORTH 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국제법상 ‘기죽도약도’의 법적 효력

김명기 명지대학교 명예교수

1. 머리말

‘죽도 외 1도(竹島外一島)’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고 지명한 ‘태정관지령문(太政官指令文)’이 소개된 것은 지금부터 약 30년 전인 1987년 호리 가즈오(堀和生) 교수가 발표한 「1905년 일본의 죽도영토편입」이라는 논문에서다.¹

동 논문을 통해 최초로 발견된 ‘태정관지령문’은 한일 양국 사학자에게 독도의 영유권에 관한 새로운 연구의 전기가 되었다. 특히 ‘태정관지령문’의 ‘죽도 외 1도’의 의미에 관해 한일 학자 간의 심도 있는 연구와 격렬한 논쟁이 전개되어왔다.²

그러던 중 지금부터 10년 전인 2005년에 우르시자키 히데유키(漆崎英之) 목사가 ‘죽도 외 1도’를 송도(松島, 독도)로 표시한 ‘기죽도약도(碁竹島略圖)’를 발견·발표하여³ ‘죽도 외 1도’의 해석에 관한 한일 학자 간의 논쟁은 일단 소강상태를 맞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독도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는 것이 일본 명치 정부 당국에서 공식적으로 표명된 것이 확인되어 일

* 논문 투고일: 2016. 9. 30. 심사 개시일: 2016. 11. 8. 게재 확정일: 2016. 11. 30.

1 堀和生, 1987, 「一九〇五年日本の竹島領土編入」, 『朝鮮史 研究會論文集』 제24호.

2 김호동, 2012, 「태정관지령 죽도 외 1도 건에 관하여 본방과 관계 없다는 둘러싼 제 문제의 비판」, 『독도연구』 제12호, 35쪽.

3 漆崎英之, 2013, 「태정관지령 부속 지도 ‘기죽도약도(碁竹島略圖)’ 발견 경위와 그 의미」, 『獨島研究』 제14호, 329쪽.

본 정부는 더 이상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할 수 없게 되고 말았다. 그럼에도 '기죽도약도' 발견 후에도 '죽도 외 1도'는 松島[독도]가 아니라는 일부 일본 학자의 주장이 더러 제기되고 있다.⁴

'기죽도약도'에 관한 국내 사학자의 심도 있는 연구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국제법학자의 연구는 부진 상태에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제법상으로는 '기죽도약도'가 어떠한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인가는 독도를 연구하는 사학자는 물론이고 국제법학자에게도 그리고 독도에 관한 대내외 정책을 입안·결정하는 정부 당국자에게도 연구를 요하는 관심 과제의 하나이다.

이 연구는 이 과제에 대한 개략적 해답을 제시하고자 시도된 것이다. 국제법상 이에 관한 선행 연구가 전혀 없으므로 이 연구는 기초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고 본다.

국제법학자가 이 과제에 대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기죽도약도'의 사실의 실체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또 그것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데 있다고 본다. 필자도 '기죽도약도'의 사실적 실체는 물론이고 그것의 역사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이 연구를 시작함을 자인한다. 국제법학자에게는 이 연구를 기초로 심도 있고 폭넓은 후속적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이하 (i) '기죽도약도'의 개관, (ii) '기죽도약도'의 인증지도 여부 검토, (iii) '기죽도약도'의 공식지도 여부 검토, (iv) '기죽도약도'와 역사적 권원의 대체순으로 기술하고, (v) 결론에서 정부당국에 정책대안을 제의하기로 한다.

이 연구의 법사상적 기초는 '법실증주의'이며, 연구의 방법은 '법해석론'적 접근이다. 따라서 연구의 대상은 실제로 존재하는 법(*lex lata*)이다.

4 시마네현 다케시마연구소의 스기하라 다카시[杉原隆]는 1881년 송도 개간원에 관한 일련의 문서를 인용하여 '태정관지령문'의 '죽도 외 1도'는 죽도로도 송도로도 불리운 울릉도를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杉原隆, 2012, 『第二期「竹島問題」에 관한 조사연구』 중간보고서, 島根県竹島問題研究會, 11쪽. 그러한 주장은 쓰카모토 다카시[塚本孝]에게 승계되어 있다. 塚本孝, 1994, 「죽도영유권문제의 경위」, 『조사와 정보』 제244호; 이성환, 2016, 「태정관과 태정관지령문은 무엇인가」, 『독도연구』 제20호, 97쪽.

II. ‘기죽도약도’의 개관

1. ‘기죽도약도’의 제작

1876년 10월 16일 일본 내무성은 지적조사와 지도편찬작업을 진행 중이던 시마네현에서 竹島[울릉도]와 松島[독도]를 시마네현의 관할에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의 질의서를 받았다. 내무성은 동 질의서의 부속문서와 17세기 말 조일 간의 왕복문서를 검토하고 竹島와 松島는 조선의 영토라는 결론을 내렸다. 1877년 3월 17일 내무성은 태정관(太政官)에게 죽도의 지적편찬에 관한 질의서를 제출했다. 1877년 3월 29일 태정관은 이에 관한 지령문을 내무성에 하달했다.⁵

‘태정관지령문’ 결재품의서에는 태정관 우대신 이와쿠라 도모미[岩倉具視] 이외에도 성경(省卿)을 겸직하는 3명의 참의(參議)가 날인하였다. 이 3명의 참의는 대장경(大藏卿) 겸직 오쿠마 시게노부[大隈重信], 사법경 겸직 오키 다카토[大木喬任] 그리고 외무경 겸직 데라시마 무네노리[寺島宗則]이다. 당시 태정관에 상신한 것은 내무성이므로, ‘태정관지령문’은 내무성, 대장성, 사법성, 외무성의 4개 성과 최고국가기관인 태정관이 총체적으로 참여하여 의사결정을 한 것이다.⁶

‘기죽도약도’는 세 가지 지도의 통칭이다. 그중 하나는 1876년 10월 16일 시마네현 참사 사카이 지로[境二郎]가 내무성에 제출한 품의서 ‘일본해 내 竹島 외 일도 지적편찬방사[日本海内竹島外一島地籍編纂方向]’에 첨부된 ‘기죽도약도(이하 ‘시마네현기죽도약도’라 한다)’이고, 다른 하나는 일본내무성이 1877년 3월 1일에 태정관에 제출한 일본해 내 竹島 외 1도 지적 편찬방사에 첨부된 ‘기죽도약도(이하 이를 ‘내무성기죽도약도’라 한다)’이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1877년 3월 29일 태정관이

5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2008, 『일본외무성 독도 홍보 팸플릿 반박문』 제4항;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006, *Dokdo, Korean Territory since 6th Century*, p. 26; 대한민국 외교부, 2012,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영토 독도』, 21쪽; 김병렬, 1998, 『독도』, 다다미디어, 344~45쪽; 신용하, 1996, 『독도의 민족영토사연구』, 지식산업사, 164쪽; 정태만, 2014,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 및 태정관지령과 독도』, 『독도연구』 제17호, 14~15쪽; 김명기, 2007, 『독도강의』, 독도조사연구학회, 75쪽, 일본국립공문서관 디지털 아카이브(<http://www.digital.archives.go.jp>).

6 太政官 編, 1877, 『公文錄』, 內務省之部, 1877년 3월 17일자 “日本海内竹島外一島地籍編纂方向”, 일본국립공문서관 디지털 아카이브(<http://www.digital.archives.go.jp>).

“竹島 외 1도는 일본과 관계없음을 명심할 것”이라는 지령에 부속된 ‘기죽도약도(이를 이하 ‘태정관지령문기죽도약도’ 또는 ‘기죽도약도’라 한다)’다.

‘시마네현기죽도약도’는 시마네현 참사 사카이 지로가 제작한 것이고 ‘내무성기죽도약도’와 ‘태정관지령문기죽도약도’는 내무성과 태정관이 각각 새로 제작한 것이 아니라 시마네현 지적편찬방사에 첨부된 ‘기죽도약도’를 그대로 내무성의 지적편찬방사에 첨부되고 태정관지령에 첨부한 것으로 본다. 당시는 오늘과 같이 복사기술이 발달되어 있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마네현기죽도약도’와 ‘태정관지령문기죽도약도’는 동일한 것으로 본다. 양자가 별개의 지도라는 어떠한 논술·주장도 접할 수 없다.

2. ‘기죽도약도’의 공시

‘기죽도약도’는 ‘태정관지령문’의 14개 부속문과 같이 ‘태정관지령문’에 부속되어 『태정유전』(太政類典)과 『공문록』(公文錄)에 수록되어 있다. 다만 『태정유전』에는 ‘기죽도약도’가 수록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는 아마도 당시에는 ‘기죽도약도’를 그대로 재생 복제할 과학적 기술이 부족하여 ‘기죽도약도’를 『공문록』에 그대로 수록하고 『태정유전』에는 수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⁷ 요컨대 ‘기죽도약도’는 『공문록』에 등재되어 일본 국내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공시되었다. 따라서 ‘기죽도약도’는 일본의 대내문서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공문록』은 명치 전기의 정부 공문서 원부를 수록한 것으로 일본의 관보제도가 창설된 명치 16년(1883)까지 관보의 기능을 했다.⁸ 관보(official gazettes)는 공식적인 정부 정기간행물로 국제법 연구의 기본연원이다(a primary source for research in international law).⁹ 그러므로 『공문

록』에 등재되는 것은 일본국내에 한정된 고시가 아니라 국제적 공시의 의미를 갖는다.

공시는 국제법상 통고(notification)의 효과가 인정되는 것으로, 통고는 일방적 법률행위로 통고의 내용에 따른 국제법상 효력이 발생하는 바, ‘기죽도약도’의 공

7 정태만, 2014, 앞의 글, 18쪽.

8 정태만, 2014, 위의 글, 19쪽.

9 Edmund Jan Osmanczyk, 1900. *Encyclopedic Dictionary of the United Nations*, 2nd ed.(New York: Taylor), p. 652.

시는 그 내용에 따라 즉, 후술하는 ‘기죽도약도의 내용’에 따라 국제법상 효력이 인정된다. 공시는 특별한 형식은 없다(there is no specific form).¹⁰ 따라서 공시는 public announcement, joint declaration, publication, recognition, exchange of note 등 여러 가지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공시는 문제의 공시의 성격에 의존하는 통고를 요한다(declaration requires notification depend upon the nature of the declaration).¹¹ 따라서 공시는 요구되는 통고의 효과가 인정되며, 일방적 법률행위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declaration has binding force).¹²

『공문록』은 오늘 현재 일본국립공문서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일본국립공문서관 디지털 아카이브(<http://www.digital.archives.go.jp>)에 접속하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다.

3. ‘기죽도약도’의 내용

‘태정관지령문기죽도약도’는 가로 58cm, 세로 38cm의 크기로, 다음과 같은 섬과 거리를 가리키는 문자로 구성되어 있다.

(i) 지도 우측상단에 종으로 “磯竹島略島”라고 도명이 표기되어 있다.

(ii) 지도에는 두 개의 섬이 그려져 있으며, 그중 하나는 섬의 중앙 상부에 위치하고, 다른 하나는 그 섬의 우측하단에 위치하고 있다. 섬의 중앙 상부에 위치한 섬은 그 섬 위에 “磯竹島”라고 표기하고 기죽도 서남방에 위치한 섬은 그 섬 위에 “松島”라고 표기되어 있다. 기죽도는 울릉도이고 송도는 독도인 것이다.

(iii) 기죽도 좌측에 종으로 “磯竹島에서 조선을 바라보면 서북해안이 되며 해상으로 약 50리 정도”라고 표기되어 있다.

(iv) 기죽도와 송도 사이에 사선으로 “松島에서 磯竹島까지 서북쪽 40리 정도”라고 표기되어 있다.

(v) 오키 도고 후쿠우라[隱岐 福浦]에서 松島(마쓰시

10 Carl-August Fleischauer, 1984, “Declaration,” *EPIL*, Vol. 7, p. 67.

11 Fleischauer, *ibid.*, p.67.

12 Fleischauer, *ibid.*, p.67, Mary F. Domineck, 1986, “Notification,” *EPIL*, Vol. 9, p. 290; G. Schwarzenberger and E. D. Brown, 1976, *A Manual of International Law*, p.141.

마) 간 사선으로 “隱岐 福浦[오키 도고 후쿠우라]에서 松島[마쓰시마]까지 서북쪽 80리 정도”라고 문자로 표기되어 있다.

이상이 ‘기죽도약도’에 표시된 섬과 문자의 전부다.

‘기죽도약도’의 난 내·외를 불문하고 기죽도 또는 松島가 조선의 영토이다 또는 일본의 영토이다라는 표현은 그림으로나 문자로나 명시된 바 없다.

‘기죽도약도’상에 기죽도와 松島 두 섬이 있으므로 竹島 外一島는 松島를 뜻하는 것으로 된다.

“기죽도에서 松島까지는 약 40리 정도”이고, “오키도에서 松島까지 80리 정도”라는 기술은 송도는 기죽도에 소속되며 오키도에 소속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라면 ‘기죽도약도’는 松島[독도]가 조선의 영토라는 영토에 관한 지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나 국제법상 영토취득의 원칙으로 근거리원칙은 인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추정은 인정될 수 있는지 검토를 요한다. 물론 ‘기죽도약도’로 보아 松島가 기죽도에 가깝고 오키도에 가까운 것이 아니므로 이를 보고 시마네현, 내무성 그리고 태정관이 松島를 일본과 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추정될 수 있지만 ‘기죽도약도’상으로는 그러한 근거가 없다.

4. ‘기죽도약도’와 태정관지령문의 관계

1) 태정관지령문의 부속도(附屬圖) 관계

‘태정관지령문’은 1쪽의 문서인 것이 아니라 수 개의 문서의 복합체로 구성되어 있다. 이 복합체로 구성된 ‘태정관지령문’은 크게 (i) 태정관지령문 ‘본문’과 (ii) 태정관지령문 ‘부속문’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지령은 질의를 받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한 확정적 지시를 말한다.¹³

‘태정관지령문’ 본문은 ‘태정관지령문’의 핵심인 (i) 지령안(指令按)과 지령안을 도출한 근거인 지령안근거(指令按根據)로 구성되어 있다.

‘태정관지령문’ 부속문은 14개 문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시마네현이 수집·작성한 6개의 문서와 내무성이 수집·작성한 6개

13 이성환, 2016. 앞의 글, 108쪽.

의 문서 그리고 태정관이 작성한 2개의 문서 도합 14개의 자료·문서로 구성되어 있다. 이 14개의 문서는 『공문록』에 수록되어 있는 바, 이를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 (i) 「태정관지령」 결재 품의서
- (ii) 도근현에서 내무성에 올린 질의서
- (iii) 내무성지리국에서 도근현에 내려보낸 지리요청서(을 제218호)
- (iv) ‘죽도 외 1도’에 대한 정의
- (v) 도해 유래 및 도해 허가서
- (vi) 도래금지 경위 및 도해 금지령
- (vii) 도해금지 결정의 이유(제 1호 구정부형의지지의)
- (viii) 일본 어민의 도해금지를 조선에 통보한 외교문서
- (ix) 조선에서 받은 외교문서
- (x) 조선에서 받은 외교문서를 에도막부에 전달했다는 대마도의 회신(제4호 본방회답)
- (xi) 외교교섭 창구인 대마도 실무자가 조선에 보낸 문서(제21호 구상지람)
- (xii) 내무성에서 태정관에 올린 질의서(일본해내죽도의일도지적편찬방사)
- (xiii) ‘기죽도약도’
- (xiv) 태정관의 문서목록(울릉도와 독도를 편도외로 정함과 내무성 질의 및 태정관의 지령)¹⁴

이와 같이 ‘기죽도약도’는 ‘태정관지령문’의 14개 부속문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기죽도약도’는 태정관지령문의 한 구성부분이다. ‘태정관지령문’의 공시와 같이 ‘기죽도약도’도 『공문록』에 등재되어 있다.¹⁵

2) 태정관지령문의 정의도(定義圖) 관계

태정관지령문의 핵심인 지령안은 다음과 같이 지시되어 있다.

14 일본국립공문서관 디지털 아카이브 (<http://www.digital.archives.go.jp>); 정태만, 2014, 앞의 글, 17쪽.

15 일본국립공문서관 디지털 아카이브 (<http://www.digital.archives.go.jp>); 정태만, 2014, 위의 글, 17쪽.

御指令按

伺之趣竹島外一島之義本邦關係無之義ト可相心得事

어지령안

품의한 취지의 죽도 외 1도의 건에 대하여 본방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심득할 것.

위의 기술 중 '죽도'는 울릉도를 지칭하는 것이고, '외 1도'는 松島(독도)를 지칭하는 것이다. 그리고 '본방'은 일본을 뜻하는 것이다. 즉, 독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뜻이다.

이러한 해석은 동 지령에 부속된 '기죽도약도'가 지령안의 해석의 근거가 된다. 즉 '기죽도약도'는 지령안의 '竹島 외 1도'의 정의규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기죽도약도'에는 2개의 섬이 그려져 있으며 그중 하나는 섬 위에 "磯竹島"라고 문자로 표기되어 있고 그 섬의 서남쪽 40리 정도에 있는 다른 도 위에는 "松島"라고 문자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죽도약도'가 태정관지령문의 부속문이므로 이는 태정관지령문의 '竹島 外一島'의 정의 규정(定義規定), 즉, 정의도(定義圖)라고 할 수 있다.

시마네현에서 내무성에 제출한 질의서, 즉 '일본해 내 竹島 외 1도 지적 편찬방사', 내무성에서 태정관에 제출한 질의서 '일본해 내 竹島 외 1도 지적 편찬방사', 그리고 태정관의 지령문에는 모두 각각 '기죽도약도'가 첨부되어 있다. 이는 시마네현, 내무성 그리고 태정관이 모두 각기 '기죽도약도'를 보고 '죽도 외 1도'의 의미를 '기죽도약도'로 정의한 것이며 '기죽도약도'는 '죽도 외 1도'를 죽도 서남방 40리 정도에 위치한 松島(독도)로 정의한 것이다. 내무성이 태정관에 제출한 일본해 내 '죽도 외 1도'의 지적 편찬방사에는 '죽도 외 1도'의 정의 규정이 없으나 다만, 원유의 대략(原由ノ大略)에 '죽도 외 1도'에 관해 기술하고 있다.¹⁶ 이를 좀 더 시각적으로 명료하게 표시하기 위해 '기죽도약도'를 첨부한 것으로 본다.

요컨대 '기죽도약도'는 '태정관지령문'에 표시된 '竹

16 태정관, 『공문록』, 내무성지부1, 명치 10년 3월(국립공문서관, 서기번호 2A10공2032).

島 외 1도'의 의미를 松島[독도]로 표시한 정의규정인 것이다.

5. '기죽도약도'에 대한 대일본 공개 질의

'기죽도약도'의 발견·발표는 한국의 언론계에도 큰 관심을 갖고 이를 내외에 보도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연합뉴스는 2006년 9월에 일본 외상과 각 정당의 대표에게 '태정관지령문'과 '기죽도약도'에 관해 공개 질의를 한 바 있다. 이에 관한 참신하고 창조적인 연구가 요구된다.¹⁷

III. '기죽도약도'의 인증지도 여부 검토

국제법상 지도의 증명력은 극히 제한적이다. 국제법상 직접적 증명력이 인정되는 지도는 인증지도(authenticated map)에 한하므로 '기죽도약도'가 인증지도인가부터 검토하기로 한다.

1. 지도의 인증성

조약(treaties)과 재판(decisions)과 같은 법적 문서(legal instruments)에 부속되어 그 법적 문서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지도는 직접적 증명력이 인정되고 그 이외의 지도는 간접적 증명력만이 인정되는데 불과하다. 이와 같이 법적 문서에 부속된 지도를 '인증지도'라 하고,¹⁸ 이러한 지도의 특성을 '인증성(authenticity, authentic character)'이라 한다.¹⁹ 이 '인증지도'에는 법적 문

17 1) 공개질문의 내용

(i) 시마네현이 내무성에 제출한 질의서 「일본해 내 다케시마[竹島] 외 1도 지적 편찬 질의(日本海内竹島外一島 地籍編纂方伺)」의 본문 중에 기재된 '마쓰시마[松島]'는 오늘날 다케시마[竹島]/독도인가.

(ii) 위의 시마네현 질의서의 제목 「일본해 내 다케시마[竹島] 외 1도 지적 편찬 질의서」의 '다케시마[竹島]'는 오늘날 한국령·울릉도인가? 또한 외 1도는 「유래의 개략」과 「이소다케시마약도」에 기재되고 있는 '마쓰시마[松島]'인가.

(iii) 내무성에서 태정관에 제출한 질의서의 제목 「일본해내 다케시마[竹島] 외 1도 지적 편찬 질의서」, 그리고 태정유전 지령서의 제목 「일본해내 다케시마[竹島] 외 1도를 版圖(판도=영토) 외라고 정한다」, 태정관 지령 결정문 「질의한 취지 다케시마[竹島] 외 1도의 건 本邦(본방)과 관계 없음을 명심할 것」에 있는 '다케시마[竹島] 외 1도'라는 것은 시마네현 질의서의 제목 「일본해내 다케시마[竹島] 외 1도 지적 편찬 질의서」에 있는 '다케시마[竹島] 외 1도'와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2) 공개질문에 대한 일본 외무성의 답변
위 공개질문에 대해 일본 외무성은 다음과 같이 답변한 바 있다.

'태정관지령문'과 '기죽도약도'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역사적 사실 등에 대하여는 현재 조사, 분석 중으로 현시점에서는 일본정부의 입장에서 코멘트 할 수 없다.」(岡田卓己, 2012, 「1877년 太政官指令 日本海内竹島外一島ヲ版圖外ト定ム解説」, 『독도연구』 제 12호, 200~201쪽).

서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지도뿐만 아니라 서명된 지도와 같이 지도 그 자체가 법적 문서인 지도도 포함된다.²⁰

‘인증지도’는 국가기관이 발행한 지도인 ‘공식지도(official maps)’와 구별된다. ‘공식지도’는 ‘국가기관’이 발행한 지도 이외에 국가의 찬조(auspice) 또

는 취지(purporting)로 발행한 지도를 의미한다.²¹ ‘인증지도’는 직접적 증명력이 인정되나 ‘공식지도’는 간접적 증명력이 인정되는 데 불과하다. 그러나 ‘공식지도’는 승인, 묵인, 금반언의 효과가 인정되는 점에 특색이 있다.²²

공식지도는 그를 발행한 국가가 생각하는 영역의 한계를 표시하는 것으로 인정되기(represented what that state deemed the limits of its domain) 때문이다.²³

인증지도만이 직접적 증명력, 즉 제1차적 증명력이 있다는 학설과 판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법적 사실은 그 사실과 같이 이는 현재의 법의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 권리의 창조행위가 권리가 발생하는 때에 효력이 있는 법을 따라야 한다는 동일한 원칙은 권리의 존속, 다시 말해 권리의 계속적인 현시는 법의 발전에 의해 요구되는 요건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²⁴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현재의 국제법을 기준으로 하기로 한다.

1) 학설

(1) Durward Sandifer

Sandifer는 지도는 대분의 경우 전문증거로서 제2차적 증거라고 하여, 그와 반대로 대부분의 경우가 아닌 특수한 경우, 즉 법적 문서에 부속된 경우에만 제1차적 증거로 될 수 있다고 다음과 같이 암시적 기술을

18 *Opinion and Award of Guatemala-Honduras Special Boundary Tribunal*, January 23, 1933; Hyde Charles Cheney, 1933, “Maps as Evidence in International Boundary Disputes. Guenter Weissberg, *AJIL*, Vol. 27; 1963, “Maps as Evidence in International Boundary Disputes: A Reappraisal,” *AJIL*, Vol. 57.

19 *Monastery of Sant-Naum Advisory Opinion*: PCIJ, 1924, *Series B*, No. 9, p. 21; A. O. Cukwurah, 1967, *The Settlement of Boundary Disputes in International Law*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p. 219.

20 PCIJ, 1924, *Series B*, No. 9, p. 21; Weissberg, 1963, op. cit., 784.

21 Hyde, 1933, op. cit., 315.

22 Weissberg, 1963, op. cit., 803.

23 Hyde, 1933, op. cit., 315.

24 Hans Kelsen, 1996,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2nd ed.(New York: Holt), p. 179, n. 1; J. P. Grant and J. C. Barker, *Encyclopaedic Dictionary of International law*, 2nd ed.(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p. 341; Malcolm N. Shaw, 1997, *International law*, 4th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346~347. *The Island of Palmas Case* (1928): UN, 1949, *RIAA*, Vol 2, p. 839; *Minquiers and Ecrehos Case* (1953): ICJ, *Reports*, 1953, p. 56; *Western Sahara Case* (1975): ICJ, 1975, *Reports*, p. 39.

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서 지도는 기껏해야 제2차적 증거이고, 흔히 성격상 전문 증거다…….²⁵

지도는 경계의 위치에 관해 야기될 수 있는 분쟁의 결정에서 분쟁의 결정적 증거로 거의 채택되지 아니한다.²⁶

이와 같이 Sandifer는 지도는 “대부분의 경우에 제2차적 증거”라고만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가 아닌 경우, 즉 특수한 경우는 제1차적 증거로 인정된다는 의미로 반대 해석되며, 또 대부분의 경우가 아닌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나 지도가 결정적 증거로 인정되는 경우는 “인증지도”의 경우이므로 이는 인증지도의 경우로 해석된다.

(2) Charles Cheney Hyde

Hyde는 상설국제재판소의 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 간 국경에 관한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 Polish-Czechoslovakia Frontier)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조약과 재판 문건의 일부인 인증지도만이 제1차적 증거로 될 수 있다고 논하고 있다.

지도와 지도의 범례표는 조약이나 재판의 문본과 독립하여 결정적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은 진실이다.²⁷

이와 같이 Hyde가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 간 국경에 관한 상설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을 인용한 것은 그가 조약이나 재판의 문본에 부속된 지도는 인증지도로서 이는 결정적 증거, 즉 직접적 증거로 인정되나, 그 이외의 지도는 간접적 증거, 즉 제2차적 증거로 됨에 불과하다고 논하는 것이다.

²⁵ maps are in most instances, at best, secondary evidence, and frequently hearsay in character……. D.V. Sandifer, 1975, *Evidence before International Tribunals*, revised ed., Chicago University Press, p.157.

²⁶ maps can seldom be taken as conclusive evidence in the determination of disputes which may arise concerning the location of boundary. Sandifer, 1975, *ibid.*, p.157.

²⁷ it is true that maps and their tables of explanatory signs cannot be regarded as conclusive proof, independently of the text of the treaties and decisions. Hyde, 1933, *op. cit.*, 316.

(3) Guenter Weisberger

Weisberger는 지도는 조약과 재판의 문본에서 독립하여 증거로 될 수 없다고 하여, 인증지도만이 증거로 될 수 있다고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상설국제사법재판소는 “지도와 지도의 범례표는 조약과 재판의 문본으로부터 독립하여 결정적 증명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을 덧붙임으로써 재판소의 지도의 상대적 가치의 인식을 표시한 바 있다…….²⁸
여러 사건과 성명은 Sandifer 박사가 표시해온 바와 같이 지도는 제1차적 증거가 아니라 흔히 전문증거의 성격을 지닌 제2차적 증거로 기술하고 있다.²⁹

이와 같이 Weisberger는 지도는 조약과 재판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지도, 즉 인증지도만이 결정적 증명력, 즉 직접적 증명력을 갖는다고 논하고 있다.

²⁸ the Permanent Court expressed of their relative value by adding that “maps and their tables of explanatory signs cannot be regarded as conclusive proof, independently of the treaties and decisions”…. Weissberg, 1963, op. cit., p. 784.

²⁹ case and statements, such as these have led Dr. Durward Sandifer to describe maps not as primary, but as secondary evidence. Weissberg, 1963, *ibid.*, pp. 784~785.

³⁰ with regard to maps as such, the popular approach, arising from their inherent limitations, is not to treat them as conclusive but relative value. Thus, the arbitrator in the Palmas Island case, observed that “a map affords only an indication—and that a very indirect one—and, except when annexed to a legal instrument, has not the value of such an instrument, involving recognition or abandonment of rights.” Cukwurah, 1967, op. cit., pp. 224~225.

(4) A. O. Cukwurah

Cukwurah는 팔마스도 사건(*The Island of Palmas Arbitration Case*)에서 지도는 법적 문서에 부속된 경우를 제외하고 권리의 승인 또는 포기의 증거로 될 수 없다는 판정을 인용하여, 인증지도만을 제1차적 증거로 보는 의견을 다음과 같이 표시하고 있다.

지도의 고유한 한계로부터 야기되는 일반적인 접근은 지도 그 자체에 관해서 지도를 결정적인 가치로서가 아니라 상대적인 가치로서 취급된다. 따라서 팔마스도 사건에서 중재관은 지도는 하나의 표시만을 제공할 뿐이다. 그리고 법적 문서에 부속된 경우를 제외하고 권리의 승인 또는 포기를 의미하는 문서로서의 가치를 가지지 아니한다.³⁰

이와 같이 Cukwurah는 법적 문서에 부속된 지도, 즉 인증지도만이 결정적 증명력, 즉 직접적 증명력을 갖는다고 논하고 있다.

2) 판례

(1) 1923년의 자워르지나 사건

1923년 자워르지나사건(*Jaworzina Advisory Opinion, Polish-Czechoslovakian Frontier Advosory Opinion*)에서 상설국제사법재판소는 지도는 조약 및 재판의 문본과 독립하여 직접적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다음과 같은 권고적 의견을 표시했다.

지도 및 지도상의 해설기호는 조약 및 재판의 문본과 독립하여 결정적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³¹

위의 권고적 의견 중 (i) ‘조약 및 재판의 문본과 독립하여’란 ‘조약 및 재판의 문본과 별도로’ 즉 ‘그 자체만으로’의 의미이므로 ‘조약 및 재판의 문본의 일부를 이루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자체만으로’라는 뜻이며, (ii) ‘결정적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에서 ‘결정적 증거’란 ‘제1차적 증거’, 즉 ‘직접적 증거’를 뜻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의 견해는 ‘인증지도’만이 ‘직접적 증거’로 인정된다는 의미인 것이다.

(2) 1924년의 성 나오움 수도원 사건

1924년의 성 나오움 수도원 사건(*Monastery of Saint-Naoum, Advisory Opinion*)에서 상설국제사법재판소는 그의 권고적 의견에서 동 재판소에 제출된 지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인증성’이 없는 지도의 증명력을 부인하는 권고적 의견을 표시했다.

31 maps and their tables of explanatory signs cannot be regarded as conclusive proof, independently of the text of treaties and decisions. *Jawerzina, Advisory Opinion: PCIJ, 1923, Series B, No. 8, pp. 32~33.*

그 지도가 런던의 재판을 표시한다고 주장된다. 그러나 이 지도에 표시된 경계선이 1913년 8월 11일의 재판의 제1항 말미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수락한다 할지라도……더 나아가 문제의 지도는 서명되지 아니하여 이의 인증성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³²

위의 권고적 의견이 '공식성(official character)'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인증성'이란 표현을 사용하여 문제의 지도가 인증지도가 아니므로 직접 증거로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이 의견은 지도가 조약이나 재판에 부속되어 그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지도 자체에 서명이 있으면 그 지도는 인증지도로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3) 1928년의 팔마스섬 중재사건

1928년의 팔마스섬 중재사건(*The Island of Palmas Arbitration case*)에서 미국은 1,000여 매의 지도를 팔마스섬의 영유권의 증거로 제출했으나 중재관(Max Hurbert)은 지도는 법적 문서에 부속된 경우 이외에는 영유권의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고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다.

³² it is alleged that the map represents the decision of London, Even admitting, however, that the line marked on this map is that referred to at the end of the first paragraph of the decision of August 11th 1913, ... Moreover the map in question is unsigned and its authentic character is not established. *Monastery of Saint-Naum, Advisory Opinion*; PCIJ, 1924, *Series B*, No. 9, p. 21.

지도는 오직 하나의 방증 — 즉 바로 간접적 방증 — 을 제공할 뿐이며, 법적 문서에 부속된 경우 이외에는 권리의 승인 또는 포기로서 인정하는 문서로서 가치를 가지지 아니한다.³³

³³ a map affords only an indication—and that a very indirect one—and, except when annexed to a legal instrument, has not value of such an instrument, involving recognition or abandonment of rights. *Palmas Island Arbitration*; UN, 1949, *R1AA*, Vol. 2, pp. 829~890.

위의 판정은 지도는 법적 문서에 부속되지 아니한 지도, 즉 인증지도 이외의 지도는 제2차적 증거에 불과하며, 인증지도만이 권원의 제1차적 증거, 즉 직접적 증거로 됨을 인정한 것이다.

(4) 1933년의 과테말라·온두라스 경계 중재사건

1933년의 과테말라·온두라스 경계 중재사건(*Guatemala-Hondras Boundary Arbitration*)에서 특별경계재판소(*Special Boundary Tribunal*)는 다음과 같이 인증 지도의 증명력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인증지도는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기술적인 자료일지라도 알려 지지도 아니하고 행정력도 실질적으로 행사되지 아니하는 영토에 관계되었을 경우에는 거의 가치가 없다.³⁴

위의 판결에는 “인증지도는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간결히 표시되어 있고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무엇을 뜻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하나 “인증지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직접증거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5) 1986년의 국경분쟁사건

1986년의 국경분쟁사건(*Case Concerning the Frontier Dispute-Burkina Faso /Republic of Mali-*)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지도는 공적 문본에 부속되어 그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 이외에는 부수적 증거(*extrinsic evidence*)로 이용될 수 있음에 불과하다고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지도는 단순한 정보일 뿐이다.…… 지도는 영토권원일 수 없다.…… 지도가 공적 문본에 부속되어 그 문본의 불가분의 일부를 형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도는 단순한 부수적 증거일 뿐이다.³⁵

위의 판결은 공식문본에 부속되어 그 문본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지도, 즉 인증지도 이외의 지도

³⁴ authenticated maps are also to be considered, although such descriptive material is of slight value when it relates to territory of which little or nothing was known and in which it does not appear that any administrative control was actually exercised. *Guatemala-Hondras Boundary Arbitration, Opinion and Award of Guatemala-Hondras Special Boundary Tribunal, January 23, 1933, 9, 8.*

³⁵ maps merely constitute information, … they cannot constitute a territorial title, … when maps are annexed to an official text of which they form an integral part. Except in this clearly defined case, maps are only extrinsic evidence. *Case Concerning the Frontier Dispute-Burkina Faso/Republic Mali-; ICJ, 1986, Reports, para. 54.*

는 간접적 증거일 뿐이라고 표시하여 인증지도만이 직접적 증거로 인정된다는 점을 명시한 것이다.

(6) 2002년의 리기탄島 및 시피탄島 영유권 사건

2002년 리기탄島 및 시피탄島 영유권 사건(Case Concerning Sovereignty over Pulau Ligitan and Pulau Sipitan)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1986년 국경분쟁사건(Frontier Dispute-Burkina Faso / Republic of Mali-)에서 국제사법재판소가 판시한 “지도는 공적 문본(official text)에 부속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수적 증거(extrinsic evidence)로 이용될 수 있음에 불과하다”는 내용을 인용하고³⁶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요컨대, 1915년의 협정에 부속된 지도를 제외하고 당사자가 제출한 지도 자료는 결정적인 것이 아니다.³⁷

위의 판결 중 ‘협정에 부속된 지도’란 인증지도를 의미하는 것이며 ‘결정적’이란 ‘직접적’, ‘제1차적’ 증거를 뜻하는 것이므로 결국 ‘인증지도’만이 직접적 증거, 제1차적 증거로 된다는 의미를 표시한 것이다.

(7) 2008년의 페드라 브랑카 영유권 사건

2008년의 페드라 브랑카 영유권 사건(Case Concerning Sovereignty over Pedra Branca)에서 당사자가 근 100매의 지도를 제출하였다. 말레이시아는 지도는 권원을 창출할 수 없으며(maps do not create title), 지도가 조약 내에 구체화되거나 국가 간 교섭에 사용된 경우(when incorporated in treaty or used in inter-state negotiation)를 제외하고는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³⁸

이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는 이를 부정하는 어떠한 판단도 표시한 바 없고, 말레이시아 측량단장(Surveyer-

³⁶ Case Concerning Sovereignty over Pulau Ligitan and Pulau Sipitan: ICJ, 2002, Reports, para. 88.

³⁷ In sum, with the exception of the map annexed to the 1915 Agreement, the cartographic material submitted by the parties is inconclusive. ICJ, 2002, Reports, para. 272.

³⁸ Case Concerning Sovereignty over Pedra Branca: ICJ, 2008, Reports, para. 270.

General)이 제작한 지도와 싱가포르 정부(Government)가 제작한 지도는 “도서가 싱가포르의 관할 하에 있음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tend to confirm)”라고 결론지었다.³⁹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표현하고 “확인된다”라고 표현하지 아니한 것은 이들 정부기관이 제작한 지도를 ‘인증지도’로 보지 아니하고 따라서 제2차적 증명력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말레이시아가 “지도가 조약 내에 구체화되거나 국가 간 교섭에 사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원을 창출할 수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 재판소가 반대의 판단을 표시한 바 없는 것으로 보아 명백하다.

요컨대 동 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인증지도 이외의 지도는 제2차적 증명력을 갖는 데 불과하다는 종래의 판례를 재확인하는 뜻을 판시한 것이다.

2. ‘기죽도약도’의 인증성

‘기죽도약도’는 조약이나 재판과 같은 법적 문서(legal instrument)에 부착된 것이 아니므로 이는 인증지도가 아니다. 또한 「태정관지령문」도 국제법상 조약이나 재판이 아니므로 이에 부착된 ‘기죽도약도’ 역시 인증지도가 아니므로 ‘기죽도약도’는 제1차적 증명력이 있는 지도가 아니다.

IV. ‘기죽도약도’의 공식지도 여부 검토

인증지도가 아니라도 공식지도(official map)는 묵인, 승인 및 금반언의 효과가 인정되므로 ‘기죽도약도’가 공식지도인가를 검토해보기로 한다.

39 ICJ, 2008, 위의 책, para. 272.

1. 공식지도

1) 공식지도의 개념

공식지도는 국가가 발행한 지도 이외에 국가기관의 찬조 또는 취지로 발행한 지도를 말한다.⁴⁰ 그리고 국가기관의 찬조 또는 취지뿐만 아니라 승인(approve)에 따라 발행한 지도도 공식지도이다.⁴¹

공식지도에 대한 개념은 사적 지도(private maps)이다.⁴² 공식지도와 사적 지도는 동일한 법적 지위(same legal status)에 있는 것이 아니다.⁴³

2) 공식지도에 관한 판례

1914년의 티모르⁴⁴ 중재사건(*Timor Island Arbitration*)에서 포르투갈은 사적 지도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중재관은 “그러한 지도는 공식지도와 가치에서 동일할 비중일 수 없다(could not be weighed in value with official maps)”라고 판시했다.⁴⁴ 이와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 1927년의 라브라도르 경계사건(*Labrador Boundary Case*)에서도 재확인 반복되었다.⁴⁵

3) 공식지도의 효력

공식지도는 당사국을 구속한다.⁴⁶ 공식지도는 그것이 발행된 때에 “국가가 생각하는 영역의 한계를 표시하는 것으로(represented what that state deemed the Limits of its domain)” 인정되기⁴⁷ 때문이다. 공식지도는 그것을 발행한 당사자의 내심의 상태를 잘 표시하는 것(will indicate the state of mind of party publishing it)이라 할 수 있다.⁴⁸

“볼리비아와 페루 간의 국경에 관한 중재조약”은 공식지도에 한해 증거로 인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제3조).⁴⁹ 이런 경우 공식지도 이외의 사적 지도는 증거로 인정될 수 없는 것임은 물론이다.

공식지도는 그 지도의 발행국의 영유의 한계를 표

40 Hyde, 1933, op. cit., p. 315.

41 Weissberg, 1963, op. cit., p. 781.

42 Cukwurah, 1967, op. cit., p. 222.

43 Cukwurah, 1967, ibid., p. 222.

44 *Timor Island Arbitration: AJIL*, Vol. 9, 1915, p. 259.

45 *Labrador Boundary Case: Dominion Law Reports*, Vol. 2, 1927, p. 425; Cukwurah, 1967, op. cit., p. 222.

46 Hyde, 1933, op. cit., p. 315; Cukwurah, 1967, ibid., p. 223.

47 Hyde, 1933, op. cit., p. 315.

48 Cukwurah, 1967, op. cit., p. 224.

49 UN, 1961, *RIAA*, Vol. 11, p. 128.

시하는 것이므로 사적 지도와 달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영토의 권원에 영향을 준다.

(1) 묵인·승인의 효과

공식지도의 발행국이 그 지도상에 특정 영토를 자국의 영토로 표시할 경우 그 특정 영토의 이해관계국이 이에 관해 아무런 항의를 하지 아니하면 그 후 그 특정 영토는 그 지도의 발행국의 영토로 인정되게 된다. 이는 공식 지도 발행국의 행위에 대한 이해관계국의 묵인(acquiescence) 또는 승인(recognition)의 효과이다.

1962년 프레아 비헤어 사원 사건(Temple of Preah Vihear Case)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동 사원을 캄보디아의 영토로 표시한 1907년의 지도에 대해 태국이 1925년 및 1937년의 프랑스·시암 조약 협상 당시 침묵을 지켰고,⁵⁰ 또한 1958년까지 이 지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⁵¹ 동 사원은 캄보디아의 영토에 속한다고 판시하였다.⁵² 이는 1907년의 지도에 대한 태국의 묵인 또는 승인의 효과라 할 수 있다.

50 Temple of Preah Vihear Case: ICJ, 1962, Reports, pp. 27~28.

51 ICJ, 1962, *ibid.*, p. 29.

52 ICJ, 1962, *ibid.*, p. 36.

53 금반언은 선의의 신뢰성을 요구한다. *The Grisbardarna Case*(1902) : AJIL, Vol. 4, 1940, p. 233; *Serbian Bonds Case*(1929): PCIJ, 1929, Series A, Nos. 20/21, p. 39; *Eastern Greenland Case*(1932): PCIJ, 1929, Series A/B, No.53, 1933, p. 37.

54 ICJ, 1962, *op. cit.*, p. 28.

55 ICJ, 1962, *ibid.*, p. 36.

56 D. W. Bowett, 1957, "Estoppel before International Tribunals and its Relations to Acquiescence," *BYIL*, Vol. 33, p. 176; I. C. MacGibbon, 1954, "The Scope of Acquiescence in International

(2) 금반언의 효과

공식지도의 발행국이 그 지도상에 특정 영토를 자국의 영토가 아닌 것으로 표시할 경우, 즉 특정 영토를 자국의 영토로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 특정 영토의 이해관계국이 이를 신뢰한 때에⁵³ 그 공식지도의 발행국은 차후 그 특정 지역을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공식지도의 발행국의 행위에 대한 금반언(estoppel)의 효과인 것이다.

1962년의 프리히 비하르 사원 사건에서 태국은 1937년에 동 사원을 캄보디아 영토 내에 표시한 지도를 발행한 바 있다.⁵⁴ 이 점에 착안해보면 동 사원이 캄보디아의 영토에 속한다는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은⁵⁵

태국의 행위에 대한 금반언의 효과라 할 수 있다.

묵인·승인·금반언의 원칙은 상호 연계되어 있으며, 이들을 엄격히 구별하는 것은 용이하지 아니하다.⁵⁶ 동 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묵인과 금반언의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⁵⁷

2. '기죽도약도'의 공식성

'기죽도약도'는 일본 정부의 최고국가기관인 태정관의 지령에 첨부된 것이므로 이는 '태정관지령문'의 주문과 같이 일본이라는 국가 기관이 제정하고 「공문록」에 등재되어 국제적으로 공시된 것이므로 '기죽도약도'의 공식성은 검토의 여지가 없다.

공식지도는 발행국이 기 발행한 지도의 내용과 저촉·위배되는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즉, 일본 정부는 태정관지령문 주문의 죽도 외 1도는 독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독도는 일본의 영토이고 한국의 영토가 아니라는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이다.

Law," *BYIL*, Vol. 31, p. 148; Jorg Paul Muller and Thomas Cottier, 1984, "Estoppel," *EPIL*, Vol. 7, p. 79; Anne M. Trebilcock, 1984, "Waiver," *EPIL*, vol. 7, pp. 533~536; Malcolm N. Shaw, 1997, *International Law*, 4th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p. 352; Peter Malanczuk(ed.), 1997, *Akehurst's Moder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Law*, 7th ed., Routledge, p. 155.

57 An Rustemeyer, 1981, "Temple of Preah Vihear Case," *EPIL*, Vol. 2, p. 274. 그러나 Shaw는 동 사건에서 "묵인"을 적용한 것인지 "금반언의 원칙"을 적용한 것인지 불확실하고(uncertainty) 또 애매하다(ambiguity)고 논하고 있다(Shaw, 1997, *ibid.*, p. 352).

V. '기죽도약도'와 역사적 권원의 대체 요 검토

일본 명치정부의 '태정관지령문'과 '기죽도약도'에 따른 조선의 송도(독도) 영토주권의 승인에 따라 성립된 권원에 관해 "권원의 대체(substitution of title)"를 요하는가를 검토해보기로 한다.

1. 역사적 권원의 대체의 의의

영토주권의 권원(title to territorial sovereignty)이란 타 국가에 대한 영토주권의 주장 근거 (the validity of claims

to territorial sovereignty against other states)를 의미한다.⁵⁸

영토주권의 권원은 시간의 경과의 축에서 구분해 볼 때, “현대국제법상 권원”과 그 이전의 “역사적 권원”으로 구분된다. 그중 역사적 권원(historical title)은 고전적 권원(ancient title), 본원적 권원(original title), 봉건적 권원(feudal title) 등 현대국제법 이전의 영토주권의 타당 근거를 말한다. 역사적 권원은 전법적 주권(pre-legal sovereignty)의 권원 즉, 국제법 이전의 권원을 뜻한다.⁵⁹ 따라서 역사적 권원은 엄격한 의미에서 법적 권원이라 할 수 없다. 물론 역사적 권원이 성립할 당시에 타당한 현대국제법 이전의 규범도 국제규범으로 관념하면 역사적 권원도 법적 권원이라 할 수 있으나 그것은 현대국제법상 권원이라고는 할 수 없다. 현대국제법은 1648년의 웨스트팔리아조약(Treaty of Westphalia) 이후에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므로⁶⁰ 결국 역사적 권원은 1648년 이전 근대국가성립 이전의 권원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특정 국가가 국가로서 성립한 이후에 후속적으로 증가된(subsequent increase) 권원과 구별된다.⁶¹

시제법(時際法, intertemporal law)상 권리 획득시의 법과 권리 존재시의 법은 다른 것이다. 권리의 취득에 관해서는 그 취득 당시에 타당한 법이 적용되는 것이며 권리의 존재에 관해서는 오늘 평가시에 타당한 법이 적용되는 것이다. “권원의 대체”란 역사적 권원을 현대국제법에 따라 타당한 다른 권원(another title valid by modern International law)으로 대체(replacement)하는 것을 말한다.⁶² 즉 역사적 권원이 그 후의 역사적 발전의 효과에 따라 대체(superseded)되는 것을 뜻한다.⁶³

58 Ian Brownlie, 1998, *ibid.*, p. 121.

59 Schwarzenberger and Brown, 1976, *op. cit.*, p. 96.

60 Stephan Verosta, 1984, “History of Law of Nations, 1648 to 181,” *EPIL*, Vol. 7; B. S. Chimni, 1993, *International Law and World Order*, Sage; Westlake John, 1895, *International Law* (Cambridge University Press); Triggs, D. Triggs Gillan, 2006, *International Law*, Butterworth, p. 10; D. P. O’Connell, 1967, “A Cause Celebre in the History of Treaty Making,” *BYIL*, Vol. 42; Cassese Antonio, 2001, *International Law*, Oxford University Press; O’Brien John, 2001, *International Law*, Cavendish; Kayaglu Turan, 2010, *Legal Imperialism*, Cambridge University Press; Wheatley Steven, 2010, *The Democratic Legitimacy of International Law*, Hart; Gross Leo, 1948, “The Peace of Westphalia 1648–1948,” *AJLL*, vol. 42; J. R. Strayer, 1979, *On the Medieval Origins of Modern State*, Princeton University Press; Mark W. Zocher, 2006, “The Territorial Integrity Norm,” in B. A. Simmons and R. H. Steinberg(eds.),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Rel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Kaczorowska Alind, 2011, *Public International Law*, 4th ed., Routledge; Joyce Recharad, 2011, “Westphalia: Event, Memory, Myth,” in F. Johns, R. Joyce and S. Papahuja (eds.), *Events: The Force of International Law*, Routledge; Diehl Paul F. and Charlotte Ku, 2012, *The Dynamic of International Law*, Cambridge University Press.

61 Antonio Tores Bernordez, 1987, “Territory, Acquisition,” *EPIL*, Vol. 10, p. 498.

62 ICJ, 1953, *Reports*.

63 David H. Ott, 1987, *Public Interna-*

2. 역사적 권원의 대체를 인정한 학설과 판례

1) 학설

역사적 권원의 대체를 인정한 대표적 학설은 다음과 같다.

(1) Hans Kelsen

Kelsen은 국제법의 시간적 타당범위(Temporal Validity)를 논하면서 시제법(intertemporal international Law)에 관해 *The Island of Palmas Arbitration Case*(1928)에서 Max Huber 중재관의 판정을 인용하여 계속적인 주권의 현시에는 발전된 법의 조건에 따라야 한다고 기술하여 역사적 권원은 발전된 법에 따라 대체되어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논급하고 있다.

시제법으로 불리는 법적 규범의 시간적 타당범위에 관한 원칙은 *The Island of Palmas Arbitration Case*에서 중재관은 그의 의견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권리의 창조와 권리의 존재 간의 차이는 구별되어야 한다. …… 계속적인 주권의 현시는 발전된 법에 의해 요구되는 조건을 따라야 한다.⁶⁴

“계속적인 주권의 현시는 발전된 법에 의해 요구되는 조건을 따라야 한다”는 것은 역사적 권원은 당시의 법에 따라 대체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tional Law in the Modern World, Pitman, p. 109.

⁶⁴ The Principles regulating the temporal sphere of validity of legal norm called intertemporal law: Island of Palmas Case the arbitrator declared in his opinion “a distinction must be made between the creation of rights and the existence of the rights… its continued manifestation shall follow the conditions required by the evolution of law. Kelsen, 1966, op. cit., p.179, n.1.

(2) J. P. Grant 와 J. C. Barker

Grant와 Barker는 시제법(intertemporal law)의 기술에서 *Island of Palmas Case*(1928)의 판정 중 “법적 사실은 그 법적 사실과 동시에 있는 법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a judicial fact must be appreciated in the light of the law contemporaneity with it)”를 인용하고 또한 다음의 판정

을 인용하여 역사적 권원의 대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했으나 다음과 같이 역사적 권원의 대체를 승인하고 있다.

권리의 창조와 권리의 존재 간의 차이는 구별되어야 한다.…… 계속적인 주권의 현시는 발전된 법에 의해 요구되는 조건을 따라야 한다.⁶⁵

(3) Malcolm N. Shaw

Shaw는 특정의 권리는 그 권리의 시기에 국제법에 따라 계속적으로 존재하는 그러한 권리는 발전적인 법제도에 의존한다고 하여 역사적 권원의 발전적인 법제도에 따라 대체되어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기술하여 실질적으로 역사적 권원의 대체를 승인하고 있다.

특정의 권리의 창조는 그 시기의 국제법에 의존하는 반면에 그러한 권리의 계속적 존재는 발전적인 법제도의 조건에 의존한다.⁶⁶

(4) Gillian D. Triggs

Triggs는 *The Island of Palmas Arbitration Case*에서 Max Huber 중재관의 판정을 인용하여 본원적·불건적 권원은 그 후에 발전된 실효적 선점의 법에 따라 취득되게 된다고 하여 역사적 권원의 대체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후속적인 국제재판소는 시제법에 관한 후버의 접근을 채택해왔다. *The Island of Palmas Arbitration Case*에서 후버 판사는 발견에 기초한 스페인 선행자의 권원은 홀랜드에 의한 실효적인 선점의 추후 행위에 우선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Minguiers and Ecrehos Case*에서 어떠한 본원적·불건적 권원은

65 The Principles regulating the temporal sphere of validity of legal norm called intertemporal law: Island of Palmas Case the arbitrator declared in his opinion "a distinction must be made between the creation of rights and the existence of the rights... its continued manifestation shall follow the conditions required by the evolution of law. J. P. Grant and J. C. Barker, 2011, *Encyclopedic Dictionary of International law*, 2nd ed.(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 311~312.

66 while the creation of particular rights was dependent upon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time, the continued existence of such rights depend upon their according with the evolving conditions of developing legal system. Malcolm N. Shaw, 1997, *International law*, 4th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346~347.

1204년 이후의 사건의 결과로서 소멸되었다. 그리고 그 권원은 실효적 선점의 관습법의 발전에 따라 후속적으로 취득되었다.⁶⁷

“개발된 관습법에 따라 취득되었다(acquired in accordance with the developed in customary law)”는 것은 역사적 권원이 대체 당시의 국제법에 따라 대체되었다는 의미이므로 Triggs는 역사적 권원의 대체를 승인한 것이다.

(5) Richard K. Gardiner

⁶⁷ subsequent international tribunals have adopted the Huber approach to intertemporal law. In *Island of Palmas Case*, Judge Huber found that the prior Spanish title based on discovery could not prevail over the late acts of effective occupation by the dutch. The ICJ in the *Minquiers and Eclehus Case* also Found that any original feudal title had lapsed as a consequence of events of after 1204 and that title was subsequently acquiaced in accordance with the developing customary law of effective occupation. Triggs, 2006, op. cit., p. 225.

⁶⁸ this principle states that acts which have a significant legal effect must be judged in the light of international law at the time that they occurred while the intertemporal law may enable identification of rights at one particular time, it does not resolve the problem where there is a continuous chain of event to be asserted against a background of developing rules of international law. ... where the original title can be correctly ascribed to the continuous occupant the legal position can be seen as secure. Richard K. Gardiner, 2003, *International Law* (London: Longman,), p. 177.

Gardiner는 *The Isand of Palmas Arbitration Case*에서 Huber 중재관의 판정을 인용하고 권리의 창조와 권리의 존재 간에 기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하면서 국제법 규칙의 발전을 배경으로 한 사건의 연속적 고려의 문제는 시제법의 원칙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본원적 권원을 귀속시키는 계속적인 실효적 주장에 주목하여야 한다고 하며 다음과 같이 역사적 권원의 대체를 승인하고 있다.

이 원칙(시제법의)은 의미 있는 법적 효과를 갖는 행위는 그 행위가 야기된 때의 국제법의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한다고 한다. …… 시제법은 한 특정 시간에 있어서 권리의 식별을 가능하게 하는 반면 국제법의 발전적 규칙의 배경에 대해 주장되어온 계속적 사건의 연쇄가 있는 경우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한다. …… 본원적 권원이 계속적인 선점자에게 정확히 귀속될 수 있을 경우에 법적 지위는 안정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⁶⁸

(6) David H. Ott

Ott는 고전적 권원은 그 후의 역사적 발전에 따라 대체될 경우 그 대체 전의 고전적 권원은 거의 의미가 없다고 하여 고전적 권원의 대체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고전적 권원과 그와 유사한 개념은 그들이 그 후의 역사적 발전의 효과에 따라 사실상 오랜 기간 대체되어온 영토에 대한 역사적 관련을 소홀히 한 청구의 기초를 의미할 경우 이는 거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⁶⁹

이와 같이 Ott는 고전적 권원이 그 후의 역사적 발전에 의해 대체되게 된 경우 이는 의미가 없는 것으로 되며, 대체된 권원이 의미를 갖게 된다고 하여, 고전적 권원은 역사적 발전에 따라 새로운 권원으로 대체되어야 권원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논하고 있다. 즉, 고전적 권원의 대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7) Santiago Terres Bernardez

Bernardez는 역사적 권원의 평가는 그 권원이 발단 된 때의 국제법에 따라 평가되어 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는 다음과 같이 불소급의 원칙은 *The Island of Palmas Arbitration Case* (1928) 이후 제한되게 되었다고 하여, 즉 역사적 권원은 그 “권원의 발생 당시의 법”이 아니라 그 권원의 “대체된 평가 당시의 법”에 따라 평가되게 된다고 하여 역사적 권원의 변경의 필요성을 제의하고 있다.

역사적 권원에 대해 사례법은 시제법의 원칙을 적절히 고려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관계권원의 평가는 권원이 주장된 발단의 시기에 효력이 있는 국

69 Ancient title and similar concept are, however, less significant when they purport to base a claim on some distant historic connection with the territory which has in fact long been superseded by the effects of later historical developments. David H. Ott, 1987, *Public International Law in the Modern World* (London : Pitman), p. 109.

70 For historic titles, case-law emphasizes the heed to take due account of the intertemporal law principle, according to which the evolution or the title concerned should be made on the basis or international law in force. But this principle of non-retro active was qualified by may Huber, in his arbitral award concerning the Island of Palmas as follows, Bernardez 1987, op. cit., p. 499.

제법의 기초 위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 불소급의 원칙은 *The Isand of Palmas Arbitration Case*에서 Max Huber의 중재 판정에 의해 제한 되게 되었다.⁷⁰

이와 같이 Bernardez는 역사적 권원의 평가는 그 권원이 발생할 당시의 국제법이라는 원칙이 변경되어, 역사적 권원은 평가 당시의 국제법상 권원으로 변경되어야 함을 제의하고 있다.

(8) Peter Malanczuk

Malanczuk는 영토의 권원의 타당성을 결정하는 법은 취득의 순간에 효력이 있는 법이라고 하면서도, 이는 *The Isand of Palmas Arbitration Case* 이후 훼손되고 말았다고 하여, 고전적 권원은 발전된 법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71 The rules governy requisition of territory have changed over the century. This produces a problem of intertemporal law when century's law is to be applied to determine the validity of an acquisition of territory? The generally accepted view is that The validity of an acquisition of territory depended on the law in force at the moment of the alleged acquisition, this solution is really nothing more than an example of general principal that law should not be applied retro activity But the generally accept view has to some exlent been undermined by the Island of Palms case, Malanczuk, 1997, op. cit., p. 155.

72 The historical starting point of titles to territory is pre-legal sovereignty, that is effective control of a territory by a prince in his own name and with power to defend it, Schwarzenberger and Brown, 1972, op. cit., p. 96.

영토의 취득을 지배하는 규칙은 세기를 거쳐 변화되어 왔다. 어느 시기의 법이 영토권원의 타당성을 결정하는 데 적용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주장되는 취득의 순간에 효력이 있는 법이다. 이는 법은 소급해서 적용될 수 없다는 일반 원칙의 한 예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The Isand of Palmas Arbitration Case*에 의해 훼손되었다.⁷¹

(9) Georg Schwarzenberger

Schwarzenberger는 역사적 권원은 법 이전의 권원이라고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영토권원의 역사적 출발점은 전(前)법적 주권이다. 즉 제후가 그 자신의 이름으로 영토를 방위할 권한을 갖고 영토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한 것이다.⁷²

위의 기술 중 “전(前)법적”이란 “전(前)국제법적”이라는 의미임은 물론이다. 위의 기술은 봉건적 권원(feudal title)은 “국제법 이전의 권원”이라는 것이다. 이는 “국제법 이전의 권원”인 봉건적 권원은 국제법으로 평가할 수 없는 권원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봉건적 권원은 “국제법 이후의 권원”으로 대체되지 않으면 국제법으로 평가될 수 없다는 것을 당연히 전제로 한 설명인 것이다. 요컨대 Schwarzenberger는 봉건적 권원은 국제법적 권원으로 대체되어야 국제법상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10) Ian Brownlie

Brownlie는 역사적 권원에 적용될 법에 관해 시제법의 원칙에 따라 역사적 권원이 성립한 당시에 존재한 법이라는 원칙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고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 원칙은 작용할 수 없다. 즉, 그의 이론적 한계는 승인, 묵인, 금반언, 시효의 효과에 따라 감소하게 되었다.⁷³

이와 같이 Brownlie는 역사적 권원에 적용되어야 할 법은 그 권원이 성립할 당시의 법이라는 원칙은 승인, 묵인, 금반언에 따라 새로운 권원으로 변경된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즉, 역사적 권원은 승인, 묵인, 금반언 등의 권원의 근거(root)에 따라 오늘의 국제법상 다른 권원으로 대체되어야 법적 효력이 있음을 승인하고 있다.

이상의 주장 이외에 역사적 권원의 대체 필요성은 P. C. Jessup,⁷⁴ F. C. Wade,⁷⁵ R. Y. Jennings,⁷⁶ M. N. Shaw,⁷⁷ D. H. N. Johnson⁷⁸ 등이 주장하고 있다.

73 In any case the principle cannot operate in a vacuum : its theoretical extent will in practice be reduced by the effect of recognition, acquiescence, estopper, prescription, the rule that abandonment is not to be presumed, and to general condition of the pleadings and evidence. Brownlie, 1998, op. cit., p.129.

74 P. C. Jessup, 1928, "The Palmas Island Arbitration," *AJIL*, Vol. 22, pp. 739~740.

75 E. C. Wade, 1954, *The Minquiers and Ecrehos Case*, Grotius Society transactions for year 1954, Vol. 40, pp. 98~99.

76 Robert Y. Jennings, 1963, *The Acquisition of Territory in International Law* (Dobbs Ferry: Oceana), pp. 28~31.

77 Malcolm N. Shaw, 1997, op. cit., p. 347.

78 D. H. N. Johnson, 1950, "Acquisitive Prescription in International Law", *BYIL*, Vol. 27, p. 332.

2) 판례

역사적 권원의 대체를 인정한 대표적인 판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The Island of Palmas Arbitration Case* (1928)

The Island of Palmas Arbitration Case(1928)에서 Huber 중재관은 권리의 창조와 권리의 존속에 적용되는 법은 각기 다르다고 전제한 다음 권리의 존속에 적용되는 법은 법의 발전에 의해 요구되는 조건에 따라야 한다고 하여 역사적 권원의 대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아니했으나 다음과 같이 간접적으로 역사적 권원의 대체 필요성을 판시했다.

법적 사실은 그 사실과 같이 이는 현재의 법의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 권리의 창조행위가 권리가 발생하는 때에 효력이 있는 법을 따라야 한다는 동일한 원칙은 권리의 존속, 다시 말해 권리의 계속적인 현시는 법의 발전에 의해 요구되는 요건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⁷⁹

(2) *Minquiers and Ecrehos Case* (1953)

Minquiers and Ecrehos Case(1953)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봉건적 권원은 대체 당시의 법에 따라 유효한 권원으로 변경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고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재판소의 의견으로는 본 건을 재판하기 위하여 그러한 역사적 논쟁을 해결

할 필요가 없다(…not necessary to solve these historical controversies), …… 프랑스 왕이 Channel Islands에도 고유의 봉건적 권원을 가졌었다 할지라도 그러한 권원은 1204년 및 그 이후의 사건의 결과 실효(失效)되었음이 분명하다. 그렇게 주장된 고유의 봉건적 권원은 대체 당시의 법에 따라 다른 유효한 권원으로 대체된 것이 아니면 오늘에 어떤 법적 효과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 대체의 입증

⁷⁹ a judicial fact must be appreciated in the right of the law contemporary with it. …the same principle which subjects the act creative of a right to the law in force at the time the right arises, demands that existence of the right, in other words its continued manifestation, shall follow the conditions required by the evolution of law. UN, 1949, *RIAA*, Vol. 2, p. 839.

책임은 프랑스 정부에 있다.⁸⁰

(3) *Western Sahara Case* (1975)

Western Sahara Case(1975)의 권고적 의견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권원의 전환 (transforming title)에서 합의서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승인했다. 종전까지는 “권원의 대체”에서 “실효적 지배”의 기능을 인정해온 것에 비해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동 권고적 의견은 다음과 같다.

그러한 영토의 사건에서 주권의 취득은 무주지의 본원적 권원에 의한 무주지의 선점을 통해 일방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생각되지 아니했다. 그러나 지방적 지배자와 체결된 합의서를 통해 …… 그러한 합의서는 권원의 파생적 근거로서 인정되었고 무주지의 선점에 의해 취득된 본원적 권원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었다.⁸¹

(4) *Land, Island and Maritime Frontier Dispute Case* (1992)

Land, Island and Maritime Frontier Dispute Case(1992)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Minquiers and Ecrehos Case*(1953)의 판결을 인용하여 동 판결은 모든 고전적 권원이 단순히 무시되는 것이 아니라 대체되지 아니한 권원이 무시되고 대체된 최근의 권원에 기초하여 재판한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다.

이 사건에서 재판소는 고전적 권원을 단순히 무시하지 아니했고, 더 최근의 주권의 현시에 기초하여 재판한 것이다.⁸²

⁸⁰ such an alleged original feudal title could today produce no legal effect, unless it had been replaced by another title valid according to the law of the time of replacement. It is for the French Government to establish that it was so replaced. ICJ, 1953, *Reports*, p. 56.

⁸¹ in the case of such territories the acquisition of sovereignty was not generally considered as effected unilaterally through the occupation of terra nullius by original title but through agreements concluded with local readers ... such agreements ... were regarded as derivative roots of title, and not original titles obtained by occupation of terra nullius. ICJ, 1975, *Reports*, p. 39.

⁸² the Court in this case did not simply disregard the ancient titles and decide on a basis of more recent display of sovereignty. ICJ, 1992, *Reports*, paras. 343~344.

(5) *The case concerning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 in the Caribbean Sea Case* (2007)

The case Concerning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 in the Caribbean Sea Case (2007)에서 온드라는 역사적 기초(historical basis)에 근거한 전통적 경계선(traditional boundary line)의 확인을 요구했다. 재판소는 전통적 경계선을 용인하지 아니했다.⁸³ 전통적 경계선은 역사적 권원에 근거한 것이다.

(6) *Pedra Branca Case* (2008)

Pedra Branca Case(2008)에서 말레이시아는 “태고로부터(from time immemorial)” Pedra Branca는 조호르왕국의 주권 하에 있었다고 주장했고,⁸⁴ 재판소는 역사적 권원 (historical title)은 말레이시아에 귀속되거나 실효적 지배를 해온 싱가포르에 권원이 이전되었다고 판시했다. 재판소는 판결문에서 역사적 권원이란 용어를 사용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말레이시아가 역사적 권원을 대체한 바 없다고 판시했다.

말레이시아는 동 도시들에 대한 역사적 권원을 어떻게 해서든지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아니했다. 말레이시아는 그의 역사적 권원은 분명히 하지 아니했다.⁸⁵

위의 판결에서 역사적 권원을 분명히 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현대 국제법상 권원으로 대체하지 아니했다는 의미다. 이상 이외에 역사적 권원은 Rann of Kuch Arbitration(1968)호 판결에서 인정되었다.⁸⁶

이와 같이 국제사법재판소는 역사적 권원은 대체당시에 유효한 법에 의해 대체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고, 대체된 이후에는 역사적 권원은 법적으로 실효되게 된다고 판시했다.

83 ICJ, 2007, *Reports*, para. 259.

84 ICJ, 2008, *Reports*, para. 48.

85 Malaysia could somehow shaw an historic tittle over the island, … whole Malaysia has done nothing … Malaysia had not made out its historic tittle. ICJ, 2008, 앞의 책 para. 123.

86 *ILR*, Vol. 50, p. 494.

3. 태정관지령문과 ‘기죽도약도’에 의한 역사적 권원의 대체

일본 명치정부가 ‘태정관지령’과 ‘기죽도약도’에 의한 조선의 송도(독도) 영토주권의 승인에 의한 조선의 송도 영토주권의 권원은 1877년 행하여진 것이며 그것은 1648년 이후에 성립된 권원이므로 이는 역사적 권원이 아니고 따라서 ‘권원의 대체’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VI. 맺음말

1. 요약·정리

(i) 시마네현 참사 사카이 지로가 내무성에 제출한 품의서 ‘일본해 내 竹島 외 1도 지적편찬방사(日本海内竹島外一島地籍編纂方向)’, 그리고 내무성에서 태정관에 제출한 ‘일본해 내 竹島 외 일도 지적편찬방사(日本海内竹島外一島地籍編纂方向)’와 태정관지령문에는 ‘기죽도약도’가 첨부되어 있다. ‘기죽도약도’에는 기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 두 섬이 그려져 있으며 그 두 섬 위에 전자는 “磯竹島”로 표기되어 있으며 후자는 “松島”로 각각 표기되어 있다.

(ii) “기죽도 동남방 40리 정도에 송도”가 위치하고 있음을 그 거리를 문자로 표시하고 있다. 이로 보아 송도가 독도임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기죽도약도상’ 기죽도 외 1도가 송도인 것(磯竹島外一島の一島는 松島인 것)이 명백하다.

(iii) ‘기죽도약도’는 1877년에 제작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현대국제법이 성립된 이후에 성립된 것이므로 ‘기죽도약도’에 의한 권원은 역사적 권원이 아니므로 권원의 대체문제가 제기되지 아니한다.

(iv) 국제법상 인증지도는 제1차적 증명력을 가지나 그 이외의 지도는 제2차적 증명력을 갖는 데 불과하다. ‘기죽도약도’는 인증지도가 아니므로 제1차적 증명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v) 공식지도는 금반언의 효과가 인정되나 비공식지도는 금반언의 효과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기죽도약도'는 일본 메이지시대 국가기관인 태정관이 그의 지령인 '태정관지령문'에 부속된 지도이므로 이는 공식지도이다. 따라서 '기죽도약도'는 이를 제작한 일본 정부에 대해 금반언의 효과가 인정된다. 그러므로 일본 정부는 '태정관지령문' 중 竹島 외 一島는 松島 [독도]가 아니라는 주장을 할 수 없다. 요컨대 '태정관지령문'의 '죽도 외 1도'는 '태정관지령문'의 부속문인 '기죽도약도'에 의해 송도(독도)인 것이 명백히 확인되었으므로 '태정관지령문'의 "죽도의 일도는 본방과 관계없다"는 지령에 따라 송도(독도)는 일본의 영토가 아닌 것으로 확인·선언된 것이므로 일본 정부는 이에 반해 송도(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이다.

2. 정책대안의 제의

정부 당국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책대안을 제의하기로 한다.

(i) 일본 정부의 독도영토주권 주장에 대해, 일본 정부가 태정관지령문에 의해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스스로 승인했다는 것을 정책에 적극 반영한다. 특히 그 근거로 '기죽도약도'에 의해 竹島外一島는 松島 [독도]임이 확인되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ii) 종래에 일본 정부의 독도영토주권 주장에 대한 한국 정부의 수세적·방어적 정책에서 독도는 '태정관지령문'과 '기죽도약도'에 의해 이미 일본이 한국의 영토로 승인한 것이라는 능동적·공세적 정책으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한다.

(iii) 일본 정부 스스로가 '태정관지령문'과 '기죽도약도'에 의해 한국의 독도영토주권을 승인하여 독도는 한국의 영토라는 것을 국민에게 널리 공시하여 국민의 영토의식을 고양하고 애국심을 제고하도록 하는 대국민 교육 홍보를 실시한다.

국문 초록

한국의 영토인 독도와 관련된 일본의 지도 중 하나로 ‘기죽도약도(磯竹島略圖)’라는 이름의 지도가 있다. 이에 관해 사학자들의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왔다.

1877년 3월 29일 명치정부의 태정관은 내무성에 “竹島外一島는 본방과 관계가 없음을 명심할 것”이라는 지령을 발했다. 동 지령에 첨부된 ‘기죽도약도’에는 기죽도(울릉도)와 그 서남방 40리 정도에 松島가 그려져 있다. 그러므로 동 지령의 “죽도 외 1도”는 송도(독도)인 것이 명백하다.

국제법상 지도는 인증지도에 한해 1차적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인증지도 이외의 지도는 2차적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에 불과하다. ‘기죽도약도’는 조약이나 재판에 첨부된 법적 문서가 아니므로 이는 인증지도가 아니다. 그러므로 동 지도는 제1차적 증명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국가기관이 발행한 공식지도는 그것이 인증지도가 아닌 경우에도 그것을 발행한 국가에 대해 금반언의 효력이 인정된다. ‘기죽도약도’는 일본의 국가기관이 제작한 공적지도이므로 금반언의 효과가 인정된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국제법상 독도의 영토주권이 한국에 있다는 주장에 모순, 저촉되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일본 정부의 ‘태정관지령문’과 ‘기죽도약도’에 의한 조선의 송도(독도) 영토 주권은 1877년에 성립된 것이므로 이는 역사적 권원이 아니므로 권원의 대체를 요하지 아니한다.

<주제어>

태정관지령, ‘기죽도약도’, 기죽도, 송도, 인증지도, 공식지도

ABSTRACT

The Legal Effects of the Sketch Map of Isotakeshima in International Law

Kim Myungki

Professor Emeritas, Myongji University

On March 29, 1877 the Daijō-kan, the highest organ of Japan's Meiji government, issued a directive to the Home Ministry. The directive's operative provision stated that "Japan has nothing to do with Takeshima (Ulleungdo) and the other island." Which island was the one besides Takeshima referring to? The answer to that question becomes apparent from examining the map attached to the directive titled "Isotakeshima Ryakuzu," or Sketch Map of Isotakeshima. The map shows Isotakeshima (Ulleungdo), and lying 40 ri to its southeast, Matsushima (Dokdo).

According to international law, only maps that have been authenticated are acknowledged as admissible primary evidence. Unfortunately, the Sketch Map of Isotakeshima is not an authenticated map because it wasn't attached to a legal instrument such as a treaty or a court decision. Therefore, the map does not possess the legal effect as primary evidence. However, the map was officially produced by an organ of the Japanese Government, which allows the doctrine of estoppel to be applied to the map. This makes it inadmissible for the Japanese Government to make any claims that contradict or conflict with its previous claim through the Daijō-kan directive of 1877 that the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the island Dokdo belongs to Korea.

Keywords

Daijō-kan directive, Sketch Map of Isotakeshima, Matsushima, Dokdo, authenticated map, official map

참고문헌

- 김명기, 2007, 『독도강의』, 독도조사연구학회.
- 김병렬, 1998, 『독도』, 다다미디어.
- 대한민국 외교부, 2012,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영토 독도』.
-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2008, 『일본외무성 독도 홍보 팸플렛 반박문』.
- 신용하, 1996, 『독도의 민족영토사연구』, 지식산업사.
- 정태만, 2014, 「조선국교제시말내담서 및 태정관지령과 독도」, 『독도연구』 제17호.
- 岡田卓己, 2012, 「1877년 太政官指令 日本海内竹島外 一 島ヲ 版圖外卜定ム 解説」, 『독도연구』 제12호.
- 杉原隆, 2012, 『第二期「竹島問題에 관한 조사연구」 중간보고서』, 島根県竹島問題研究會.
- 太政官 編, 1877, 『公文錄』, 內務省之部, 1877년 3월 17일조 “日本海内竹島外一島地籍編纂方向”(국립공문서관, 서가번호 2A10공2032).
- 堀和生, 1987, 「一九〇五年日本の 竹島領土編入」, 『朝鮮史研究會論文集』 제 24호.
- 漆崎英之, 2013, 「태정관지령 부속 지도 ‘기죽도약도’(磯竹島略圖) 발견 경위와 그 의의」, 『獨島研究』 제14호.
- 일본국립공문서관 디지털 아카이브.
- ASIL, 1915, *AJIL*, Vol. 9.
- ASIL, 1928, *AJIL*, Vol. 22.
- British MOFA, 1904, *British and Foreign State Papar*, Vol. 99.
- Brownlie, Ian, 1998, *Princip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5th ed.,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 Cukwurah, A. O., 1967, *The Settlement of Boundary Disputes in International Law*,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Grant, J. P. and J. C. Barker, 2001, *Encyclopedic Dictionary of International Law*, 2nd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ICJ, 1962, *Reports*.

- ICJ, 1986, *Reports*.
- ICJ, 2002, *Reports*.
- ICJ, 2008, *Reports*.
- Jennings, Robert, 1963, *Acquisition of Terrifory in International Law*, Dobbs Ferry: Oceana.
- Kelsen, Hans, 1966,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2nd ed., New York: Holt.
- Malanczuk, Peter(ed.), 1997, *Akehurst`s Moder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Law*, 7th ed., London : Routedge.
- Moore, John Bassett, 1898, *International Arbitration*, Vol. 2, Washington, D. C.: USGPO.
-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006, *Dokdo,korean Teritory since 6th Century*.
- Osmanczyk, Edmund Jan, 1900, *Encyclopedic Dictionary of the United Nations*, 2nd ed, Taylor.
- PCIJ, 1923, *Series B*, No. 8.
- PCIJ, 1924, *Series B*, No. 9.
- Sandifer, D. V., 1975, *Evidence before International Tribunals*, revised ed.,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 Schwarzenberger, G. and E. D. Brown, 1976, *A Manual of International Law*, 6th ed., Miton: Professional Book.
- Shaw, Malcolm N., 1997, *International Law*, 4th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UN, *RIAA*, Vol. 11.
- Bowett, D. W., 1957, "Estoppel before International Tribunals and its Relations to Acquiescence," *BYIL*, Vol. 33.
- Fitzmaurice, Gerald, 1955-6, "The Law and procedur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1951-4," *BYIL*, Vol. 32.
- Hyde, Charles Cheney, 1933, "Maps as Evidence in International Boundary Disputes," *AJIL*, Vol. 27.
- Kaiser, Joseph H., 1981, "Timor Island Arbitration," *EPIL*, Vol. 2.
- Lauterpacht, H., 1956, "Sovereignty over submarine Area," *BYIL*, Vol. 27.
- MacGibbon, I. C., 1954, "The Scope of Acquiescence in International Law,"

BYIL, Vol. 31.

Muller, Jorg Paul and Thomas Cottier, 1984, "Estoppel," *EPIL*, Vol. 7.

Narayana, Rao K., 1996, "The Problem of Goa," *Indian Yearbook of International Affairs*.

Rustemeyer An, 1981, "Temple of Preah Vihear Case," *EPIL*, Vol. 2.

Torres, Bernardez Santiago, 1987, "Territory, Acqisition," *EPIL*, Vol. 10.

Trebilcok, Anne M., 1984, "Waiver," *EPIL*, Vol. 7.

Waldock, C. H. M., 1948, "Disputed Soveveignty in the Falkland Islands Dependencies," *BYIL*, Vol. 25.

Weissberg Guenter, 1963, "Maps as Evidence in International Boundary Disputes: A Reappraisal," *AJIL*, Vol. 57.

Dominion Law Reports, 1927, Vol. 2.

Guatemala-Honduras Boundary Arbitration, Opinion and Award of Guatemala-Hondras Special Boundary Tribunal, January 23, 1933, 9. 8.

‘이소타케시마’ 어원에 관한 일고(一考)

유미림 한아문화연구소 소장

I. 문제의 소재

현재 일본이 우리나라 독도를 가리키는 호칭으로 사용하는 ‘다케시마[竹島]’는 본래 울릉도를 가리키던 호칭이었다. 그런데 에도시대 울릉도에 대한 호칭으로는 ‘다케시마’뿐만 아니라 ‘이소타케시마’도 있다. 게다가 ‘이소타케시마’에 대한 표기는 ‘磯竹島’와 ‘磯竹島’¹ 두 가지 형태가 있었고, ‘이소타케’로 발음되는 단어로는 ‘蟻竹’과 ‘弓嵩’도 있다. 일본이 동일한 대상을 다르게 표기하는 경우가 ‘다케시마’의 경우만 그랬던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울릉도 가까이에 ‘죽도(竹島)’라는 섬이 있다. 우리말로는 ‘땃섬’인데, 일본은 울릉도를 지칭하던 ‘다케시마[竹島]’와 한자 표기가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竹島(죽도라고 읽는다)”라는 식으로 표기하다가 ‘竹嶼’²로 표기를 바꾸었다.³

그러나 ‘땃섬’에 대한 한자 표기가 竹島와 竹嶼, 두 가지인 것과 ‘이소타케시마’에 대한 한자 표기가 ‘磯竹

* 논문 투고일: 2016. 9. 30. 심사 개시일: 2016. 11. 8. 게재 확정일: 2016. 11. 30.

1 이 글은 명칭을 다루는 것이므로 磯竹島, 磯竹島는 한자대로 표기하고, 음독을 달지 않은 표기도 있음을 밝힌다. 이 글에 필요한 원문 자료 및 해독과 관련하여 박병섭 선생의 도움을 받았다. 지면을 빌려 감사드린다.

2 1883년 『水路雜誌』에는 ‘竹嶼(Boussole R), 竹島(朝鮮人)’로 되어 있고, 1920년 『日本水路誌』에는 ‘竹島(竹嶼)’로 되어 있다.

3 일본은 독도를 불법 편입하기 1년 전에 펴낸 지리지에 “이 섬(울릉도-역자)의 동쪽에 죽서(竹嶼)가 있다”고 기술하고 ‘竹嶼’에는 특별히 강조점을 찍기에 이르렀다(야즈 쇼에[矢津昌永], 1904, 『韓國地理』, 丸善).

島'와 '磯竹島', 두 가지인 것을 동일한 차원에서 논하기는 어렵다. '죽도'가 '죽서'가 된 것은 일본이 한국 명칭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바꾼 것이지만, '磯竹島'와 '磯竹島'는 '磯竹島' 표기로부터 출발해서 병존하다가 차츰 '磯竹島'로 변전해갔기 때문이다. 그리고 '磯竹島'와 '磯竹島' 모두 일본에 고유한 호칭이라는 점에서도 다르다. 그렇다면 '磯竹島'와 '磯竹島'는 표기가 다른데, 일본은 왜 '이소타케시마'로 음독하며, '다케시마'로 기술하지 않고 '이소타케시마'를 함께 언급하고 있을까? 필자는 늘 이 점이 궁금했었다. 선행 연구에서 이 점을 명확히 설명한 것은 없었기 때문이다. 나카무라 히데다카[中村榮孝]가 일찍이 '磯竹島'에 관한 글을 쓴 적이 있지만, 그의 목적은 독도 영유권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고찰하는 데 있었을 뿐, '磯竹島' 자체에 대한 고증에 있지 않았다.

『독도 사전』⁵의 '이소타케시마[磯竹島]' 항목을 보면, 17세기 이전 일본에서 울릉도를 일컫던 말로서 '이소[磯]'는 돌과 바위가 많은 바다나 호숫가를 말하며, 다케시마[竹島]는 대나무가 나는 섬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 일본 사료에는 울릉도를 '이소타케시마'라고 기록했고, 이 시기의 문헌에도 '이소타케시마'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1616년 이전 일본은 울릉도를 가리켜 다케시마[竹島]라고 한 적이 없다⁶고 기술했다. 그런데 같은 사전에는 '의죽도[磯竹島]' 항목이 따로 있다. 여기에는 “울

릉도의 별칭. 이수광의 『지봉유설』에 보이며, 의죽도·죽도·기죽도의 호칭이 함께 나오는데, 의죽도·기죽 등의 '죽(竹)'자가 보이는 것에서 '죽도'의 영향으로 설명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다. 같은 사전에서 하나는 '이소타케시마'로, 다른 하나는 '의죽도'라고 호칭하면, 하나는 일본 명칭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 명칭인 듯 오해할 우려가 있다. 다시 말해 '이소타케시마[磯竹島]'라고만 표기하면, '磯竹島'는 '이소타케시마'가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소타케시

4 나카무라 히데다카[中村榮孝], 1961, 「「磯竹島」(靑陵島)についての覚書」, 『日本歴史』 제158호. 그는 1953년 독도를 둘러싸고 양국이 논쟁하게 되었을 때부터 집필을 의뢰받고 있다가 1961년에야 완성시켰음을 밝혔다.

5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1, 『독도사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6 『독도사전』의 '이소타케시마[磯竹島]' 항목, 1616년 이전 운운은 나이토 세이추의 견해를 인용한 것이다.

7 『독도사전』의 '의죽도' 항목.

마'와 '의죽도'가 별개의 항목으로 다뤄져 있어 전자는 방점이 '이소'에, 후자는 '다케'자에 있는 듯이 보인다. 그런데 사전에서 '의죽도'를 설명하기 위해 인용한 『지봉유설(芝峯類說)』이나 이경직의 『부상록(扶桑錄)』을 보면, 둘 다 호칭한 주체가 일본임이 드러나 있다. 그렇다면 '이소타케시마'가 아닌 '의죽도'로 호칭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글은 이런 문제인식에서 출발하여, '이소타케시마'의 유래를 고찰하여 우리나라 '독섬', '돌섬', '석도(石島)' 호칭과의 연관성을 모색해보려는 것이다. 이 글이 독도 영유권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지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용어 하나도 정확한 유래나 자의(字意)를 알고 접근하는 것이 영유권 연구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감히 시도해본다.

우선 '磯·磯'에 대한 사전(辭典)적 정의를 보자. 중국에서 나온 『한어대사전(漢語大詞典)』에 따르면, '磯'자를 두 가지 의미로 풀고 있다. 첫 번째는 “물이 암석에 부딪치는 것[水沖擊岩石]”을 의미하여, 격노하거나 저축된 것을 가리킬 때 사용된다. 『맹자』에 나온 '磯'자에 대해 조기(趙岐)는 “磯, 激也”로 풀었다. 두 번째는 “물가의 돌 혹은 튀어나온 암석[水邊石灘或突出的岩石]”을 의미한다. '磯'자는 “磯磯에 보인다[見磯磯]”고 되어 있어 '磯'자 자체에 대한 자의(字意)는 나와 있지 않다. 그런데 '磯磯'를 보면, 두 가지로 풀고 있다. 첫 번째는 “산의 돌이 고르지 않은 모양[山石不平貌]”이고, 두 번째는 “기이하고 일정하지 않음[奇特; 不平常]”으로 풀고 있다. 두 글자가 '돌'과 관계있다는 것은 공통되지만, '磯'자는 '물가'와 관계있는 반면 '磯'자는 '고르지 않음'과 관계가 있다. 다만 지명으로서의 '磯竹島'나 '磯竹島'는 당연하게도 『한어대사전』에는 보이지 않는다.¹⁰

모로하시 데쓰지(諸橋轍次)의 『대한화사전(大漢和辭典)』의 뜻풀이도 『한어대사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磯'자에 대해서는 “1. 격(激)하다. 돌이 물을 막아 노하게 하다. 2. 강변, 물이 고인 곳에 돌이 많은 곳, 磯는 磧(강가의 돌이 많은 곳), かわら[川原·河原·磯] [명사] 강가의

8 한국 문헌에 보인 '磯竹島'를 '의죽도'로 발음하는 것은 편이상 그렇게 하는 것이 그 것이 일본의 '이소타케시마'에서 온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밝혀줄 필요가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9 『孟子』「告子下」, “親之過小而怨, 是不可磯也……不可, 亦不孝也.”

10 『사교전서』를 보더라도 磯竹島, 磯竹島는 보이지 않는다. 일본 고유의 호칭임을 의미한다. 『韓國漢字語辭典』(1993~1997,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에도 '磯'자를 '여울 돌 기로' 풀고 있으며 단어로는 '磯激'만 나와 있다. '의(磯)자'에 대한 풀이는 없다.

모래[자갈]밭, 바닥이 드러난 강변. 3. 邦: 이소, 바다나 호수 등의 波打際¹¹라고 되어 있다. 『대한화사전』은 '礮'자에 대해서는 2. 돌의 모양, 바위[礮]와 같다. 2. 邦: 이소, 礮와 통용된다"고 되어 있다.¹¹ 두 사전 모두 '礮'자를 대표자(代表字)로 보고 있으며 '礮'자를 이체자(異體字)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두 사전을 비교해볼 때 다른 점이 있다. 『한어대사전』과는 달리 『대한화사전』은 '礮'와 '礮'에 대해 '邦'이라고 하여 일본 고유의 의미를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소(いそ)'다. 두 글자가 모두 일본에서는 '이소'의 의미를 띠며 서로 통용되는 글자로 되어 있는 것이다. '礮竹'과 '礮竹'은 '이소'에 '다케'가 합쳐진 것이므로 '이소타케'로 호칭되며, '島'자가 붙으면 '이소타케시마'로 호칭된다. 문헌에 따라 '이소타케' 혹은 '이소타케시마'로 나온다.

따라서 '礮竹島'와 '礮竹島'는 표기는 다르지만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이소'에 대한 한자를 어느 것을 차용하는가에 따라 달라진 것뿐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소'로 발음되는 글자가 두 가지만이 아니라는 데 있다. '五十' 역시 '이소'로 발음된다. '다케'도 마찬가지다. '다케'로 발음되는 것에는 '竹'이 있지만, '武'¹²와 '猛'도 '다케'로 발음한다. 시마네현[島根縣] 이와미국[石見國] 니마군[瀨摩郡] 관할에 '五十猛村', 오키국[隱岐國] 스키군[周吉郡] 관할에 '礮村'이라는 지명이 있는데, '五十猛村'은 '이소타케무라', '礮村'은 '이소무라'로 음독한다.¹³ 이외에 '礮竹島'¹⁴를 '이소타케시마', '弓嵩'을 '이소타케'로도 음독한다.

11 礮자나 礮자가 한자의 풀이로 볼 때는 '돌'에 방점이 있지만, 일본어 '이소'의 의미로 볼 때는 '물'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12 쓰보이 구메조[坪井九馬三]는 '다케시마'라는 도명이 '武島'의 왜훈(倭訓)이라고 보았다(1921, 『礮島』, 『歴史地理』 제38권 제3호, 168쪽).

13 『帝國行政區劃便覽』(1901, 1929).

14 礮자는 '개미'의 뜻이지만 그 의미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礮'자를 '이소'로 음독하기 때문에 차자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로써 '이소타케시마'나 '다케시마'가 한자로 표기되기 전부터 고유지명으로서 먼저 성립해 있었으며, 따라서 이들에 대한 표기도 지역 혹은 화자(話者)에 따라 다르게 표기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礮竹'이나 '礮竹' 등이 문헌에는 어떻게 기술되고 있는지를 보기로 한다.

II. 문헌상의 용례와 변천

1. ‘五十猛’과 ‘이소타케’

우선 ‘이소타케(시마)’에 대한 훈차표기인 ‘磯竹(島)’이나 ‘磯竹(島)’ 등이 문헌에 기술된 용례를 조사하여 그 추이를 보자. ‘이소타케’와 관련된 표기가 가장 먼저 보이는 문헌은 『일본서기(日本書紀)』¹⁵다. 그 안에 “一書曰 素戔鳴尊所行無狀 故諸神 科以千座置戶 而遂逐之 是時 素戔鳴尊 帥其子五十猛神 降到於新羅國 居曾尸茂梨之處……”¹⁶라는 문장이 있다. 素戔鳴尊의 아들로서 ‘五十猛神’이 거론되어 있는데, 이때의 ‘五十猛’을 ‘이소타케루’¹⁷ 혹은 ‘이타케루(イタケル)’라고 하므로 ‘이소타케’와 연관지어 볼 수 있다.

『잔태평기(殘太平記)』¹⁸ 권7 ‘罪人遠嶋 流刑評定之事’조(條)에는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가 죄인을 유배보낼 원도(遠島)를 논의하는 가운데 ‘五十猛嶋’에 관한 언급이 보인다.

에이로쿠(永祿) 12년(1569) 12월……오키국 상인을 불러 五十猛嶋에 대해 물으니, 인슈(隱州)에서 7리, 동서 9리로 대죽(大竹)이 많고 사람은 살지 않는다…… 이 대인은 아마 수사노오미코토(素盞島尊)의 아들 이소타케루노미코토(五十猛命), 이 분이 이 섬에 사신다고 전해지므로 신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조선국은 서쪽으로 보이는데 이 섬도 유인(流人)을 보낼 곳은 아니라고 답했다.¹⁹

위의 글에는 『일본서기』에 보였던 ‘五十猛’이 다시 거론되고 있지만, 조선의 울릉도를 가리키는 듯이 언급되어 있다. 오다 노부나가 당시 울릉도가 ‘이소타케

15 『日本書紀』 번역본에는 음독이 ‘이다 게루노미고도’로 되어 있다(성은구 역주, 1987, 『일본서기』, 정음사, 59쪽).

16 『日本書紀』 卷第一 神代(上).

17 『古事記』에 등장하는 오오야부(大屋毘古神)와 동일신으로 되어 있다. 임업의 신으로 신앙된다(<https://ja.wikipedia.org/wiki> 참조).

18 中村榮孝는 이 책은 편자가 미상이며 1690년의 간기(刊記)가 있는데, 권12의 권말에 “元祿 3(경오)년 9월 상순, 書林雁金屋庄兵衛 樗라고 새겨져 있다”고 했다.

19 中村榮孝, 1961, 앞의 글, 18쪽.

『五十猛』²⁰로 불리고 있었으며 거리나 대나무 등을 언급하고 있어 전설상의 섬에 머물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는 일본에서 울릉도에 관한 지견(知見)이 16세기 중반경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 모모야마시대(桃山時代, 1573~1603)에 작성된 것으로 전해지는 「일본도병풍(日本圖屏風)」²⁰ 및 동일 계통의 병풍에도 오키와 고려 사이에 '礮竹'이라는 섬이 하나 그려져 있다.²¹ 이에 대하여 나카무라 히데다키는 '礮竹'이라는 명칭이 이 시기 전후로 알려졌으며 17세기에는 양국의 외교 교섭의 대상으로 다루어졌다고 했다.²² 또한 그는 지도에서는 '竹島'로 명기된 것이 「어주인선항해도(御朱印船航海圖)」 외에 여러 종류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일본도 병풍」에 그려진 섬의 표기를 '礮竹'으로 보았음에도 자신은 '礮竹'으로 칭했고, 지도상의 표기는 '竹島'로 칭했다. 이런 표기의 변전은 '이소타케시마'를 의미하는 호칭이 '五十猛'에서 '礮竹'으로, 다시 '竹島'로 옮겨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문인일기(多聞院日記)』²³ 덴쇼(天正) 20년(1592) 5월 19일조²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호키(防(伯)着)에서 야시치(弥七)가 왔다. 10년을 오지 않았다(いそたき人蓼 3냥과 못을 조금 지참하고 왔다). 단속에 걸려 간혀 있었다고 한다.²⁵

다문인의 에이쉌(英俊, 1518~1596)에게 호키의 야시치(弥七)라는 자가 'いそたき人蓼'을 선물한 내용에 'いそたき'로만 쓰여 있으므로 한자를 알 수 없지만, 나이토 세이쉌은 "'이소타키'는 '이소타케'이며, 이소타케시마(礮竹島)라는 이름으로 당시 불리고 있던 울릉도의 특산인 조선인삼이 불로장생의 묘약으로 이미 일본에서도 알려져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기사"²⁶라고 보았다. 나이토는 가나 표기가 가리키는 한자보다는 '이소타

20 中村栄孝, 1961, 위의 글, 15쪽. 나카무라[中村]는 「일본도 병풍」의 제작연도에 대해서는 芦田伊人 씨와 中村拓 박사가 1587년 내지 1590년 작으로 보는 福井의 淨得寺 소장 외에도 여러 소장품이 있으므로 이설(異說)이 있다고 밝혔다.

21 시마네현 총무과 소장자료 5권. 『일한어업 교섭자료』 3, 「일본해의 다케시마(竹島)에 관하여」.

22 中村栄孝, 1961, 앞의 글, 15쪽.

23 일본의 중세부터 근세의 이행기인 1478년부터 1618년에 이르는 약 140년간 나라(奈良) 고후쿠지(興福寺) 다문인[多聞院]의 승려 조지쓰보 에이쉌(長実房 英俊)을 비롯한 삼대(三代)의 필자가 쓴 일기로서 46권으로 되어 있다(『독도사전』 참조).

24 『多聞院日記』 38, 간본 4.

25 中村栄孝, 1961, 앞의 글, 19쪽에서 재 인용.

26 内藤正中, 2005, 『竹島(鬱陵島)をめぐる日朝關係史』, 東京: 多賀出版, 17쪽.

케시마가 울릉도를 가리킨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나카무라도 “이 기사에 “이소타키 인삼 3냥을 지참했다고 하지만, 야시치는 호키에서 출발했으므로 이는 ‘이소타케人蔘’의 방언일 것이다”고 보았다. 그 역시 호키와 울릉도 간의 관계를 의식하고 해석한 것이다.²⁷

2. 1614년의 ‘礮竹島’

조선에서 가장 먼저 ‘礮竹島’가 보인 것은 광해군 연간(1614)이다. 그러나 『광해군일기』에는 보이지 않고 『숙종실록』에 보인다. 『숙종실록』 20년(1694)에 두 번 보인다. 2월 23일자 기사는 1693년 여름에 남구만이 숙종에게 『지봉유설』의 내용 — 왜놈들이 礮竹島를 점거했는데, 礮竹島는 바로 울릉도라고 했습니다 — 을 아뢴 내용이다.

8월 14일자 기사는 남구만이 숙종에게 “동래부가 간직한 문서에는 ‘광해갑인년에 왜(倭)가 사자(使者)를 보내 礮竹島를 탐시(探視)하겠다고 말했으나 조정에서 답하지 않고, 동래부로 하여금 준엄하게 배척하도록 했다’는 기록이 있으니, 왜인들이 이 섬에서 어채해온 지가 또한 오래된 것입니다”라고 한 말이다.

이 내용으로 보건대, 광해군 6년(1614)에 이 일로 인해 조정이 동래부에 지시한 사항이 있었으며, 그 문서가 동래부에 보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수광이 펴낸 『지봉유설』(1614)의 내용은 광해군 6년의 일이 아니라 그 이전을 가리킨다. 이수광은 “울릉도는 임진왜란 후에 사람이 가서 보니, 왜적의 분탕(焚蕩)과 노략질을 겪어 다시 인적이 없었는데, 근자에 들으니 왜가 礮竹島를 점거했다고 한다. 혹자는 礮竹은 바로 울릉도라고 한다”²⁸라고 했다. 이는 임진왜란 이후 1614년 이전의 일로, 이수광(1563~1628)의 생존 시대에 있었던 일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수광이 『지봉유설』 서문을 쓴 연도가 1614년이므로 광해군 6년 즉 같은 해에 있었던

일을 이수광이 기록했다는 사실은 의심스럽다. 임진왜란 당시 울릉도가 일본에 의해 점거되었다는 사실은

27 中村榮孝, 1961, 앞의 글, 19쪽.

28 『芝峰類說』 권2 지리부.

더욱더 의심스럽다.

나카무라도 “일본군이 울릉도를 점거한 사실을 보여주는 사료는 접해보지 못했다. 일본 문헌에 나오는 ‘竹島’는 낙동강 입구에 가까운, 경상도 김해 부근으로 전혀 방향이 다르다.”²⁹고 했듯이, 임진왜란 관련 기록에 보이는 ‘죽도’는 대부분 경상도나 충청도 지역의 ‘죽도’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이때의 ‘礮竹島’는 울릉도가 아닐 가능성이 더 크다. 한편 1614년에 일본이 ‘礮竹島’를 탐시하겠다고 했을 때의 섬은 그런 사실은 없었을지라도 지칭한 ‘礮竹島’는 울릉도를 가리킬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수광이 “礮竹은 바로 울릉도라고 한다”고 한 ‘礮竹’은 이수광의 말대로 후자의 말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일본이 탐시하겠다고 한 礮竹島와 이수광이 말한 礮竹이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다만 이로써 드러난 사실은 임진왜란을 전후한 시기에 조선에 ‘礮竹’이라는 일본 호칭이 알려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수광이 언급한 ‘礮竹島’는 이익이 『성호사설』 「울릉도」에서 인용했고, 이후 ‘울릉도 쟁계’를 언급하는 조선 학자 대부분이 이를 그대로 인용했다.³⁰

일본의 『통항일람(通航一覽)』(권129) 「조선국부(朝鮮國部)」(105) ‘무역’을 보면, 『본주편임략(本州編稔略)』의 내용이 인용되어 있는데, “젠나(元和) 6년 경신 본국(쓰시마국-역자) 상고(商賈) 야자에문(彌左衛門), 니에문(仁右門)³¹이라는 자가 몰래 도해하여 礮竹島에 있었으므로(생각건대 礮竹島는 바로 竹島를 말한다) 잡아서……”라는 내용이 있다. 1620년의 일을 가리킨다.

『통항일람』(권137) 「조선국부(朝鮮國部)」(113)의 ‘竹島’ 부분을 보면, “케이초(慶長) 17년 임자년 이즈음 礮竹島를 일본의 경계로 삼았다. 이해 7월에 저 나라에서 동래부 윤수겸이 공(생각건대 宗義智를 가리킨다)에게 회답서계를 보내왔다. 회답서에는 ‘이른바 礮竹島는 우리나라 울릉도다’라고 되어 있다. 회답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본서에서 인용한 『조선통교대기』에는 경장 19년으로 되어 있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1612년의 일이라고 기술했지만 1614년의 일임을

29 中村榮孝, 1961. 앞의 글, 15쪽.

30 남구만은 속중에게, “지봉유설에 礮竹島는 바로 울릉도라고 되어 있다”는 사실을 소개했다(『속중실록』 20년 2월 23일). 『춘관지』(울릉도 쟁계), 『증정 교린지』(권4 ‘울릉도 의죽도 변경 전말’)에도 실려 있다.

31 『對州編稔略』에는 ‘진에문(仁右衛門)’으로 되어 있다.

알 수 있다. 『통항일람』의 두 내용으로 보건대, 『본주편임략』에는 ‘礮竹島’로 되어 있고, 1612년(원문대로) 동래부사 윤수겸이 보낸 편지에는 ‘礮竹島’로 되어 있다. 이를 『통항일람』 편지는 ‘礮竹島’로 표기했으며, ‘礮竹島’는 바로 ‘竹島’라고 단정했다.

위 『통항일람』(권129)에 나온 ‘彌左衛門’(1620)에 대하여, 나카무라는 이경직의 『부상록』(1617. 10. 5)에 언급된 ‘蟻竹彌左衛門’³²에 해당시켰다. 나카무라는 히데요시[秀吉] 시대에 ‘礮竹島’에 도항하며 특권을 지니고 있던 야자에몬[彌左衛門]은 시게오키[調興]³³가 말한 蟻竹彌左衛門과 같은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경직이 언급한 일은 1617년의 일이며, 시게오키가 말한 礮竹島는 당진을 가리킨다. 이런 비정은 이경직 자신의 생각이 다.³⁴ 그러므로 나카무라가 말한 礮竹島와 이경직이 말한 蟻竹島는 다른 지역을 가리키고 있다.

나카무라는 이경직의 기행문이 만들어진 해가 요나고의 오야 진키치[大谷甚吉] 등이 이 섬에 표착하고 그 다음해에 막부로부터 도항면허를 받아 어업권을 받은 시기와 같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이해에 마타자이[馬多三伊] 등 7명이 울릉도에 출어하여 표류한 적이 있는데, 이런 사실은 한국 문헌³⁵에 보인다고 했다. 그런 일이 있었던 해는 1617년을 가리킨다. 일본 문헌에는 『통항일람』 권135 「조선국부」 ‘표류’조에 인용되어 있다는 것이다. 나카무라에 따르면, 『大谷九右衛門 竹島渡海由來記拔書控』³⁶이나 『別本 村川氏舊記』³⁷에는 “1618년에 양가의 선조인 오야 진키치[大谷甚吉]와 무리카와 이치베[村川市兵衛]가 도쿠가와막부로부터 ‘竹島’에 도항하는 것을 면허받았고, ‘竹島’ 도항은 막부 공인하에 행해지고 있었던 것이다”고 기술되어 있

32 히데요시가 蟻竹島에 들어가 재목을 가져온 왜인에게 ‘蟻竹彌左衛門’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사실을 쓰시마의 調興이 이경직에게 말한 것이다. 그러나 蟻竹彌左衛門은 히데요시가 죽고 얼마 되지 않아 죽었다(『부상록』, 1617. 10. 5). 여기서의 蟻竹은 ‘이소타케’의 의미로 쓴 것이므로 ‘礮竹’의 오기가 아닐까 한다. 나카무라도 ‘礮竹彌左衛門’으로 보았다(中村榮孝, 1961. 앞의 글, 18쪽).

33 쓰시마번 가로 아나가와 시게오키[柳川調興, 1603~1684]를 말한다.

34 “且言昔年秀吉在時 有一倭自願入蟻竹島 伐取材木及蘆葦而來 或有大者如篁 秀吉大喜 仍名曰蟻竹彌左衛門 仍令彌左 資爲生活 定爲歲入 未久 秀吉死而彌左繼斃 更無往來之人 家康得聞此言 令先自來現云 此必崔義吉到唐津也”(『扶桑錄』).

35 마타자이[馬多三伊]의 일은 광해군 9년(1617)의 일로 『숙종실록』(21년 6월 경술조)과 『증정 교린지』에 보인다. 그러나 최근에는 오야 가문이 울릉도 어업을 개시한 시기를 1625년 이후로 보는 설이 대두하고 있다.

36 中村榮孝에 따르면, 『시마네현립도서관, 明治 44년 10월 19일 시마네현 사료편찬회 복사본, 원래는 오키국 사이고 長田和歌次 소장본, 문정 원년 9월 大谷九右衛門이 가전(家傳)하는 『竹島由緒記』류에서 뽑아서 써서 제출한 것의 寫』로 되어 있다.

37 中村榮孝에 따르면, 『대일본사료』 제 12권 29, 元和 4년 5월 16일조에 수록되어 있다.

다. 그러나 오야 진키치와 무라카와 이치베가 언급한 도서명은 '竹島'이므로 이경직 기행문이나 『통항일람』에서 보인 '礮竹島' 혹은 '蟻竹島'와는 표기가 다르다. '竹島'와 '礮竹島'는 같은 대상(울릉도)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지만, '蟻竹島'는 그렇지 못한데 나카무라는 자국인의 울릉도 도해 연원을 멀리 끌어올리기 위해 무리하게 한데 엮은 것이다.

이렇듯 일본이나 한국 문헌에서 1620년까지는 '이소타케' 혹은 '이소타케시마'로 불리는 섬이 있었을지라도 그 표기는 五十猛, 蟻竹, 礮竹島, 礮竹島 등으로 다양했다. 그리고 이들 호칭이 동일하게 '울릉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증정 교린지』(1802) 4권에 실린 것은 「울릉도 의죽도 변정 전말(鬱陵島礮竹島辨正顛末)」이다. 여기서 '礮竹島'라고 한 것은 1614년 동래부사 윤수겸의 장계에 '礮竹島'를 언급한 것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은 배경이다. 「울릉도의죽도변정전말(鬱陵島礮竹島辨正顛末)」에는 숙종 19년(1693) 쓰시마도주가 동래부사에게 보낸 서계에 "조선인이 일본의 礮竹島를 범월(犯越)하였으므로 잡아 압송한다"고 한 사실이 인용되어 있다. 또한 "을해년(1695)에 이르러 도주(島酋)가 다시 동래부에 서계를 보내 礮竹島의 일을 제기하였는데,……"라고 한 내용, "『지봉유설』에 이르기를 '礮竹은 곧 울릉도'라 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한 내용이 인용되어 있다. 변증설의 제목을 「울릉도죽도변정전말(鬱陵島竹島辨正顛末)」로 하지 않고 「울릉도의죽도변정전말(鬱陵島礮竹島辨正顛末)」이라고 했듯이, 礮竹島가 울릉도임을 변증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지만, 궁극은 숙종 연간의 쟁계가 '일도이명(一島二名)'에 있는 것이 아님을 밝히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

'礮竹島'를 기술한 양국 문헌의 내용을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1614년 관련 내용 기술의 비교 (밑줄은 인용자)

문헌명	내용
지봉유설	壬辰變後 人有往見者 亦被倭焚掠 無復人烟 近聞倭奴占據礮竹島 或謂礮竹 卽蔚陵島也
부상록	且言昔年秀吉在時 有一倭自願入礮竹島 伐取材木及蘆葦而來 或有大者如窟 秀吉大喜 仍名曰礮竹彌左衛門 仍令彌左 資爲生活 定爲歲入 未久 秀吉死而彌左 繼斃 更無往來之人 家康得聞此言 令先自來現云 此必崔義吉到唐津也
속중실록(1694. 2. 23)	是夏 南九萬白上曰 東萊府使報 倭人又言 朝鮮人入於吾竹島 宜禁其更入也 臣 見芝峰類說 倭奴占據礮竹島 礮竹 卽蔚陵島也
속중실록(1694. 8. 14)	東萊府所藏 有光海甲寅 倭有送使探視礮竹島之言 朝廷不答 使東萊峻斥之之文 倭之漁採此島 其亦久矣
성호사설	芝峰類說云 蔚陵島壬辰後被倭焚掠 無復人烟 近聞倭占據礮竹島 或謂礮竹卽蔚陵島也
변례집요	甲寅萬曆四十二年六月 府使尹宗謙時 倭小船一隻 持書契 規外出來 問其緣由 則頭倭曰 以家康分付 探見礮竹島大小形止 而恐有漂風 路引成給 故持此書契出來云云...
만기요람	光海七年倭差船二隻 謂將探礮竹島形止 且曰島在慶尙江原之間 朝廷怒其猥越 不許接待 只令東萊府使朴慶業答書曰 足下非不知此島之橫占 乃欲撓越窺覷 是誠何心 恐非隣好之道 所謂礮竹島 實我國之蔚陵島也 介於慶尙江原海洋 載在輿地 焉可誣也
증정 교린지	光海六年 甲寅 府使尹守謙狀啓 倭小船一隻 稱以探見礮竹島形止 而出來 故問島在何處 則答以介於慶尙江原道之間 觀其辭意 似是蔚陵島云
조선통고대기(1614. 7)	朝鮮東萊府使尹守謙 奉復日本國大馬州太守平公足下 尋問鼎來 慰諭良多 但書中有看審礮竹島之說 深竊驚訝 不知是計果出於誰某耶

3. '이소타케시마'와 '다케시마 일진'

일본에서 竹島(竹嶋)가 처음으로 관찬문서에 보인 것으로는 『인슈시청합기(隱州視聽合紀)』(1667)가 주로 거론된다. 거기에 “隱州在北海中 故云隱岐島…… 戊亥間行二日一夜有松嶋 又一日程有竹嶋(俗言礮竹島 多竹漁海鹿 按神書所謂五十猛獸) 此二嶋無人之地 見高麗如自雲州望隱州 然則日本之乾地 以此州爲限矣”³⁸라고 기술되어 있는데, ‘竹嶋’가 주칭이다. 이어 “俗言礮竹島”³⁹라고 하여 ‘礮竹島’를 속칭으로 했다. 그런데 이 ‘礮竹島’에 대하여 사이토 도요노부(齋藤豊宣)는 “신서(神書)에서 말하는 ‘五十猛’인가”라고 했다.

38 『隱州視聽合紀』「國代記」(1667), 국립공문서관 원문에는 礮竹島로, 번각문(『續群書類從第九』, 1906)에는 礮竹島로 되어 있다.

39 오키초립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사사키본에는 ‘俗言礮竹島’로 되어 있다(독도자료집Ⅲ 『隱州視聽合紀』, 동북아역사재단). 이 책의 번역자인 오니시는 사사키 기치자에몬(1652~1701)가(家) 소장본이 국립국회도서관(1688년본) 소장본보다 오래되고 전래 경위가 분명하므로 이것을 저본으로 해서 해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초기의 ‘이소타케시마’ 표기는 대부분 礮竹島인데, 사사키본에는 礮竹島로 되어 있다. 사사키본이 일본 국회도서관 소장본보다 먼저 필사한 것이라면 후대의 필사자들도 이를 따라 ‘礮竹島’로 표기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그렇지 않은 점이 의아하다. 우리나라 국립중앙도서관이 제공하는 원문은 조선총독부 소장

이는 '礮竹島'가 '五十猛' 즉 '이소타케'로 음독되는 것인가 짐작된다는 견해를 밝힌 것이다. 이는 오키 해상 서쪽으로 이틀거리에 있는 섬의 명칭이 '五十猛 → 礮礮島 → 竹嶋'로 변전(變轉)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礮竹嶋'에서 '竹嶋'로 변전하는 단초는 사이토가 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양상은 이른바 '다케시마 일건'을 거치면서 더 분명해진다.

17세기 후반 이른바 '다케시마 일건'을 기술한 문헌에는 '礮竹島'가 어떻게 표기되어 있을까? 1693년 5월 5일 쓰시마번의 스기무라 우네메[杉村采女]는 동래왜관에 근무 중인 통사 나카야마 가베[中山加兵衛]에게 竹島와 조선에서 부르는 '부룬세미'가 다른 것인지를 묻는 과정에서 "일본에서는 울릉도를 礮竹이라고 부릅니다. 울릉도와 부룬세미는 다른 섬입니까?"⁴⁰라고 물었다. 쓰시마번은 1620년에는 '礮竹島'로 칭했었는데 여기서도 '礮竹'으로 칭하고 있는 것이다.

1696년 1월의 도해금지령이 나오기까지 쓰시마번과 돗토리번, 에도막부 사이에는 많은 문서가 왕복했지만, 다케시마(울릉도)에 대한 표기는 대부분 竹島거나 竹嶋다. 에도막부가 '다케시마 일건'을 처리하기 위해 돗토리번에 관련 문서와 지도를 요구했을 때, 돗토리번의 에도 유수거(留守居) 고타니 이헤[小谷伊兵衛]는 관련 문서와 지도를 제출했는데,⁴¹ 그가 제출한 지도는 당시 오야·무라카와 집안이 소장한 회도를 필사한「고타니 이헤가 제출한 다케시마 회도[小谷伊兵衛より差出候竹嶋之繪圖]」⁴² 것이었다. 고타니는 이 회도에서 후쿠우라에서 마쓰시마까지가 80리 정도, 마쓰시마에서 이소타케시마까지가 40리 정도, 마쓰시마에서 조선국까지가 80~90리 정도라는 주기를 넣었다. 그리고 회도 아래쪽에는 '礮竹嶋之圖'라는 범례를 실어 울릉도의 여러 지명과 크기 등을 써놓았다. 그런데 그가 제출한 회도의 표제는「礮竹嶋之繪圖」가 아니라「竹嶋之繪

본으로 여기에는 "寛文七年冬十月藤弗緩采毫於矢尾館下"라고 기술하여 원저자인 사이토의 서문을 그대로 필사하고 있으며, '이소타케시마'도 '礮竹島'로 되어 있다. 藤弗緩은 사이토 도요노부의 아호(雅號)이기 때문이다(오니시 도시테루의 역주에 따름). 그런데 1906년에 간행된 번각본『續續群書類從第九』는 사사키본에 의거하고 있으며, 따라서 서문이 "寛文七年冬十月采筆乎八尾館下"로 되어 있다.

40 『竹嶋紀事』 1권, 1693년 5월.

41 고타니 이헤는 1689년부터 1700년에 걸쳐 돗토리번의 에도 유수거(留守居)로서 종사했다. 고타니가 회도를 제출한 시기를 미타 기요토(三田清人)는 1692~1696년 사이로 보았다. 1695년에서 1696년 사이로 보인다.

42 웹 다케시마문제연구소는 돗토리현립 박물관과 요나고시립 산인역사관 소장의 지도를 탑재하고 있다. 두 회도는 채색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빼면 거의 같다.

圖]다. 竹嶋와 磯竹嶋가 함께 보이고 있는 것이다.

교호 연간인 1724년에 막부는 돗토리번에 다시 한번 지도 제출을 요구했는데, 돗토리번이 제출한 회도의 이름은 「고타니 이해가 바친 다케시마 회도를 필사한 회도[小谷伊兵衛ニ所持被成候竹嶋之繪圖之写]」⁴³였다. 즉 고타니가 1696년경 필사했던 회도를 다시 필사하여 돗토리번이 막부에 제출한 것이다. 회도의 표제는 ‘竹嶋之繪圖之写’로 되어 있되, 회도 안에는 울릉도가 ‘이소타케시마[磯竹島]’로, 독도가 ‘마쓰시마[松嶋]’로 표기되어 있다. ‘이소타케시마’의 둘레는 7리(里) 반, 마쓰시마의 둘레는 30정(丁)으로 적고 있다. 1724년의 회도에도 1696년의 회도에 있던 ‘磯竹嶋之圖’라는 범례가 그대로 들어가 있다. 다만 1724년의 회도에는 지명 앞에 주기(朱記)가 추가되어 있는데, 이를테면 “다케시마[竹嶋]에 대해 세상에서는 이소타케[磯竹]라고도 하지만, 저희 양인(兩人)은 다케시마라고 합니다. 예전부터 에도 쇼군께 글을 올릴 때는 다케시마라고 해왔습니다”⁴⁴라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어디를 지칭하는지 알 수 없지만, 돗토리번 지역에서는 ‘다케시마’로 부르고 있음을 밝힌 것이다. 그런데 이 명칭이 1876년에 시마네현이 내무성에 제출할 때는 ‘磯竹島’가 되어 있다. 지도에서는 주로 磯竹島, 磯竹島로 표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III. ‘다케시마 일건’ 이후의 표기

1. 18~19세기 문헌의 표기

‘다케시마 일건’ 이후의 문헌에서 ‘이소타케시마’ 호칭의 변천을 보면, 우선 1736년 이토 도가이[伊藤東涯]의 『유헌소록(輿軒小錄)』에는 「磯竹島ノ事」에서 “북해 안에 인슈에서 30리 북쪽으로 磯竹島라는 것이 있다. 둘레는 10리쯤이다”⁴⁵라고 했듯이, ‘磯竹島’⁴⁶로 칭하

43 요나고시립 산인역사관 소장.

44 船杉力修, 2007, 「繪圖・地圖からみる竹島(II)」, 『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最終報告書』, 竹島問題研究会, 143쪽.

45 『輿軒小錄』(일본국회도서관 디지털라이브러리 원문 제공).

46 아키오카 다케지로[秋岡武次郎]는 「松島와 竹島」(1950)에서 ‘磯竹島’로 표기했다.

고 있다. 후에 외무성의 사카타 모로토[坂田諸遠]⁴⁷와 지도학자 아키오카 다케지로[秋岡武次郎](1950)가 이를 인용한 바 있는데, 모두 '磯竹島'로 표기했다. 단순한 오기인지 아니면 磯竹島와 磯竹島가 통용된다고 보아서인지는 알 수 없다. 이토는 중국의 『수서(隋書)』도 인용하여 “조선에서 일본으로 건너가는 곳에 舳羅嶋이라는 섬에 이르는데, 이 섬은 磯竹을 가리키는 듯하다”⁴⁸라고 했다. 그는 『유현소록』에서는 磯竹島와 磯竹으로, 『도가이 수필[東涯隨筆]』에서는 '竹島'로 표기하고 있다.

『오키고기집[隱岐古記集]』(1823)에는 “북서쪽 40여 리에 마쓰시마[松島]가 있다. 둘레 1리 정도로 나무 없는 바위섬이라고 한다. 거기서 서쪽으로 70리에 다케시마[竹島]가 있는데, 예로부터 이 섬을 磯竹島라고 불렀으며 대나무가 울창한 큰 섬이라고 한다”고 했다. 『인슈시청합기』를 본따 편찬한 것이므로 '磯竹島'도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다케시마고[竹島考]』(1828)는 『삼국통람(三國通覽)』에 수록된 조선국 전도(全圖)를 설명하면서 “강원도 해중에 섬이 있는데 鬱陵島 千山國⁴⁹이라고 적었고, 그 안에 산을 모사(模寫)하고 弓嶽⁵⁰이라고 했다”고 기술했다. 『호키지[伯耆志]』(1858)에는 “磯竹은 竹島이다. 3대 九右衛門勝信이 말하기를, 竹島 동쪽에 둘레 20丁 정도의 섬이 있다. 松島라고 하는데 오키에서 60리쯤 된다”라고 한 내용이 있다. 『오키고기집』에서 『호키지[伯耆志]』에 이르기까지도 문헌에서 '이소타케'의 한자는 단일하지 않다.

47 坂田諸遠, 「松島異見」(1877).

48 『翰軒小錄』의 기술은 도가이의 『東涯隨筆』(『日本儒林叢書』第1卷, 1978)과는 약간 다르다. 『東涯隨筆』에는 “『隋書』에서 말하는 탐라도(耽羅島)란 아마도 이 竹島를 말하는 것일 듯하다(隋書二所謂耽羅島 蓋此竹島ナラン)”라고 되어 있다.

49 여기서 '千山國'이라고 한 것은 '于山國'의 오기다.

50 이를 번역한 『竹島考』(경상북도 사료연구회, 2010)는 '이소타케'로 음독했다(83쪽).

2. 『이소타케시마 각서』

'이소타케시마'가 서명의 전면에 나오는 것은 1875년의 『이소타케시마 각서』다. 이 문서는 겐로쿠 연간의 '다케시마 일건' 관련 문서를 모아 편집한 것으로, 도해금지령을 내기까지 막부가 쓰시마번, 돗토리번과 주고받은 서한 및 쓰시마번과 조선과의 서간이 실려 있다. 특히 막부가 도해금지령을 내는 데 결정적인 계

기를 마련해준 듯토리번 마쓰다이라 번주의 회답이 실려 있는데, 거기에는 “마쓰시마는 두 지역(이나바와 호키-역주)에 부속된 것이 아니다. 마쓰시마는 다케시마로 가는 해로상의 섬이다”⁵¹, “마쓰시마에서 다케시마까지는 40리 정도”, “마쓰시마까지는 호키국에서 해로 120리 정도”⁵²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 두 섬을 세트로 다루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각서’는 여러 소장본이 있다.

첫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은 국립공문서관 소장본이다. 제목이 『磯竹島覺書』⁵³로 되어 있는데, 가운데 표지는 없으며 맨 마지막에 “明治八[1875]年八月八日 中邨元起”라고 쓰고 주인(朱印) ‘元起’가 찍혀 있다. 내무성 지지와 소속의 나카무라 겐키[中邨(村)元起]가 엮은 것인데, 이것을 원본으로 보기도 한다.⁵⁴ 두 번째는 내무성 지리국 소장본인데, 사본이다. 이 문서의 겉표지는 『磯竹島覺書』고 발행지는 내무성 지리국이다. 가운데 표지도 『磯竹島覺書』로 되어 있고 아래에 ‘쵸’자가 있으며 지리료 인장이 찍혀 있다.⁵⁵ 본문도 『磯竹島覺書』로 되어 있다. 세 번째는 쓰쿠바대학 소장본인데, 청구 기호와 등록번호가 나와 있는 표지는 『磯竹島覺書』로 되어 있지만, 책으로 묶은 것처럼 보이는 것의 표지는 『磯竹島事略』으로 되어 있다. 안의 본문으로 들어가면, 다시 초서체의 『磯竹島覺書』로 되어 있다. 본문에 나오는 명칭도 ‘磯竹島’다.

세 문서를 비교해보면 표지와 본문의 명칭은 대부분 ‘磯竹島’인데, 쓰쿠바대학 소장본의 표지의 일부만이 『磯竹島事略』으로 되어 있다. 그렇지만 이들 세 문서의 주요 내용은 대부분 ‘다케시마’로 언급하고 있을 뿐 ‘磯竹·磯竹’을 주칭으로 하여 내용을 기술한 것은 아니다. ‘磯竹·磯竹’이라는 호칭은 세 군데서 보인다. 첫 번째는 1695년 12월 6일 쓰시마번의 형부대보가 가로(家老) 히라타 나오에몬[平田直右衛門]을 에도에 보내 보고한 구상서[口上之覺]에서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51 1695년 12월 25일자 회답.

52 1696년 1월 23일자 회답.

53 서명 아래 ‘完’이라고 적혀 있다. 『磯竹島覺書』에 ‘完’자나 ‘쵸’자가 쓰여 있는 것을 포함해서 서명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는 그것이 한 책으로서 완본(完本)임을 뜻하는 것이지 『磯竹島覺書 完』이 서명임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磯竹島事略』은 ‘乾坤’이 쓰여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건곤 2책으로 된 것임을 의미한다.

54 박병섭, 2016. 6. 「池內敏의 『竹島—또 하나의 일·한관계사』, 『獨島研究』 제20호, 영남대학교, 260~261쪽.

55 주인(朱印) ‘지리료인(地理寮印)’이 찍힌 것은 지리료가 지리국으로 개칭(1877. 1. 11)하기 이전에 작성되었음을 의미한다(박병섭, 위의 글 참조).

3. 메이지 정부와 ‘이소타케시마’

메이지 정부 출범 이후 1876년에 내무성이 지적(地籍) 편찬사업에 착수했을 때 시마네현이 내무성에 제출한 문서에는 두 섬 표기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 내무성은 지적 편찬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리료의 관리 두 사람을 시마네현에 파견하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조사하여 내무성에 문의해줄 것을 현에 요청한 바 있다(10월 5일). 이런 요청이 있던 지 열흘 뒤 시마네현은 「일본해에 있는 다케시마 외 일도를 지적에 편찬하는 방법에 대한 문의[日本海内竹島外一島地籍編纂方伺]」를 작성하여 제출했다(10월 16일). 이때 시마네현은 소장하고 있던 고문서와 도면(圖面)을 첨부했다. 고문서는 이른바 「원유(原由)의 대략」으로, 에도막부의 도해허가서부터 도해금지령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적은 것이었고, 여기에 시마네현의 후기(後記)를 덧붙였다. 도면은 1696년에 돗토리번의 고타니가 막부에 제출한, 오야가(家)의 회도(繪圖)를 축사(縮寫)한 「磯竹島略圖」였다.

시마네현이 첨부한 「원유의 대략」은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다. “이소타케시마[磯竹島], 다케시마[竹島]라고도 한다. 오키국 북서쪽 120리 정도에 있으며 둘레 약 10리 정도에……”. 내무성은 ‘다케시마’만을 문의했는데 시마네현은 「편찬방사」에 ‘다케시마 외 일도’라고 하여 ‘일도’를 추가했고, 첨부문서에서는 ‘이소타케시마[磯竹島]’를 주칭으로 해서 기술했으므로 ‘다케시마’는 별칭이 되어 있다. 첨부한 도면의 명칭도 「磯竹島略圖」로 되어 있듯이, ‘이소타케시마’가 주칭이다. 그러나 「원유의 대략」 본문의 내용은 대부분 ‘竹島’로 기술된다. 「磯竹島略圖」에 보인 지명은 ‘이소타케시마’라는 지명을 제외하면 대부분 겐로쿠 연간 오야·무라카와 집안이 명명한 것들이다. 돗토리번은 1724년에 막부에 보고할 때, 다른 지역은 ‘이소타케시마’라고 하지만 자기 지역에서는 쇼군에게 보고할 때조차 ‘다케시마’라고 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1876년 시점에 시마네현이 왜 내무성에 보고하는 문서에서 ‘이소타케시마’를 주칭으로 한 문서를 제출했는지는 의문이다. 시마네현은 중앙정부가 ‘다케시마’에 대한 인식만 지니고 있다고 여겨

가 된다”⁶¹는 견해를 밝혔는데, 지금까지의 변증으로 볼 때 이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사전적 의미로도 ‘弓’과 ‘이소’, ‘嵩’과 ‘다케’와의 연관성을 찾기는 어렵다. 이에 대해서는 좀 더 고증이 필요하다.

「개정 일본여지노정전도(改正日本輿地路程全圖)」(長久保赤水, 1779, 1833)에도 두 섬이 그려져 있고 그 옆에 “一云磯竹島”, “見高麗猶雲州望隱州”라는 글귀가 쓰여 있다. 이는 『인슈시청합기(隱州視聽合紀)』의 글귀를 인용한 것인데, 세키스이 계열의 지도가 대부분 이를 원용하고 있다. 「관허 일본여지전도(官許日本輿地全圖)」(中島彭, 1872)와 「대일본 부현전도(大日本府縣全圖)」(内田晋齋, 1872) 등이 그런 계열의 지도다. 「증보개정 조선국전도」(1873)에는 앞에서 보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성인봉에 해당하는 산에 ‘弓嵩’이라 표기하고 음독을 ‘이소다케’라고 붙였다.

한편 지리지인 『조선지략(朝鮮誌略)』(東條保 편찬, 1875)에는 “자산도(子山島) 혹은 궁고(弓高)라는 이름이 있다”라고 기술했다. 이때의 ‘弓高’는 ‘弓嵩’의 오기인 듯하다. 지금까지 문헌에 보인 ‘이소타케시마’ 표기를 비교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이소타케시마’ 표기 비교

연대	저자	출전	명칭	비고
		日本書紀	五十猛神	
1556년 이후	鄭舜功 조사 후	日本一鑑	竹島	중국 문헌
1569		殘太平記	五十猛嶋	
桃山時代		日本圖屏風	磯竹	
1592		多聞院日記	いそたき人蔘	호키지역

61 「증보개정 조선국전도(增補改正 朝鮮國全圖)」에 이런 기술이 보이는데 근거자료는 밝혀져 있지 않다. 김규승의 『東夷古史研究의 焦點』(범한서적, 1974)의 55. 「于山國改 鬱陵島 別稱 弓嵩의 古蹟法」을 보면, ‘궁송’에 대하여 밝히고 있는데, ‘다말’과 연관짓고 있을 뿐 ‘다케시마’와의 연관성은 보이지 않는다. 『독도사전』의 「대일본접양 삼국지전도(大日本接壤三國之全圖)」(1786)에도 “지금의 성인봉에 해당하는 부분에 ‘궁송(弓嵩)’이란 표기와 함께 일본음으로 ‘이소다케’라고 표기된 것이 주목된다”고 했지만, 최초로 ‘궁송’과 ‘이소타케’를 연관시킨 학자는 이병도다. 이병도는 울릉도인에게서 직접 ‘弓嵩’이란 이름을 들은 일본인이 그 뜻을 몰아 방서(傍書)한 것이 ‘이소타케’라는 것이다. 이병도는 ‘궁송’과 ‘이소타케’는 성인봉을 지칭하는 것으로 ‘곰(弓)수리(嵩)’를 차자(借字)한 것이라고 했다. 이병도에 따르면, 일본인이 ‘磯竹島’ 혹은 ‘竹島’를 울릉도의 호칭으로 하는 것은 원의(原義)를 상실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이소타케’의 의미가 ‘웅명한 높은 산’의 의미이지 대나무와 관계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독도』, 1965, 73~74쪽). 또한 그는 일본이 ‘이소타케’를 ‘磯竹’의 뜻으로 보지 않고 신성(神聖)과 관계있다고 본 것은 참고가 된다고 했다. 이병도의 이런 논리는 ‘이소타케’와 ‘磯竹’을 분리해서 보는 것이다. 그럴 경우 일본에서 ‘이소타케시마’를 ‘磯竹島=竹島’로 보는 논리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우므로 이 문제는 좀 더 고증이 필요하다.

연대	저자	출전	명칭	비고
1614		朝鮮通交大紀 5	礮竹島	
1614		通航一覽(권137)	礮竹島	
1614		邊例集要	礮竹島	
1614	이수광	芝峯類說	礮竹島	
1617	이경직	扶桑錄	蟻竹, 蟻竹島, 蟻竹彌左衛門	
1620		通航一覽(권129)	礮竹島	本州編稔略
1667	齋藤豊宣	隱州視聽合紀	俗言礮竹島	按神書所謂五十猛獸, 竹島
1693. 5. 5		竹嶋紀事	礮竹島	竹島
1696		고타니 회도	礮竹嶋	
1724		돗토리번 회도	礮竹嶋	
1736	伊藤東涯	翰軒小錄	礮竹島	
1779		改正日本輿地路程全圖	一云礮竹島	隱州視聽合紀
1786		大日本接壤三國之全圖	弓嵩(이스타케)	隱州視聽合紀
1802		增正交隣志	礮竹島	
1823	大西教保	隱岐古記集	礮竹島	
1828	岡嶋正義	竹島考	弓嶽	
1858		伯耆志	礮竹	
1865	玄玄堂綠山	銅鑄 大日本國細圖	竹嶋又礮竹嶋	
1872	中島彭	官許日本輿地全圖	一云礮竹島	
1873	田嶋象次郎	增補改正 朝鮮國全圖	弓嵩(이스타케)	
1875	東條保	朝鮮誌略	子山島 혹은 弓高	
1875	中邨元起	礮竹嶋覺書	礮竹嶋	礮竹島事略
1876		日本海內竹島外一島地籍編纂方向	礮竹島	
1877(1696)		礮竹島略圖	礮竹島	
1877	坂田諸遠	松島異見	竹島(云礮竹島)	
1881	北澤正誠	竹島考證	竹島(礮竹島)	
1914		日鮮通交史	袖谷記曰礮竹島	재인용

4. 1930년대 및 그 이후의 '礮竹島'와 '礮竹島'

'礮'자와 '礮'자가 통용되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표 2>에서 보듯이 '이 스타케시마'에 대한 표기는 문헌마다 '礮竹'과 '礮竹'이 혼재되어 있다. 이

런 경향은 고문헌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다. 다만 후대로 올수록 ‘礮竹’보다는 ‘磯竹’이 더 많이 보인다. 후대의 학자들은 고문헌의 礮竹·磯竹에 대하여 그 연원을 고증하기보다는 이 섬이 ‘울릉도’임을 밝히는 데 더 중점을 두었기 때문인지 원문에는 ‘礮竹’으로 되어 있더라도 번각할 때 ‘磯竹’으로 바꾼 경우가 많다.

1930년대 조선총독부 주관의 『조선사』 편찬에 적극 관여했던 다보하시 기요시[田保橋潔]는 울릉도는 산인[山陰]지방의 어민이 도항하면서 처음에는 이소타케시마[磯竹島]로 부르다가⁶² 다케시마[竹島] 혹은 마쓰시마[松島]로 알려지게 되었다고 했다. 후에 울릉도 동남 해중에 우뚝 솟은 거암(현행 해도상의 리앙쿠르島, Liancourt)이 알려지면서 ‘마쓰시마’와 ‘다케시마’라는 명칭이 울릉도와 리앙쿠르島 사이에 혼동되는 경향이 생겼다고 했다.⁶³ 또한 그는 울릉도가 礮竹島 혹은 이를 생략하여 竹島로 알려진 시대는 자세하지 않지만, 『지봉유설』에 비추어 생각해보면, 게이초[慶長]⁶⁴ 이전에 있었던 것은 분명하며, 무로마치[室町] 시대로 거슬러 올라갈지도 모른다고 했다.⁶⁵ 그러다가 에도시대 중기에 산인도 각지에서는 단지 ‘다케시마’라는 이름으로 알려졌는데, ‘礮竹島’ 혹은 ‘竹島’라는 명칭은 울릉도에 거대한 대나무가 나는 것과 관계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게이초 연간의 사건에 대해 “울릉도는 다이슈인[對州人]에게는 礮竹島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었지만, 산인도[山陰道] 지방에서는 竹島라고 알려져 이 섬에 도항 혹은 어렵하거나 죽목(竹木)을 벌채하는 일이 드물지 않았다고 믿고 있다.”⁶⁶ 고도 기술하여 쓰시마와 산인도 사이에 오락가락하고 있다.

다보하시가 여러 문헌에 보인 礮竹島 혹은 竹島가 울릉도를 가리키는 것이지 부속 암초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⁶⁷ 명언한 이유는 이 섬이 울릉도인가 아닌가를 밝히려는 그의 관심과 관계가 있다. 다만 그는 礮竹島와 竹島 명칭의 유래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었다. 그가 「울릉도, 그 발견과 영유」와 「울릉도 명

62 이 견해는 앞에서 1724년에 돗토리번의 보고, 즉 오노와 지방은 다케시마로 부르고 다른 지역에서는 이소타케시마로 부른다고 한 사실과는 배치된다.

63 다보하시 기요시[田保橋潔], 1931. 2, 「鬱陵島その發見と領有」, 『靑丘學叢』 제3호, 2쪽.

64 1596년부터다.

65 田保橋潔, 1931. 2, 앞의 글, 2쪽.

66 田保橋潔, 1931. 2, 위의 글, 14쪽.

칭에 대하여」를 쓰는데 조선총독부 수사관 나카무라 히데다카[中村榮孝] 씨의 교시를 받은 바가 적지 않다고 밝혔듯이, 1931년 당시 울릉도·礮竹島·竹島 유래에 대한 다보하시의 식견은 나카무라를 따른 경향이 있다.

아키오카 다케지로[秋岡武次郎]의 '礮竹島'에 대한 기술도 「개정 일본여지노정전도(改正日本輿地路程全圖)」에 “竹島, 礮竹島라고도 한다. 고려에서 보는 것이 운주[雲州]에서 인슈[隱州]를 보는 것과 같다”라고 적힌 『인슈시청합기』를 답습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 그가 『수서(隨書)』와 「일본도 병풍」에 보인 '礮竹'을 언급한 것도 울릉도와 독도를 竹島·松島에 비정하는 과정에서의 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었을 뿐 '礮竹島' 자체에 대한 고증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가와카미 겐조[川上健三]에게서는 '礮竹島'가 『지봉유설』에 보였던, 울릉도의 별칭으로서의 인식밖에는 보이지 않는다.⁶⁸

나카무라의 '礮竹島' 변증은 앞에서 간헐적으로 언급한 대로다. 유일하게 『이소타케시마각서(礮竹島覺書)』(1875)를 검토한 그는 조선총독부 시절(1926) 조선사편수회가 쓰시마 이즈하라[嚴原] 번주의 『종가고문서(宗家古文書)』 안에 '礮竹島'에 관한 것이 들어 있었는데, 게이초와 겐나 시대 것으로 '礮竹 아무개'라는 이름이 붙어 있던 것을 본 바 있음을 토론했다.⁶⁹ 이로써도 게이초 시대부터 '礮竹'과 '礮竹'이 병기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대부분 '礮竹島'로 표기하고 있다.⁷⁰ 특히 '礮竹'과 '礮竹'의 차이가 아닌, '礮竹島'와 '竹島'의 차이에 처음 주목한 자는 나이토 세이추[內藤正中]다. 그에 따르면, 조선과의 왕래는 쓰시마를 경유하는 한 가지 길밖에 없

으므로 울릉도로 도해하려는 자에게 막부는 정식 허가를 해줄 수 없었고, 따라서 지금까지 '이소타케시마'로 부르고 있던 울릉도를 '다케시마'로 개칭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는 것이다. 나이토는 요나고 사람이 어떤 명칭으로 불렀는지는 신청 당시 사료가 현존하지 않으므로 알 수 없지만, '다케시마'라는 명칭이 처음 일본 문헌에 보인 것이 이른바 다케시마 도해면허장

67 田保橋潔, 1931. 5. 「鬱陵島の名稱に就て(補) -坪井博士の示教に答ふ-, 『靑丘學叢』 제4호, 106쪽.

68 川上健三, 1953. 『竹島の領有』, 外務省.

69 中村榮孝, 1961. 앞의 글, 18쪽.

70 池內敏, 2016. 『大君外交と「武威」』, 名古屋大學出版會; 內藤正中·金柄烈, 2007. 『史的檢證 竹島·獨島』, 岩波書店.

이라고 보았다. 그는 그 근거로 도해면허장 발급(1622년 이후)⁷¹ 이전의 조일 양국 문헌에는 ‘이소타케시마’라는 명칭으로 울릉도를 부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제시했다.⁷²

그리하여 도해면허 이후의 공식문서에서 ‘이소타케시마’는 더 이상 보이지 않고 ‘다케시마’라는 명칭만 사용하게 되었으며, 그 때문에 오키 기록인 『인슈시청합기』(1667)에서도 ‘이소타케시마[磯竹島]’가 ‘다케시마[竹島]’의 속칭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⁷³

그런데 도해 면허 이후에도 돛토리번에 인접한 마쓰에번은 ‘이소타케시마’를 사용하고 있었다. 문헌에 따르면, 1696년 당시 마쓰에번 이즈모와 오키 사람들은 磯竹으로, 요나고 사람들은 竹島로 불렀으며⁷⁴ 1724년에도 마찬가지였다고 한다.⁷⁵ 더구나 1696년 요나고의 두 집안(오야·무라카와)은 이즈모나 오키의 엽사(獵師)들을 고용하여 울릉도로 떠나고 있던 상황이었다.⁷⁶ 그런데 왜 이즈모나 오키 사람들은 고용주가 부르던 ‘다케시마’ 호칭을 배제하고 ‘이소타케시마’로 부르기를 고집했을까?⁷⁷ 마쓰에번 사람들에게 ‘이소타케시마’는 단지 속칭(俗稱)으로만 잔존했던 것일까? 이 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IV. 맺음말

고문헌에서 ‘磯竹島’와 ‘磯竹島’는 통용되었으므로 문헌마다 일정한 기준 없이 두 가지 표기가 혼재되어 있다. ‘이소타케시마’는 훈차 표기가 ‘五十猛嶋’에서 ‘磯竹島’로 변전했지만, 문헌에는 ‘磯竹島’와 ‘磯竹島’가 혼재되어 있고 지도에는 ‘磯竹島’ 외에 ‘竹島’로도 표기되어 있어 세 가지 표기가 혼재되어 있다. 더구나 고문헌을 번각한 현대문은 대부분 고문헌의 ‘磯竹’을 ‘磯竹’으로 고쳤기 때문에 고문헌과 번각문의

71 나이토는 이케우치의 1625년 설을 소개하고 있다(內藤正中, 2005, 앞의 글, 50쪽).

72 內藤正中, 2005, 앞의 글, 51~52쪽.

73 內藤正中, 2005, 위의 글, 53쪽.

74 『磯竹嶋覺書』에 있는 마쓰다이라 데와노카미의 구상서(1696, 1. 16).

75 1724년 회도의 주기(朱記).

76 『磯竹嶋覺書』에 있는 마쓰다이라 호키노카미의 비망록(1696, 1. 23).

77 1696년 오키에서 안용복 일행을 심문한 기록인 이른바 ‘겐로쿠 각서’에 ‘磯竹島’는 보이지 않는다. 당시 심문자인 나카세 단우에몽[中瀬彈右衛門]과 아마모토 기요에몬[山本清右衛門]은 막부 직할령인 마쓰에번의 대관(代官)이었다.

표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럼에도 이들은 모두 '이소타케시마'로 음독된다. 그 이유는 礮竹이든 礮竹이든 '이소'에 대한 일본 고유어가 먼저 있었고 그 훈을 따라 '礮'와 '礮'를 빌려 조자(造字)한 것이기 때문이다. '五十猛(島)'이라는 표기가 礮竹(島)·礮竹(島)에 앞서 있었다는 사실도 같은 배경을 들어 설명할 수 있다. 그런데 일본에서 이 지명이 울릉도와 관련성을 지니려면, '이소타케시마'에서 '이소'에 방점이 두어져야 할 것이 아니라 '다케'⁷⁸에 두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五十猛島'나 '弓嵩'과의 차이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소타케시마'가 항상 '다케시마[竹島]'에 부수적으로 병기되어왔던 이유도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조선에서는 『지봉유설』에 (임진왜란으로 인해) "왜놈들이 礮竹島를 점거했다"라고 기술되어 있던 사실과 1614년에 일본이 사자(使者)를 보내 礮竹島를 탐시(探視)하겠다고 말한 사실에서 보듯이 모두 섬의 명칭이 '礮竹島'로 되어 있다. 이런 사실은 아무런 의심 없이 조선 후기의 학자들로 하여금 '礮竹島'를 울릉도로 단정하게 했고, 이런 오류는 18~19세기까지도 계승되었다. 그러나 임진왜란 당시 등장한 '礮竹島'를 과연 '울릉도'로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 섬을 일본이 점거했다는 사실은 나카무라 히데다카도 부인하고 있을 정도로 개연성이 희박하며, 『통항일람(通航一覽)』의 기술은 혼란된 인식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다만 나카무라는 일본인의 울릉도도 해 역사의 연원을 먼 시대로 끌어올리기 위해서인지는 몰라도 문헌에 '礮竹'과 비슷한 자형만 보이기만 해도 이를 '울릉도'와 연관시키고 있다. 그가 '礮竹島=礮竹島'로 보는 인식은 그런 차원에서였다.

일본 문헌을 보면, 『인슈시청합기』와 『다케시마기사[竹嶋紀事]』에는 '礮竹島'로, 1696년과 1724년 돗토리번 지도에서의 표제는 竹嶋로, 범례에는 '礮竹嶋之圖'로 표기되어 있다가, 1876년 시마네현이 내무성에 제출할 때의 지도명은 「礮竹島略圖」로 되어 있다. 1696년 마쓰에번이 막부에 제출

하는 구상서에는 "이즈모에서는 竹島를 礮竹이라 부른다"라고 했고, 1724년 돗토리번은 "다른 지역은 '이소타케시마'로, 자신의 지역은 '다케시마'라고 지칭한

78 나카이 다케노신은 武島를 '다케시마'로, 쓰보이 구메조는 '무시마'로 음독했다 (유미림, 2013, 『우리 사료 속의 독도와 울릉도』, 지식산업사, 279~281쪽 참조).

다”라고 했다. 이는 마쓰에번과 돗토리번의 인식이 달랐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1875년의 『이소타케시마 각서』에는 ‘礮竹島’로 되어 있는 반면, 1876년 시마네현이 내무성에 제출한 「원유(原由)의 대략」에는 ‘礮竹島’를 주칭으로 하고 있다. 두 문헌의 표기는 다르지만 산인 지방에서는 모두 ‘이소타케시마’로 불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876년에 시마네현이 작성한 지도에는 「礮竹島略圖」로 되어 있고, 1881년에 외무성 관리가 작성한 『다케시마고증(竹島考證)』에는 “竹島(礮竹島라고도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 원래의 문헌에는 없던 “(礮竹島라고도 되어 있다)”라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외무성 관리인 기타자와가 조일(朝日) 양국이 울릉도를 두고 한창 분규를 겪고 있을 때 이런 기술을 추가한 이유가 ‘이소타케시마’에 대한 중앙정부의 인지 역사를 드러내고자 해서였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이때는 ‘이소타케시마’가 아닌 ‘다케시마’에 관심이 모아져 있을 때인데, 정부 문서에 ‘이소타케시마’가 먼저 언급된 뒤에 ‘다케시마’가 부연되어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礮竹島’로 표기하던 ‘礮竹島’로 표기하던 모두 ‘이소타케시마’에 대한 혼차 표기이므로 어떤 표기가 옳고 그르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중국과 한국 사전에는 ‘礮’자를 대표자로 보고 있으며, 일본 사전에도 ‘礮’자를 ‘礮’자와 통용되는 이체자로 보고 있으므로 대표자를 써서 ‘礮竹島’로 표기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고문서에 대부분 ‘礮竹島’로 되어 있는데도 번각문에서는 ‘礮竹島’로 바꿔 표기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가 아닌가 한다. 『礮竹島覺書』를 소장하고 있던 쓰쿠바대학이 『礮竹島事略』이라고 개제(改題)하여 소개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을 것이다. 다만 문헌에 ‘礮竹島’라는 표기가 집중적으로 보인 시기는 메이지 시대를 전후해서다.

마지막으로 지적할 것은 ‘이소타케시마’ 변증을 통해 우리는 일본의 지명 방식이 우리나라의 지명방식과 매우 흡사하다는 사실을 시사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일본이 ‘이소’를 ‘五十’, ‘礮(礮)’로, ‘이소타케시마’를 ‘五十猛島’, ‘礮竹島’, ‘礮竹島’로 표기한 것은 고유어를 한자로 차자(借字) 표기한 방식

이다. 그런데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보인 '石島'도 같은 차자표기 방식이다. 즉 '독섬'이라는 고유어가 먼저 있었고 그 뜻을 따라 차자 표기한 것이 '石島'인 것이다.⁷⁹ 일본은 '이소타케시마'를 '五十猛島', '磯竹島(磯竹島)'로 표기하는 것에 유래가 있다는 그 역사성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독섬'을 '石島'로 표기하는 것의 역사성도 인정해야 할 것이다.

79 최근 보도된 언론기사(한겨레신문, 8월 28일자 기사)에 따르면, 1938년 조선어사전 간행회가 간행한 우리말 사전에 '독: 돌의 사투리. 石'이라고 풀이된 내용을 확인했다고 했는데, 이미 그 전에 『朝鮮地誌資料』(1906~1914 추정)에 '독섬'을 '石島'와 '獨島' 두 가지로 표기한 사실이 나와 있다. 1940년에 전주 사람이 조사한 사실을 보고한 「朝鮮말地名」(조선어학회, 1940. 7)에도 "독(石)-돌"임이 밝혀져 있다. 같은 보고서에는 셋섬[新島], 돛섬[蓆島], 곰섬[熊島], 돌골[石村] 등의 방식으로 표기한 지명이 보인다. 1948년 애국노인회가 맥아더 사령관에게 보낸 청원문에 독도의 호칭은 'Docksum'으로 되어 있다(유미림, 2013. 위의 책 참조). 1944년에 『朝鮮語方言の研究』가 간행되었지만, 오구라 신페이[小倉進平]가 조선 방언을 현지 조사한 시기는 1920년대였다.

국문 초록

이 글은 울릉도의 별칭으로 지칭되는 ‘이소타케시마’의 한자 표기가 ‘礮竹島’와 ‘礮竹島’ 두 가지인 사실에 주목하여 그 어원과 표기의 추이를 밝히려는 것이다. ‘이소타케’에 대한 한자는 ‘五十猛’, ‘礮竹’, ‘礮竹’, ‘弓嵩’ 등 표기가 다양하다. 그 이유는 ‘이소타케’라는 고유어가 먼저 있는 뒤 이에 해당되는 한자를 빌려 표기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역 혹은 화자(話者)에 따라 ‘礮竹’, ‘礮竹’의 표기에서 차이가 있다.

‘이소타케’에 대한 최초의 한자표기는 ‘五十猛’이지만, 조선의 울릉도를 알게 되면서 ‘礮竹島’로 호칭했다가 ‘礮竹島’로 정착해갔다. 조선에서는 일본의 ‘礮竹島’를 가져와 사용했는데 조선 문헌에서 ‘礮竹島’가 늘 울릉도를 가리킨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이수광이 ‘礮竹島’를 언급한 이래 대부분의 학자가 ‘울릉도 쟁계’를 언급할 때마다 ‘礮竹島’를 거론하되 이를 울릉도로 단정했다.

문헌에서는 『인슈시청합기(隱州視聽合紀)』(1667)에서 ‘竹島’가 보인 후 ‘竹島’를 주칭으로, ‘礮竹島’를 속칭으로 해서 병기하는 경향이 있다. 이어 이른바 ‘다케시마 일건’을 거치면서 돛토리번에서는 ‘다케시마’ 호칭이 정착했지만, 쓰시마번(Tshushima-han)이나 오키(Oki Island) 등지에서는 ‘이소타케시마’ 호칭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한편 돛토리번의 문서에서는 ‘다케시마’와 ‘이소타케시마’가 섞여 있고, ‘이소타케시마’ 표기도 문헌마다 단일하지 않다. 문헌에서 ‘礮竹島’라는 표기가 집중적으로 보인 시기는 메이지 시대를 전후해서다. 일본의 ‘이소타케시마=五十猛, 礮竹島’ 표기방식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그 표기방식이 우리의 지명(‘독섬=石島’) 표기방식과 같다는 사실이다.

〈주제어〉

竹島, 이소타케시마, 五十猛, 礮竹島, 礮竹島

ABSTRACT

On the Historical Origin of the Name Isotakeshima

Yoo, Mirim

Director, Korea-Asia Cultural Institute

This study aims to clarify the origin of the name Isotakeshima and the transformation the name underwent, mainly by focusing on two of its transcriptions into Chinese, “磯竹島” and “磯竹島.” “Isotakeshima,” which refers to Ulleungdo, and “Isotake” has so far been expressed in a variety of different combinations of Chinese characters such as “五十猛,” “磯竹,” “磯竹,” and “弓嵩.” This is because the native term Isotake existed before various Chinese characters were later adopted to transcribe the name into Chinese. So, the use of “磯竹” or “磯竹” tends to differ depending on the region or the speaker.

The earliest transcription of Isotake was “五十猛,” but it changed to “磯竹島” after it became known that Joseon referred to the island as Ulleungdo, and then later settled down as “磯竹島.” In Joseon, “磯竹島” was sometimes adopted based on its use in Japan, but the transcription did not always refer to Ulleungdo in records produced in Joseon. Nevertheless, ever since Yi Su-kwang used “磯竹島,” most scholars have mentioned it whenever they discuss the “Ulleungdo Dispute” and have come to assume that it refers to Ulleungdo.

In Japan, after “竹島” appeared in the 1667 “Onshu shicho goki” (隱州視聽合紀), or Records of Observations at Oki Province, the trend has been to primarily use “竹島” (Takeshima) and concurrently use “磯竹島” (Isotakeshima) as a colloquial name. Once the Takeshima Ikken, or the Ulleungdo Dispute, occurred, the use of “竹島” became popular and settled down in the Tottori domain, whereas the Tsushima domain and the Oki islands continued to use “磯竹島,” implying that the adoption of transcriptions differed depending on the region.

Documents from the Tottori domain would interchangeably use “竹島” and “磯竹島,” while “磯竹島” would be noted differently in different records. The popular use of “磯竹島” in documents occurred around the times of the Meiji Restoration. Notations of “五十猛” or “磯竹島” to indicate Isotakeshima in Japan shows a pattern of transformation similar to that in Korea where the native name 독섬, pronounced as Dokseom, later came to be transcribed as “石島” in Chinese characters.

Keywords

Takeshima, Isotakeshima, Isotakeshima(五十猛島), Isotakeshima(礮竹島),
Isotakeshima(礮竹島)

참고문헌

- 『對州編稔略』
『大漢和辭典』(諸橋轍次)
『東涯隨筆』(『日本儒林叢書』第1卷, 1978)
『水路雜誌』(1883)
『輜軒小錄』
『隱州視聽合紀』(1667)
『礮竹島覺書』
『日本書紀』
『日本水路誌』(1920)
「朝鮮말地名」(조선어학회, 1940. 7)
『朝鮮地誌資料』(1906~1914 추정)
『竹島考』(2010, 경상북도 독도사료연구회)
『竹島考證』
『竹嶋紀事』(2013, 경상북도 독도사료연구회)
『竹嶋之書附』
『增正交隣志』
『芝峰類說』
『韓國漢字語辭典』(1993~1997,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漢語大詞典』
『한겨레신문』, 2016년 8월 28일자 기사
위키피디아(<https://ja.wikipedia.org/wiki>)

- 김규승, 1974, 『東夷古史研究의 焦點』, 범한서적.
- 유미림, 2013, 『우리 사료 속의 독도와 울릉도』, 지식산업사.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편, 2011, 『독도 사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박병섭, 2016, 6, 「池内敏의 『竹島-또하나의 일·한관계사』」, 『獨島研究』 제 20호,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 内藤正中, 2005, 『竹島(鬱陵島)をめぐる日朝關係史』, 東京: 多賀出版.
- 内藤正中·金柄烈, 2007, 『史的檢證 竹島·獨島』, 東京: 岩波書店.
- 池内敏, 2016, 『大君外交と「武威」』, 名古屋: 名古屋大學出版會.
- 川上健三, 1953, 『竹島の領有』, 外務省条約局.
- 『帝國行政區劃便覽』(1901, 1929), 東京: 警眼社.
- 船杉力修, 2007, 「繪圖·地圖からみる竹島(Ⅱ)」, 『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最終報告書』, 竹島問題研究会.
- 田保橋潔, 1931, 2, 「鬱陵島その發見と領有」, 『青丘學叢』 第3號, 青丘學界.
- 中村榮孝, 1961, 「「礮竹島」(鬱陵島)についての覺書」, 『日本歴史』 第158호, 日本歴史學會.
- 秋岡武次郎, 1950, 「松島と竹島」, 『社會地理』 第27號, 日本社会地理協會.
- 坪井九馬三, 1921, 「鬱陵島」, 『歴史地理』 第38卷 第3號.

에 관한 학회지로 130여 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도 현존하는 학회지다.¹ 지리지에 나타난 일본의 독도 인식을 분석한 것으로 유미림·최은석(2010), 유미림(2011), 윤소영(2013), 윤소영(2014), 남영우(2014)의 연구가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지지(地誌), 향토지, 수로지 등을 분석하고 있으나 본고에서 다루는 지학잡지에 대해서는 언급되고 있지 못하다.² 다만 남영우(2014)의 연구에서는 지학잡지에 나타난 죽도(竹島)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 구체적 분석에 이르지 못하는 듯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지리학계의 중심적 학술지를 통해 울릉도·독도 인식의 일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리지의 기록에서 중요한 것은 ‘도쿄지학협회’의 설립 및 구성 멤버가 메이지 신정부의 수뇌집단이라는 것과 『지학잡지』의 성격이 메이지정부의 제국주의 팽창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지학잡지』는 홋카이도 개척 및 편입, 남방제도의 편입 등 일본 제국주의의 영토 확장에서 중요한 정보 전달의 장³으로 활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소위 ‘독도 편입’을 전후하여 이 『지학잡지』에 울릉도와 독도의 기사가 등장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 논문 투고일: 2016. 9. 30. 심사 개시일: 2016. 11. 8. 게재 확정일: 2016. 11. 30.

1 현재 8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도쿄지학협회’는 2012년 4월 공익사단법인으로 이행하여, 회원 중 지질광물학 약 60%, 지리학 약 30%, 지구물리학 약 10%로 구성되었다. 학술지 『地學雜誌』는 연6회 간행하고 있다. 발행초기에는 월1회 간행.

2 일본의 지리지를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는 유미림·최은석, 2010, 『근대 일본의 지리지에 나타난 울릉도·독도 인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유미림, 2011, 『근대 조선지리지에 보이는 일본의 울릉도·독도인식』, 『영토해양연구』 2권, 104~131쪽; 윤소영, 2013, 『근대 일본 관한 地誌와 지리교과서에 나타난 독도 인식』,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6호, 363~407쪽; 윤소영, 2014, 『메이지 후기 지리지·향토지에 나타난 독도 기술』, 『독도연구』 제17호, 167~197쪽; 남영우, 2014, 6, 『독도에 대한 일본의 지도 제작과 측량』, 『영토해양연구』 vol. 7, 26~51쪽을 참조.

3 이 시기 『지학잡지』의 「잡보(雜報)」란에는 각지의 지리적 정보와 영토 취득 등의 정보를 세세하게 실고 있다.

- ① 「日本海中の一島嶼(ヤンコ)」, 『地學雜誌』 第149号, 東京地學協會, 1901, 301~302쪽.
- ② 「(雜報)帝國新領土竹島」, 『地學雜誌』 第196号, 東京地學協會, 1905, 282쪽.
- ③ 田中阿歌麿, 1905, 「隱岐國竹島に關する舊記」, 『地學雜誌』 第200号, 東京地學協會, 594~598쪽.
- ④ 田中阿歌麿, 1905, 「隱岐國竹島に關する舊記(承前)」, 『地學雜誌』 第201号, 東京地學協會, 660~663쪽.
- ⑤ 田中阿歌麿, 1905, 「隱岐國竹島に關する舊記(完結)」, 『地學雜誌』 第202号, 東京地學協會, 741~743쪽.
- ⑥ 田中阿歌麿, 1905, 「隱岐國竹島に關する地理學上

の智識, 『地学雑誌』第210号, 東京地学協會,
415~419·424쪽.

⑦ 「(雜録)竹島の位置新測, 『地学雑誌』第239号, 東京地学協會, 1908,
821쪽.

여기서 “새로운 섬의 발견”이나 “새로운 섬의 편입” 등의 정보를 『지학잡지』는 시의적으로 싣고 있는데, ①·②·⑥·⑦은 독도에 관한 기사이고, ③·④·⑤는 울릉도에 관한 기록이다. 본고에서는 우선 독도에 관련된 기사를 중심으로 당시 일본 지식인들의 울릉도·독도 인식을 고찰하고자 한다.

II. 「태정관 지령문」의 성안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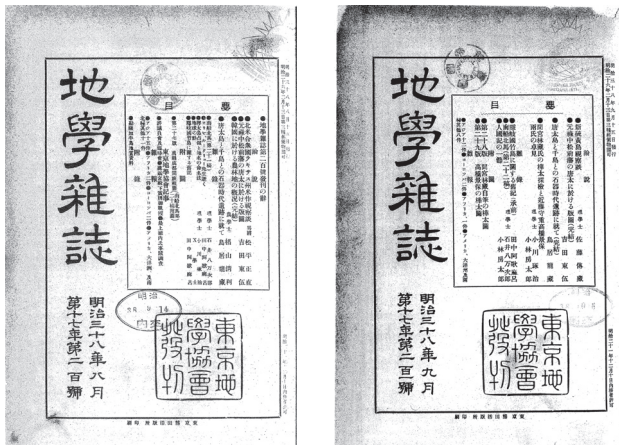
지학잡지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회인 ‘도쿄지학협회(東京地学協会)’의 설립배경과 회원의 구성 면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878년 오스트리아 주재 서기관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와타나베 히로모토[渡辺洪基]⁴가 빈지리학회 회원이 되어 활동하면서 국가 발전에 지학이 많은 가능성을 갖고 있음을 인식하고 일본에도 지학(地學)⁵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을 통감하였다. 귀국한 와타나베[渡辺]는 전 주러공사 에노모토 다케야키[榎本武揚], 조선대리공사 하나후사 요시모토[花房義質], 전 영국 왕립지리학회 회원 나베시마 나오히로[鍋島直大], 영미 유학 경험자인 나가오카 모리요시[長岡護美] 등이 협력하여 협회의 동지들을 모은다. 그리하여 1879년 4월 기타시라가와노미야[北白川宮能久親王]를 사장으로 에노모토[榎本]와 나베시마[鍋島]를 부사장, 와타나베[渡辺], 가쓰라 다로[桂太郎], 기타자와 마사나리[北沢正誠], 나가오카[長岡護美]를 간사로 하는 화려한 멤버로 도쿄지학협회를 창립하였다. 같은 해 회지 『도쿄지학협회보고[東京地学協会報告]』

4 와타나베[渡辺洪基]는 후일 초대 도쿄대학 총장으로 부했다.

5 여기서 지학(地學)이란 1870년대 후반 지리학(地理學, geography)을 지학(地球科學, earth science)이라는 용어로 잘못 번역한 것에서 비롯되는데, 지리학과 지구과학(지질학·지구물리학·광물학·암석학·기상학·해양학·고생물학 등을 포함한 개념으로 쓰였다. 즉 지질학(地質學), 광물학(鉱物學), 지리학(地理學) 등의 총칭으로 사용되었다.

를 간행하였고, 1893년에는 도쿄대학 지질학과 내의 지학회(地學會)와 합병한 이후는 『지학잡지』를 회지로 발행하고 있다. 창설 초기의 회원은 정치가, 군인, 외교관, 화족(華族)으로 구성되어 있었다.⁶

협회는 영국의 왕립지학협회를 본보기로 삼아 해외 조사에도 일찍이 관심을 가졌다. 1910~1916년에 걸쳐 ‘청국지리조사’라고 하여 중국 중남부에서 독자적인 조사를 감행하여 『지나지학조사보고』 3권 등의 성과를 출판하였다. 그런데 협회의 기관지인 『지학잡지』는 크게 논설, 잡록, 부도, 잡보, 부록 등으로 구성되어 팽창하는 메이지 일본의 영토정보를 소상히 전달하고 있다. 홋카이도의 개척이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고, 그 지역의 지리적 정보(지형, 거리, 물산, 연혁 등)를 담기도 하며 새로운 섬의 발견 등은 신속하게 「잡보(雜報)」란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전하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 제국주의 영토 확장의 첨병적 기관지의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 『지학잡지』 200호(1905. 8) 및 201호(1905. 9)

창립 초기의 ‘동경지학협회’는 황족(皇族)을 회장 또는 총재로 두고 임원에는 화족과 명사 등이 주축을 이루어 학자는 그다지 많지 않았었다. 즉 당시 일본의 상

⁶ 保柳陸美, 1979, 「東京地学協会100年の歩み」, 『東京地学協会創立100周年記念行事資料集』, 東京地学協会를 참조.

류사회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는 반학술·반국제친선단체와 같은 성격의 것으로 총회(연회)는 화족, 고관, 재계인, 외국의 공사 등 호화로운 얼굴들이 모습을 드러내는 곳이었다. 협회의 운영 경비 또한 이들의 기부금으로 충당한 것도 현재의 협회나 학회와는 아주 다른 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 협회의 강연회에는 외국을 시찰하고 온 사람, 외국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실시한 사람, 지리에 관한 과학적 지식이나 관측기술을 습득한 사람의 경험담을 발표하는 자리로, 이는 당시의 기관지 『도쿄지학협회보고』 및 『지학잡지』의 내용에서도 파악할 수 있다.⁷

특히 청일전쟁을 전후한 시기에는 조선·지나(支那) 등의 지도를 발행하여 이들 지역에 대한 세인들의 과학적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이 시기에 보급된 수많은 조선지도들 중에는 이웃 나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자료를 제공하던 전문적 단체들이 간행된 것들이 나타나는데, ‘도쿄지학협회’의 「조선전도」 역시 그러한 지도들 중의 하나다. 육군 참모본부의 첩보 활동이 군사적인 것이었다면 이러한 단체들의 활동은 보다 종합적인 목적을 가지고 전개되었다.

도쿄지학협회는 나중에 ‘동양학(東洋學)’을 발전시키는 데에 토대를 마련한 지역 연구단체들 중 가장 이른 시기에 설립된 것이었다. 초대 도쿄대학 총장을 지낸 와타나베(渡邊洪基)가 『조선사정(朝鮮事情)』을 번역한 에노모토(榎本武揚)와 조선 공사를 지낸 바 있는 하나후사(花房義質)의 힘을 얻어 설립하였다. 이 협회는 “지학(地學)에서 경제·군무(軍務), 기타에 관한 유익한 사건의 발명이나 본회의 견문(見聞)에 관계되는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간편한 방법으로 이를 편찬·출판하여 회원의 연구(講究)에 제공하고 아울러 일반에 보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지학이란 오늘날 말하는 지지(地誌) 또는 지리학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사할린과 중국에 관한 보고서를 내는 한편 『도쿄지학협회보고』를 간행하여 많은 자료를 제공하였다. 이 협회는 구성원이 주로 군인·관료·정치가였다는 점만 보더라도 학술적인 것보다 학문 외적으로 당시의 시대적 필요성을 추구했던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당시 조선, 지나, 시베리아 등지에서

⁷ 保柳陸美, 1979, 앞의 글, 72쪽 참조.

활약했던 일본 낭인의 보고기사를 책자로 엮어 펴내면서도 일반 지식인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회를 펼쳤던 것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지만, ‘도쿄지학협회’의 구성원은 낭인이 아닌 제도권의 관료, 외교관 등을 중심으로 전개한 메이지 정부의 기관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이 단체와 같은 시대에 조직되어 활동한 동방협회(東邦協會)·식민협회(植民協會) 그리고 동아동문회(東亞同文會) 등은 모두가 서로 경쟁하면서 비슷한 작업을 진행시켰다. 동방협회는 1890년에 조직되어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등을 조사 영역으로 포함시키고 있었다. 조선에 대한 관심도 커서 1891년 가네다(金田栖太郎)로 하여금 조선 내륙을 답사하게 하였는데, 기관지 『동방협회보고(東邦協會報告)』에 실린 그의 보고서와 더불어 조선 관계 자료들을 엮어 『동방총서 조선회보(東邦叢書 朝鮮叢報)』(1893)를 간행하기도 하였으며 거기에 조선 지도가 실려 있었다. 그 지도는 1년 뒤에 간행된 도쿄지학협회의 지도보다 훨씬 정확도가 떨어지는 지도였다. 당시의 간기(刊記)에 따르면 그때까지 실측된 지도가 없어 기존의 몇 가지 지도를 절충하고 이미 수행한 바 있는 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아울러 내륙을 여행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참고하여 이 규격에 맞추어 편집한 것인 만큼 아쉬운 대로 쓸 만한 지도가 되었을 것이라 하였다. 이러한 단체의 기관지에는 조선 관계 보고서들이 실린 바 있으며, 이 기관지가 1897년 4월에 제18권 4호로써 중단되자 이를 흡수한 『지학잡지』는 일찍이 1884년에 부록으로써 조선을 방문하여 조사한 바 있는 고트셰(C. Gotsche)·니시다(西化田久學)·이시이(石井八萬次郎)의 「조선지질개도(朝鮮地質概圖)」를 간행하기도 했다.

1900년에는 문부성에서 공익학술법인으로 인가되면서 임원의 구성이 크게 변화한다. 진보 고토라(神保小虎), 다나카 아카마로(田中阿歌鷹), 오가와 다쿠지(小川琢治) 등의 학자들이 주역을 맡으면서 학술단체의 성격이 짙어지고, 화족이나 사회적 명사들의 이름이 감소하게 된다. 또한 회원수도 발족 당시는 100명 정도가 되지 않았으나 1890년대 후반에는 150명 정도로 증가하였고 회원자격에는 상당한 제약이 있었기에 ‘도쿄지학협회’의 회원

이 된 것을 본인의 영예로 여길 정도였다.⁸

이와 같이 볼 때 ‘도쿄지학협회’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정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관변단체적 성격이 짙은 학술단체라는 점이다. 둘째, 서양의 과학적 지리정보를 습득하고 아시아 대륙의 조사결과를 공유하는 장으로써 『지학잡지』가 활용되고 있었으며, 셋째, 이는 근대 일본 제국주의의 팽창정책의 핵심적 첩병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넷째, 이들 팽창정책 관련 주요 인사들 즉 외교관, 군인, 고관, 지식인 등의 정보교류의 장으로 활용되었다는 것이다.

III. 『지학잡지』에 나타난 울릉도·독도 기록과 그 인식

1. 지학잡지(1901, 5): 일본해 중 섬 하나

당시 대륙의 지리적 정보를 본국에 전달하는 것은 중국과 시베리아, 조선 등지에 건너가 활동하고 있던 대륙낭인⁹들이었다. 이들 중 러일전쟁, 한일 강제병합 등 일본의 대륙침략 과정에서 막후에서 활동을 전개하였던 낭인조직으로 우치다 료헤이[内田良平]를 주간으로 하는 흑룡회[黑龍會]¹⁰가 있었다. 1890년경 조선으로 건너가 1899년 6월부터 약 1년 6개월 간 조선 연해의 지형과 지리, 주요 산물, 어업상황 등을 조사하였던 구즈우 슈스케[葛生修亮]가 1901년 2월 3일 우치다 료헤이와 함께 조직한 것이 흑룡회다. 『지학잡지』에 독도의 기록이 처음 등장하는 것이 1901년 5월호인데 ‘일본해 중의 섬 하나 ‘양코’라고 기록하고 있다.

8 保柳陸美, 1979, 앞의 글, 72쪽.

9 메이지정부가 들어서면서 각 번의 번사(藩士)들의 상당수가 직업을 잃게 되었으며 이들은 일본 국내에서 재기를 도모하던 일본낭인과 대륙으로 건너가 활동하던 대륙낭인으로 구별되었는데, 이 대륙낭인은 중국에서 활동하던 지나낭인, 시베리아의 시베리아낭인, 조선에서 활동하던 조선낭인 등으로 불리었다.

10 흑룡회(黑龍會)는 대아시아주의를 주창하는 근대 일본의 국가주의 단체로 삼국간섭과 의화단사건에 분개하여 현양사의 우치다 료헤이[内田良平]가 1901년 2월에 결성하였는데, 후쿠오카(福岡)를 중심으로 결성된 현양사(玄洋社)에서 분파된 낭인조직으로 1890년대 후반에는 많은 낭인들이 조선에서 활동하였다.

일본해 중의 섬 하나(양코)

지난 4월 중순 도쿄 발행의 각 신문은 일본해 중에서 섬 하나를 발견한 것을 보도하였다. 그에 따르면 한국 울릉도(鬱陵島) 동남쪽을 지나 30리(里), 우리 일본국 오키(隱岐)를 서북으로 떨어지기를 거의 같은 거리의 해상에 아직 세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섬 하나를 발견하였다. 이 섬은 아직 본방(일본-역자)의 해도(海圖)에는 실려 있지 않고, 영국의 해도에도 또한 게재되어 있지 않다. 이 섬의 존재를 확인해보니 현재 울릉도에 사는 일본인이 맑은 날 산의 높은 곳에서 동남을 바라보면 멀리 섬의 형상이 보인다고 한다. 지금 이 섬 발견의 역사를 듣고자 2년 전 규슈 주변의 잠수기선이 어족을 쫓아 멀리 바다 가운데를 나가자 익숙하지 않은 곳에 섬 하나의 존재를 발견하고 기뻐하며 이를 근거지로 정하여 그 사방의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하였다. 이 주변은 어족의 서식이 매우 많았고 강치(海馬)가 수백의 무리를 이루어 잠수기선을 방해하여 결국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왔다고 한다. 이 배에 탔던 잠수업자가 실제 본 바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 섬은 길이 30정(町)¹¹에 가깝고, 구릉이 아주 높지는 않지만 도처에 덩굴이 무성하다. 섬의 형태가 매우 굴곡이 심하여 어선을 정박하여 풍랑을 피하기에 아주 편리하다. 다만 지상에서 수척 사이에는 땅을 뚫어도 물을 얻을 수 없어 현재로서는 수산물 제조장으로서의 가치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자, 실업가는 오히려 탐험을 실시할 여지가 충분하다. 한일 어민은 이를 가리켜 양코(ヤンコ)라고 부른다고 한다. 이상의 기사에 따르면 그 위치는 원래부

터 확실하지 않았고, 생각건대 이 섬은 아직 해도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나 그 기사 및 칭호에서 추측하면 이는 Liancourt rocks(리양쿠르 락스)에 부합한다. 혹은 이를 지칭하는 것이 없다고 의심하지만 또한 그 정확한 단정은 상세한 보고를 얻은 후에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참조를 위해 다음에 조선수로지(朝鮮水路誌) 제2권(1899년 수로부 간행) 263쪽에서 리양쿠르토섬(リアンコト)에 관한 기사를 옮겨둔다.¹²

11 거리의 단위로 1정(町)=60간(間), 109.09m; 30정(町)은 약 3,273m.

12 日本海中の一島嶼(ヤンコ) 去る四月中旬 東京發行の各新聞紙は日本海に一島嶼を發見せることを報せり.其いふ所に從へは 韓國鬱陵島を東南に去ること三十里 我日本國隱岐を西北に距ること殆んど同里數の海上に 未だ世人に知られざる一島嶼を發見せり.該島は 未だ本邦の海圖には載らず イギリスの海圖にも亦之を記せされとも 其島の存在は確實

여기서 보면 ① 지난 4월 도쿄발행의 신문이 일본해(동해)에서 아직 세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섬 하나를 새로 발견하였는데 ‘양코’라는 섬이며, ② 조선의 동남쪽에 조선과 일본의 등거리인 30리(=120km) 정도에 위치한다고 한다. ③ 이는 일본의 해도와 영국의 해도에도 실려 있지 않은 새로운 섬이라는 것이다. 또한 ④ 이를 처음 발견한 것은 1899년경 규슈 주변의 잠수기선이며, ⑤ 어족자원이 아주 풍부하고, ⑥ 섬 형태가 굴곡이 심하여 어선을 정박하여 풍랑을 피하기에 아주 좋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한일 어민은 이를 ‘양코’라고 부른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학잡지』의 회원들이 해군수로부, 외무성 및 내무성의 관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미 메이지 정부에서는 『기독교사략(磯竹島事略)』(1875, 내무성), 『태정관지령(太政官指令)』(1877, 태정관), 『죽도고증(竹島考證)』(1881, 외무성) 등을 통해 당시 송도(松島) 혹은 리양쿠르암(리양코)이라고 했던 독도의 인식을 명확히 하고 있었다. 또한 『조선수로지』 제2판(1899)에서도 명확히 리양쿠르암(リヤンクール岩)이라 하여 독도의 연혁을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세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다거나 일본과 영국의 해도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섬이라는 것은 이 섬의 중요성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양코’섬은 한국과 일본의 거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여 소속이 불분명하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다. 또한 한일 어민이 모두 양코라고 부르며 규슈의 잠수기선이 처음 이 섬을 발견하였다고 하여 ‘무주지설’을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학잡지』의 기사보다 앞서 구즈우 슈스케가 흑룡회 『회보(會報)』에 미발견의 섬 ‘양코’를 발견하였다고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양코섬 발견의 정보는 흑룡회를 통해서 유포¹³되며, 당시 신문 등의 기록을

にして、現に鬱陵島にありし日本人は晴天の日 山の高所より東南を望みたるに遙に島影を認めたりといへり、今此の島発見の歴史を聞くに一兩年前 九州邊の一潜水器船が 魚族を追ふて遠く海中に出てたるに、見慣れざる所に一島嶼の存在せることを發見し 喜んで之を根據地と定め其四隣の海中を漁り回りたるに、此の邊魚族の棲息せるもの頗る多かりしも 海馬數百群を爲して潜水器船を沮みたれば終に目的を終へずして引還したりといふ、此の船中にありし潜水業者の實見したる所なりとて報する所によれば 其島は長さ三十町に近く 丘陵甚た高からされとも處々に藁蕪穢、島形又極めて屈曲に富み漁船を泊し風浪を避くるに最も便あり、只地上より數尺の間は之を鑿るも水を得ず 從て現今の所にては水産物製造場としての價値は乏しといふべし、故に學者實業家は猶充分なる探検を施すの餘地を留む、日韓漁民之を指してヤンコと呼へりといふ 以上の記事に據るに其位置固より確實ならず、想ふに此の島は未だ海圖に示されずといふも其記事及び稱呼より之を察せば恰もLiancourt rocksリアンコートロックに符合せり、或は之を指すに非ずやと疑はるゝも 尚其精確なる斷定は精細なる報告を得たる後に非れは下す能はず、且らく参照の爲めに 左に朝鮮水路誌第二版(明治三十二年水路部刊行)二六三頁よりリアンコート島に關する記事を抄録せん、『地学雜誌』13輯148卷(1901. 5), 301~302쪽.

13 김수희, 2012, 「흑룡회의 독도 침탈 기

순차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흑룡회 『會報』(1901. 3. 10) ⇒ 『東京日日新聞』(1901. 4. 13) ⇒ 『地学雜誌』
(1901. 5. 15)
⇒ 『The Straits Times』(1901. 6. 22) ⇒ 『The Pacific Commercial Times』
(1901. 7. 30)

구즈우가 흑룡회 『회보』에 발표한 정보는 한 달 뒤에 『도쿄일일신문』에 게재되었고, 다시 한 달 후 『지학잡지』에 실리게 된다. 그리고 이 정보는 다시 해외의 영문판 일간지에도 게재된다. 영문판은 싱가포르와 하와이의 일간지다. 『지학잡지』에서는 이 글의 필자를 밝히고 있지는 않으나 김수희(2012)¹⁴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거의 동일한 내용의 정보가 실려 있어 구즈우 슈스케가 필자일 가능성이 높다. 위의 기사들의 내용이 거의 동일하나 『회보』에 “서국쪽(西國筋)의 한 잠수기선”이 『지학잡지』에는 “규슈 주변의 한 잠수기선”이라고 약간 수정되었고 이 정보를 1903년의 『한해통어지침(韓海通漁指針)』에서는 “아미구치현(山口縣)의 잠수기선”으로 된 것 정도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아직 해도에 나타나지 않았다고는 하나 그 기사 및 호칭에서 추측하자면 리양쿠르암(Liancourt rocks)에 부합한다고 하여 이어 『조선수로지』의 기사를 함께 게재하고 있다.

리양코르트열암(リアンコート列岩) 이 열암은 서기 1849년 프랑스의 선박 ‘리양코르트(Liancourt)’가 처음으로 발견하고 호칭은 배 이름을 따서 리양코르트열암이라 명명하였다. 그 후 1854년 러시아 ‘프레가트’형 함대인 ‘팔라스(Pallas)’호는 이 열암을 ‘메날라이(Menalai)’ 및 ‘올리부차(Olivutsa)’열암이라 불렀으며, 1855년 영국 함선 ‘호르네트(Hornet)’호는 이 열암을 탐험하고 ‘호르네트’열암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이 배의 함장 포르시스(Forsyth)의 말에 따르면 이 열암은 북위 37도 14분 동경 131도 55분 지점에 있는 2개의 불모의 암초로 이

도와 ‘양코도 발견’기록의 재검토, 『전북사학』 제41집, 215~221쪽.

14 김수희, 2012, 위의 글, 229쪽.

루어져 새뿔이 항상 섬 위에 퇴적하고 이 때문에 섬의 색이 하얗다. 그러므로 서북서에서 동남동으로 길이가 약 1리(里)고, 두 섬 사이의 거리 1/4리(里)로써 보이는 곳마다 암초로 이어져 섬을 연결한다. ○서도(西嶼)는 해변상의 높이 410척으로 형태는 사탕탑과 같다. 동도(東嶼)는 비교적 낮고 윗부분이 평평하다. 이 열암 부근의 수심은 아주 깊은 것 같으나 그 위치는 실로 하코다테(函館)를 향하여 일본해를 향해하는 선박의 직수로(直路)에 해당하므로 아주 위험하다고 한다.¹⁵

1899년 『조선수로지』 제2판의 기사를 그대로 인용하면서도 추측건대 리양쿠르암에 부합하지만 이를 지칭하는 호칭이 없다고 의심하고 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단정은 뒷날 상세한 정보를 얻은 후에야 할 수 있다고 의도적으로 유보하면서 새로운 섬일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기사는 이후에 『한해통어지침』(1903)에 실리면서 ‘제국의 새 섬’ 획득을 위한 정보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2. 제국 신영토 죽도: 잡보 (1905, 4)

이렇게 흑룡회를 통해 얻어진 ‘양코섬’의 정보가 각종 지지와 신문에 보도된 후 잡지 『지학잡지』에서 보이지 않다가 다시 나타나는 것이 독도 편입 이후인 1905년 4월호다. 여기서는 잡보란에서 ‘제국의 신영토 죽도’라는 표제로 등장한다. 독도 편입이 2월 22일인 것을 생각하면 매우 신속히 그 정보를 게재하고 있는 것이다.

제국의 신영토 竹島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지사는 동현고시 제43호에서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 오키노쿠니(隱岐國)에서 서북 85리(裡)에 있는 도서

15 リアンコールト列岩

此列岩は洋紀一八四九年佛國船「Liancourt」初て発見し称呼を其船名を取る。其後一八五四年露國「フレガット」形艦「Pallas」号は此列岩を「Menalai」及「Olivutsa」列岩と名つけ一八五五年英艦「Hornet」号は此列岩を探検してホルネット列島と名つけり。該艦長「Forsyth」の言に據れば此列岩は北緯三七度一分、東經一三一度五五分の處に位する二坐の不毛嶼にして鳥糞常に嶼上に堆積し、嶼色為めに白し而して北西々西至南東々東の長さ凡一里二嶼の間距離約二鏈半にして見たるところ一礁脈ありて之を連結す。●西嶼は海面上高さ凡四一呎にして形糖塔の如し。東嶼は較低くして平頂なり。●此列岩附近水頗る深きか如しと雖、其位置は實に函館に向て日本海を航行する船舶の直道に當れるを以て頗る危険なりとす。

를 죽도(竹島)라고 칭하고 지금부터 시마네현(島根縣) 오키도사(隠岐島司)의 소관으로 정한다는 취지의 고시를 하였다.

이 도서는 한국의 범위에 속하는 울릉도(송도) Dagelet Island와 함께 일본 해(동해) 상의 고도(孤島)로서 아직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는다. 두 섬 모두 암석으로 이루어져 그 하나는 둘레 15정(町)¹⁶ 정도, 두 섬을 합하여 1리(里)¹⁷ 정도. 섬 위에는 새똥이 항상 퇴적하여 흰색을 띠고 음료수(飲料水)는 있지만 수목이 없고 겨우 파란 풀을 볼 수 있는 정도며, 감치(海驢)가 아주 많이 서식하기 때문에 매년 어업으로 도항하는 자가 많다. 열암 부근에는 해저가 깊다고는 하나 그 위치가 하코다테(函館)를 향해 일본해(동해)를 항행

하는 선박의 항로에 해당하므로 매우 위험하다고 한다.

동 열암은 서기 1849년 프랑스 선박 리앙쿠르(Liancourt)가 발견하여 그 호칭을 선명에서 딴 것이다. 그 후 1854년 러시아의 프레가트형 함선 팔라스(Pallas)호는 이 열암을 메날라이(Menalai) 및 올리부차(Olivutsa) 열암이라고 명명하였고, 1855년 영국 함선 호르네트(Hornet)는 이것을 호르네트열암이라 이름을 붙였다(1899년 일본 수로부 간행 『조선수로지(朝鮮水路誌)』에 따름).¹⁸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고시 43호로써 일본제국의 신영토가 되었으며, 이는 오키섬에서 85해리(裡), 약 157.4km 떨어져 있다고 하여 독도의 위치를 정확히 나타내고 있다. 竹島(독도)는 한국의 범위에 속하는 울릉도와 함께 동해상의 고도로 아직 어느 나라의 영역에도 속하지 않는 섬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무주지선점론에 따른 독도 편입의 당위성을 내세우고 있다. 그 이후의 기사는 1899년의 『조선수로지』(제2판)의 정보를 이제는 그대로 답습하여 담고 있다. 이것은 양교섬 발견의 기사와는 사뭇 대조적인 기술이다. 새똥이

16 109.09m×15町=1,636.4m.

17 1리(里)=3,927.2m.

18 帝國新領土竹島 明治三八年二月二二日を以て島根縣知事は同縣告示第四三号に於て北緯三七度九分三〇秒、東經一三一度五五分、隱岐國を去る西北八五哩に在る島嶼を竹島と稱し爾今島根縣所屬隱岐島司の所管と定めたる旨を告示したり。該島嶼は韓國の範圍に屬する鬱陵島(松島)Dagelet Islandと共に、日本海上の孤島にして、未だ何れの國にも屬せず。二島共岩石より成り其一は周圍一五町余、二島を合して周圍一里余、島上には鳥糞常に堆積して白色を呈し、飲料水は有れども樹木なく僅かに青草を見るのみにて海驢頗る多く棲息せるが故、年々漁業に渡航するもの多し。列岩附近は海底深しと雖も、其位置函館に向つて日本海を航行する船舶の航路に當るを以て極めて危険なりと云ふ、同列岩は西曆一八四九年佛船リアンクールLiancourtの発見にかゝり其稱呼を船名に取りたり超えて一八五四年露國フレガート形艦パラスPallas号は此列岩をメナライ Menalai及オリヴァツウOlivutsa列岩と名け、一八五五年英艦ホルネット Hornet号は之れをホルネット列岩と名けたり(明治三二年日本水路部刊行朝鮮水路誌に拠る)。

섬 위에 많이 퇴적하여 하얗고, 강치가 많이 서식하므로 강치 어렵으로 도 항하는 자가 많으며, 1849년 프랑스의 리앙쿠르호의 발견, 1854년 러시아 함선 팔라스의 발견, 1855년 영국 함선 호네트의 발견으로 독도의 명칭이 변화했다는 것을 적고 있다.

3. 다나카 아카마로(1905. 8): 오키국 죽도에 관한 구기(旧記) 1

다음으로 독도가 등장하는 것이 2개월 후인 「오키국의 竹島에 관한 구기」라는 기사에서다. 이것은 세 차례에 걸쳐 연속으로 게재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울릉도에 관한 기사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오키국 죽도(隱岐國竹島)’라고 하여 예전에 죽도라는 명칭이었던 울릉도가 마치 오키국에 부속되었던 것처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에도시대 오키섬에서 울릉도·독도를 ‘오키국 죽도’라고 인식한 적은 거의 없었다. 여기서 앞부분에서 보면 죽도(독도)가 지난 2월 22일 일본제국의 영역이 되어 오키도사의 관할로 되었으며, ‘일본해 해전(러일전쟁)’을 알리는 관보를 통해 리앙쿠르암이라는 명칭으로 세상에 알려졌음을 기록하고 있다.

동 섬(竹島=독도)은 지난 2월 22일 시마네현령으로 공공연히 우리 제국의 범위에 들어와 행정상 오키도사(隱岐島司)의 관할로 되었다. 그리고 그 당시 동섬이 외국인에 의해 발견되었던 사실 및 지형에 관한 일반을 소개해둔다 (본지 제17년 196호 참조). 이 땅은 지난 5월 27~28일의 일본해 해전에서 리앙쿠르트 암 Liancourt Rocks이라는 명칭 아래 세상에 알려졌다. 지금 이 섬의 연혁을 생각하면, 그 발견의 연대는 분명하지 않으나 프랑스선 리앙쿠르호의 발견보다 훨씬 이전에 본방인(일본인-역자)이 아는 곳이다. 도쿠가와 씨의 시대에 이것을 조선에 내준 것 같으나, 그 이전에 이 섬은 오키(隱岐)에 혹은 호키(伯耆), 이와미(石見)에 속하였다. 메이지 초년에 이르러 (태정관제의) 정원(正院) 지리과(地理課)에서 그에 대한 본방의 영유를 부인함으로써 그 후에 출판하게 된 지도는 대부분 그 소재를 나타내지 않게 되었다. 1875년(明

구회'가 주장하는 '죽도의일도'가 '죽도라고도 부르고 송도라고도 부르는 하나의 섬 울릉도'라는 주장이 거짓임을 명확히 방증하는 근거라 할 수 있다. 즉 '죽도의일도'를 순리적으로 읽으면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이고 이 두 섬을 일본의 영역이 아니라 조선의 영역으로 인정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이케우치 사토시(池内敏)가 「태정관지령」은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지 조선의 영토라는 것은 아니다」고 하는 주장이 타당하지 않음을 입증해주는 것이기도 하다.²⁰

4. 다나카 아카마로(1906. 6.): 오키국 죽도 지리학상 지식

1905년 8월부터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오키국의 죽도에 관한 구기」라는 기사가 연속하여 나온다. 독자는 이를 보고 '죽도'를 울릉도와 혼동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이듬해 오로지 독도에 관한 사항만을 뽑아 새롭게 정리한 것이 「오키국 죽도 지리학상 지식」이다. 어떤 의미에서 "오키국 죽도"라고 전제하여 「죽도도해」의 역사를 다시 말해 울릉도 도해의 경위를 자세하게 기술함으로써 당시의 울릉도[竹島]가 오키국 부속이었음을 이미 지하도록 하는 의도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앞의 「구기(舊記)」의 내용은 모두 울릉도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부기(附記)에서 "이상의 기사에 따르면 본지 제200호, 201호 및 202호에 게재한 「오키국 죽도에 관한 구기」의 기사는 완전히 죽도(竹島)의 기사가 아니라 울릉도(鬱陵島)의 기사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당시 일본 항해술이 서툴렀기 때문에 이 군도(울릉도)를 혼동하여 사용하였고 따라서 명칭 혼란이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작년 이맘때, 일본해 해전에서 일거에 적함을 섬멸하여 죽도(竹島, 독도)는 갑자기 세상에 그 이름이 알려졌음에도 이에 관한 지리학상의 기사가 거의 없다. 다만 조선수로지(朝鮮水路誌, 263쪽)에서 리양코르트열암이란 명칭 하에 극히 간단한 기사를 볼 뿐이었다. 얼마 전 우리 해군이 울릉도에서 이 섬의 실건자로부터 듣고서 제국 군함

²⁰ 池内敏, 2012, 『竹島問題とは何か』, 名古屋大学出版会, 147~149쪽.

의 아무개가 그 섬을 조사하였다. 이후 1905년 8월에 이르러 시마네현 지사의 동 섬 시찰 등이 있었다. 우리는 이상의 여러 보고를 종합하여 竹島에 관한 지리학상의 지식을 뽑아 정리한다.

竹島는 북위 37도 14분, 동경 131도 55분에 해당하며 해도 상에는 3점으로 표시되는 오키(隠岐)에서 85리(哩),²¹ 하마다(浜田)에서 150리(哩), 또 울릉도에서는 50리(哩)의 해상 멀리서 이것을 볼 수가 있다. 방인(일본인·역자)은 울릉도를 송도(松島)라고 칭하는데 대해 이것을 죽도(竹島)라고 명명하였다. 외국인은 1849년 처음으로 발견하여 프랑스선 리앙쿠르호의 이름을 따서 그 이름을 리앙코르트섬이라고 하고, 한인(韓人)은 이를 독도(獨島)라고 쓰고, 본방의 어부 등은 일반적으로 '리앙코'섬이라 칭하여 모두 영국명 리앙코르트의 전와에 따른 것이다. 죽도의 지형은 한 개의 좁은 수도[길이 180간(間)²² 폭 50~60간, 깊이 5섬(尋)²³]로 떨어져 서로 마주하는 2개의 주섬과 그 주위에 바둑판처럼 흩어진 몇 개의 소서(小嶼)로 구성되는 바다 가운데 하나의 소군도다. 이들 소서는 대체로 평평하여 상부가 겨우 수면 위로 드러나 주섬의 주변은 기이한 경관을 나타내는 동굴이 많아 모두 바다표범(海豹) 무리의 서식지가 된다. 주섬은 섬 전체가 대부분 불모의 독암(禿岩)으로 바닷바람이 항상 전면으로 불어온다. 한 그루의 수목도 없고 남쪽에만 잡초가 약간 자라는 것을 볼 뿐, 주위가 단애절벽으로 둘러싸여 연성의 석층으로 이루어져 주변 어느 쪽에서도 등반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섬 전체에 평탄한 지면이 부족하고, 수도의 양측으로는 협소하고 평탄한 몽돌해면이 2~3개소 있지만 모두 파도의 내습을 피할 수 없다. 동도에는 지푸라기로 만든 움막집이 있는데 이 움막집은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郎) 등 竹島어업회사의 소유인 것이다. (중략) 출어자는 울릉도를 근거지로 하고, 60~70석 선적의 일본배(和船)을 사용하여 이곳에 도착해서는 배는 육상에 올려두고 섬의 움막집에서 매회 10여 일간 채재하며 다량의 수확을 하고, 어럽 후 또는 풍파가 심하여 정박하기 어려울 때는 바로 순풍을 타고 울릉도로 피난하게 된다. 출어자의 수는 1회에 40~50명을 보통으로 한다. 이곳에서 나는 바

21 1리(哩)=1마일=1.61km.

22 1간(間)=1.8182m.

23 두 팔을 잔뜩 폈을 때의 길이. 1섬(尋)=약 1.8m.

다사자는 1903년 이것을 잡아 오사카로 수출하는 자도 있으나, 완전히 실패하면 이듬해에 다소의 수요가 생기기도 한다. 오늘에 와서는 제혁업(製革業)의 진보와 수요의 증가로 인해 군대용 배낭에 붙이는 것도 소가죽 대용으로 쓰기에 이르렀다. 기름은 정제하여 고래기름에 떨어지지 않는 좋은 기름을 얻을 수 있고, 고기는 식용으로 하거나 또는 비료로 제공하는 유박(油糟)은 아교로 사용할 수 있다. 이를 말하자면 이 섬은 일본해의 항로에 있으며 항해자를 위해서는 아주 좋은 목표물이 된다고 하지만 피박지가 없고 또한 음료수가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바다사자가 많이 남으로써 그 포획업이 조금 유망할 뿐이다.²⁴

여기서는 오직 독도에 관한 지리적인 특징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는데, 『조선수로지』에 리양쿠르암에 관한 간단한 기사밖에 없어서 1904년 9월 25일 군함 니이타카호(新高丸)의 실측과 1905년 8월 시마네현 지사의 독도 시찰 등에서 얻은 정보를 모아 정리하고 있다. 독도는 북위 37도 14분, 동경 131도 55분에 해당하며 오키에서의 거리가 85마일, 137km이고, 울릉도에서 50마일, 80.5km 떨어져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울릉도에서는 50마일 해상에서 독도를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 울릉도를 일본인들이 송도라고 하므로 독도를 죽도라고 명명한 이유라고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울릉도에서는 80km 정도의 해상에서 독도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앞에서 “울릉도에 있는 일본인은 맑은 날 산의 높은 곳에서 동남을 바라보면 멀리 섬의 형상이 보인다”는 기사와 일맥상통하는 것

24 去年の今日、日本海、海戦に於て一挙敵艦を殲滅し、竹島は俄かに世に其名を知られしに、関わらず之に關する地理學上の記事の存するもの殆どなし。されば僅かに朝鮮水路誌(263頁)によりリヤンコールト列島の名稱の下に極めて簡單なる記事を見しあるのみなりしが、曩きに我海軍が鬱陵島に於て此島の実見者より聞き取り、續て帝國軍艦某の其島を調査し、越えて38年8月に至りては島根県知事の同島視察等あり、吾人は以上の諸報告を綜合し以て竹島に關する地理學上の智識を抄録せん。竹島は北緯37度14分、東經131度55分に當り海図上には三点を以て示され、隱岐より85哩、濱田より150哩、又鬱陵島よりは50哩、海上遙かに之れを望むを得べし。邦人は鬱陵島を松島と稱するに對し之に竹島と命名すと雖も外人は1849年始めて発見せしフランス船リアンクール号の名に因みて其名をリアンクール島と云ひ、韓人は之れを獨島と書し、本邦の漁夫等は一般に「リヤンコ」島と稱せり。蓋し英名リアンコールトの轉訛に依るなる可し。竹島の地形は一個の狹水道(長さ180間、幅5・60間、深度5尋)を隔てて相對峙する二個の主島と、其周圍に基列する數個の小嶼よりなる洋中の一小群島なり。是等の小嶼は概ね扁平にして上部僅かに水上に現出し、主島の周辺は奇觀を呈する窟洞に富み共に海豹群の棲窟たり。主島は全島殆んど不毛の秃岩にして海風常に全面を吹き荒し、一抹の樹木なく南面のみ雜草の僅かに生ずるを見るのみ全周斷崖絶壁を以て囲まれ軟性の石層より成り、周辺何れよりするも攀登殆んど不可能なり。全島平坦の地に乏しく、水道の兩側に於ては狹少なる平坦の砂礫二・三ヶ所あれども皆洋濤の襲來を免れず。東島に於ては菴葦の仮小屋あり、此小屋は中井養三郎の竹島漁業会社の所有にかかるものなり(中略) 出漁者は鬱陵島を根拠地とし六七十石積の和船を使用して此地に到りそれより舟は陸上に引き揚げ置き島上の小屋に於いて毎回十數日

이다. 그리고 울릉도를 송도라고 하기 때문에 독도를 새로운 이름으로 죽도라고 불렀다고 하나, 당시 해도를 제외한 일반적인 울릉도의 명칭은 여전히 죽도였다. 그리고 주목할 것은 군함 니이타카호의 정보를 함께 담고 있다는 것이다. 외국인인 1849년 리양쿠르호의 이름을 따서 리양코르트섬이라고 하고, 한인은 이를 독도라고 쓰고 본방(일본) 어부들은 일반적으로 ‘리양코섬’이라 칭하는데 모두 영국명 리양코르트의 전와에 따른 것이다. 여기서 ‘영국명’은 ‘프랑스명’의 단순한 미스로 보인다. 그리고 잡보란에서는 울릉도에 거주하는 일본인의 현황을 담고 있다.

間滞在し、多量の収穫をなし獵後、または風波強く繁泊し難きときは直ちに順風を得て鬱陵島に避難するなり。出漁者の数は一回に四五十名を普通とす。

此地に産する海豹は明治36年之を獵し大阪に輸出したるものありしも全く失敗せしが翌年に至り多少の需用あり、今日に至りては製革業の進歩と需用の増加とに依り軍隊用背の表に附したりしものも牛皮の代用となるに至り、脂肪は精製して鯨油に劣らざる良品を得可く、肉は食用とすべく又肥料に供せらる精油は膠に用ゆ可き見込みあり。之を要するに、此島は日本海の航路に当り航海者の為には恰好の目標となりと雖も、避泊地なく又飲料水に乏しきを以て何等の用をなすこと能はず。畝に海豹多く産するを以て其補獲業のや有望なるのみなり。

25 〈雜報〉鬱陵島本邦狀況 鬱陵島は日本人の在住者303名 内男285名 女118名、戸数96戸あり。而して韓民は戸数659、人口3700余を算せり。陸産は櫨のトガ等の材木にして大豆之に次ぎ、例年6,7000千石の収穫ある。昨年は不作にて35,600石の収穫に過ぎず。海産は烏賊、海鼠、海苔にして警察官は巡查部長以下2名あり。又郵便受取所ありて毎月一回釜山と交通を為せり。邦人の自治体機関として居留民総代あり、又小学校の設けもあり、在住者の職業は貿易商、木挽、漁業、船乗業等の由なり(39年4月29日在釜山朝鮮日々新聞)。

〈잡보(雜報)〉 울릉도 본방인 상황 울릉도는 일본인의 거주자 303명, 그중 남자 185명, 여자 118명, 호수 96호가 있다. 그리고 한국인(韓民)은 호수 659, 인구 3,700여 명에 이른다. 육산(陸産)은 느티나무 등을 재목으로 하고, 콩이 그다음이다. 예년 6,000~7,000석(石)을 수확한다. 작년에는 흉작으로 3,500~3,600석의 수확에 불과하였다. 해산(海産)은 오징어, 해산(海鼠), 김이 있고, 경찰관은 순사부장 이하 2명이 있다. 또한 우편수취소가 있어서 매월 1회 부산과 교통을 하며, 방인(일본인)의 자치체기관으로 거주민 대표(居留民總代)가 있다. 또한 소학교가 설치되어 있고, 거주자의 직업은 무역상, 톱질꾼, 어업, 선원업 등이 있다. (1906. 4. 29, 재부산 조선일일신문)²⁵

1906년 6월 현재 울릉도 거주 일본인은 모두 96호, 303명으로 남자가 185명, 여자가 118명으로 상당히 많은 일본인이 정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인은 호수 659호, 인구 3,700여 명이라고 한다. 당시 한국인과 일본인을 합하면 약 4,000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느티나무를 목재로 하고 콩이

6~7천 석 정도 수확되며, 해산물로 오징어·해삼·김이 나며 경찰이 2명 주재하고 있었다. 일본인 자체기관으로 닛쇼조합(日商組合)이라는 거류민기구가 설치되었고 소학교가 설치되었으며 이들의 주 직업은 무역상, 톱질꾼, 어업, 선원업 등이었다고 한다.

죽도(竹島)의 위치 신측(新測) 오키열도의 서북쪽에 있는 죽도는 이전에 본지(1906년 6월 제210호, 다나카[田中] 씨 논문 참조) 상에 기재하였지만 올해 해군수로부의 측정에 따르면 동 섬은 오키열도의 북서 약 80리(哩)에 있다. 이 두 섬 중에 동도(女島)는 북위 37도 14분 8초, 동경 131도 52분 22초라고 한다. 관보(제7597호, 41년 10월 21일),²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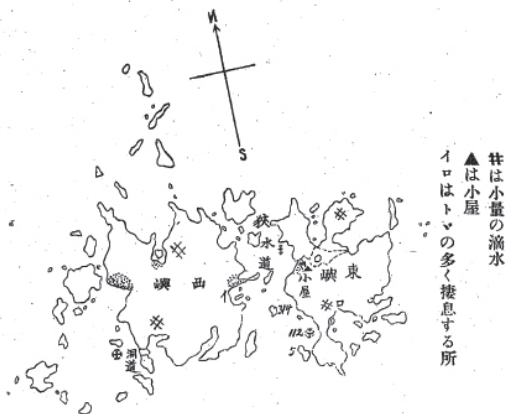
1908년에 이르러서는 독도에 대한 위치 측량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탓일까 「죽도(독도)의 위치 신측」에서는 동도의 위치를 신측한 결과를 게재하고 있다. 당초 북위 37도 14분에서 37도 14분 2초로, 동경 131도 55분에서 동경 131도 55분 22초로 정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일본의 독도 편입 시기 전후의 울릉도·독도 인식을 보면, 우선 명칭에서 19세기 후반 일본 산인지방의 명칭과는 달리 독도를 ‘양코섬’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이것은 당시 수로지나 해도에 나타나는 독도 명칭 ‘리앙쿠르암’과는 다른 ‘새로운’ 섬으로 ‘양코섬’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우익낭인 흑룡회의 ‘독도무주지설’ 유포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1899년 6월 27일부터 1900년 5월 20일에 걸친 약 1년 6개월간 구즈우 슈스케가 조선 연해에서 지형과 지리, 해리와 기후, 주요 수산물, 일본 어민의 어업 상황, 조선 어민의 어업 상황을 상세히 조사하였고 이는 『한해통어지침』(1903)으로 정리되었다. 여기서 조사된 새로운 섬 ‘양코’의 발견 정보는 보다 앞서 흑룡회 『회보』에 발표되면서 일본 국내외 각 신문에 게재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똑같은 기사가 도쿄 지학협회의 『지학잡지』의 기사로 실리게 된다. 물론

26 竹島の位置新測 隠岐列島の北西方にある竹島は嘗て本誌(三九年六月二〇号田中氏論文参照)上に記載せしが本年海軍水路部の測定によれば同島は隠岐列島の北西訳八十哩にあり、該二嶼中の東嶼(女島)は北緯三七度一四分八秒東經一三一度五二分二秒なりと云ふ。官報(第七五九号 四一年十月廿一日)。

이 기사의 필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구즈우 슈스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새로운 섬 ‘양코(독도)’가 일본 오키노시마와 울릉도에서 거의 같은 거리에 있다는 것이다. 당시 해도와 수로지 등에 기재되고 있었음에도 일본과 영국의 해도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은 섬이라고 하여 ‘리양코’가 아닌 ‘양코’라는 새로운 섬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한 가지 특기할 만한 것은 울릉도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이 울릉도에서 멀리 독도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표현되고 있는 점이다. 울릉도에서 87.4km의 거리에 있는 독도는 자연스레 울릉도에서 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학잡지』에서는 새 섬을 발견하였다면서도 이 섬이 리양쿠르암과 부합하며, 프랑스의 포경선 리양쿠르호보다 일본인이 훨씬 먼저 이 섬을 알고 있었다고 강조함으로써 역사적 정통성을 찾고자 하고 있다. 즉 원래 일본이 지배하던 곳을 도쿠가와 시대에 일본이 조선에 건네주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 섬은 원래 오키노시마에 속하였다거나, 호키노쿠니에 속하였다거나, 하마다번에 속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담고 있다. 이것은 후일 1905년 2월 22일의 독도 편입 사실을 정당화 또는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관변적 학술지로서의 『지학잡지』의 성



〈그림 2〉 『지학잡지』에 그려진 독도 지도

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오키국 죽도에 관한 구기(旧記)」에서 다나카(田中阿歌麿)는 마치 울릉도쟁계(竹島一件) 때 일어난 울릉도에 관한 기록을 ‘죽도’로 내세우면서 당시의 죽도(울릉도)가 마치 오키국의 부속이었음을 부각하고 있다. 여기서 구기의 기사를 보면 완전히 울릉도에만 관련되는 내용을 3차례의 연재로 게재하여 독도(竹島)의 기록인 것처럼 다루고 있다. 그러나 뒤에서 이를 수정하기 위해 독도에 관한 기사만을 새로 게재하여 독도의 지형과 위치, 물산 등을 세밀하게 다루고 있다.

여기서 『지학잡지』의 울릉도·독도에 대한 지리적 정보를 보면 흥룡회가 『회보』나 『한해통어지침』 등에서 유포하고 있는 정보와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또한 『수로지』의 울릉도·독도 정보와도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메이지 정부 태정관제 하의 지리과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를 부인한 점, 즉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역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당시의 정부 수뇌부를 이루고 있던 이들 지식인들에게는 ‘태정관지령’ 발령의 결과 울릉도(竹島)와 독도(獨島)는 조선의 영역이라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IV. 맺음말

일본 외무성의 독도에 대한 공식 견해는 “죽도(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며 현재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것이고, 17세기 중반에 이미 독도에 대한 영유권이 확립되어 1905년 2월 22일 각의결정으로 시마네현에 편입함으로써 일본의 영토임을 재확인했다고 주장한다. 2005년 이후 소위 기존의 ‘무주지선점론’에 ‘고유영토론’을 보태어 논리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술한 사료의 교묘한 자의적 해석으로 탄생한 고유영토론의 논리는 최근 거의 부정되어가고 있다. 이는 시마네현 ‘죽도문제연구회’의 연구결과를 일본 외무성이 전혀 거르지 않고 받아들인

결과이기도 하다.

본고의 목적은 1905년 독도 편입조치 전후의 지리지 특히 당시 일본의 지리학계를 대표하던 『지학잡지』에 나타난 울릉도와 독도 기록을 통해 당시 일본의 울릉도·독도 인식을 검토하고자 한 것이다. 『지학잡지』는 메이지 초기인 1879년에 창립된 도쿄지학협회의 기관지로, 이 협회 회원은 메이지 정부의 유력정치가, 군인, 외교관, 화족 등으로 구성된 수뇌집단이며 『지학잡지』의 성격은 메이지 정부의 대륙팽창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 잡지는 메이지 시기에 각지에서 발생한 새로운 섬의 발견과 편입 조치 등에 관한 정보를 시의적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세계 지리상의 발견에 관한 사항 및 지리적 정보도 상세하게 담고 있다. 독도에 대해서는 1890년대 후반 흑룡회의 조사정보를 바탕으로 ‘양코’라는 서양 및 일본의 지도와 해도에도 없는 ‘새로운 섬의 발견’ 사실을 보고하고 있는데, 이는 우익 낭인단체인 흑룡회가 새로운 섬 ‘양코’의 발견을 유포한 직후의 일이었다. 그러나 메이지 초기 일본 내무성과 외무성, 태정관에서는 죽도·송도 개척의 청원과 지적편찬의 문제로 죽도와 송도의 명칭과 그 존재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었고 이는 이미 외무성의 『죽도고증』(北澤正誠)과 내무성의 기록 『기죽도사략』으로 정리되어 있었으므로 새삼 모르는 새로운 섬은 아니었던 것이다. 또한 해군수로부의 『조선수로지』(1894년 제1판, 1899년 제1개판)에서도 리앙쿠르암이라 하여 이 섬의 존재와 유래를 명확히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편입조치 이후 『지학잡지』는 프랑스의 포경선 리앙쿠르호의 독도 발견보다 훨씬 이전에 일본인이 이미 독도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그 기술이 바뀌어간다.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오키국 죽도’에 관한 에도시대의 ‘구기(舊記)’로 에도시대 죽도 도해와 도해금지령의 역사를 상세히 담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흑룡회의 『회보』와 『한해통어지침』의 기록처럼 동해상의 하나의 섬 ‘양코섬’을 발견했는데 이는 서양과 일본의 해도에도 없는 새로운 섬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이는 『지학잡지』가 우익 낭인집단인 흑룡회의 활동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구정부인 에도시대에

오키노시마와 호키노쿠니, 하마다번에 부속하였으나 도쿠가와막부가 조선에 건네주었고, 1905년 죽도 편입으로 일본 제국의 새로운 영토가 되었다고 정당화하고 있다. 즉 오야·무리카와 양가와 1830년대 하치에몽의 도해 사실로 관련하는 번에 부속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는 하나 에도시대에 독도(송도)는 조선에 건네주어 조선에 부속한 섬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1877년 메이지 정부의 태정관 지리과에서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를 부인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즉 ‘죽도외일도’의 ‘외일도’는 자연스레 독도(송도)이고 태정관의 재결에서 죽도와 송도는 조선의 영토로 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다. 다시 말해, 에도막부와 메이지 정부에서 조선에 넘겨주었지만 리앙쿠르호가 ‘양코섬’을 발견하기 이전에 한때 죽도 도해로 인하여 오키노쿠니, 호키노쿠니, 이와미노쿠니의 부속으로 있었다고 보고 있다. 그 섬을 새로 발견하여 제국의 신영토가 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다. 새로운 섬을 발견하여 ‘죽도 편입’으로 제국의 신영토가 된 당위성을 과거 산인지방의 부속이었음을 주장하여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는 무주지선점론에 의한 영토 취득은 강조하고 있지만 ‘예로부터 일본의 영토이던 것을 근대국제법으로 편입하여 일본 영유를 재확인하고 있다’고까지는 피력하고 있지 않다.

국문 초록

본고의 목적은 독도 편입조치 전후의 지리지 특히 당시 일본의 지리학계를 대표하던 『지학잡지』에 나타난 울릉도·독도 기록을 통해 당시 일본의 울릉도·독도 인식을 검토하는 것이다. 『지학잡지』는 1879년에 창립된 도쿄지학협회의 기관지로, 이 협회 회원은 메이지 정부의 정치가, 군인, 외교관, 화족 등으로 구성된 수뇌집단이며 잡지의 성격은 메이지 정부의 팽창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본고에서 밝혀진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흑룡회의 『한해통어지침』의 기록처럼 동해상의 하나의 섬 ‘양코섬’을 발견했는데 이는 서양과 일본의 해도에도 없는 새로운 섬이라는 것이다. 둘째, 구정부인 에도시대에 오키노시마와 호키노쿠니, 하마다번에 부속하였으나 도쿠가와막부가 조선에 건네주었고, 1905년 죽도 편입으로 일본제국의 새로운 영토가 되었다고 정당화하고 있다. 셋째, 메이지 정부의 태정관 지리과에서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를 부인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즉 에도막부와 메이지 정부에서 조선에 넘겨주었지만 리앙쿠르호가 ‘양코섬’을 발견하기 이전에 오키노쿠니, 호키노쿠니, 이와미노쿠니의 부속으로 있었다. 그 섬을 새로 발견하여 제국의 신영토가 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지리학계의 의도적 오판으로 다분히 정보 유포의 성격이 강했다고 하겠다.

〈주제어〉

울릉도·독도 인식, 지학잡지, 지리지, 근대 일본, 독도 영유권

ABSTRACT

Modern Japan's Perception of Ulleungdo and Dokdo in Chigaku Zasshi

Song, Hwiyoung

Research Professor, Yeungnam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modern Japan's perception of the islands Ulleungdo and Dokdo through mentions of them in Chigaku Zasshi (地學雜誌), or the Journal of Geography, a journal renowned in Japanese geographical studies around the time Japan allegedly incorporated Dokdo. Chigaku Zasshi was a bulletin published by the Tokyo Geographical Society founded in 1879. The society consisted of the Meiji government's leading members including politicians, military officials, diplomats, and aristocrats, and this society's bulletin played a major role in executing the government's expansionist policies. The following is a summary of the findings uncovered through this study. First, according to Kankai tsugyo shishin (韓海通漁指針), or the Fishery Guide of Seas around Korea published by Kokuryūkai (The Black Dragon Society), an island named "Liancourt Rocks" was discovered in the East Sea, which had never before appeared in any Western or Japanese nautical chart. Second, the island has been justified as Japanese territory that was first affiliated to Okinoshima, Hokinokuni or the Hamada Domain under the Edo Bafuku, but was thereafter handed over to Joseon (Korea) by the Tokugawa Bafuku, and then acquired as part of the Japanese Empire through territorial incorporation in 1905. Third, Japan admits that it once denied its sovereignty over Dokdo. Although the Edo Bafuku and the Daijō-kan's Department of Geography under the Meiji government acknowledged Korean sovereignty over Dokdo, the island had been an annex attached to Okinokuni, Hokinokuni, and Iwaminokuni long before the ship Le Liancourt discovered "Liancourt Rocks." And since the island was newly discovered, it became eligible to be incorporated into the territory of the Japanese empire.

Keywords

Perception of Ulleungdo-Dokdo, Chigaku Zasshi, geography journals, modern Japan, Dokdo sovereignty

참고문헌

- 김수희, 2012, 「흑룡회의 독도 침탈 기도와 ‘양코도 발견’ 기록의 재검토」, 『전북사학』 제41집.
- 남영우, 2014, 「독도에 대한 일본의 지도제작과 측량」, 『영토해양연구』 vol. 7.
- 유미림·최은석, 2010, 『근대 일본의 지리지에 나타난 울릉도·독도 인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유미림, 2011, 「근대 조선지리지에 보이는 일본의 울릉도·독도인식」, 『영토해양연구』 2권.
- 윤소영, 2013, 「근대 일본 관찬 地誌와 지리교과서에 나타난 독도 인식」,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6호.
- 윤소영, 2014, 「메이지 후기 지리지·향토지에 나타난 독도 기술」, 『독도연구』 제17호.
- 葛生修吉, 1903, 『韓海通漁指針』, 黒龍會出版部.
- 大田才次郎, 1894, 『新撰朝鮮地理誌』, 博文館.
- 島根県教育会 編纂, 1923, 『島根県誌』.
- 島根県隠岐支庁, 1933, 『隠岐島誌』.
- 田淵友彦, 1905, 『韓国新地理』, 博文館.
- 恒屋盛服, 1901, 『朝鮮開化史』, 博文館.
- 東京地学協会 編纂, 1894, 「朝鮮全図」 1894年作成.
- 保柳睦美, 「東京地学協会100年の歩み」, 『東京地学協会創立100周年記念行事資料集』, 東京地学協会.
- 田中紹祥 編, 1894, 「新撰朝鮮国全図」.
- 田中阿歌麿, 1905, 「隠岐國竹島に關する舊記」, 『地学雜誌』 第200号, 東京地学協會.
- 田中阿歌麿, 1905, 「隠岐國竹島に關する舊記(承前)」, 『地学雜誌』 第201号, 東京地学協會.
- 田中阿歌麿, 1905, 「隠岐國竹島に關する舊記(完結)」, 『地学雜誌』 第202号, 東京地学協會.
- 田中阿歌麿, 1905, 「隠岐國竹島に關する地理學上の智識」, 『地学雜誌』 第210号, 東京地学協會.

「日本海中の一島嶼(ヤンコ)」, 『地学雑誌』 第149号, 東京地学協會, 1901.

「(雜報)帝国新領土竹島」, 『地学雑誌』 第196号, 東京地学協會, 1905.

「(雜録)竹島の位置新測」, 『地学雑誌』 第239号, 東京地学協會, 1908.

남중국해 중재판정의 국제 해양법상 도서제도에 대한 영향

이석용 한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1. 머리말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섬 문제가 중요한 국제법적 이슈로 등장하게 된 것은 연안국들의 해양관할권 확대와 강화 움직임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로티우스의 해양자유론 이래 해양질서는 “좁은 영해, 넓은 공해”라는 패러다임에 기초해 있었으나, 20세기 이후 해양과학기술의 발달과 연안국들의 해양관할권 확대와 강화로 전통적인 국제해양질서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의 효력발생을 계기로 연안국들의 해양관할권 확대 및 강화 경쟁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바, 연안국들은 협약상 도서제도의 모호함을 이용하여 작고 중요하지 않은 해양지형 주변에도 EEZ와 대륙붕 같은 해양수역을 설치하고자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¹

3차 유엔해양법회의의 시작을 전후하여 국제사회는 이미 배타적 경제수역(EEZ)·군도수역·광역대륙붕 도입에 대하여 합의를 이루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섬 문제도 회의의 주요한 이슈로 등장하였다. 회의는 1958년 영해협약의 섬의 정의를 계승하고 우여곡절 끝에 새로이 암석(rock)에

* 논문 투고일: 2016. 9. 30. 심사 개시일: 2016. 11. 8. 게재 확정일: 2016. 11. 30.

1 이석용, 「연안국 해양수역확대가 국제해양질서에 미치는 영향」, 『안암법학』 통권 제31호, 321~322쪽.

관한 규정을 도입하였다. 그 결과 유엔해양법협약은 제121조에 관련 규정을 두었으나, 협약의 섬의 정의에 대한 규정에는 여전히 모호한 부분들이 남아 있고, 간출지(low-tide elevation)와 암석의 정의와 지위에 관한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더구나 국제사법재판소(ICJ)를 비롯한 국제법원과 재판소들도 완전한 섬과 암석, 간출지의 분류를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각 해양지형의 해양수역에 대한 권원의 문제를 다루는 데 소극적이었다.

이런 가운데 유엔해양법협약 부속서 VII에 따라 설립된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이하 중재재판소)는 필리핀이 중국을 상대로 제기한 남중국해중재사건(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본안에 대해 2016년 7월 12일 판정을 내렸다.² 필리핀의 사실상의 완승으로 끝이 난 이 사건에서 필리핀이 청구한 것은 다음의 세 가지였다. 첫째, 필리핀은 남중국해 수역과 해저, 해양지형에 대한 연안국들의 권리와 의무는 해양법협약에 따라 규율되며 소위 '9단선(nine-dash line)'에 함축된 중국의 '역사적 권리(historic right)'에 근거한 주장은 해양법협약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무효라고 선언해달라고 하였다. 둘째, 필리핀은 해양법협약에 따를 때 중국 또는 필리핀이 주권 또는 관할권을 주장하는 일부 해양지형이 섬(islands), 암석, 간출지, 수중암초(submerged bank) 중 어떤 것에 속하는 것인지 그 지위를 결정해달라고 하였다. 셋째, 필리핀은 중국이 자국의 해양법협상 권리와 자유의 행사를 방해하고 해양환경을 저해하는 건축과 어업활동을 함으로써 협약을 위반하였다고 선언을 해달라고 하였다. 이러한 필리핀의 청구는 필리핀의 15개 청구(submission)에 나타나 있는데, 해양지형의 분류와 지위에 관한 것은 그중에 5개다. 청구 3은 Scarborough Shoal은 EEZ와 대륙붕에 대한 권원을 창설하지 못하고, 청구 4는 Mischief Reef, Second Thomas Shoal, Subi Reef는 간출지로서 해양수역에 대한 권원을 창설할 수 없으며, 청구 5는 Mischief Reef와 Second Thomas Shoal은 필리핀 EEZ와 대륙붕의 일부이고, 청구 6은 Gaven

Reef와 McKennan Reef(Hughes Reef 포함)는 간출지로서 해양수역에 대한 권원을 창설하지 못하지만 그 저조선은 각각 Namyit와 Sin Cowe의 영해기선 결정에

2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The Republic of Philippines v.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ward, PCA, 12 July 2016.

사용될 수 있고, 청구 7은 Johnson Reef, Cuarteron Reef, Fiery Cross Reef는 EEZ와 대륙붕에 대한 권원을 창설하지 못한다는 것을 선언해달라는 것이었다.

국제법상 도서제도와 관련하여 필리핀과 중국 간 남중국해 중재판정이 관심을 끄는 것은, 금번 중재재판소가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의 해석에서 매우 명확하게 입장을 표명하는 등 국제법상 도서제도와 관련하여 제기되어온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였기 때문이다. 재판소는 EEZ와 대륙붕을 가질 수 있는 완전한 권원을 가진 섬과 그런 수역을 가질 수 없는 암석을 구분하는 데 이제까지의 국가들의 실행과는 달리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해양법협약의 채택 이후 연안국은 자국 소유의 만조시 수면위의 지형은 거의 예외없이 EEZ와 대륙붕을 가질 수 있는 섬으로 다루어왔으나, 금번 중재판정은 엄격한 잣대로 평가하여 문제가 제기된 대부분의 해양지형들을 간출지나 암석으로 판정하였다. 원칙론적인 입장에서 해양법협약을 해석하고 적용한 본 중재재판소의 판정취지가 앞으로의 도서제도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하게 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기존의 국제법상 도서제도를 살펴보고, 필리핀과 중국 간의 남중국해 사건에 대한 중재판정이 간출지, 암석, 섬 등 해양지형의 정의와 기준에 미치게 될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해양법협약 제121조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재판소가 제시한 완전한 권원을 가진 섬과 암석의 구분 기준을 면밀히 고찰하여 국제해양법상 도서제도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독도에 대한 함의도 검토하였다.

II. 도서제도의 역사

섬을 국제법적으로 정의하기 위한 시도가 처음 이루어진 것은 1930년 헤이그성문화회의(Hague Codification Conference) 때였다. 당시 영국과 호주는 항상 만조점 위에 존재하는 점유와 사용이 가능한 해양지형을 섬이라 정의하

자고 주장하였으며, 미국은 만조시 수면위에 존재하는 물로 둘러싸여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해양지형을 섬으로 하자고 하였다. 결국 국제법상의 섬이 되려면 점유와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는 영국 등의 주장은 수용되지 않았고, 헤이그회의 제2위원회 제2소위원회는 “모든 섬은 영해를 갖는다. 섬이란 항상 만조점 위에 존재하는 물로 둘러싸인 육지지역이다”라는 정의를 채택하게 되었다.³ 이는 당시 전문가위원회소위원회(Sub-Committee of the Committee of Experts)가 간출지를 섬에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데 대해 치열한 논쟁 끝에 만조시 수면위의 섬에만 영해를 인정하고, 영해 내의 간출지는 영해기준선 설정시 이를 활용하도록 타협한데 따른 것이다.⁴

20세기 중반에 접어들면서 국가들은 해양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접근이 가능해진 해양자원 확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해양관할권 확대에 나서게 되었다. 특히 미국은 1945년 9월 28일 ‘대륙붕선언’을 통해 대륙

붕에 인접해 있는 지하와 해저의 천연자원에 대한 연안국 관할권 행사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는바, 대륙붕 제도의 등장에 따른 연안국 해양관할권 확대에 따라 섬 문제가 새롭게 조명을 받게 되었다.

1949년 시작된 국제법위원회(ILC)의 해양법 성문화 작업은 1956년 「해양법조문과주석(Articles Concerning the Law of the Sea with Commentaries)」의 채택으로 일단 결실을 보았다.⁵ 특별보고자 Francois는 1952년 영해제에 관한 그의 첫 번째 보고서에 헤이그성문화회의 제2위원회가 작성한 섬의 정의를 포함시켰다. 1954년 국제법위원회 회의에서 라우터파트(Lauterpacht)는 섬은 실효적 점유와 통제가 가능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첨부하자고 하면서, ‘항상 수면위에(permanently above high-water mark)’라는 말 앞에 ‘정상적인 상황에서(in normal circumstances)’라는 말을 삽입하지는 수정안을 제출하였으나,⁶ 국제법위원회는 1956년 해양법에 관

3 Hiran W. Jayewardene, 1990, *The Regime of Islands in International Law*, Martinus Nijhoff Publishers, pp. 3~4.

4 Derek W. Bowett, 1979, *The Legal Regime of Islands in International Law*, Oceana Publications Inc., pp. 8~9. 헤이그성문화회의가 채택한 섬의 정의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있었다. Gidel은 섬은 조직된 인간그룹들의 안정적인 거주를 가능하게 하는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하여 성문화회의의 입장에 반대하였으며, Johnson은 섬의 정의 중에서 ‘육지 지역(area of land)’이란 수면 위에 존재하는 상당한 넓이의 육지여야 하므로 조그만 암석들을 섬으로 인정하면 안 된다고 하여 비판적이었다.

5 Donald R. Rothwell and Tim Stephens, 2010,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Hart Publishing, p. 6.

6 Bowett, 1979, op. cit., pp. 8~9; Jayewardene, 1990, op. cit., p. 4; ILC Yearbook, 1954, p. 93.

한 초안에서 섬이란 “정상적인 상황에서 항상 만조점 위에 있는 물로 둘러싸여 있는 육지지역(an area of land, surrounded by water, which in normal circumstances is above water at high tide)”이라고 정의하게 되었다.

1958년 제1차 유엔해양법회의(UNCLOS I)는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on the Territorial Sea and the Contiguous Zone, 이하 영해협약)」 등 4개의 협약을 채택하였다. 회의에서 미국은 초안 제10조의 섬에 관한 정의를 수정하여 “섬은 만조시 수면위에 존재하는 물로 둘러싸인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지역이다”라고 하자고 하였다. 이 제안은 ILC 초안의 섬의 정의에 ‘자연적으로 형성된’이란 말을 추가하고, ‘항상’이란 형용사와 ‘정상적인 상황에서’라는 말을 삭제한 것이었다.⁷ 결국 회의는 미국의 이러한 제안을 수용하여 영해협약 제10조 1항에는 “섬은 만조시 수면위에 존재하는 물로 둘러싸인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지역이다”라는 정의가 도입되었다.

1973년 시작된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UNCLOS III)에서는 EEZ와 대륙붕, 군도수역을 통한 연안국의 해양관할권 확대가 예상되었기 때문에 1958년 영해협약에 규정된 섬의 정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졌다. EEZ 등을 통해 조그만 섬에 지나치게 넓은 해양공간이 부여된다면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섬들을 면적 등을 기준으로 몇 가지로 나누어 적합한 EEZ와 대륙붕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은 Hodgson이나 Ely 같은 학자들, 도서국가들과 그리스, 아프리카 국가들이 지지하였다. Hodgson과 Ely는 섬의 면적과 인구·본토와의 거리를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하였다.⁸ 한편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 섬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토의는 1974년 카리카스회의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당시 14개 아프리카 국가들은 ‘섬 제도에 관한

7 미국의 ILC 초안의 섬의 정의에 따르면 인공섬이 섬에 포함되어 공해의 자유가 훼손되므로, 자연적 형성에 관한 조건을 첨부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초안의 ‘정상적인 상황에서’와 ‘항상’이란 말은 상충되므로 삭제하자고 하였다.

8 Hodgson은 섬의 면적을 기준으로 0.001 평방마일 이하의 섬은 rock, 0.001 평방마일 이상 1 평방마일 이하는 islet, 1 평방마일 이상 1천 평방마일 이하는 isle, 1천 평방마일 이상의 섬은 island라 하여 각기 그에 상응하는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하였다. Ely는 섬의 면적과 인구 및 본토 해안부터의 거리를 고려하여 섬의 가치에 따라 섬이 가지는 해양수역을 적절히 제한해야 한다고 하였다. R. D. Hodgson, 1973, “Islands : Normal and Special Circumstances,” in J. K. Gamble and G. Pontecorvo(eds), *The Law of the Sea: The Emerging Regime of the Oceans*, Ballinger Publishing Co., pp. 150~151; N. Ely, 1972, “Seabed Boundaries between Coastal States: The Effect to be Given Islets as Special circumstances,” in *International Law*, Vol. 6, pp. 232~235.

초안(Draft Articles on the Regime of Islands)'에서, 만조시 수면위에 있는 물로 둘러싸인 광대한(vast)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지역을 섬(island)이라 하고, 면적이 작은 것들은 소도(islet), 만조시 물로 둘러싸여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돌로 이루어진 용기는 암석이라 하여 작은 섬들의 해양수역을 제한할 것을 주장하였다.⁹ 반면에 도서국가들을 중심으로 하는 다른 국가들은 섬도 해양에 대하여 육지영토와 동일한 권원을 가지며, 육지영토 주변에 설치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섬의 해양수역도 설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⁰

해양법협약은 제121조에 섬 제도(Regime of Islands)에 관해 간단한 규정을 두었다. 협약은 동조 1항에서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만조시 수면위에 있는, 육지지역을 섬이라 정의하였으며, 2항에서는 이러한 섬들은 자체의 영해와 접속수역·경제수역·대륙붕을 가질 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동조 3항에는 예외조항을 두어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가지지 못한다고 하였다. 해양법협약의 채택과 발효 이후 섬 제도에서 가장 커다란 논란의 대상은 2항 규정에 따라 주변에 영해, 접속수역, 경제수역, 대륙붕을 가질 수 있는 섬과 3항 규정대로 인간거주나 경제생활의 유지가 불가능하여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가질 수 없는 암석을 구분하는데 관한 것이었다.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는 본래 컨센서스 방식에 따른 협약의 채택을 시도했었기 때문에, 국가들의 이해관계와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을 이룬 경우가 있었다. 그로 말미암아 해양법 협약에는 일부 추상적이고 모호한 규정들이 등장하기도 하였는데, 것처럼 많은 논란이 있었던 제도와 규정 가운데에는 각국의 해양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어서, 각국은 협약의 발효 이후에도 관련 규정에 대

한 국제사회의 실행을 주시해왔다. 협약의 도서제도도 그러한 사례에 속하는데, 국제사법재판소와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등 국제법원과 재판소에서는 그간 암석의 정의 등 도서관련 문제를 다루는 데 다소 소극적

9 U.N. Doc. A/Conf. 62/C. 2/L. 62/Rev. 1.

10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의 섬제도에 관한 다양한 제안과 논의에 대해서는 다음을 볼 것. 이석용, 2015, 「국제법상 도서제도와 독도」, 세창출판사, 19~43쪽.

으로 임해왔다.

그러나 금번 남중국해 사건에서 중재재판소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도서 문제를 검토하였고 그 입장을 분명하게 표시하였다. 남중국해 사건에서 중재재판소는 해양지형을 3가지로 분류하면서 그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하였고 관련 법적 문제도 검토하였다. 해양법협약은 간조시 수면위에 드러나지만 만조시에는 물속에 가라앉는 해양지형을 간출지라고 하였고, 만조시에도 수면위에 존재한 해양지형을 일반적으로 '섬(islands)'이라고 하였는데 판정에서 재판소는 이를 주로 고조지형(high-tide features)이라고 불렀다. 이어서 재판소는 인간거주 또는 독자적 경제생활의 유지가 불가능한 고조지형으로 협약 제121조 3항에 따라서 EEZ와 대륙붕을 창설할 수 없는 것은 '암석'이라 부르고, 암석이 아닌 고조지형으로 협약 제121조 2항에 따라 해양수역에 대해서 다른 육지영토와 동등한 권원을 가지는 해양지형은 '완전한 권원의 섬(fully entitled islands)'이라고 불렀다.¹¹

III. 간출지 문제

간출지란 썰물일 때에는 물로 둘러싸여 물위에 노출되나 밀물일 때에는 물에 잠기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지역을 말한다. 과거에 각종 문헌이나 조약에서는 'drying rock' 또는 'bank'라 부르기도 하였다.¹² 간출지는 엄격히 말해서 섬이 아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간출지도 섬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고, 오늘날에도 그 지위와 관련하여 다소 모호한 점이 있다.

오늘날 간출지의 기선설정에서의 지위는 1930년 헤이그성문화회의에서 이루어진 타협의 산물이다. 헤이그회의에서는 만조시 수면위에 드러나는 지형만을 국제법상의 섬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과 간조시 드러나는 지형도 섬으로 하는 주장이 대립하였다. 결국 만조시 드러나는 지형

11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para. 280.

12 R. R. Churchill and A. V. Lowe, 1999, *The Law of the Sea*, Manchester University Press, p. 48.

13 Bowett, 1979, 앞의 책, p. 10.

14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paras. 281~282.

15 Scarborough Shoal은 중국에서는 황옌다오(Huangyan Dao, 黃岩島)라 부르고 필리핀에서는 'Panatag Shoal' 또는 'Bajo de Masinloc'이라 부르는 북위 15° 09'16" 동경 117°45'58"에 위치한 산호초이다. 필리핀 루손 섬의 군도기선에서 116.2해리, 중국의 홍콩 부근 29번 기점(Jiapengliedao)에서 448.2해리에 위치하고 있다. Cuarteron Reef는 중국에서는 화양자오(Huayang Jiao, 華陽礁), 필리핀에서는 Calderon Reef라고 하며, 북위 08°51'41" 동경 112°50'08"에 위치한다. 필리핀 팔라완(Palawan) 섬의 군도기선에서 245.3해리, 해남도 인근 중국의 39번 기점(Dongzhou 2)에서 585.3해리에 위치해 있다. Fiery Cross Reef는 중국에서 용수자오(Yongshu Jiao, 永暑礁), 필리핀에서는 Kagitingan Reef라고 부르며, 북위 09°33'00" 동경 112°53'25"에 위치한다. 필리핀 팔라완 섬의 군도기선에서 254.2해리, 해남도 인근 중국의 39번 기점(Dongzhou 2)에서 547.7해리 떨어져 있다. Johnson Reef, Mckennan Reef, Hughes Reef는 모두 산호초로 남사군도 중심부의 환초군인 Union Bank에 속한다. Johnson Reef는 중국에서는 치과자오(Chigua Jiao, 赤瓜礁), 필리핀에서는 Mabini Reef라고 부르는데, 북위 09°43'00" 동경 114°16'55"에 위치하며 필리핀 팔라완 섬의 군도기선에서 184.7해리 해남도 인근 중국의 39번 기점(Dongzhou 2)에서 570.8해리 떨어진 곳에 있다. Mckennan Reef는 중국에서는 시먼자오(Ximen Jiao, 西門礁)라고 하고 필리핀에서는 Hughes Reef와 함께 Chigua Reef라고 하는데, 북위 09°54'13" 동경 114°27'53"에 위치하며 필리핀 팔라완 섬의 군도기선에서 181.3해리, 해남도 인근 중국의 39번 기점(Dongzhou 2)에서 566.8해리 떨어진 곳에 있다. Hughes Reef는 중국에서는

만을 국제법상의 섬으로 인정하되, 영해 내에 위치하는 간출지는 기선설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양측 간에 타협이 이루어졌다.¹³ 하지만 간출지의 정의와 법적 지위가 분명해진 것은 1958년 영해협약 제11조에 의해서이다. 그 규정은 해양법협약 제13조에 의해 계승되었는데, 간출지가 본토나 섬으로부터 영해의 폭을 넘는 곳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자체의 영해를 가지지 못하도록 하되, 본토나 섬으로부터 영해의 폭을 넘지 아니하는 거리에 위치하는 간출지의 저조선은 영해기선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남중국해 사건에서 중재재판소는 남중국해 해양지형의 지위와 해양권원에 관한 당사국 간 분쟁을 다루었다. 특히 필리핀은 청구 4와 6에서 일부 지형들은 간출지로서 해양수역에 대한 권원을 가지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청구 4는 Second Thomas Shoal과 Subi Reef가 간출지로서 영해, EEZ, 대륙붕을 창설하지 못하며 전유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주장이었으며, 청구 6은 Gaven Reef와 Mckennan Reef(Hughes Reef 포함) 역시 간출지로서 영해, EEZ, 대륙붕을 창설하지 못하지만 그 저조선(low-water line)은 Namyit와 Sin Cowe의 영해기선 결정에 사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반면에 필리핀은 청구 3과 7에서 Scarborough Shoal, Johnson Reef, Cuarteron Reef, Fiery Cross Reef 등은 만조시 수면위에 존재하는 고조지형(high-tide features) 이라고 하였다.^{14·15}

필리핀은 해양법협약 제13조에 규정되어 있는 간출지는 육지영토가 아니며, 점유나 통제 등의 조치로 그 곳에 영유권을 수립할 수 없다고 하였다. 필리핀은 간

출지를 위치에 따라 3가지로 분류하였다. 간출지가 섬의 12해리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간출지에 대한 영유권은 섬에 대해 영유권을 가지는 국가에게 속하며, 간출지가 12해리 이원 연안국의 EEZ나 대륙붕에 위치한 경우에는 연안국은 해양법협약 제56조 3항과 제77조에 따른 관할권을 갖는다. 반면에 국가관할권 이원에 위치하는 간출지는 심해저의 일부가 되며, 여하한 국가도 그 간출지에 대하여 주권이나 관할권을 가지지 못한다고 하였다. 필리핀은 해양법협약 제13조 1항 규정대로 간출지가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섬의 영해 내에 위치하여 영해기선의 일부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가 있음을 상기시켰다.¹⁶

필리핀은 청구 4와 6에 언급된 Second Thomas Shoal, Mischief Reef, Subi Reef, Hughes Reef를 포함한 McKennan Reef, Gaven Reef 등 5개의 해양지형은 간출지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필리핀은 그 중에 Gaven Reefs는 Namyit 섬의 영해에 그리고 McKennan Reef는 Sin Cowe 섬의 영해 내에 위치하므로 당해 도서의 영해기준선 연장에 활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¹⁷ 필리핀은 증거로 두 가지 위성영상(satellite imagery) 자료를 제시하였다. 하나는 5개 간출지에 대한 Multi-band Landsat 위성사진인데, 이는 5개의 해양지형 가운데 만조시 수면위에 존재하는 것은 없음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다른 하나는 EOMAP 회사가 준비하여 필리핀이 재판소에 제공한 위성영상분석 자료(satellite imagery analysis)로 5개 해양지형을 수십층량 방식으로 묘사한 것이다. 필리핀은 5개 해양지형이 간출지인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기존의 해도(charts)와

등먼자오(Dongmen Jiao, 東門礁) 필리핀에서는 McKennan Reef와 함께 Chigua Reef 라고 하는데, 북위 09°54'48" 동경 114°29'48"에 위치하며 필리핀 팔라완 섬의 군도기선에서 180.3해리, 해남도 인근 중국의 39번 기점(Dongzhou 2)에서 567.2해리 떨어진 곳에 있다. Gaven Reef는 중국에서는 난순자오(Nanxun Jiao, 南薰礁) 필리핀에서는 Burgos라고 한다. Itu Aba, Namyit, Sand Cay와 같은 섬들과 함께 Tizard Bank에 속한다. 북위 10°12'27" 동경 114°13'21"에 위치하며 필리핀 팔라완 섬의 군도기선에서 203.0해리, 해남도 인근 중국의 39번 기점(Dongzhou 2)에서 544.1해리 떨어져 있다. Subi Reef는 중국에서는 주비자오(Zhubi Jiao, 渚碧礁) 필리핀에서는 Zamora Reef라고 부르는 산호초로서 Tizard Bank 북쪽에 위치해 있다. 북위 10°55'22" 동경 114°05'04" 남사군도 북서쪽 끝자락에 위치하며, 필리핀 팔라완 섬의 군도기선에서 231.9해리, 해남도 인근 중국의 39번 기점(Dongzhou 2)에서 502.2해리 떨어진 곳에 있다. 산호초인 Mischief Reef와 Second Thomas Shoal은 남사군도 중심부에 위치하며 Union Bank의 동쪽 Tizard Bank의 남동쪽에 위치한다. Mischief Reef는 중국에서는 메이지자오(Meiji Jiao, 美濟礁) 필리핀에서는 Panganiban이라고 하며, 북위 09°54'17" 동경 115°31'59"에 위치하고 필리핀 팔라완 섬의 군도기선에서 125.4해리, 해남도 인근 중국의 39번 기점(Dongzhou 2)에서 598.1해리 떨어진 곳에 있다. Second Thomas Shoal은 중국에서는 런야이자오(Ren'ai Jiao, 仁愛礁) 필리핀에서는 Ayungin Shoal이라 부르며, 북위 09°54'17" 동경 115°51'49"에 위치하고 필리핀 팔라완 섬의 군도기선에서 104.0해리, 해남도 인근 중국의 39번 기점(Dongzhou 2)에서 616.2해리 떨어진 곳에 있다. *Ibid.*, paras. 284~290.

¹⁶ *Ibid.*, para. 291.

¹⁷ *Ibid.*, para. 292.

수로지(sailing directions)도 제공하였다.¹⁸

중국은 본 사건에서 중재절차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문제가 된 해양지형들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지도 않았다. 중국은 2014년 12월 7일자 Position Paper에서도 필리핀이 중재재판에 부탁한 일부 해양지형이 간출지인가 하는데 대해 논평하지 않았다.¹⁹ 그러나 재판소는 중국의 “황엔다오 즉 Scarborough Shoal은 모래톱(sand bank)이 아니라 섬”이라는 성명²⁰ “중국은

남사군도와 인접도서인 메이지자오 즉 Mischief Reef와 용슈자오 즉 Fiery Cross Reef에 대해 주권을 갖는다”고 한 성명에 주목하였다. 재판소는 후자의 성명은 중국이 Mischief Reef와 Fiery Cross Reef를 최소한 영해를 가지는 수면위의 지형으로 보는 것으로 해석하였다.²¹ 한편 중국은 “중국의 남사군도는 영해, EEZ, 대륙붕에 대해 완전한 권원을 갖는다”고 하여 남사군도 해양지형의 해양에 대한 권원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²² 중국이 각 해양지형의 지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지만, 재판소는 입수가능한 최고의 증거에 입각하여 특히 중국이 발간한 해도와 수로지에 나타나 있는 지형에 대한 설명에 주목하면서 지형들의 지위를 평가하였다.²³

해양법협약 제121조에 따르면 국제법상의 섬은 그것이 인간의 거주나 독자적 경제생활이 불가능한 암석이 아닌 한, 육지영토와 마찬가지로 자체의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을 가진다. 하지만 간출지는 섬이 아니며 자체의 해양수역을 가지지도 못한다. 다만, 그것이 본토나 섬에서 영해의 폭을 넘지 아니하는 거리에 위치하는 경우에 그 저조선이 기선에 연결될 수 있을 뿐이다.²⁴

남중국해 사건에서 중재재판소는 해양법협약 제13

18 *Ibid.*, paras. 293~295.

19 *China's Position Paper*, para. 24.

20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Republic of the Philippines, Record of Proceedings: 10th Philippines–China Foreign Ministry Consultations (30 July 1998) (Annex 184); Ministry of Foreign Affairs, People's Republic of China, Chinese Foreign Ministry Statement Regarding Huangyandao (22 May 1997) (Annex 106), 284.

21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paras. 298~300.

22 Note Verbale from the Permanent Miss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No. CML/8/2011 (14 April 2011) (Annex 201). See also Note Verbale from the Permanent Miss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No. CML/12/2009 (13 April 2009), 286; *Ibid.*, para. 301.

23 *Ibid.*, para. 302.

24 간출지는 기점으로서 직선기선의 설정에 활용될 수 없다. 다만 등대나 이와 유사한 시설이 간조노출지에 세워진 경우 및 간출지 사이의 기선설정이 국제적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직선기선 설정에 활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해양법협약 제7조 4항 참조.

조를 근거로 간출지는 법적인 관점에서 육지영토의 일부가 아니라 수중 대륙피의 일부이므로, 간출지는 전유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는 ICJ가 페드라브랑카 사건에서 간출지 사우스레지는 페드라브랑카나 미들락스와는 달리 간출지에 속하므로 별도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간출지 사우스레지는 그 영해에 지형이 위치하고 있는 국가에 속한다고 한 것과 같은 취지다.²⁵

중재재판소는 해양법협약 제121조가 섬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자연적 형성을 요구하듯이, 제13조는 간출지의 경우에도 자연적 형성을 조건으로 제시하였다고 보았다. 이는 해양지형의 지위는 자연적 상태를 기초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으로, 법적으로 인공에 의한 변형을 통해서 해저를 간출지로 그리고 간출지를 섬으로 바꿀 수 없다는 의미다. 간출지는 그 위에 건설된 섬이나 시설과 관계없이 해양법협약상 간출지라는 것이다.²⁶ 남중국해의 많은 해양지형들은 산호초 위에 시설물과 활주로를 갖춘 거대한 섬이 건설되면서 인공에 의한 근본적인 개조(substantial human modification)를 겪었다. 중재재판소에 따르면, 해양법협약은 해양지형의 지위는 인공개조 이전의 자연적인 상태에 기초하여 평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하면서 변형 이전의 상태에 관한 증거를 기초로 판단하였다.²⁷

결국 재판소는 Scarborough Shoal, Cuarteron Reef, Fiery Cross Reef, Johnson Reef, Mckennan Reef, Gaven Reef는 고조지형(high-tide elevations)이라고 하였으며, Hughes Reef, Gaven Reef, Subi Reef, Mis-chief Reef, Second Thomas Shoal는 간출지라고 하였다. 그리고 Hughes Reef는 고조지형인 Mckennan Reef와 Sin Cowe Reef 그리고 Gaven Reef(South)는 고조지형인 Gaven Reef(North) 및 Namyit Island, 그리고 Subi Reef는 고조지형인 Sandy Cay로부터 12해리 이내에 위치해 있다고 하였다.²⁸

²⁵ *Sovereignty over Pedra Branca/Pulau Batu Puteh, Middle Rocks and South Ledge (Malaysia/Singapore)*, Judgment, ICJ Reports, 2008, paras. 298~299.

²⁶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para. 305.

²⁷ *Ibid.*, para. 306.

²⁸ *Ibid.*, paras. 382~384.

IV. 섬의 정의와 조건

남중국해 사건에서 중재재판소는 그곳의 해양지형 중에서 만조시 수면 위에 존재하는 해양지형의 지위와 해양에 대한 권원을 검토하였다. 필리핀은 청구 3에서 Scarborough Shoal이 EEZ와 대륙붕에 대한 권원을 창설하지 못한다는 것을, 청구 5에서는 Mischief Reef와 Second Thomas Shoal이 자국 EEZ와 대륙붕의 일부임을, 청구 7에서는 Johnson Reef, Cuarteron Reef, Fiery Cross Reef는 EEZ와 대륙붕에 대한 권원을 창설하지 못한다는 것을 선언해달라고 요청하였기 때문이다.²⁹

해양법협약은 제121조 제3항에 암석에 관한 규정을 둬으로써 해양법상의 섬을 ‘완전한 권원을 가진 섬(fully entitled islands)’과 해양수역에 대한 권원이 제한되는 암석으로 구분하였다. 그런데 암석에 관한 규정은 일반적인 섬 관련 규정의 예외 규정이므로 일반적인 섬에 관한 정의와 조건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옳다.

해양법협약은 제121조 1항에서 섬을 정의하여 “섬이라 함은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으며, 밀물일 때에도 수면위에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지역을 말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어떠한 지형이 국제법상의 섬이 되기 위해서는 그 지형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어야 하고, 육지로 된 지역이어야 하며, 만조시 수면위에 노출되어야 하고, 넷째 물로 둘러싸여 있어야 한다. 이외에 섬의 조건과 관련해서는 섬은 상당한 면적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하고 경제생활이 가능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이러한 조건들은 해양법협약의 섬의 정의에는 포함되지 않았다.³⁰ 해양법협약의 섬의 정의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밀물일 때에도 수면위에 있어야 한다는 조건,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어야 한다는 조건, 육지지역이어야 한다는 조건이다.

²⁹ *Ibid.*, para. 385.

³⁰ Clive Ralph Symmons, 1979, *The Maritime Zones of Islands in International Law*, Martinus Nijhoff, p. 20.

1. 자연적 형성

국제법상의 섬은 “자연적으로 형성된(naturally formed)”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해저나 간출지 위에 등대와 같은 인공시설물이 건립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지형들은 국제법상 섬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 하지만 1930년 헤이그성문화회의에서 독일과 네덜란드는 인공시설물들도 섬의 지위를 갖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독일은 인공섬도 그것이 해저에 고착되어 있고 그곳에 주민들이 살고 있으면 섬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네덜란드는 섬을 “간조시 수면위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해저의 융기”로 하자고 하였다.³¹ 제2위원회 제2소위원회도 섬이란 “항상 만조점 위에 존재하는 물로 둘러싸인 육지지역”이라고 하여 인공시설물을 간접적으로 섬으로 인정하였으며,³² 이러한 정의는 부유하는 구조물이 아니라면 이를 제외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입장을 확인한 바 있다.³³ 그러나 이러한 제2소위원회의 섬에 대한 정의는 인공시설물을 제외한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형만을 법적인 섬에 포함시키고자 하였던 전문가위원회의 견해와는 다소 상충되는 것이었다.

헤이그성문화회의에서 정리된 입장은 1958년 제1차 유엔해양법회의에 영향을 미쳤다. 1956년 국제법위원회 특별보고자는 그의 두 번째 보고서에서 섬을 “항상 만조점 위에 존재하는 물로 둘러싸여 있는 육지지역”이라고 정의하였으며,³⁴ 국제법위원회는 ‘영해제도(Regime of Territorial Sea)’에 관한 최종안에서 이를 수용하였는데 이는 해저에 건설된 인공시설물을 섬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 그러나 인공섬에게 영해를 인정하게 되면 공해의 자유가 훼손되리라는 우려에서 인공시설물에 해양수역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입장은 1958년 제1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도 확인되어 자연적 형성을 국제법상 섬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확정하였다.³⁵ 섬의 자연적 형성에 관한 조건과 관

31 *ibid.*, pp. 29~30.

32 E. D. Brown, 1984, *The Areas within National Jurisdiction*, Graham and Trotman, 14 20.

33 S. Broder and J. Van Dyke, 1982, “Ocean Boundaries in the South Pacific,” *University of Hawaii Law Review*, Vol. 4, p. 31.

34 *ILC Yearbook*, 1956, II, p. 270.

35 Bowett, 1979, *op. cit.*, p. 4.

련하여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가 있었다. 특히 Francois가 국제법위원회 회의에서 섬의 정의를 작성하면서 고려하였다는 모래나 자갈을 인위적으로 쌓아놓아 형성된 섬의 지위 문제 등이 거론되었다.³⁶

남중국해 사건에서 중재재판소는 해양법협약 제121조와 제13조가 섬과 간출지에 대하여 공히 자연적 형성을 조건으로 제시한 것에 주목하였다. 이는 해양지형의 지위는 자연적 상태를 기초로 판단해야 하는바, 인공에 의한 변형을 통해서 해저를 간출지로 그리고 간출지를 섬으로 바꿀 수 없다는 의미인 것이다.³⁷

2. 육지지역

국제법상의 섬은 ‘육지지역(area of land)’이어야 한다. 국제법이 오래전부터 일정한 지형을 법적인 섬으로 인정하여 그 주변에 해양수역을 설치할 수 있게 한 것은 그 섬의 육지영토와의 유사성 때문이었다. 섬은 다른 육지와 마찬가지로 최소한 해저에 고착되어 있어야 하고, 육지와 유사한 정도의 항구성도 가져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³⁸

섬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육지지역’의 의미 그리고 해저에 고착되어 항구성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의 의미에 대해서는 사례별로 검토가 필요하

다. 첫째는 ‘정박해 있는 선박’의 경우다. 등대선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므로 섬의 지위를 가지지 못하지만 동시에 등대선을 비롯한 정박해 있는 선박들은 육지지역이 아니므로 섬의 지위를 가질 수가 없다. 둘째는 해저시설물(seabed installations)의 지위다. 해양법협약 제60조와 제80조는 연안국은 자국의 EEZ와 대륙붕에 인공섬, 시설물, 구조물 등을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주변에 안전수역을 설치할 수 있지만, 이들은 섬의 지위를 가지지 못한다고 하였다. 셋째는 다뉴브델타의 갈대섬(reed islands)이나 빙산과 같은 부

36 국제법위원회 제260차 회의에서 특별 보고자 Francois는 섬의 정의를 작성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사례들을 고려하였다고 하였다. 모래나 자갈을 인위적으로 쌓아 만든 섬, 간조시만 수면 위에 나타나는 간출지에 건설된 등대, 항상 수면 위에 존재하는 지형에 건설된 등대, 등대 이외의 기술적 시설, 바다에 세워진 파일(pile) 위에 건설된 주거이다. *ILC Yearbook*, 1954, vol. I, p. 91.

37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para. 305.

38 Hodgson, 1973, op. cit., pp. 148~149.

유하는 자연적 형성물(floating natural formations)의 지위에 관한 것이다. 이미 1954년 국제법위원회 회의에서 Lauterpacht는 섬을 정의하는 데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들을 제시하면서 스피츠베르겐(Spitzbergen) 섬과 남극대륙 주변의 '단단한 얼음(solid ice)'의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³⁹ 이처럼 빙산과 같은 자연적 형성물의 지위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이들의 형성이 자연적이고, 특히 부유하는 빙산에는 흙이나 바위와 같은 빙하의 파편들이 섞여 있어서 육지(terra firma)와 유사한 성분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부유하는 형성물들은 해저로부터 분리되어 있을 뿐 아니라 바람과 조류의 영향에 따라 부유하는 것이므로 섬의 자격을 가지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⁴⁰

3. 만조시 노출

국제법상의 섬은 '만조시 노출(emergence at high-tide)' 되어 있어야 한다. 어떤 일정한 지형이 국제법상의 섬이 되려면 항상 수면위에 노출되어 있어야 하므로, 썰물 때에는 수면위에 노출되었다가 밀물 때에는 물속에 잠기는 간출지는 국제법상 섬의 지위를 가지지 못한다.

국제조약과 각국의 실행 그리고 국제법원과 재판소의 입장을 분석해보면, 오늘날 법적인 의미에서의 섬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만조시 노출이 필요조건이라는 데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그렇지만 섬 제도의 발달과정을 살펴보면, 만조시 노출을 섬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하는데 대해서 반대가 없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1930년 헤이그성문화회의에서는 '섬'에 대한 개념조차 정립되지 못하였던 데다가 간출지와의 혼동으로 만조시 노출을 섬의 조건으로 삼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⁴¹ 회의 이전인 1929년 설문지에 대한 답신을 통하여 밝혀진 각국의 입장을 보면 간출지도 섬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만조시 수면에 노출되는 육지지역만을 섬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⁴² 결국

39 1920년 파리강화조약은 Spitzbergen 섬 주변에 항상 존재하는 얼음에서 영해를 측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40 Symmons, 1979, op. cit., p. 22.

41 Symmons, 1979, ibid., p. 42; Bowett, 1979, op. cit., p. 6.

1930년 회의에서는 이들 양측 주장 간의 타협을 통하여 만조시 노출되는 육지만을 법적인 섬으로 하고, 간출지는 그것이 영해 내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영해의 한계를 측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⁴³ 만조시 노출에 관한 원칙은 1930년 헤이그성문화회의와 1958년 제1차 유엔해양법회의를 거치면서 확립되었으며, 1982년 해양법협약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물론 ‘만조시 노출’이란 조건의 정확한 의미도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섬이 되려면 그야말로 항상 수면위에 존재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루 24시간 중 일정한 시간 이상만 노출되어 있으면 되는지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각국의 해양수역 확대노력은 만조시 노출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 데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국제법원과 재판소들도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표명을 유보하였다. 영불대륙붕사건에서 영국은 Eddystone Rock의 암석들 중 일부는 통상적인 대조(mean highwater springs)시에도 항상 수면위에 존재하므로 이들은 섬의 지위를 갖는다고 하였다.⁴⁴ 반면에 프랑스는 국제관습법은 섬과 간출지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여러 형태의 조수 사이에 구분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1년 동안 한 번도 바닷물 속에 잠기지 않는 지형만이 섬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Eddystone Rock은 간출지라고 하였다.⁴⁵ 당시 중재재판소는 Eddystone Rock과 서부 채널지역의 기점설정 문제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하면서, Eddystone Rock이 섬의 지위를 갖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아니한 가운데 ‘만조시 노출’의 기준에 관해서는 영국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하였다.⁴⁶

42 설문에 대한 답신에서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뉴질랜드 등은 간출지는 섬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하였다. 반면에 미국, 루마니아, 덴마크, 핀란드, 독일, 일본, 노르웨이 등은 간출지도 섬의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특히 미국은 간조시 수면 위에 노출되는 모든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표면이 섬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Symmons, 1979, *ibid.*, p. 230, note 281.

43 Bowett, 1979, *op. cit.*, p. 6.

44 영국은 1858년 자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옛날에 등대가 있었던 House Rock의 표고는 19피트였으며, 1960년 조사한 바로는 당시 등대가 위치하고 있는 보다 낮은 암석의 표고는 17피트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 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옛날 등대가 있었던 House Rock는 통상적인 대조(mean highwater spring tide)시에는 단지 수면 위 0.2피트에 불과하였다. Channel Pilot 1971 ed., p.108; Symmons, 1979, *op. cit.*, p. 44.

45 *Anglo French Continental Shelf Case*, Award, 1977, paras. 125, 138.

46 Symmons, 1979, *op. cit.*, pp. 44~45.

V. 암석 관련 규정의 해석과 적용

1. 배경과 당사국의 주장

해양법협약은 제121조에서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만조시 수면위에 있는 지형들을 섬으로 인정함으로써 전통적인 섬의 정의를 그대로 승계하였으며, 대부분의 섬은 영해와 접속수역·경제수역·대륙붕을 가질 수 있게 하였다. 하지만 동조 3항에는 일종의 예외 규정을 두어 인간의 거주 또는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가지지 못한다고 하였다. 문제는 해양법협약 제121조에서 말하는 암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하지슨(Hodgson) 같은 일부 학자들과 국제수로국(International Hydrographic Bureau)에서는 면적을 기준으로 암석을 정의한 바 있으나, 면적만을 기준으로 섬의 해양수역에 대한 권원을 결정하는 것을 합리적이라고 할 수는 없었다. 해양법협약은 해양지형의 면적이 아니라 “인간의 거주가능성”과 “독자적 경제생활”을 암석의 판단기준으로 제시하였으나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았다. 더구나 인간의 거주라는 조건을 현실적인 거주가 아닌 거주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경제생활에 등대를 비롯한 여러 가지 시설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나 주변수역의 해양자원까지 포함시킨다면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가질 수 있는 섬의 범위는 크게 확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해양법협약의 암석에 대한 정의와 조건이 이처럼 모호한 것을 이용하여 일부 국가들은 자국의 해양수역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무인도와 같은 작은 섬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그 주변에 광대한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설치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았으며 주변국가와의 분쟁을 야기하였다. 일본은 2008년 11월 12일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자국의 Submission을 제출하였는데, 제출문서를 보면 일본

47 Barry Hart Dubner and Jason Parent, 2007, "When is a Rock an Island? Another Unilateral Declaration defies Norms of International Law," *Mich. St. J. Int'l L.*, vol. 15, pp. 519~521, 530. 오키노토리시마는 수십 년 전까지는 대략 6개 정도의 암석을 볼 수 있었지만, 1989년부터는 2개만이 눈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일본 정부는 대략 2억 8천만 달러를 들여 82피트 두께의 외벽공사를 하였으며, 나중에는 작은 암석 주변에 5천만 달러를 들여 티타늄 그물을 설치하였다. Norimitsu Onishi, 2005, "Japan and China Dispute a Pacific Islet," *N. Y. Times*, July 10.

은 오키노토리시마나 미나미도리시마처럼 대륙붕과 EEZ를 가질 수 없는 암석임이 분명한 해양지형 주변에도 대륙붕을 설치하려 시도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⁴⁷ 물론 해양법협약의 섬 제도 규정의 취지를 중시하여 과거에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설치할 수 있는 섬이라고 주장해온 조그만 섬에 대한 주장을 스스로 철회한 국가도 있다. 영국은 한때 스코틀랜드 서북쪽에 위치한 외딴섬 로칼(Rockall)에 대해 그 주변에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설치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으나, 1997년 노동당 정부가 수립되면서 정책을 바꾸었다. 1997년 7월 31일 외무장관 쿡(Robin Cook)은 의회에서 영국의 해양법협약 가입 방침을 전하면서 “영국의 어업한계선은 St. Kilda를 기점으로 재정립되어야 하는바, 로칼은 해양법협약 제121조 3항에 비추어 그러한 한계선을 위한 유효한(valid) 기점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⁴⁸

오늘날 도서문제가 국제법에서 관심대상으로 떠오른 이유 중의 하나는 섬이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통해 연안국의 해양수역을 확대해가는 유효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해양법협약 제121조 규정에 비추어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가질 수 있는 섬의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동조 3항에 규정된 암석에 해당하는 해양지형을 활용하여 무리하게 해양수역을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변 국가와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더구나 암석에 불과한 해양지형 주변에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만큼 인류의 공동유산이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남중국해사건에서 중재재판소는 필리핀의 청구를 반영하여 해양법협약 제121조를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첫째, 필리핀의 청구 3은 Scarborough Shoal은 EEZ와 대륙붕을 창설할 수 없다는 선언을 원하였는바, 재판소는 이 해양지형이 해양법협약 제121조에 비추어볼 때 완전한 권원의 섬인지 아니면 암석인지 검토해야 하였다. 재판소는 필리핀이 청구한 것

이 주권에 관한 결정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이 사건은 영유권에 관한 분쟁이 아니라고 보았으며, 해양수역에 대한 권원에 관한 분쟁과 관할권 중첩수역에서의 계획정에 관한 분쟁은 다르다는 이유에서 이 사건은

48 Clive R. Symmons, 1998, “Ireland and the Rockall Dispute: An Analysis of Recent Developments,” IBRU, *Boundary and security Bulletin*, Vol. 6, No. 1, pp. 78~84.

해양경계선 획정에 관한 분쟁이 아니라고 하였다. 따라서 재판소는 청구 3을 심리할 수 있는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고 판시하였다. 재판소는 동일한 근거에서 Johnson Reef, Cuarteron Reef, Fiery Cross Reef의 EEZ와 대륙붕에 대한 권원을 부인해줄 것을 요청하였던 청구 7에 대해서도 동일한 결론을 내렸다.⁴⁹ 둘째, 필리핀은 청구 5, 8, 9에서 자국의 EEZ에 대한 선언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남사군도의 모든 섬 즉 수면위 지형들이 해양법협약 제121조 3항의 목적상 암석에 해당한다는 일반적인 결정을 얻고자 한 것이다. 필리핀의 청구 5는 Mischief Reef와 Second Thomas Shoal이 자국 EEZ와 대륙붕의 일부임을 선언해달라는 청구였는데, 이는 사실상 필리핀이 이들 지형에서 200해리 이내에 위치한 해양지형으로 중국이 관할권을 주장하는 모든 해양지형의 지위에 관한 분쟁을 제기한 것이었다. 재판소는 이 분쟁 역시 도서영유권이나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으나, Mischief Reef와 Second Thomas Shoal이 완전한 권원을 가진 섬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경계획정 문제가 제기되어 재판소의 관할권이 방해받을 수도 있었다. 따라서 재판소는 필리핀의 청구 5에 대한 관할권 결정을 유보하였다.⁵⁰

중재재판소는 필리핀이 청구에서 그 법적인 지위에 대하여 청구한 해양지형 이외에 남사군도에서 크고 중요한 다른 섬들의 지리와 역사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특히 대만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이 0.43km²에 달하는 Itu Aba(太平島), 필리핀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이 0.41km²인 Thitu(中業島)는 물론 West York, Spratly Island, North-East Cay, South-West Cay 등을 검토하였다. 재판소는 이러한 6개의 큰 섬들이 모두 해양법협약 제121조 3항이 목적상 암석이라면 남사군도의 다른 섬들도 완전한 권원의 섬이 될 수 없다는 입장에서 이를 검토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⁵¹

필리핀은 제121조에 암석에 관한 3항이 등장한 것은 보잘것없는 섬에 지나치게 넓은 해양관할권을 부여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⁴⁹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para. 392.

⁵⁰ *Ibid.*, para. 393.

⁵¹ *Ibid.*, paras. 400~407.

제121조 3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암석의 의미를 지질학적·지형학적 특성에 비추어 해석하는 데 반대하고, 암석의 면적 기준을 인간거주와 경제생활이 가능한 최소면적인 1km² 이하로 제시하였으며, 인간의 거주와 독자적 경제생활에 대하여 엄격한 조건을 제시하였다. 필리핀은 각국의 3항에 대한 해석에는 차이가 있지만, 사람이 살지 않고, 작고, 황량한 작은 섬에 완전한 해양수역을 부여하면 아니 된다는 데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라고 하였다. 아울러 영국의 Rockall 주변 어업수역 포기 등의 국가실행과 일본이 오키노토리시마 주변 광대한 대륙붕에 대해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Submission을 제출한 데 대한 중국 정부의 항의를 상기시켰다.⁵² 필리핀은 필리핀의 청구 3과 7에 등장하는 4개의 해양지형들은 당연히 해양법 협약 제121조 3항의 암석이라고 하였다. 필리핀은 각국이 촬영한 항공사진과 위성사진, 수로지 등을 참조하여 이들은 인간거주를 지원할 수 없는 암석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필리핀은 Itu Aba, Thitu, West York 등 남중국해의 비교적 커다란 해양지형도 인간거주와 독자적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하였다.⁵³

중국은, 필리핀의 청구 3, 5, 7과 관련하여, 포지션페이퍼에서 필리핀은 중재재판소에 영유권 문제 이전에 중국의 해양관할권 주장의 해양법협약과의 합치 문제를 다루어 주도록 요청함으로써 말 앞에 마차를 갖다 놓았다고 비판하였다.⁵⁴ 중국은 해양에 대한 권원을 향유하는 것은 해양지형을

소유하고 있는 국가이지 해양지형 자체가 아니라고도 하였다.⁵⁵ 중국은 필리핀이 중국이 현재 주재하고 있는 9개 해양지형의 지위에 대한 결정만을 요구한 것도 불만이였다. 남사군도에 대한 중국의 해양권원에 대하여 결정하려면 모든 남사군도의 해양지형을 함께 다루어야 한다고 하면서, 현재 대만이 지배하고 있는 이투아바(테평도)와 필리핀이 점령하고 있는 해양지형이 빠져 있는 것을 비판하였다.⁵⁶

중국은 해양법협약 제121조를 필리핀의 청구에 포

52 *Ibid.*, paras. 410~419.

53 *Ibid.*, paras. 423~426.

54 *China's Position Paper*, para. 18.

55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China, *Briefing on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Xu Hong Director General of Department of Treaty and Law, 19 May 2016.

56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paras. 446~448.

함된 해양지형에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중재재판소는 일부 해양지형의 지위와 협약 제121조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그 국내법과 외교교환공문, 공적인 성명 등에서 파악할 수 있다고 하였다.⁵⁷ 중국은 일본의 오키노도리시마 주변 확장대륙붕 주장과 관련하여 해양법협약 제121조 3항 규정의 운용에 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자신의 입장을 개진하였었다. 중국은 2009년 2월 6일자로 유엔사무총장에게 보낸 Note Verbale에서, 국가들은 200해리 이원 대륙붕의 외측한계를 설정할 권리와 함께 인류의 공동유산인 국제심해저의 범위를 준수하여 국제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 할 의무도 가진다고 하였다. 중국은 2011년 8월 3일 Note Verbale에서는, 자국은 오키노도리는 인간거주와 독자적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고 하면서, 해양법협약 제121조 3항의 암석인 오키노도리는 EEZ와 대륙붕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하였었다.⁵⁸

2. 해양법협약 제121조 3항의 문언해석

(1) 암석의 구성성분

중재재판소는 제121조 3항에 암석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이 어떤 지질학적이나 지형학적 기준을 염두에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ICJ의 니카라과 대 콜롬비아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도 표명된 바 있다. ICJ는 산호초인 콜롬비아의 Quitasueno는 해양법협약 제121조 3항의 암석이라고 하였는데, 국제법상 섬의 정의에서 그 지질학적 성분은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 지형이 산호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은 관련이 없다고 하였다.⁵⁹ 아울러 어떤 해양지형의 명칭 역시 암석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항상 물속에 있는 해양지형에도 ‘섬’이나 ‘암석’과 같은 명칭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러한 명칭이 해양지형의 지위를 결정해주지는 않는다는 것이다.⁶⁰

⁵⁷ *Ibid.*, paras. 449~450.

⁵⁸ *Ibid.*, paras. 451~457.

⁵⁹ *Nicaragua v. Colombia, Judgment, ICJ Reports*, 2012, para. 37; *Ibid.*, paras. 479~480.

⁶⁰ *Ibid.*, para. 482.

(2) 유지능력

중재재판소는 ‘유지(sustain)’란 식량이나 물 등을 공급하여 생명을 지탱하게 하는 것이므로, 인간의 유지는 먹고 사는데 필요한 식량과 물 등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하였다.⁶¹ ‘유지’는 지속적인 시간 동안 사람들을 생기가 있고 건강하게 지켜주는 것이며, 경제생활과 관련해서는 어떤 활동을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게 하는 것이다.

제121조 3항의 규정은 인간거주와 경제생활의 유지 능력에 관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요한 것은 그 지형이 실제로 인간거주와 경제생활을 유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그 지형이 인간거주나 경제생활에 적합하고(apt), 그럴 능력이 있으며(able to), 도움이 되는가(lend itself to)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재판소는 어떤 해양지형에 현재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것이 사람이 거주할 수 없다는 증거는 아니며, 현재 경제생활이 없는 것이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증거가 아니라고 하였다. 아울러 중재재판소는 과거의 인간거주와 경제생활에 관한 역사적 증거는 지형의 능력을 확정하는 데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⁶²

61 Ibid., paras. 485~486. 중재재판소는 해양법협약 제121조 3항의 ‘유지’의 일반적 인 의미는 다음 세 가지 요소를 가진다고 보았다. 첫째는 지원(support)과 필수품의 공급이다. 둘째는 시간적 요소인데, 지원과 공급은 일정한 기간 동안 이루어져야 하며 단발성이거나 단기간의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셋째는 질적인 요소로 ‘적절한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다. Ibid., para. 487.

62 Ibid., para. 483. 사람이 많이 사는 육지에 가까운 섬이라도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였거나 경제생활이 유지되지 아니하였 다면, 그 지형은 사람의 거주가 불가능한 섬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어떤 섬에 거주하였거나 그 섬이 경제활동의 근거지였다는 증거는 당해 지형의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다.

63 Ibid., para. 489.

(3) 인간거주

중재재판소는 협약 제121조 3항에 사용된 인간의 ‘거주(habitation)’는 질적인 요소(qualitative element)를 포함하는바, 그 용어에는 settlement(정주)와 거주지(residence) 개념이 반영되어 있다고 하였다. 어떤 해양지형에 소수의 사람들이 그냥 주재(presence)하는 것은 항구적(permanent)이거나 습관적인(habitual) 거주지(residence)가 아니며 여기에서 말하는 ‘거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거주’는 사람들이 어떤 해양지형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요소를 요구할 뿐 아니라, 단순한 생존이 아닌 사람들의 인간생활과 생계에 충분한 조건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한다.⁶³

물론 인간거주와 생계수단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며, 해양법협약 제121조 3항의 목적상 특정한 문화나 거주형태를 상정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떠한 거주이건 필요한 요소는 있는바, 인간거주를 위하여 당해 해양지형은 최소한 사람들이 장시간(for extended period of time) 항구적·습관적으로 머물게 할 수 있는 식량, 물, 주거를 ‘지원, 지탱, 공급(support, maintain, provide)’ 할 수 있어야 한다.⁶⁴

재판소는 협약 제121조 3항에서 말하는 ‘거주’는 일반적으로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룹이나 공동체(community)의 해양지형 거주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관련 조문에 사람들의 숫자가 명시되는 않았지만, 인간거주가 한 사람의 거주를 상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⁶⁵

(4) 독자적 경제생활

독자적 경제생활이란 조건과 관련하여, 중재재판소는 ‘경제적(economic)’의 일반적인 의미는 물질적인 자원의 개발 및 규제와 관련이 있으며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판매·구매·교환에 관한 절차 및 제도와 관련되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여기에서 ‘생활(life)’은 자원의 단순한 존재로는 불충분하며 자원을 개발·분배하기 위한 ‘그곳 사람들의 일정한 수준의 활동(some level of local human activity)’을 요구한다고 보았다. 특히 재판소는 ‘경제생활’은 ‘유지’의 시간적 요소에 유념하여 이해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단 한 번의 거래(one-off transaction)나 단기사업은 지속적인 경제생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⁶⁶ 재판소는 조문의 ‘독자적(of their own)’은 해양지형 자체(또는 관련 해양지형 그룹)가 주로 외부자원의 유입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주민의 관여함이 없이 이루어지는 채굴활동(extractive activities)만을 위한 것이 아닌, 독립적인 경제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라고 하였다. 경제활동이 어떤 지형의 경제생활이 되려면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곳 주변의 자원은 외부에서 수입된 것이 아닌 그곳의 자

⁶⁴ *Ibid.*, para. 490.

⁶⁵ *Ibid.*, para. 491. 하지만 중재재판소는 협약 제121조 3항이 ‘인간의 정주(settled human habitation)’와 ‘인간의 단순한 체류(mere presence of humans)’를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한 것은 아니며, ‘인간정주형태(more settled mode of human habitation)’ 유지에 필요한 지형의 물리적 특성을 밝힌 것도 아니라고 하였다. *Ibid.*, para. 492.

⁶⁶ *Ibid.*, para. 499.

원이어야 하며, 오직 외부자원의 지속적인 투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은 ‘독자적 경제생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활동은 어떤 지형의 ‘독자적인’ 경제생활이 아니며 궁극적으로 외부로부터의 지원에 의존하는 경제생활이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어떤 해양지형이나 그 주민에게 아무런 이익도 돌리지 아니하는 ‘순전히 채굴적인 경제활동(purely extractive economic activities)’도 그 지형의 독자적인 경제생활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였다.⁶⁷

해양지형 주변의 해양수역 즉 영해, EEZ, 대륙붕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은 협약이 말하는 ‘경제생활’에 해당될까? 재판소는 EEZ나 대륙붕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은 제외된다고 보았다. 협약 제121조 3항은 해양지형이 EEZ나 대륙붕을 갖기 위한 조건을 규정한 것인데, EEZ나 대륙붕에서의 경제활동의 존재만으로 모든 수역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은 순환론이고 어색한 일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영해의 경우에는 다르다. 여기에서는 순환론은 적용되지 아니하며 모든 섬들은 제121조 3항에 관계없이 영해를 창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해에서의 경제활동은 그것이 주민을 통해서든 아니면 다른 방법에 의해서든 해양지형에 연계될 수만 있으면 당해 지형의 경제생활의 일부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이다.⁶⁸

(5) 인간거주 또는 경제생활

어떤 해양지형이 EEZ와 대륙붕을 가지려면 인간거주와 독자적 경제생활 모두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한 가지만 충족해도 되는지도 의문이었다. 필리핀은 논리상 부정적인 ‘or’에 따른 결합은 누적

적인 요건을 형성하는바 그것은 본질적으로 2중 부정이므로, 어떤 지형이 EEZ와 대륙붕을 가지려면 인간거주와 독자적 경제생활이 모두 가능해야 한다고 하였다. 재판소도 이 규정의 해석에서 논리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필리핀과 같은 입장이었으나, 필리핀의 결론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필리핀이 주장하듯이, 그 문장

67 *Ibid.*, para. 500.

68 *Ibid.*, para. 503. 조그만 암석 주변 영해에서 조업하지만 암석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원양어민은 당해 지형의 독자적 경제생활이란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 당해 지형에 인접한 해저에서 광물자원을 추출하지만 그 지형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기업도 마찬가지다.

은 누적적인 조건을 만들어내지만, 그 문장의 부정적인 전체적 구조는 누적적인 기준으로 인해 당해 지형이 그러한 해양수역들을 부정당하는 환경을 서술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판소는 그 논리적 결과는 어떤 해양지형이 인간거주 또는 독자적 경제생활이 가능하면 ‘완전한 권원의 섬(fully entitled island)’이 된다는 것이라고 하였다.⁶⁹

그런데 재판소도 인정하였듯이, 경제활동은 사람들이 수행하고 경제활동이나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지역에는 사람들은 거의 거주하지 않는다. 이는 협약 제121조 3항의 문법적 구조에 관계없이 인간거주와 경제생활이란 두 가지 개념이 실제로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인간의 거주는 유지할 수 있지만 경제생활 지원을 위한 자원을 제공하지 못하는 지형이 있는가 하면,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하지만 인간의 거주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결여하고 있는 지형이 존재할 수는 있다.⁷⁰

3. 해양법협약의 문맥, 목적, 준비문서 검토

중재재판소는 암석과 ‘완전한 권원을 가진 섬’은 문맥상 해양지형을 ‘완전한 권원을 가진 섬’, 암석, 간출지, 수중지형으로 나누는 분류체계 가운데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제121조 3항은 동조 다른 규정 및 제13조 간출지에 관한 규정과의 관련 하에 해석되어야 하며, 해양법협약 제121조 3항은 어떤 해양지형이 EEZ와 대륙붕을 거부당하는 조건에 관한 것이므로, 해양수역과 EEZ 제도 도입의 목적도 고려하여 해석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재판소는 해양지형의 지위는 그 자연적 조건을 기초로 평가되어야 하므로 간출지나 해저가 법적인 섬으로 바뀔 수 없듯이 암석도 간척 등을 통해서 ‘완전한 섬’이 될 수는 없다고도 하였다. 만일 국가들이 기술과 물질을 활용하여 인간거주나 경제생활의 유지가 불가능한 암석을 ‘완전한 권원을 가진 섬’으로 바꿀 수 있다면, 제한규정(provision of limitation)으로

⁶⁹ *Ibid.*, paras. 493~494.

⁷⁰ *Ibid.*, para. 497. 본문에서 후자의 경우로,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의 당시 Micronesia 대표가 말하였듯이, 여러 개의 섬들이 협력하여 전통적인 생활방식을 유지해가고 있는 경우를 들 수 있다. 하지만 필리핀은 그러한 가능성을 인정하는 해석은 EEZ 제도의 목적 즉 당해 수역을 창설해내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EEZ 제도의 목적에서 어긋나는 것이라고 하였다.

서의 제121조 3항의 목적은 좌절되리라는 것이다.⁷¹

재판소는 협약 내에서의 맥락과 제121조 규정과 EEZ 개념 간의 관련성을 고려하였다. 특히 1958년 제네바 협약에서 연안국의 권리와 관할권은 영해와 대륙붕에 머물렀고 해양법협약 제121조 3항 같은 조문이 없었던 것을 감안할 때, 암석 관련 규정의 등장은 EEZ에 의한 연안국 관할권 확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EEZ 제도의 목적은 연안국의 관할권을 확대하고 당해 수역의 자원을 연안국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보존하는 데 있다고 하였다.⁷² 또한 해양법협약의 EEZ에 관한 규정들은 타협을 통해 마련된 것이며, 개발도상연안국(coastal developing states) 국민들의 이익과 연안국 관할권의 확대에 반대해온 전통적인 해양국가와 원양어업국가의 이익 간의 균형을 모색한 결과라는 것이다.⁷³ 재판소는 협약 제121조 3항은 EEZ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하였다. 이 조문은 작은(tiny) 해양지형들이 불공정하게 그리고 형평에 어긋나게 해양공간에 대한 권원을 만들어낼 수 없게 한 것이다.⁷⁴

중재재판소는 협약 제121조 3항의 채택에 이르게 한 상황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재판소는 1971년부터 섬의 정의와 해양수역 권원 문제가 당시 새로이 떠오르고 있었던 ‘광역해양권원체제(regime of expanded maritime entitlements)’의 맥락에서 새로운 관련성을 갖게 되었다고 하였다. 특히 1971년 심

해저위원회 회의에서 몰타의 Pardo 대사는 그러한 권원을 모든 섬에게 부여할 가능성에 대하여 우려하였는바, 200해리 관할권 한계가 사람도 없는 외딴 작은 섬에 대해서도 인정된다면, 국가관할권 너머 해양공간에 대한 국제적 관리의 효율성은 심각하게 훼손되리라는 것이었다.⁷⁵

1974년 카라카스에서 개최된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제2회기에서는 후일 제121조 3항이 된 규정에 대하여 포괄적인 협상이 진행되었다. 당시 섬들 사이에 구분을 위한 방식에 합의는 것이 실제로 불가능하다

71 Ibid., paras. 508~509.

72 Ibid., paras. 512~513.

73 재판소는 개발도상국의 수요를 강조한 것은 해양법협약 서문에도 나타나 있다고 하였다. 협약은 서문에서 “이러한 목적의 달성이 인류 전체의 이익과 필요, 특히 연안국이거나 내륙국이거나 관계없이 개발도상국의 특별한 이익과 필요를 고려한 공정하고도 공평한 국제경제질서의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유념하고”라고 하였다. Ibid., para. 515.

74 Ibid., para. 516.

75 Ibid., para. 526.

고 하여 구분에 반대하는 국가들이 있었다. 그럼에도 1975년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3회기에서, 이 문제는 비공식교섭그룹(informal consultative group)에 넘겨졌으며, 여기에서 준비한 비공식단일교섭문(Informal Single Negotiating Text)은 “rocks which cannot sustain human habitation or economic life of their own”라는 예외규정을 도입하였다.⁷⁶ 하지만, 재판소는 협약 제 121조의 준비문서(Travaux Préparatoires)는 동조 3항의 해석에서 불완전한 지침이라고 하였다. 특히 최종적인 조문을 만들어낸 중요한 타협(compromise)은 1975년의 비공식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관한 기록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재판소는 교섭의 역사로부터 몇 가지 일반적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121조 3항은 제한규정으로 섬이 지나치게 넓은 해양공간을 창설하지 못하게 하는 조건을 부과하며, 그러한 조건이란 인류공동유산인 심해저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고 해양공간의 형평에 어긋나는 분배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⁷⁷

4. 해양법협약 제121조 3항 해석의 결론

중재재판소는 해양법협약의 문언과 문맥, 목적은 물론 협약 제121조 3항이 등장하게 된 배경 등을 고려하여 당해 조문의 해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⁷⁸

첫째, 암석이란 단어를 사용하였다고 하여서 당해 규정이 단단한 바위로 이루어진 해양지형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둘째, 해양지형의 지위는, 인간의 거주와 독자적 경제생활 능력의 향상을 위한 외부로부터의 부가(additions)나 변경(modification) 없이, 그 자연적 능력(natural capacity)에 기초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셋째, 인간거주(human habitation)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요소는 거주가 단기적인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인간거주는 그곳에 집을 가지고 있는 ‘안정

⁷⁶ *Ibid.*, paras. 530~531. 당시 영국 대표는 해양지형의 면적, 인구, 거리에 근거하여 권원에 차등을 두는 데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멕시코 대표는 섬 관련 상황의 엄청난 다양성을 커버할 수 있는 특별규칙을 작성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라고 하였다.

⁷⁷ *Ibid.*, para. 535.

⁷⁸ *Ibid.*, para. 539.

적인 인간공동체(stable community of people)'에 의한 거주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하지만 그러한 공동체는 꼭 커야 하는 것은 아니며, 멀리 떨어진 환초에서는 적은 사람들과 가족그룹으로도 충분하다. 특히 유목민의 어떤 지형에의 주기적이고(periodic) 또는 습관적인 거주는 여기에서 말하는 거주가 되며, 원주민의 존재는 그것으로 충분하다.⁷⁹

넷째, 독자적 경제생활(economic life of their own)은 인간거주와 연결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이 두 가지 조건은 병존한다. 그런데 제121조 3항은 현재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경제생활의 유지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재판소는 문제의 '경제생활(economic life)'이란 일반적으로 어떤 지형에 거주하고 있거나 그곳에 집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human population)의 생활과 생계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특히 제121조 3항은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요구하므로, 경제생활은 해양지형 자체를 지향하는 것이어야 하며 영해 주변의 수역이나 해저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면 아니 된다.⁸⁰

다섯째, 제121조 3항의 문맥을 보면 인간거주 또는 독자적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은 섬에게 EEZ와 대륙붕을 가질 수 있는 권원을 부여하는데 충분하다. 하지만 해양지형은 그것이 "안정적인 인간공동체"에 의해 거주되고 있는 경우에 독자적 경제생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여기에는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주민들이 관련 해양지형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신들의 경제생활을 유지해가는 경우다. 복수의 해양지형을 사용해서만 어떤 지역에 거주할 수 있는 주민들은 그 거주가 '단일의 해양지형에 의하여' 유지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해양지형에 거주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그 생계와 경제생활이 여러 해양지형에 걸쳐 있는 주민들은, 그러한 지형들에 직접 거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 해양지형들이 독자적 경제생활을 유지하고 있음을 부인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⁸¹

79 Ibid., para. 542.

80 Ibid., para. 543.

81 Ibid., para. 544.

여섯째, 제121조 3항은 당해 지형에서 현재 또는 이제까지 사람의 거주나 경제생활이 행해지고 있는가 하는 데 관한 것이 아니며, 인간거주나 독자적 경제생

활을 유지할 수 있는 해양지형의 능력에 관한 것이다. 해양지형의 능력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판단되며, 이는 주권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하였다.⁸²

일곱째, 해양지형의 인간거주 또는 독자적 경제생활 능력은 사례별로(case-by-case) 평가되어야 한다. 재판소는 지형의 자연적 능력에 기여하는 주요 요소들을 평가하였는데, 그런 요소에는 오랜 기간 일단의 사람들이(a group of persons) 살아가는데 충분한 양의 물과 식량, 주거가 포함된다. 또한 어떤 지형에 거주하고 그곳에서 경제생활을 영위하는데 관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기후, 지형의 다른 지역이나 주민에의 근접성, 지형에서의 생계에 대한 잠재적 영향 등도 그러한 요소에 포함된다.⁸³

여덟째, 어떤 해양지형의 능력은 ‘작은 도서군(a group of small island features)’의 집단적 인간거주와 경제생활 유지 능력의 잠재력을 감안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재판소는 원격도서 주민들은 자주 많은 섬들 특히 때로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섬들을 생계유지에 사용하고 있음에 유념하였다. 그러한 도서들이 전통적인 생활형태를 유지해가면서 인간거주를 유지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복수의 섬들의 역할을 외부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였다.⁸⁴

아홉째, 해양법협약 제121조 3항의 해석에 관한 재판소의 결론에 비추어 보면 어떤 해양지형의 객관적·물리적 조건에 관한 증거는 그 임무를 수행하는 데는 유효하였다. 물리적 조건의 증거들은 분명히 어떤 범주에 속하는 지형들을 분류하는 데는 충분하였지만, 그 경계선에 위치한 지형을 분류하는 데는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었다.⁸⁵

중재재판소는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해양지형의 능력에 관한 증거는 역사적 사용에 관한 것이라고 하였다. 사람들은 매우 어려운 상황인 오지에서도 공동체를 형성해 왔는바, 어떤 해양지형에 관한 역사적 기록들이 그곳에 안정적인 공동체가 발달된 적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그 합리적인 결론은 그 자연환경이 공동체 형성에 부적합한 것이고 따라서 그

⁸² Ibid., para. 545.

⁸³ Ibid., para. 546.

⁸⁴ Ibid., para. 547.

⁸⁵ Ibid., para. 548.

지형은 인간거주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재판소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인간거주가 전쟁, 오염, 환경피해 등으로 인하여 방해받은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면 역사적으로 인간공동체를 유지한 적이 없는 지형은 인간거주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재판소는 결론지었다.⁸⁶

이어서 중재재판소는 어떤 해양지형에 현재 사람이 거주하고 있거나 역사적으로 거주한 적이 있었다면, 그러한 거주가 외부의 지원(outside support)을 통하여 가능해진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외부의 지원이 매우 중요한 것이어서 거주를 위한 필수적인 조건인 경우에는 그 지형은 인간거주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재판소는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순수한 공무원이나 군대는 어떤 지형이 인간거주를 유지할 수 있다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하였다. 해양법협약 제121조 3항 규정이 국가들의 과도하고 불공정한 주장을 제한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면, 본래 인간거주를 유지할 수 없는 지형에 영토와 그 해양수역에 대한 주장을 제기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배치되었다면 그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⁸⁷

5. Scarborough Shoal, Johnson Reef, Cuarteron Reef, Fiery Cross Reef, Gaven Reef, Mckennan Reef와 남사군도 기타 해양지형에의 적용

중재재판소는 Scarborough Shoal은 해양법협약 제121조 3항의 목적상 ‘암석’이라고 하였다. Scarborough Shoal은 만조시 노출되는 5~7개의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Scarborough Shoal의 수면위 돌출부는 매우 작으며, 이는 과거의 사진에서도 확인된다. 그들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상태에서’ 인간거주를 유지할 수 없음을 분명하다. 거기에는 식수, 식물, 거주 공간

이 없으며 다른 해양지형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Scarborough Shoal이 전통적으로 여러 국가 어부들의 어

⁸⁶ *Ibid.*, para. 549.

⁸⁷ *Ibid.*, para. 550.

장으로 사용되어 왔지만, 재판소는 주변 수역에서의 경제활동은 그것이 당해 지형의 경제생활을 형성하는 것이 되려면 그 해양지형과 명확한 연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 환초에서 작업하던 어부들이 그 환초의 high-tide rock 들을 사용하였다는 증거는 없으며, 어업 이외에 다른 경제활동을 하였다는 증거도 없다. 따라서 Scarborough Shoal이 독립해서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증거는 없다고 하였다.⁸⁸

중재재판소는 Johnson Reef, Cuarteron Reef, Fiery Cross Reef, Gaven Reef, Mckennan Reef도 해양법협약 제121조 3항의 목적상 ‘암석’이라고 하였다. 이들은 모두 수면위의 지형이기는 하지만 대부분 식수, 식물, 거주 공간이 없거나 부족하여, 자연상태에서는 인간거주나 경제생활의 유지가 불가능한 작고 척박한 지형들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Johnson Reef, Cuarteron Reef, Fiery Cross Reef, Gaven Reef(North)에서 매립작업을 진행하고 시설물을 건설하였지만, 그것은 오직 준설과 만조시에는 물속에 가라앉는 환초에 건설한 것으로 외부로부터의 공급에 의존하는 것이다. 이처럼 중국은 일부 해양지형에 시설물을 건설하고 대대적인 간척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재판소는 이러한 중국의 건설작업은 그것이 비록 대규모였다고 하여도 해양지형의 지위를 암석에서 ‘완전한 권원을 가진 섬(fully entitled island)’으로 변모시킬 수 없다고 하였다.⁸⁹

중재재판소는 중국이 “중국은 전체로서의 남사군도에 기초하여 영해, EEZ, 대륙붕을 가진다”고 성명을 발표한 것과 그 포지션페이퍼에서 필리핀이 남사군도에서 몇 개의 지형만을 선택해서 그 해양권원에 대해 결정해 주도록 청구한 것을 비판한 사실을 상기하였다. 재판소는 중국이 인간거주와 경제생활이란 기준의 검토시 주민들이 “밀접하게 관련된 해양지형 네트워크(network of closely related maritime features)”를 통하여 유지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은 아닌가 하는 것과 남사군도가 군도기선 또는 직선기선 제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을 고려하였

⁸⁸ *Ibid.*, paras. 554~556.

⁸⁹ *Ibid.*, paras. 557~570.

중재재판소는 Itu Aba, Thitu, West York, Sprat-

⁹⁰ *Ibid.*, paras. 571~576.

ly Island, South-West Cay, North-East Cay 등 남사군도에서 보다 중요한 지형들의 지위도 검토하였다. 현재 남사군도의 모든 섬들은 어떤 국가에 의해서든 통제되고 있고 시설물과 인원이 배치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거주는 성격상 압도적으로 군사적 또는 정부적인 것으로 외부의 지원에 의존하는 것이다. 더구나 상당수 섬들은 크게 개조되었는데, 재판소는 EEZ의 등장이나 인공에 의한 변형 이전의 해양지형 상황에 대한 역사적 증거(historical evidence)들이 당해 지형의 인간거주와 경제생활 능력에 대한 보다 신뢰할 만한 지침이 된다고 하였다.⁹¹

남사군도 여러 섬의 우물의 존재는 일련의 보고서들이 이를 확인하였다. 즉 1868년 China Sea Directory는 Itu Aba, Thitu, North-East Cay의 작은 우물들의 존재를 언급하였다. 수질에 대해서는 양호(Itu Aba), 음용가능하나 염분이 있음(Thitu), 약간 오염(South-West Cay) 등 다양한 보고들이 있었다.⁹² 특히 상업적 목적에서 1939년 작성된 일본의 이투아바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그곳에는 상당한 양의 식수가 있다고 하였다. 재판소는 남사군도의 섬에는 작은 우물들이 존재하였으며, 수질은 오늘날의 음용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못하지만 시간과 강우 등의 조건에 따라 달랐으며, 이러한 민물은 우수와 함께 과거에 소수의 사람들의 생활을 지원한 것으로 보았다.⁹³ 역사적인 기록들은 남사군도의 비교적 큰 섬들은 역사적으로 경작된 적이 있음을 보여준다. 1868년 China Sea Directory는 이투아바는 작은 나무와 관목으로 뒤덮여 있으며, Thitu도 관목으로 덮여 있었다고 하였다. 시간이 가면

서 20세기 초 그곳 섬들의 식물수준도 높아지는데, 일본은 상업적 목적에서 이투아바에 바나나, 파파야, 파인애플, 야자 등 과실수들을 식재하였다.⁹⁴ 재판소에 제출된 기록들은 소수 하이난 출신 어민들의 일관된 주재(presence)를 시사해주었다. 1868년 China Sea Directory에서 Tizard Bank 관련 기술에 대한 주석에 따르면, 해삼과 거북을 채집하며 생계를 이어온 하이난 어부들이 이들 섬에서 발견되는데, 그들 중의 일

⁹¹ *Ibid.*, para. 578.

⁹² *Ibid.*, para. 580~581.

⁹³ H. Hiratsuka, 1939, "The Extended Base for the Expansion of the Fishery Business to Southern Area: New Southern Archipelago - On-Site Survey Report," *Taiwan Times*, May; *Ibid.*, para. 584.

⁹⁴ *Ibid.*, paras. 585~586.

부는 그곳에 여러 해 체류하였으며, 하이난에서 출발한 정크선들이 쌀과 기타 생필품들을 싣고 그곳을 방문하여 어민들의 해삼 및 기타 물건들과 교환하였다고 한다. 또한 1868년 China Sea Directory에 따르면 하이난 출신 중국 어부들이 North Danger Reef의 암초에 자주 나타나서 해삼과 거북을 포획하고 북동쪽 암초의 중앙에 있는 우물에서 식수를 조달하였다고 하였다.⁹⁵

상기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재판소는 남사군도에서 인간공동체(human community)와 같은 것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그곳의 섬들은 임시대피소나 어민들의 조업기지 또는 광부와 어부들의 임시주거였을 뿐이었다고 하였다. 재판소는 EEZ의 도입 목적은 작은 해양지형에 지나치게 넓은 해양수역을 도입하는 데 있지 아니하다고도 하였다. 결국 재판소는 Itu Aba, Thitu, West York, Spratly Island, South-West Cay, North-East Cay 등은 인간거주와 독자적 경제생활의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보았으며, 남사군도의 섬 중에는 EEZ와 대륙붕을 가질 수 있는 해양지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⁹⁶

VI. 맺음말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 채택된 해양법협약 제121조는 섬 제도에 관한 규정인데, 섬의 정의에 대해서는 1958년 영해협약의 관련 규정을 계승하였다. 그러나 새로이 암석에 관한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섬에 대한 차별화를 시도하였는바, 섬의 정의에 내재해 있는 문제점은 물론 암석과 간출지의 정의와 지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그치지 않았다. 더구나 해양법협약이 EEZ와 광역대륙붕을 도입함으로써 국가들의 해양수역에 대한 욕구가 분출하는 가운데, 국제사법재판소를 비롯한 국제법원과 재판소들은 완전한 섬과 암석, 간출지의 조건을 제시하고 해양지형의 해양수역에 대한 권

⁹⁵ Admiralty Hydrographic Office, 1868, *China Sea Directory*, Vol. II, p. 71; *Ibid.*, paras. 597~598.

⁹⁶ *Ibid.*, paras. 625~626.

원 문제를 다루는 데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섬 제도는 국제해양법의 최대의 약점으로 남아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유엔해양법협약 부속서 VII에 따라 설립된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가 남중국해중재사건 본안에 대한 2016년 7월 12일 판정에서 섬 등 해양지형 문제를 깊이가 있고 과감하게 다룬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다.

남중국해 분쟁에서 문제가 된 해양지형들은 일반적인 섬과 간출지 그리고 EEZ와 대륙붕에 대하여 완전한 권원을 가지는 섬과 그렇지 못한 암석의 경계선에 위치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먼저 섬 제도의 발달과정과 섬의 정의를 고찰하였다. 남중국해 분쟁에서 중재재판소는 간출지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었다. 재판소는 해양법협약 제13조를 근거로 간출지는 수중 대륙피의 일부이므로 전유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해양법협약 제121조가 섬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자연적 형성을 요구하듯이, 제13조는 간출지도 자연적 형성을 조건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았다. 이는 해양지형의 지위는 자연적 상태를 기초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으로, 법적으로 인공에 의한 변형을 통해서 해저를 간출지로 그리고 간출지를 섬으로 바꿀 수 없다는 의미다.

국제법상 도서제도와 관련하여 남중국해 중재판정이 많은 주목을 끌게 된 이유 중의 하나는 중재재판소가 섬과 암석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었기 때문이다. 재판소는 해양법협약 제121조 3항의 규정을 세밀하게 해석하고 다양한 고려사항들을 검토하였는데, 특히 인간의 거주 또는 독자적 경제생활에 관한 조건을 매우 엄격하게 분석하고 해석하였다. 그렇지만 남중국해 사건에 대한 판정에서 중재재판소가 취한 입장 특히 완전한 권원을 가진 섬과 암석을 구분하는 기준과 관련하여 재판소가 제시한 입장이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인 규범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는 시간을 갖고 살펴보아야 한다. 해양법협약 제121조 3항은 인간거주와 독자적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섬을 암석이라 규정하고 EEZ와 대륙붕에 대한 권원을 부인하였는데, 인간거주와 독자적 경제생활이라는 조건에 대하여 재판소는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인간거주는 단기적인 것이어서는 아니되며

‘안정적인 인간공동체(stable community of people)’에 의한 거주여야 한다고 하고, 독자적 경제생활은 해양지형 자체를 지향하는 것이어야 하며 주변의 수역이나 해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면 아니 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기준은 기존의 국가들의 실행에 비추어보면 지나치게 엄격한 것일 수 있다. 이는 재판소가 동 규정이 어떤 해양지형에서 현재 또는 이제까지 사람의 거주나 경제생활이 행해지고 있는가 하는 데 관한 것이 아니라 인간거주나 독자적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해양지형의 능력에 관한 것이라고 해석함으로써 작게나마 탈출구를 제시하였지만, 재판소의 기본적인 입장변화 여부는 해양법협약 체결 당시의 원론적인 입장을 충실하게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세계 많은 국가들이 이미 EEZ와 대륙붕을 가질 수 있는 완전한 권원을 가진 섬과 가질 수 없는 암석 간의 구분을 회피하고 있고, 실제로 영국의 Rockall 섬 등을 제외하고는 자국 소유의 법적인 섬의 EEZ와 대륙붕을 포기한 사례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 남중국해 중재판정으로 국가들의 해양정책이 급반전을 이루어낼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되는 것이다. 특히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중국은 물론이고 오키노도리에 대하여 과도한 주장을 하고 있는 일본 그리고 미국 역시 만조시 수면위의 지형들의 해양수역 중의 일부를 암석이라고 하여 그 해양수역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이번 중재재판소 판정의 취지를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나라의 독도를 비롯해 국제적인 관심사인 대부분의 해양지형은 EEZ와 대륙붕을 가질 수 없는 암석으로 격하될 것이다. 재판소가 제시한 인간거주와 독자적 경제생활에 관한 기준은 매우 엄격한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기준에 따르든 암석이 분명한 해양지형은 물론 완전한 권원을 가진 섬과 암석의 경계선에 위치하는 해양지형에 대한 각국의 입장변화 여부는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한다. 현재 한일 양국은 모두 독도를 EEZ와 대륙붕을 가질 수 있는 완전한 섬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섬나라인 일본이 당장 오키노도리를 포함한 암석이나 독도 주변에도 EEZ와 대륙붕을 설치하는 정책을 변경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따라서 당장 한국과 일본 간에 독도의 법적 지위와 해

양수역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본 남중국해판정을 계기로 국제법상 도서제도에 커다란 변화가 올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으므로 국제법원과 재판소의 동향과 각국의 입장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책을 마련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국문 초록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는 섬 제도에 관한 규정에서 전통적인 섬의 정의를 계승하였으나, 암석에 관한 규정을 두어 EEZ와 대륙붕을 가질 수 없게 하였다.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법학계와 국제사회에서는 섬의 정의에 내재해 있는 문제점과 암석과 간출지의 정의와 지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그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에 의하여 설립된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는 남중국해중재사건 본안에 대한 2016년 7월 12일 판정에서 섬 등 해양지형 문제를 깊이가 있고 과감하게 다루었다.

남중국해 분쟁에서 중재재판소는 간출지는 수중 대륙괴의 일부이므로 전유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간출지에도 자연적 형성이란 조건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는 해양지형의 지위는 자연적 상태를 기초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으로, 법적으로 인공에 의한 변형을 통해서 해저를 간출지로 그리고 간출지를 섬으로 바꿀 수 없다는 의미다.

국제법상 도서제도와 관련하여 남중국해 중재판정이 많은 주목을 끌게 된 것은 중재재판소가 암석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었기 때문이다. 재판소는 해양법협약 제121조 3항의 조건들을 상세하게 검토하였는데, 특히 인간의 거주 또는 독자적 경제생활에 관한 조건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였다. Rockall에 대한 영국의 입장 이외에는 자국 소유의 수면위의 섬들을 EEZ와 대륙붕을 가질 수 없는 암석으로 분류한 국가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 금번 중재재판소의 판정이 국제법상 도서제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이번 중재재판소 판정의 취지를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나라의 독도를 비롯해 국제적 관심사인 대부분의 섬들은 EEZ와 대륙붕을 가질 수 없는 암석으로 격하될 것이다. 현재 한일 양국은 모두 독도를 EEZ와 대륙붕을 가질 수 있는 완전한 섬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당장 독도의 지위를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할 일은 없을 것이다. 다만 본 남중국해판정을 계기로 국제법상 도서제도에 커다란 변화가 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가들의 관련 동향

과 국제법원과 재판소의 입장도 예의 주시해야 한다.

〈주제어〉

남중국해, 중재재판소, 도서제도, 간출지, 암석, 인간거주, 경제생활

ABSTRACT

South China Sea Arbitration and Its Implications on International Regime of Islands

Lee, Seokyong
Professor of Law, Hannam University

Although Article 121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followed the a traditional definition of islands, the same article's third paragraph stipulates that "rocks which cannot sustain human habitation or economic life of their own shall have no exclusive economic zone or continental shelf." However, due to the issues inherent in the definition of an island as well as the vague definition and legal status of rocks and low-tide elevations, the article has remained as a source of controversy. And recently, an in-depth, critical review on the status of various maritime features was carried out at a trial on the South China Sea dispute between the Philippines and China.

The award issued by the tribunal confirmed that because low-tide elevations are part of submarine topography, they cannot become objects of appropriation for any state. The tribunal considers natural formation as a precondition for low-tide elevations, which means artificially modified low-tide elevations cannot be legally recognized as islands.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squarely faced the matter of the status of rocks. The tribunal especially scrutinized Article 121 (3) of UNCLOS and performed a strict interpretation on the conditions for human habitation and independent economic life. However, given existing practices with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degree of impact the award will have on the "regime of islands" defined by UNCLOS remains unpredictable.

If the award ruling is to be applied to insular formations, most of the maritime features bordering between island and rock are likely to be classified into rocks. Although Dokdo is not a large insular formation, Korea and Japan have considered the maritime feature as an island. Nevertheless, it will be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new developments in state practices and international judicial organs.

Keywords

South China Sea, Arbitral Tribunal, Regime of Islands, low-tide elevation, rock, human habitation, independent economic life

참고문헌

-도서와 논문-

이석용, 2015, 『국제법상 도서제도와 독도』, 세창출판사.

이석용, 2010, 「연안국 해양수역확대가 국제해양질서에 미치는 영향」, 『안암법학』, 통권 제31호.

Bowett, Derek W., 1979, *The Legal Regime of Islands in International Law*, Oceana Publications Inc.

Brown, E. D., 1994,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Vol. 1, Dartmouth Publishing Co.

Churchill, R. R. and Lowe, A.V., 1999, *The Law of the Sea*, Manchester University Press.

Clingan, Thomas A., 1994, *The Law of the Sea : Ocean Law and Policy*, Austin & Winfield.

Jayewardene, Hiran W., 1990, *The Regime of Islands in International Law*, Martinus Nijhoff Publishers.

Rothwell, Donald R., and Stephens, Tim, 2010,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Hart Publishing.

Sohn, Louis B., and Noyes, John E., 2004, *Cases and Materials in the Law of the Sea*, Transnational Publishers.

- Symmons, Clive Ralph, 1979, *The Maritime Zones of Islands in International Law*, Martinus Nijhoff.
- Broder, S. and Van Dyke, J., 1982, "Ocean Boundaries in the South Pacific," *University of Hawaii Law Review*, Vol. 4.
- Charney, Jonathan, 1999, "Rocks that cannot Sustain Human Habitation,"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93.
- Dubner, Barry Hart and Parent, Jason, 2007, "When is a Rock an Island? Another Unilateral Declaration defies Norms of International Law," *Mich. St. J. Int'l L.*, Vol. 15.
- Hodgson, R. D., 1973, "Islands : Normal and Special Circumstances," in J. K. Gamble and G. Pontecorvo(eds), *The Law of the Sea: The Emerging Regime of the Oceans*, Ballinger Publishing Co.

- 판례 -

-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The Republic of Philippines v.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ward, PCA, 12 July 2016.
- Dispute Concerning Delimitation of the Maritime Boundary between Bangladesh and Myanmar in the Bay of Bengal(Bay of Bengal), Judgment, ITLOS, 2012.
-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Black Sea (Romania v. Ukraine), Judgment, ICJ Reports, 2009.
- Sovereignty over Pedra Branca/Pulau Batu Puteh, Middle Rocks and South Ledge (Malaysia/Singapore), Judgment, ICJ Reports, 2008.
-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 between Nicaragua and Honduras in the Caribbean Sea (Nicaragua v. Honduras), Judgment, ICJ Reports, 2007.
- Sovereignty over Pulau Ligitan and Pulau Sipadan (Indonesia/Malaysia), Judgment, ICJ Reports, 2002.
- Maritime Delimitation and Territorial Questions between Qatar and Bahrain(Qatar v. Bahrain), Judgement, ICJ Reports, 2001.

고등학교 한국지리 수업에서 이어도 교수-학습에 대한 연구

장원석 제주 신성여자고등학교 교사
손명철 제주대학교 지리교육전공 교수

“명명백백한 자국의 영토도 주장하지 않는 자에게는 돌아오지 않는다.”

- 이한기, 1969

I. 머리말

교통·통신 수단이 발달하고 지역 간, 국가 간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인접 국가들 사이의 영유권 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독도를 둘러싼 일본과의 외교 문제뿐만 아니라 이어도에 관한 중국과의 신경전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처럼 좁은 공간에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인구가 서로 어울려 생업을 지속해올 때, 영토 혹은 국토가 가지는 의미는 단순한 물리적인 지표면의 일부에 머물지 않는다. 국토는 국가의 지리적 조건이며 국민이 그들의 삶을 펼치는 터전인 것이다(류우익, 1988). 국민은 국토가 부여하는 여러 가지 조건에 창의적으로 적응하여 독특한 삶의 양식을 다채롭게 전개하며,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그 결과를 다시 국토의 구석구석에 채워 남긴다. 따라서 국토는 국민의 온갖 영광과 고난이 층층이 쌓이고 아로새겨진 역사의 현장

인 동시에, 미래의 후손에게 넘겨줘야 할 영원한 삶의 유산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 국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널리 확산됨에 따라 초·중등학교 사회과, 특히 지리교육에서 국토 또는 영토에 대한 내용과 비중이 강화되고 있다. 현행 2009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 따르면, 중학교의 경우 지리 영역에 ‘우리나라의 영토’라는 독자적인 대단원이 설정되어 이 단원에서 영토, 영해, 영공에 대한 개념뿐만 아니라 독도의 중요성을 집중적으로 학습하도록 하고 있다. 고등학교에서는 한국지리 과목에서 첫 번째 대단원으로 ‘국토 인식과 국토 통일’을 설정하여 통일 문제와 함께 주변 국가와 관련된 영역 갈등의 원인과 과정, 그리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그런데 영토 분쟁에 관한 논의와 연구는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영토 혹은 국토 교육과 관련된 선행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서태열, 2009; 남호엽, 2011; 김민정, 2013; 허은실, 2013). 그것도 독도 교육과 관련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할 뿐 이어도 교육에 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송호열, 2013; 유수현, 2013).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교 한국지리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바람직한 이어도 교수-학습 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2009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한국지리 과목에서 이어도 관련 내용이 얼마나,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가를 검토하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5종의 한국지리 교과서에서는 이어도가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가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검토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설명식 개념학습, 논쟁식 토론학습, 그리고 스토리텔링 학습 등 3차시에 걸친 이어도 교수-학습 과정안을 개발하여 제시하기로 한다.

본 연구자가 개발한 교수-학습 과정안은 동료조언법(peer debriefing method)을 통해 신뢰성(credibility)과 타당성(validity)을 검증하였다. 교육경력 15~20년 된 제주도 내 고등학교 지리교사 3명이 조언자로 연구에 참여하여, 3개의 교수-학습 과정 초안에 대해 교육적 의미와 잘된 점, 문제점이나 아쉬운 점, 개선할 점이나 대안 등에 대해 조언하였다. 연구자는 모두 3차례에 걸쳐 조언자들의 조언 내용을 반영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II. 현행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과서에 기술된 이어도

1. 2009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을 통해 본 이어도

2009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 따르면 고등학교 사회교과는 한국지리, 세계지리,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 경제, 법과 정치, 사회·문화 등 모두 8개의 일반 선택과목으로 편성되었다. 이 중 영토 문제를 가장 직접적으로 다루는 과목은 바로 한국지리다. 한국지리 과목에서는 ‘영토’라는 일반적 용어보다 국민국가적 맥락을 가지는 ‘국토’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총괄적인 과목 목표 서술 부분에서 아래와 같이 과목의 성격과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한국지리는 우리 국토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세계화, 지역화에 필요한 안목을 기르고 국민과 국토공간의 유기적인 연관성을 이해하여 국토의 의미를 인식하고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과목이다. 나아가 한국지리는 학습자들이 자신의 삶을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 갈 수 있는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인지적·기능적·정의적 목표 영역별로 각각 2개씩 모두 6개의 목표를 서술하고 있으며, 특히 정의적 영역의 목표에서 아래와 같이 독도와 이어도 등을 다룰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

바. 국토 분단, 주변국과의 영역 갈등과 같은 우리 국토가 당면하고 있는 국토 공간의 정체성 문제를 올바른 시각에서 이해하고, 바람직한 국토관과 국토애를 함양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른다.

구체적으로 내용 체계를 살펴보면, 모두 8개 대단원 중 첫 번째 대단원으로 ‘국토 인식과 국토 통일’ 단원을 설정하여 우리 영토를 다룰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대단원은 다시 4개의 중단원으로 구성되는데, ‘국토에 대한 인식 변화’, ‘우리나라의 위치 특성’, ‘국토 통일의 당위성’, ‘국토의 정체성과 영토 문제’가 그것이다. 이들 중 네 번째 중단원에서 영토 분쟁에 관한 내용을 보다 직접적으로 다루게 되며, 이러한 사실은 네 번째 중단원과 연계된 아래와 같은 성취 기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④ 주변 국가와 관련된 영역 갈등의 원인과 과정 및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나라 영토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처럼 현행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에 따르면, 사회과 8개 선택과목 중 한국지리 과목에서만 영토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그것도 단 하나의 중단원에서만 내용을 서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현행 한국지리 교과서에 기술된 이어도

현재 한국의 초·중등학교 교과서는 내용과 체제 면에서 거의 전적으로 국가 교육과정의 규정을 받는 구조다.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과서도 5개 출판사(금성출판사, 미래엔, 비상교육, 지학사, 천재교육)에서 각각 1종씩 모두 5종의 교과서를 발행하여 학교 현장에 공급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실제 내용과 체제 면에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어도와 같이 특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면밀히 살펴보면 교과서 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발견되기도 한다. 여기서는 5개 출판사별(가나다순)로 이에도에 대한 내용을 얼마나,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이에도에 관한 내용이 어디에, 어떤 형태로 배치되어 있는가를 살펴 보면 <표 1>과 같다. 이는 동일한 내용이나 용어라도 교과서의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배치하는가에 따라 그것의 중요도와 위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시 말하면 자료나 학습활동, 단원마무리 부분에 배치하는 것보다는 제목이나 학습목표, 본문 내용에 배치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그 중

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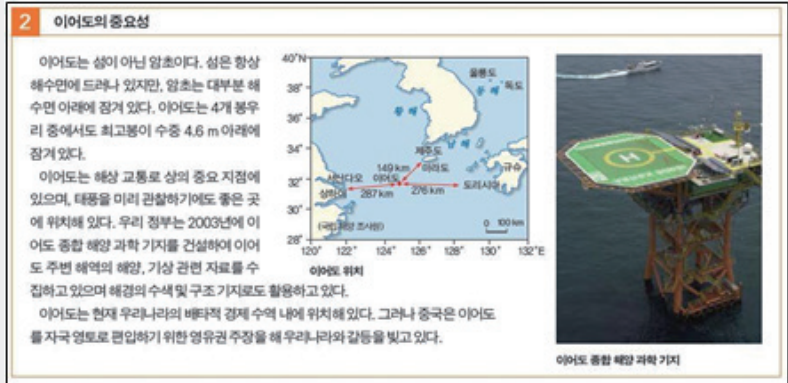
〈표 1〉 한국지리 교과서별 이어도 내용 배치 현황

구분	제목	학습목표	본문내용	자료	학습활동	단원마무리
금성출판사			●	●	●	
미래엔				●	●	
비상교육				●		
지학사				●	●	●
천재교육	●	●	●	●		●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선 모든 한국지리 교과서는 이어도에 관한 내용을 자료의 형태로 제시하고 있다. 배치 형태뿐만 아니라 내용의 분량 비중 면에서도 출판사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천재교육 출판사의 경우 제목과 학습목표, 본문 내용, 자료, 단원마무리에 걸쳐 상대적으로 다양한 형태와 많은 분량으로 이어도를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과서별 이어도에 대한 상세한 관련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1) 이어도의 위치적 특성과 종합해양과학기지에 초점을 둔 금성출판사 교과서

금성 교과서는 첫 번째 대단원 ‘1. 국토 인식과 국토 통일’ 아래 네 번째 중단원 ‘04. 소중한 우리 국토’를 설정하고, 다시 두 번째 소단원 ‘2. 소중한 우리의 영토’ 부분에서 이어도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다. 본문 내용에서 이어도의 위치와 경제적 가치를 설명하고, 중국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동일한 면에 자료 두 개를 상하로 배치하여 소개하고 있는데 ‘1. 독도의 중요성’과 ‘2. 이어도의 중요성’이 그것이다(〈그림 1〉). 여기에서는 이어도의 위치적 특성과 함께 종합해양과학기지를 소개하고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도 간략하게 다루고 있다. 학습활동에서도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건설에 따른 유리한 점을 설명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금성 교과서는 이어도의 위치적 특성과 경제적 가치, 그리고 중국과의 영유권 분



(그림 1) 금성출판사 교과서에 기술된 이어도(출처: 서태열 외, 2014, 31쪽)

쟁을 중심으로 이어도를 다루고 있다. 따라서 제주 사람들의 이어도에 대한 인식과 오랜 세월 구전되어오는 이상향으로서의 이어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2) 배타적 경제 수역 및 어업 수역도와 함께 간략하게 이어도를 다루는 미래엔 교과서

미래엔 교과서는 첫 번째 대단원 '1. 국토 인식과 국토 통일' 아래 네 번째 중단원 '4. 국토의 정체성과 영토 문제'를 설정하고, 다시 첫 번째 소단원 '1. 우리나라의 영역' 부분에서 이어도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다. 영역의 중요성을 살펴보기 위해 3개의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어도에 관한 것이다(그림 2)). 이어도 자료에서는 이어도의 위치, 종합해양과학기지, EEZ를 둘러싼 중국과의 분쟁을 소개하고 있다. 탐구활동에서는 이어도에 세운 종합해양과학기지의 타당성을 설명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다른 교과서에 비해 이어도에 대한 분량과 실제 내용이 적은 편인데, 그 대신 간도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당구 활동 **배타적 경제 수역과 한·중·일 어업 협정**

● 배타적 경제 수역과 어업 수역을 보고 영역의 중요성을 알아보자.

자료 1 배타적 경제 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 **자료 2** 이어도

‘국제 연합 해양법 협약’에 의하면 연안국은 영해 바깥쪽에 EEZ를 설정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영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를 초과할 수 없다. 연안국은 자국의 EEZ에서 ‘상부 수역, 해저 및 그 하층토에 있는 천연자원(생물, 무생물)의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주권적 권리’, ‘해수, 해류 및 해풍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 수역의 경제적 개발과 탐사에 관한 주권적 권리’, ‘인공 섬 및 기타 구조물의 설치와 사용에 관한 관할권’, ‘해양 과학 조사에 관한 관할권’, ‘해양 환경의 보호와 보전에 관한 관할권’을 갖는다.

하지만 해상 교통에서 EEZ는 공해와 유사하다. 즉, 모든 나라는 다른 나라의 EEZ에서 항행, 항공 비행의 자유, 해저 전선, 관선(管線) 부설의 자유를 누린다.

이어도는 우리나라 최남단인 마라도에서 남서쪽으로 149 km, 중국의 서산다오에서 287 km 떨어져 있는 수중 암초이다. 우리나라는 2003년 이곳에 기상과 해양의 조사 및 연구를 위해 종합 해양 과학 기지를 세웠다. 이어도는 한국과 중국의 EEZ가 중첩되는 곳인데, 우리 정부는 양국 간 중간선 원칙에 따라 EEZ 경계 획정을 하면 이어도는 자연히 우리 측 수역에 들어온다는 입장이다.

〈그림 2〉 미래엔 교과서에 기술된 이어도(출처: 박희두 외, 2014, 31쪽)

3)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사진과 우리나라 영해 및 주변 수역의 지도 속에서만 이어도를 다루는 비상교육 교과서

비상교육 교과서는 첫 번째 대단원 ‘1. 국토 인식과 국토 통일’ 아래 네 번째 중단원 ‘4. 국토의 정체성과 영역 문제’를 설정하고, 다시 첫 번째 소단원 ‘1. 우리나라의 영역과 영역 문제’ 부분에서 이어도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다. 동일한 면의 우측 상단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사진을 배치하고 있으며, 아래쪽에 ‘더 알아보기’ 자료로 제시한 지도 속에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의 위치를 표기해서 소개할 뿐이다(그림 3).

전반적으로 볼 때 다른 교과서에 비해 이어도에 관련된 내용 분량이 가장 적을 뿐만 아니라 설명도 매우 미흡한 편이다.




(그림 3) 비상교육 교과서에서 기술된 이어도(출처: 최규학 외, 2014, 33쪽)

4) '자료' 중 하나로 비교적 상세하게 이어도를 다루는 지학사 교과서

지학사 교과서는 첫 번째 대단원 '1. 국토 인식과 국토 통일' 아래 네 번째 중단원 '4. 우리나라의 영역과 영토 문제'를 설정하고, 다시 첫 번째 소단원 '1. 우리나라의 영역과 영토 갈등' 부분에서 주로 이어도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다. 앞의 소단원에서는 자료와 탐구활동 형태로, 그리고 대단원 마무리 부분에서는 '되짚어 보기' 형태로 소개된다. 자료에서는 이어도의 위치적 특성과 경제적 가치, 중국과의 영역 분쟁 관련 내용과 함께, 이어도가 오랫동안 '제주도민에게는 바다에 나가 돌아오지 않는 남편이나 아들이 살고 있다고 믿었던 이상향으로 구전되어 왔다'는 사실을 부기하고 있다(그림 4). 탐구활동에서는 이어도의 경제적·학술적 가치를 조사해보도록 하고 있으며, 대단원 마무리에서는 이어도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곳을 바르게 고치도록 함으로써 인지적 활동을 되짚어 강화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지학사 교과서는 이어도와 관련된 내용이 분량 면에서 많은 편은 아니지만, 제주 사람들의 이어도에 대한 인식 등 다양한 내용을 풍부

자료 2 이어도



이어도는 제주의 마라도에서 서남쪽으로 149km 떨어진 바닷속에 있는 암초로 제주도민에게는 바다에 나가 돌아오지 않는 남편이나 아들이 살고 있다고 믿었던 이상향으로 구전되어 왔다. 암초의 정상이 해수면에서 약 4.6m 아래에 잠겨 있어 파도가 높게 치기 전에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다. 수심 50m를 기준으로 면적은 약 0.37km²이다. 인근 수역은 조기, 민어, 갈치 등 다양한 어종이 서식하는 황금어장인 동시에 동남아시아 및 유럽으로의 주요 항로가 통과하여 지정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1951년 탐사를 통해 이어도의 실체를 확인하였고, 1970년 해저 광물 자원 개발법을 제정하여 이어도 해역을 제7광구로 지정하였다.

1987년에는 해운 항만청이 이어도 최초 구조물인 이어도 부표를 띄우고 국제적으로 공표하였으며, 2003년에 종합 해양 과학 기지를 건설하였다. 이어도 종합 해양 과학 기지는 태풍의 이동 경로, 해수 온도 변화 등 육지와 위성에서 얻기 힘든 바다의 기상 및 해양 관측 자료를 제공한다.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르면 연안국이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권한을 가지는데, 이어도는 지리적으로 중국보다 우리나라에 더 근접해 있다. 따라서 한중 양국 간에 배타적 경제 수역의 경계를 확정하기 이전이라도 이어도에 종합 해양 과학 기지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정당한 권리이다. 우리 정부는 중국과의 배타적 경제 수역 경계를 확정하기 위한 회담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1 <자료 1>을 참고하여 한·중·일 어업 협정에서 한일 중간 수역과 한중 정점 조치 수역을 설정한 까닭은 무엇인지 말해 보자.

2 <자료 2>를 참고하여 이어도의 경제적·학술적 가치를 조사해 보자.

○ 이어도 종합 해양 과학 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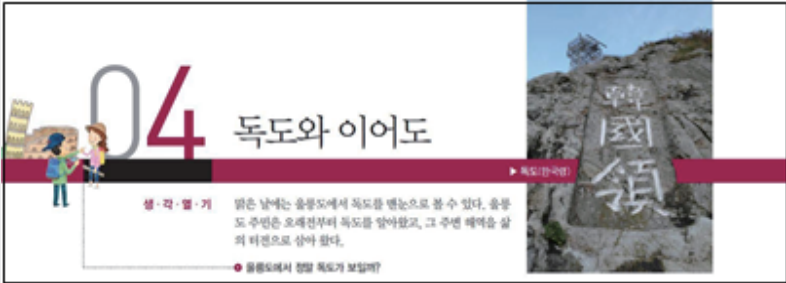
<그림 4> 지리사 교과서에 기술된 이어도(출처: 윤육경 외, 2014, 29쪽)

하게 다루고 있는 편이라 할 수 있다.

5) 형식과 내용 면에서 이어도의 비중을 크게 다룬 천재교육 교과서

천재교육 교과서는 첫 번째 대단원 '1. 국토 인식과 국토 통일' 아래 네 번째 중단원 '04. 독도와 이어도'를 설정하고, 다시 두 번째 소단원 '2. 이어도 종합 해양 과학 기지' 부분에서 이어도 관련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우선 중단원 수준에서 이어도를 제목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사진 5), 그리고 소단원 제목 중 하나를 '이어도 종합 해양 과학 기지'로 선정한 점이 특기할 만하다.

소단원 '2. 이어도 종합 해양 과학 기지'에서는 '이어도의 위치와 이어도 종합 해양 과학 기지의 역할에 대해 파악한다'는 학습목표를 제시하고, 이



〈그림 5〉 천재교육 교과서에 기술된 이어도(출처: 박병익 외, 2014, 28쪽)

어도의 위치와 종합해양과학기지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주도 민요 「이어도 사나」를 소개하고, 예로부터 이어도가 '진북과 미역을 따며 해녀로서 힘든 삶을 살았던 제주도 여인들의 이상향으로 간주되어' 왔다는 사실을 기술하고 있다. '대단원 매듭짓기'에서는 이어도가 중국보다 우리나라에 가까워 우리에게 관할권이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천재교육 교과서는 이어도의 중요성을 독도와 거의 대등하게 다루고 있으며, 내용과 형식 면에서 다른 교과서에 비해 가장 높은 비중으로 이어도를 소개하고 있다.

III. 고등학교 한국지리 수업에서 이어도 교수-학습 방안

앞 장에서 간략하게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고등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5종의 한국지리 교과서는 이어도와 관련하여 내용 분량과 제시 형태, 내용 요소 등 여러 면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사진과 주변 수역 지도에 그 위치만 표기한 교과서가 있는가 하면, 중단원과 소단원의 제목에 이어도를 표기하고 학습목표와 본문 내용에서 이어도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다룰 뿐만 아니라, 제주도 민요 「이어도 사나」와 제주도 여인들의 이상향으로서의 이어도를 소개하는 교

과서도 있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교과서들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그 장점들을 취하고, 필요시 다른 관련 자료들을 보충하여 보다 바람직한 이어도 교수-학습 과정안을 개발하였다.

1. 이어도 수업의 학습목표와 주요 학습내용

우선 교수-학습 과정안 개발에 앞서 이어도 수업의 학습목표를 설정하고 주요 학습내용을 추출하였다(표 2). 학습목표는 지식, 기능, 가치·태도 등 3개 영역에 걸쳐 가능한 한 영역 간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한국의 사회교과 교과서들은 대부분 지식 영역의 목표에 치중되어 있어 실제 교과서 내용도 개념과 지식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지리 과목은 각종 지도와 사진, 항공사진, 인공위성 영상 등 다양한 시각적 자료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읽고 해석하는 능력과 자신이 수집한 정보를 표와 그래프 같은 시각적 자료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 곧 지리도해력(geographicacy) 함양이 중시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기능적 영역의 목표를 다소 강화하였다. 내용 요소에서는 현행 한국지리 교과서들이 강조하고 있는 이어도의 지리적 환경과 경제적 가치,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 이외에도 제주에 전래되고 있는 이어도 관련 신화와 전설, 민요 등을 포함함으로써 내용 요소에 다양성과 풍요성을 제고하였다.

〈표 2〉 이어도 수업의 학습목표와 주요 학습내용

구분	영역	성취 기준
목표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어도의 수리적, 관계적 위치를 파악한다. • 이어도의 지리적 환경을 이해한다. • 이어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파악한다. • 이어도와 관련된 최근 쟁점들을 비교·분석한다.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어도의 위치를 지도상에 표시할 수 있다. • 이어도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 • 이어도와 관련된 한국, 중국, 일본 자료를 분석하고 종합하여 이어도가 한국의 수역에 포함됨을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다. • 이어도 주변 부존 자원의 활용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 이어도 문제를 통해 우리나라의 영역 갈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어도에 대한 이해를 통해 국토를 사랑하고 수호하려는 마음과 태도를 가진다. •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의 중요성을 통해 우리나라 과학기술에 대한 자부심을 가진다. • 이어도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을 살펴 보면서 영토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려는 자세를 가진다.
내용	문화·역사	• 이어도 관련 설화, 민요, 신화 등 역사적 자료
	지리적 환경	• 위치, 거리, 지형 특징, 기후 특징, 형성 과정
	중요성	• 수산·해저 자원 등 경제적 가치, 지리적 가치, 정치·군사적 가치
	해양과학기지	•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설립을 위한 노력과 과정

2. 한국지리 수업에서 이어도 교수-학습 과정안

이어도 교수-학습 과정안은 모두 3차시 수업에 맞추어 개발하였다. 이는 기본적으로 3차시 정도는 할애해야 가장 이상적인 수업이 전개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학교 현장의 수업시수 여건에 비추어볼 때, 모든 학교에서 3차시 수업을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학교별 수업 여건에 따라 이 중 1차시나 2차시만 활용할 수도 있으며, 교과 활동뿐만 아니라 비교과 활동을 통해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우선 1차시는 영토와 이어도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과 지식을 교사 중심의 설명식 수업으로 진행한다. 그리고 2차시는 학습자가 주도하는 탐구식 수업으로 진행한다. 이때는 논쟁식 대립 토론이 도입된다. 마지막 3차시는 스토리텔링을 통해 이전 차시 수업에서 획득한 개념과 지식을 내면화하는 과정이다. 연구자가 개발하여 동료 교사들의 조언을 통해 수정·보완한 각

차시별 이어도 교수-학습 과정안은 아래에서 상세하게 제시한다.

1) 개념 중심의 강의식 학습: 1차시 교수-학습 과정안

1차시는 교사의 강의식, 설명식 수업이 진행된다. 학습자들이 영토와 이어도에 관한 사전 지식이 충분하지 못하고, 특히 이어도에 관한 이해와 관심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수업활동을 전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1차시에는 영토란 무엇이고, 지금 그것이 왜 중요한지를 알려줄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영역과 이어도의 지리적 환경, 이어도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 등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과 쟁점을 학습한다(표 3).

〈표 3〉 강의식, 설명식 개념 학습 과정안

단원	1. 국토 통일과 국토 인식 4. 국토의 정체성과 영토 문제		차시	1/3	대상	전 학년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어도의 지리적 환경과 지정학적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다. • 이어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주요 분쟁들을 비교·분석할 수 있다. • 이어도에 대한 이해를 통해 국토를 사랑하고 지키려는 마음과 태도를 가진다. 					
단계	방법	교수·학습 활동			창의·인성 지도상 유의점	
도입 (5분)	문답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 학습 내용 확인 <p>[동기 유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수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중국의 불법 어업 활동에 대한 사진을 제시하고 그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본다. <p>[학습 목표 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 목표 확인하기 			호기심 유발 문제 인지	
전개 (40분)	강의학습	<p>[주요내용 학습 활동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의 영역이 어떻게 설정되는지 설명한다. - 우리나라 영토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알려준다. -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 영해는 해안선의 형태나 섬의 분포에 따라 기준선이 다른 점을 이 해시킨다. - 영공은 영토, 영해와 마찬가지로 주권이 미치는 곳으로 영토와 영해처럼 명확한 한계를 그을 수는 없지만 대기권 정도로 한정된다는 것을 설명한다. -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필요성과 주권적 권리를 알아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서 지도를 화면에 띄우고 설명한다. •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 공해의 차이점을 비교 설명한다. 	

단계	방법	교수·학습 활동	칭의·인성 지도상 유의점
전개 (40분)	탐구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탐구 활동을 통해 영역의 중요성을 알아보자. - 한·중·일 간 어업수역도를 보면서 해양 경계 획정의 어려움을 알고, 배타적 어업 수역과 중간수역이나 잠정조치수역의 설정 배경을 찾아본다. 	확산적 사고
	강의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어도의 지리적 환경과 지정학적 중요성을 알아보자. 	
	탐구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시아의 주요 영토 분쟁에 대해 알아본다. - 일본과의 관계에서 독도와 관련된 분쟁을 살펴본다. - 중·일 간의 센카쿠열도 분쟁과 남중국해 주변국가의 난사군도 분쟁을 살펴본다. • 중국과의 관계에서 이어도와 관련된 분쟁의 개요를 알려준다. - 중국과 우리나라의 주장을 살펴본다. • 탐구 활동을 통해 이어도가 우리가 지켜야 할 땅인 것을 확인해본다. - 이어도가 분쟁 지역인 원인을 알아본다. - 이어도에 관한 자료 등을 이용하여 이어도를 우리 땅으로 지킬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한다. 	
정리 및 평가 (5분)	형성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성 평가를 통해 단원의 핵심 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간략히 확인한다. - 영해의 기선에서부터 200해리까지의 수역 중 영해를 제외한 수역으로 연안국의 경제적 권리가 인정되는 수역은? (배타적 경제수역(EEZ))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 제시를 통하여 조사하도록 준비한다.
	학습정리 과제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차시의 학습내용을 정리한다. • 이어도와 관련된 영토 분쟁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중국의 주장을 조사하고, 우리의 대응방안을 정리한다. 	
	차시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과의 이어도 갈등 문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됨을 고지한다. - 미리 진행 및 준비자, 토론자, 심판자를 자체적으로 선발하게 한다. - 토론에 필요한 토론진행 계획표 및 준비 양식을 미리 배부하여 토론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한다. 	

2) 논쟁식 토론학습: 2차시 교수-학습 과정안

2차시는 1차시 학습을 토대로 학습자 주도형의 탐구식 수업으로 진행한다(표 4). 탐구식 수업 중에서도 논쟁식 대립 토론을 도입한다. 먼저 논쟁식 토론의 개요를 설명한 후, 학습자들에게 자료를 탐색하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한다. 이때 탐구의 범위는 넓은 의미로 보아 탐색-정리-발표 단계까지 확대시켜 내용을 구성한다. 2차시에서 강조하는 것은 논쟁식 토론의 결과보다 학습과정이다. 이러한 학습과정을 통해 학습자들은 스스로

주제를 탐구하면서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진행해나갈 수 있는 기회와 경험을 가진다. 대립 토론의 구체적인 형식과 절차는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 논쟁식 토론학습 과정안

단원	1. 국토 통일과 국토 인식 4. 국토의 정체성과 영토 문제	차시	2/3	대상	전 학년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어도와 관련된 최근 쟁점들을 이해한다. • 이어도에 대해 실질적 근거를 바탕으로 토론할 수 있다. • 이어도와 관련된 한국, 중국, 일본 자료를 분석하고 종합하여 이어도가 한국의 수역에 해당됨을 말할 수 있다. 				
단계	방법	교수 · 학습 활동			창의 · 인성 지도상 유의점
도입 (5분)	문답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 학습 내용 확인 - 지난 시간에 학습한 우리 영토에 관한 내용을 상기하면서, 배타적 경제 수역의 주권적 권리를 알아보고, 해양 영역의 중요성, 이어도의 중요성 등을 간단히 정리해준다. <p>[동기 유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BS 지식채널e 그들의 논리’를 통해 영토를 둘러싼 양국의 주장과 각 논리의 모순점을 이야기한다. <p>[학습 목표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어도를 둘러싼 중국 측과 한국 측의 주장을 실질적 근거를 바탕으로 토론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의 · 인성 지도상 유의점
전개 (42분)	토론학습	<p>[사전 활동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의 규칙 및 유의점에 대하여 알려준 후 토론을 시작한다. (5분) - 진행을 담당할 학생들이 자리를 배치 · 정리하게 한다. - 토론 주제 제시: 이어도는 한국 측 과도수역에 포함되어야 하는가? - 양측 학생들에게 2분 정도 발제(입론) 내용에 대해 작은 소리로 전략을 짜도록 한다. - 동시에 심판자들에게 심판의 역할과 판정내용을 파악하도록 심판용지를 활용하여 설명한다. <p>[토론 활동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찬성 발제(입론): 찬성팀 제1 토론자 (3분) - 대정읍 미라도로부터 남서쪽으로 149km(80해리), 중국의 여산도(余山島, 서산도)로부터 동쪽으로 287km(155해리), 일본의 조도(鳥島, 도리시마)에서 276km(149해리)에 위치하고 있어 어디보다도 가깝고, 수면 밑 4.6m 아래에 있으면서 파도가 높을 때는 그 모습이 수면 위로 드러나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 - 우리 해저광구 제4광구에 있는 우리나라 대륙붕의 일부분으로 현재 이어도 해양과학기지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 1653년 하멜표류기의 표류해상도, 1750년(영조 26년) 해동지도 중 제주 삼현도 등에서 이미 이어도가 우리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행 준비자, 토론자, 심판자를 선정한 다. • 3:3 대립 토론(debate)방식으로 진행 한다. • 학습 준비물: 토론 사전 준비물, 교실 배치 • 발제 과정에서 나온 상대의 주장 내용들을 잘 정리하게 한다.

단계	방법	교수·학습 활동	참의·인성 지도상 유의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대 발제(입론): 반대팀 제1 토론자 (3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어도는 중국발원의 silt 지역 안에 있으므로 중국 관할 지역 내에 있다. - 이어도가 중국 본토의 자연적 연장인 대륙붕 선상에 있으므로 지질학적 관점에서 중국 관할권에 속한다. - 중국 문헌 산해경에 '쑤엔자오[소암초, 蘇岩礁, 이어도의 중국 명칭]를 기록하고 있다. 쑤엔자오는 당·송·명·청의 문헌에 기록돼 있으며 고대 역사 서적에도 중국 땅으로 명시돼 있다. 중국 영해와 200해리 경제 수역 내에 있기 때문에 현재도 중국의 영토다. • 작전회의 (2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전회의에서는 상대방의 입론에 대한 심문 전략을 짤 수 있도록 시간을 준다. • 반대 심문: 반대팀 제2 토론자 (3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로 존재한다고 했지만, 해양법상 간출지는 만조 시에는 수중에 잠몰하지만 간조시마다 수면에 출현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어도는 간출지가 아니라 수중 암초다. 설령 이어도가 해수면 아래가 아닌 해수면 위의 암초라 가정할지라도 먼 바다에 고립되어 있는 무인암석에 대하여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EEZ)이나 대륙붕을 주장하는 것은 억지다. - 아직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가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어도에 인공구조물을 세운 것은 문제다. - 쑤엔자오는 중국과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위치해 있다. 중국과 한국은 쑤엔자오를 영토로 여기지 않으므로 영토 분쟁이 존재하지 않는다. 쑤엔자오 문제는 쌍방이 답판으로 해결해야 한다. • 찬성 심문: 찬성팀 제2 토론자 (3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ilt line의 개념은 황해가 대부분의 중국 기원 퇴적물로 뒤덮었다는 생각을 검증하기 위해 도입한 일종의 가설이다. 황해가 많은 퇴적물을 배출하기 때문에 황해가 대부분 이것으로 구성되었을 것이라는 가설인 것이다. 하지만 국제저명학술지에 게재된 중국과학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과도 과거 황해 퇴적물 기원지 연구 결과는 서로 일치하지 않거나 때로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믿기 어려운 데이터도 많다고 한다. 이 연구 논문 발표 후 한국 과학자들이 연구를 진행한 결과 황해 퇴적물 기원은 중국과 한국 기원 퇴적물의 혼합체로 나타나는데, 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결론이다. 이후 중국 정부는 이 주장을 두 번 다시 못하고 있다. - 국제 판례의 경향은 "마주 보는 국가 간 거리가 400해리 이내이면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포괄하는 단일 해양경계선을 설정해야 한다." 실제로 국제해양법재판소는 2012년 3월 14일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간 뱅골만 해역에서의 해양경계선을 유엔해양법협약 제15조를 인용하여 중간선(마주하는 두 국가의 연안 가운데를 연결한 선)으로 결정했다. 이 판결을 적용할 경우 이어도는 우리나라 해역에 속하게 된다. - 산해경이라는 문헌은 『사기』에서 사마천조차 감히 말할 수 없는 기서로 믿을 수 없다고 할 정도로, 본래 비과학적이고 신비한 신화를 수록한 책이므로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소암초(蘇岩礁, Su Rock)'가 이어도를 지칭한다는 것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는 그 어떤 것도 없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 엄수하게 한다. • 심문 과정에는 상대방이 절대 반박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

단계	방법	교수 · 학습 활동	창의 · 인성 지도상 유의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전회의 (2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주장을 하지 않도록 하고, 반박 내용을 문장으로 정리 · 기록한다. • 찬성 반박: 찬성팀 제3 토론자 (3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마라도에서 서남쪽으로 149km(80해리) 떨어진 반면 중국에서 가장 가까운 유인도인 서산다오[余山島]로부터의 거리는 동쪽으로 287km(155해리)에 이른다. 배타적 경제수역이 겹치는 해역은 협상을 통해 경계선을 확정할 필요가 있지만 이어도 해역은 한국에 훨씬 가깝다. - 특히 한국은 지난 2003년부터 8년에 걸친 공사 끝에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가동하며 실질적 지배권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 이어도 해양기지 설립은 영해 또는 해양경계확정의 기점으로 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해양관측 및 조난구조를 위해 설립한 것이다. - 고서(古書)에서도 이어도가 우리의 영역임을 잘 알려주고 있지만, 이어도가 위치한 해역은 앞서 1952년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을 선언한 평화선 선포수역 내에 있어 우리나라의 해양관할권에 속했다. • 반대 반박: 반대팀 제3 토론자 (3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은 황해와 동중국해에서의 경계확정과 관련하여 중국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중간선 원칙을 주장하고 있지만, 대륙붕 퇴적물과 해저지형을 최대한 고려하는 형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 중국의 긴 해안선, 바다에 접해 살고 있는 조업인구 등을 감안해 이어도가 중국 수역에 들어올 수 있도록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를 이어도 동쪽에 그어야 한다. • 작전회의의 (2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기서 작전회의가 필요한 경우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찬성 측과 반대 측이 각각 함께 모여 전략을 짤 수도 있다. • 자유토론: 각 1분 이내 부여 (3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토론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 자유토론은 한 사람의 발언이 1분 초과해서는 안 되고, 한 번 발언 후에는 다른 사람이 발언한 후에야 발언 가능하다. - 자유토론 후 양측이 잠깐 의논하고 최종적인 자신의 주장을 하도록 한다. • 찬성 정리 (2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이 주장하는 해양경계 원칙, 즉 형평의 원칙은 설득력이 없다. 황해와 동중국해 대륙붕은 동질적인 연속체로 된 하나의 대륙붕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먼저 잠정적으로 등거리 선을 채택하고, 그 다음 이 등거리 선을 수정해야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한중 양국의 중간수역은 대부분 400해리가 안 되기 때문에 거리를 중시하는 중간선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국제법적 타당성을 갖는다. 최근의 국제 판례도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 리비아-몰타 사건에서 보듯이 대인국 간의 거리가 400해리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저지형은 고려하지 아니하며,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단일경계선을 긋는 것이 오늘날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경향이므로, 중국의 종래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 반대 정리 (2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해와 동중국해의 대륙붕 경계확정과 관련하여 한국이 서해와 동중국해에서 중국과의 해양 경계를 정함에 있어서 소위 지질학적 및 지형학적 기준을 무시하고 중간선 원칙만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은 지나치게 자국의 입장만을 고려하고 있다. 해양경계가 명확히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어도 주변수역을 한국 측 과도수역으로 인정할 수 없고 잠정조치수역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방 질문에 대하여 반박할 내용을 논 의할 수 있도록 작전 타임을 갖도록 한다. • 반박은 찬성 측부터 하고, 상대방에 대응하거나 답변해서는 안 된다. 반박을 학습지에 기록한다.

단계	방법	교수·학습 활동	창의·인성 지도상 유의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사 결과 정리 (3분) - 심판자는 결과점수를 합산, 발표하고 양측의 잘한 점과 못한 점을 이야기한다. 결과 발표 (3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요한 경우 교사는 토론 내용과 심판 판정을 확인 할 수 있다.
정리 평가 (5분)	정리 차시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평을 통해 토론의 핵심 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 정도를 간략히 확인한다. 스토리텔링: 이어도와 관련된 스토리 만들기 - 민요 「이어도 사나, 최부의 『표해록』, 이청준의 『이어도』의 내용을 발췌하여 나눠주고, 당시의 상황이나 그들의 삶을 상상하고 정리하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인물 제작

〈표 5〉 실제 교실에서의 대립 토론 Format

순서		내용 및 토론자	시간	비고	
① 사전 설명		토론 규칙 및 유의점	5분		
토론	②	찬성 입론	찬성팀 제1토론자	3분	▶ 시간 엄수 (타이머 작동) ▶ 평가표에 제시된 항목을 유념하여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자유토론은 한 사람의 발언이 1분을 초과하면 안 되며, 한 번 발언하면 다른 사람이 발언을 한 후 발언 가능
		반대 입론	반대팀 제1토론자	3분	
	③	작전회의		2분	
	④	반대 입론	반대팀 제2토론자	3분	
		찬성 심문	찬성팀 제2토론자	3분	
	⑤	작전회의		2분	
	⑥	찬성 반박	찬성팀 제3토론자	3분	
		반대 반박	반대팀 제3토론자	3분	
	⑦	작전회의		2분	
		자유토론	전체토론 (각 1분)	3분	
⑧	찬성 정리	찬성팀	2분		
	반대 정리	반대팀	2분		
⑨ 토론 결과 심사 발표		심사 결과 정리	3분	▶ 복도 대기	
		총평 및 결과 발표	3분	▶ 토론실 입실 후 총평 및 판정	
		총소요시간	42분		

3) 스토리텔링 학습: 3차시 교수-학습 과정안

3차시는 이전 차시에서 획득한 영토 및 이어도에 관한 개념과 지식을 내면화하는 과정이다. 여기서는 먼저 우리 선조들의 삶의 모습 및 생활 속에서 당면하는 온갖 고난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와 정서를 담은 이야기들을 발굴하여 제시함으로써 학습자들의 흥미를 유발할 필요가 있다. 조상들의 삶의 모습을 유추하는 데는 학습자들의 지리학적 상상력(geographical imagination)이 발휘되어야 하며, 관련 자료로는 전래 민요나 설화, 이를 바탕으로 창작된 문학·예술작품, 그리고 당시 사람들의 기록물 등이 있다. 물론 이 중에는 허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허구를 통해 학습자들은 당시의 시대 상황과 삶의 모습을 상상하고 간접 체험할 수도 있다. 이 수업에서는 구체적으로 제주 민요 「이어도 사나」와 최부의 『표해록』, 그리고 이청준의 소설 『이어도』를 수업 자료로 도입하였다(〈표 6〉).

〈표 6〉 스토리텔링 학습 과정안

단원	1. 국토 통일과 국토 인식 4. 국토의 정체성과 영토 문제	차시	3/3	대상	전 학년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사람에게 이어도는 어떤 존재였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 이어도와 연관된 제주인의 가치관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단계	방법	교수 · 학습 활동			창의 · 인성 지도상 유의점		
도입 (5분)	문답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 학습 내용 확인 <p>[동기 유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어도 사나」 민요를 들려주고 어떤 느낌이나 생각이 들었는지 이야기한다. <p>[학습목표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시간에 나눠준 유인물 속의 내용들을 읽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소감을 간단히 발표하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어도 민요 자료 		
전개 (40분)	발표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로 제시한 (자료1)의 이어도와 관련된 내용을 낭송해주면서 지리학적 상상력을 동원하여 상황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한다.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 vertical-align: top;"> <p>〈자료1〉</p> <p>이어도 허라 이어도 허라 (이어도이러라 이어도이러라)</p> <p>이어 이어 이어도 허라 (이어 이어 이어도이러라)</p> <p>이어 허랜 나 눈물 난다 (이어허랜 나 눈물 난다)</p> </td> <td style="width: 50%; vertical-align: top;"> <p>이어 말은 마랑근 가라 (이어란 말은 하지 말고 가라)</p> <p>강남을 가난 해남을 보라 (강남을 가난 해남을 보라)</p> <p>이어도가 반이영 해라 (이어도가 반부이라고 하더라)</p> <p style="text-align: center;">- 맺돌노래, 제주민요 -</p> </td> </tr> </table> </div>			<p>〈자료1〉</p> <p>이어도 허라 이어도 허라 (이어도이러라 이어도이러라)</p> <p>이어 이어 이어도 허라 (이어 이어 이어도이러라)</p> <p>이어 허랜 나 눈물 난다 (이어허랜 나 눈물 난다)</p>	<p>이어 말은 마랑근 가라 (이어란 말은 하지 말고 가라)</p> <p>강남을 가난 해남을 보라 (강남을 가난 해남을 보라)</p> <p>이어도가 반이영 해라 (이어도가 반부이라고 하더라)</p> <p style="text-align: center;">- 맺돌노래, 제주민요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산적 사고 • 학습 준비물: 컴퓨터, 빔 프로젝터, 이어도 관련 자료
<p>〈자료1〉</p> <p>이어도 허라 이어도 허라 (이어도이러라 이어도이러라)</p> <p>이어 이어 이어도 허라 (이어 이어 이어도이러라)</p> <p>이어 허랜 나 눈물 난다 (이어허랜 나 눈물 난다)</p>	<p>이어 말은 마랑근 가라 (이어란 말은 하지 말고 가라)</p> <p>강남을 가난 해남을 보라 (강남을 가난 해남을 보라)</p> <p>이어도가 반이영 해라 (이어도가 반부이라고 하더라)</p> <p style="text-align: center;">- 맺돌노래, 제주민요 -</p>						

전개
(40분)

- 내가 만일 당시 사람이라면 왜 이 노래를 불렀을까? 부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 작자 미상의 구전문묘인 『이어도 사나』가 만들어질 당시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았을까?
- 여기에 등장하는 지명인 '해남'이나 '강남'은 구체적으로 어디를 가리키고 있을까?
- (자료2)를 차분히 읽게 하면서, 산꼭대기에서 멀리 하얗게 부서지는 바다를 바라보는 상상을 하게 한다.

• 확산적 사고

<자료2>

물결은 용솟음치고 바다 빛은 희다. 예전에 정의현감 채윤해(蔡允海)가 내게 했던 말이 생각난다.

"제주 늙은이들이 말하기를, 맑게 갠 날 한라산 꼭대기에 오르면 멀리 서남쪽으로 아득히 떨어진 바다 밖에 백사장 같은 것이 보인다답니다."

지금 보니 한라산에서 보인다면 그것인가 싶은데 이는 백사장이 아니고 백해(白海)다. ...

-최부, 『표해록』 제1권 무신년, 윤경월 7일-

"내가 표류하여서 백해(白海)로 들어가 서북풍을 만나 남하하였을 때 산 모양 같은 것이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것 같기도 하였다. ...

-최부, 『표해록』 제3권 무신년, 3월 29일-

- 왜 넓은 바다 한가운데서 바다가 하얗게 변하는 현상이 나타날까?
- 만일 내가 망망대해 한가운데서 하얗게 파도가 부서지는 '백해'를 만난다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 확산적 사고

- (자료3)을 정독하도록 한다.

<자료3>

간긴 세월 섬은 늘 거기 있어 왔다. 그러나 섬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섬을 본 사람은 모두가 섬으로 가 버렸기 때문이었다. 아무도 다시 섬을 떠나 돌아온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

이어도는 오랜 세월 동안 이 제주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이어가 전해 내려온 전설의 섬이었다. 친 리 남쪽 바다 밖에 파도를 뚫고 꿈처럼 하얗게 솟아 있다는 제주도 사람들의 괴안의 섬이었다. 아무도 본 사람은 없었지만, 제주도 사람들의 상상의 눈에서는 언제나 선명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수수께끼의 섬이었다. 그리고 제주도 사람들의 구원의 섬이었다. 더러는 그 섬을 보았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한 번 그 섬을 본 사람은 이내 그 섬으로 가서 영영 다시 이승으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섬이었다. ...

-이청준, 『이어도』-

- 소설 이청준의 『이어도』에서 이어도는 제주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인가?
- 소설 이청준의 『이어도』에서 이어도는 고된 삶의 터전으로 묘사된 민요와 달리, 아무도 알 수 없는 꿈의 낙원, 유토피아로 표현하고 있다. 소설과 민요 속에 투영된 이어도와 당시 사람들의 실제 생활 모습을 떠올리며 이야기해보자.

단계	방법	교수·학습 활동	창의·인성 지도상 유의점
정리 평가 (5분)	학습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정보를 학생들 스스로 주변 장소와의 관계, 상황을 파악하면서 지도에 표시하고 서술하게 한다. - 위치, 거리, 방향, 주변 지역의 공간 개념을 통해 이어도의 지정학적 위치의 중요성을 생각해보고, 지도상에 위치를 표시한다. 또한 자신의 말 또는 글로 간략히 정리한다. <div data-bbox="334 449 789 872" style="text-align: center;"> <p>이러도: 32° 07' 22.63"N, 125° 10' 56.81"E</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시간에 전개될 내용을 소개한다. 	

4) 한국지리 이어도 수업 수행평가 양식

이와 같이 3차시에 걸쳐 이어도 수업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수행평가도 실시한다. 물론 1차시 개념 수업 같은 경우에는 지필식 평가도 가능하겠지만, 연구자가 개발한 이어도 교수-학습 과정안은 기본적으로 수업이 진행되면서 평가도 동시에 진행하는 수행평가를 염두에 두고 개발하였다. 이때 도입될 수 있는 가능한 수행평가 유형은 일화기록법(anecdotal records), 체크리스트(checklist), 평정척도법(rating scales) 등을 이용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비디오 법을 이용하여 수업 장면을 비디오로 녹화한 후 분석할 수도 있다. 또한 <표 7>과 같이 NIE를 기반으로 하는 수행평가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7〉 한국지리 이어도 수업 수행평가 양식 (NIE 기반)

<p style="text-align: center;">한국지리 수행평가 ()회</p> <p style="text-align: center;">제 학년 반 번 이름 :</p>	<p style="text-align: center;">채점</p>	
<p>◆ 이어도 관련 기사 스크랩</p> <p>이 공간은 기사를 붙이는 공간입니다. 채점이 끝날 때까지 떨어지지 않게 잘 붙여주기 바랍니다.</p> <p>※ 수행평가 안내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출마감 : ○○○○년 ○○월 ○○일 ○○요일 ○○시 ○○분 2. 제출방법 : 개인별로 제출 3. 내용 : 주제 관련 기사를 2개 붙이고, 기사 내용 요약, 용어정리, 자신의 생각을 반드시 <u>볼펜</u>으로 써서 제출. 4. 스크랩 기사기준 : 이어도 관련 모든 기사(국가, 날짜, 온오프라인에 대한 기준 없음). 단, 출처를 확실히 표시해주기 바랍니다. <p>※ 유의사항 : 제출시간을 반드시 지켜주기 바랍니다.</p>		
<p>◆ 출처 - 언론사 : _____ , _____ 년 월 일 요일 기사</p>		
<p>◆ 기사 내용 요약 (기사의 내용을 2~3문장으로 요약하세요)</p>		
<p> </p>		
<p>◆ 용어정리 (모르는 용어를 찾아서 사전적인 용어정리하세요)</p>		
<p> </p>		
<p>◆ 기사에 대한 자신의 생각쓰기</p>		
<p> </p>		

IV. 맺음말

이 연구는 2009개정 사회과 교육과정과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과서 5종에 기술된 이어도 관련 내용을 비교·분석하고, 바람직한 이어도 교수-학습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연구 결과는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현행 사회과 교육과정에 따르면, 고등학교 사회교과에 편성된 8개의 일반 선택과목 중 독도와 이어도를 포함하여 영토 문제를 가장 직접적으로 다루는 과목은 한국지리 과목이다. 한국지리는 모두 8개 대단원 중 첫 번째 대단원으로 ‘국토 인식과 국토 통일’ 단원을 설정하여 우리 영토를 다룰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둘째, 현재 고등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5종의 한국지리 교과서를 비교·분석한 결과, 이어도 관련 내용은 모든 교과서가 자료의 형태로 소개하고 있다. 교과서별로 이어도 관련 내용의 분량뿐만 아니라 배치 형태 면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아무런 설명 없이 자료 속에 종합해양과학기지사진과 지도 상에 그 위치만 표기한 교과서가 있는가 하면, 중단원과 소단원의 제목과 학습목표, 본문 내용, 자료, 그리고 단원 마무리에 걸쳐 다양한 형태와 많은 분량을 할애해 이어도를 다루는 교과서도 있다.

셋째, 5종의 한국지리 교과서의 장점을 취합하여 이어도 수업을 위한 학습목표와 주요 학습내용을 선정하였다. 학습목표는 지식, 기능, 가치·태도 영역별 균형을 고려하였으며, 학습내용도 이어도 관련 설화와 민요, 신화 등 문화·역사적 자료를 발굴하여 교과서 내용을 보완하였다.

넷째, 고등학교 한국지리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어도 교수-학습 과정안을 3차시로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1차시는 개념 중심의 강의식 학습이며, 2차시는 논쟁식 토론 학습, 3차시는 이전 차시에서 획득한 개념과 지식을 내면화하기 위해 스토리텔링 학습으로 구성하였다. 이들 수업과 관련하여 NIE를 기반으로 하는 수행평가 양식도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연구를 마치며 한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현행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

과정에 따르면 독도와 간도, 이어도를 포함한 영토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과목은 한국지리가 거의 유일하다. 문제는 한국지리 과목이 8개 일반 선택과목 중 하나로 편성되어 있어 고등학교 학생 중 일부만이 이 과목을 통해 영토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과 지식, 그리고 영유권 문제를 학습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문제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국문 초록

최근 각 국가마다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행동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접 국가들 사이에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영토와 관련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각 국가마다 자국의 안전과 경제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 가능한 공간을 확대하려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주변도 예외가 아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영유권 분쟁의 한 지점인 이어도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확인하고, 고등학교 한국지리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어도 교수-학습 과정안을 개발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행 사회과 교육과정과 한국지리 교과서에서의 이어도 기술 방식을 비교·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바람직한 이어도 교수-학습 과정안을 3차시에 걸쳐 개발하였다. 현행 한국지리 교과서 분석 결과, 교과서별로 이어도에 대한 내용 분량과 제시 형태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어도 교수-학습 과정안은 강의식 개념학습, 논쟁식 토론학습, 그리고 스토리텔링 학습의 3가지 유형으로 제시하였다.

〈주제어〉

영토, 영유권 분쟁, 이어도, 국토, 한국지리

ABSTRACT

Teaching-Learning Plan on Ieodo for Korean High School Students

Jang, Wonseok

Teacher, Shinseong Girl's High School

Son, Myongcheol

Professor, Geography Education Major, Jeju National University

As of late, many countries have frequently been taking actions to maximize their national interests, causing ceaseless disputes with their neighboring countries. Territorial disputes have especially been arising frequently as each country aims to expand their territory to ensure national security and secure profitable resources and the countries surrounding Korea are no excep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what Ieodo, an island also under territorial dispute, means to Korea and to analyze descriptions about the island in Korean geography textbooks to devise strategies for teaching and learning about Ieodo. Analysis of the current textbooks confirmed that approaches toward the Ieodo issue differ very much between textbook publishers and the amount of contents tends to be insufficient. Based on the analysis, this study suggests teaching-learning plans for high school geography curriculums in Korea using the three different methods of lecturing concepts, holding discussions, and performing storytelling to better impart Ieodo's identity to students.

Keywords

territory, territorial dispute, Ieodo, national territory, Korean Geography

참고문헌

- 고충석·강병철, 2013, 『이어도 해양 분쟁과 중국 민족주의』, 한국학술정보.
교육과학기술부, 2011,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 [별책7] .
- 김민정, 2013, 『영토 교육에 관한 지리교과서의 비교 연구: 한국과 일본의 지리교과서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부찬, 2015, 『국제해양법과 이어도 문제』, 온누리디앤피.
- 박병익 외, 2014, 『고등학교 한국지리』, 천재교육.
- 박희두 외, 2014, 『고등학교 한국지리』, 미래엔.
- 서태열 외, 2014, 『고등학교 한국지리』, (주)금성출판사.
- 송성대, 2015, 『두 개의 얼굴 이어도』, (사)이어도연구회.
- 유수현, 2013, 『지리 교과서의 독도 관련 영토 교육 내용 분석: 고등학교 한국지리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옥경 외, 2014, 『고등학교 한국지리』, (주)지학사.
- 이상균, 2016, 『19세기 일본 지도에 독도는 없다』, BookStar.
- 이한기, 1969, 『한국의 영토』, 서울대학교 출판부.
- 최규학 외, 2014, 『고등학교 한국지리』, 비상교육.
- 허은실, 2013, 『한·일 초등 사회과의 영토교육 관련 내용 비교: 교과서와 교육과정 분석을 기초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근형, 2011, 「이어도 주변 해역의 해양분쟁 요인과 대책」, 『이어도 연구』 창간호, 도서출판 각.
- 김동전, 2014, 「이어도와 이어도과학기지에 대한 역사학적 인식 - 동아시아 해역 갈등의 해법 모색을 위해」, 『한국학연구』 32.
- 김부찬, 2013, 「동아시아 해양 갈등과 이어도 문제」, 『이어도 저널』 5, 온누리디앤피.
- 김은석, 2013, 「에우토피아, 이어도의 존재론적 의미」, 『이어도 연구』 4, 온누리디앤피.
- 남호엽, 2011, 「글로벌 시대 지정학 비전과 영토교육의 재개념화」,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9(3).

- 류우익, 1988, 「국토의 재인식: 문제와 미래상」, 『한국사회의 발전과 국토구조의 재편성』,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 박상흠, 1998, 「사회과 수행평가의 이론적 배경과 적용 방안」, 『사회과교육』 31.
- 서태열, 2009, 「영토교육의 개념화와 영토교육모형에 대한 접근」,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7(3).
- 손명철, 2013, 「학습자 주도적인 탐구형 세계지리 교과서 모형 탐색 - 영국의 고등학교 <World Geography: Case Studies>를 사례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1(3).
- 송성대, 2010, 「한·중 간 이어도해 영유권 분쟁에 관한 지리학적 고찰」, 『대한지리학회지』.
- 송성대, 2013, 「이어도 지명의 유래와 그 의의」, 『이어도 연구』 4, 온누리디앤피.
- 송호열, 2013, 「중학교 사회2 교과서의 독도 중단원 비교 분석 - 질적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지리학회지』 23(4).
- 이상균·최희, 2015, 「북한의 영토교육과 한민족의 독도 영유권」, 『영토해양연구』 9.
- 조성윤, 2012, 「이어도에 관한 제주도 주민들의 이미지」, 『이어도 연구』 3, 온누리디앤피.



사료로 본 독도 논쟁사 - 새로운 자료 발굴의 방향성 모색을 위한 전사(前史)로서

정영미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1. 머리말

독도 관련 매년 한두 건의 사료가 언론을 통해 소개되고 있다. ‘새로운 자료 발굴’이라는 형용어가 붙은 것이 대부분이다. 이를 언론에 소개된 대로 정리하여 목록으로 만들어본 것이 <붙임 1>이다. 이 표를 통해 지난 이십여 년간 주로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하거나 한국 영토로 표기한 지도들이 발굴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질문을 받는 경우가 많다. 과연 이러한 자료들이 정말 ‘새로운’ 자료들인가? 독도 영유권에서 ‘중요한’ 자료들인가? 등의 질문이다. 물론 사료 각각의 차원에서는 그렇다. 지금까지 그 존재가 언급되지 않았던 ‘새로운’ 자료들도 있고, 적건 많건 독도와 관련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중요한’ 자료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한일 독도(영유권) 논쟁의 차원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한국이 그동안 많은 자료와 역사적 사건을 근거로 제시하며 독도 영유권을 입증해

왔으나 일본은 이에 수긍하지 않고 있다. 한국과는 다르거나 어긋난 관점에서 한국이 제시한 근거를 해석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일 독도 논쟁 차원에서의 ‘새로운’, ‘중요한’ 자료라는 것은 이와 같은 일본 측의 다르거나 어긋난 관점에서의 해석을 아우르면서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다음에서는 1950~1960년대의 한일 독도 영유권 논쟁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 접하고 있는 완성된 형태의 한일 독도 영유권 논리를 순차적 자료 제시 및 해석, 해석에 대한 반론과 재반론을 통해 체계화되는 과정으로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을 통해 각각의 자료가 어떤 관점에서 해석되었고 반론되었는지 확인하고 향후 어떤 자료의 발굴이 요청되는지 기능해보고자 한다.

II. 본론

1. 1950~1960년대 한일 독도 영유권 논쟁의 배경과 경과

1952년 1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이하 ‘평화선’이라고 함)을 공표한다. 1952년 4월로 예정되어 있던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발효에 앞서 맥아더라인을 계승한 한일 간의 해양 경계선을 정한 것이다.

1950~1960년대 한일 독도 영유권 논쟁은 이승만 대통령의 평화선 공표에 대해 일본이 항의각서를 보내오면서 시작된다. 항의각서를 통해 일본은 “대통령 선언은 일본해의 ‘다케시마(Liancourt rocks로도 알려짐)’에 대한 영유권을 상정하고 있는 듯하나 일본은 명백히 일본 영토인 그 섬들에 대한 한국 측의 그와 같은 어떠한 상정 또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1 1952. 1. 28 일측 각서. 이하 제시하는 문서들의 출처에 대해서는 <붙임 2> 참조.

이에 대해 한국 측은 1952년 2월 12일자 각서로서

독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라는 반론을 한다. 그 근거가 된 것이 연합국총사령관각서(이하 SCAPIN이라고 한다) 677호(1946. 1. 29) 및 맥아더라인이었다. SCAPIN 677이 명백히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시키고 있고 독도는 맥아더라인 밖에 위치한다는 것이 그 근거였다.

주지하다시피 SCAPIN은 SCAPIN Index의 약자로서, 1945년 9월부터 1952년 4월까지의 6년 8개월간 일본을 점령통치한 연합국최고사령관총사령부(GHQ/SCAP: General Headquarters,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가 각서(memorandum) 형태로 일본 정부에 하달한 GHQ/SCAP의 기본적 정책 또는 지령을 말한다. GHQ/SCAP은 일본 정부에 명령을 내려 일본 정부가 GHQ/SCAP의 대일본 정책을 수행하게 하는 이른바 ‘간접통치’의 형식으로 일본을 점령통치하였는데 SCAPIN은 그 통치의 주요 형식이었다. SCAPIN은 제1호(1945. 9. 2)에서 제2204호(1952. 4. 26)까지 발행되었다. 이외 지령, 명령, 섹션 메모(section memo), 구두명령, 시사(suggestion) 등을 통해 정책 수행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한편 SCAPIN 677은 다음과 같이 총 6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국측 주장은 그 3항에 근거한 것이다.

먼저 「약간의 주변 지역을 정치상 행정상 일본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에 관한 각서」라는 제목하에, 제1항은 “일본제국정부는 일본 이외의 어떠한 지역 또는 그 지역의 어떠한 정부 관리와 피용자 또는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도 정치적 행정적 통치를 행사하거나 행사를 기도함을 종결할 것을 지령한다.”고 되어 있다.

제2항에서는 GHQ/SCAP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본제국정부는 기(既) 인가되어 있는 해운, 통신 전기예보에 관한 일상적 업무 외 일본 이외의 정부 관리, 피용자와 접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제3항에서는 “이 지령의 목적을 위해” ‘일본’을 정의하고 있는데 정의된 지역을 알기 쉽게 정리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SCAPIN-677 제3항 정리

일본	4개의 본도(本島), 홋카이도[北海島], 혼슈[本州], 규슈[九州], 시코쿠[四國]와 약 1천 개의 더 작은 인접 섬들	
더 작은 인접 섬들 중 포함되는 섬	쓰시마[對馬], 북위 30도 이북의 류큐[琉球] (난세이[南西]) 제도	
더 작은 인접 섬들 중 제외되는 섬	a	울릉도, 리앙쿠르 암(독도), 제주도
	b	북위 30도 이남의 류큐[琉球] (난세이[南西]) 제도 (구치노시마[口之島] 포함), 이즈[伊豆], 난포[南方], 오가사와라[小笠原], 이오[硫黃] 제도 다이토제도[大東諸島], 오키노토리시마[沖の鳥島], 미나미토리시마[南鳥島], 나카노토리시마[中の鳥島]
	c	쿠릴[지시마[千島]] 열도, 하보마이[齒舞] 군도 (수이쇼[水晶], 유리[勇留], 아키유리[秋勇留], 시보쓰[志發], 다라쿠토[多樂島] 포함), 시코탄토[色丹島]

한편 맥아더라인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SCAPIN 1033(1946. 6. 22)을 가리킨다. 1945년 9월 2일 GHQ/SCAP의 지시가 없는 한 어선을 포함한 선박 일체의 이동을 금지한다는 명령을 내렸고, 9월 14일에는 목조선에 한해 일본 연안 12해리 이내에서의 조업을 허락하였다. 그리고 1945년 9월 27일 맥아더라인이라는 일본의 포경 및 어업 수역을 정하는 선을 발표하였다. 이 선은 점점 확장되어갔는데 SCAPIN 1033은 제2차 어구 확장을 정한 지령이다. 이 확장 과정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맥아더라인의 확장

날짜	내용	SCAP
1945. 8. 25	모든 어업활동 제한	
1945. 9. 14	연안 12마일 이내 목조 범선 조업 허가	
1945. 9. 27	제1차 어구 확장 (와카나이[稚内], 네무로[根室] 해협 제외) (FLOTLOSCAP Serial No. 80 of 27 Sept. 1945)	1945. 10. 13 규슈 남쪽 해역까지 확장 (SCAJAP No. 42, 13 Oct. 1945) 1945. 11. 3 조정, 홋카이도 연안 3마일 이내 모든 해역 (SCAJAP No. 587, 3 Nov. 1945)
1945. 11. 30	오가사와라[小笠原] 근해 포경 허가 (SCAPIN 371, 30 Nov. 1945)	

1946. 6. 22	제2차 어구 확장 (SCAPIN 1033)	
1949. 9. 19	제3차 어구 확장 (SCAPIN 2046)	
1950. 5. 11	모선식(母船式) ² 참치 어업 허가 (SCAPIN 2097)	

출처: 『日本占領 GHQ 正史 “History of the Non-military Activities of the Occupation of Japan, 1945-1951” 42卷 水産業』, 日本図書センター, 1990, 2쪽.

SCAPIN 1033은 총 5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제2항에서 일본 포경 및 어업 수역을 정하고, 제3항에서 (a)·(b) 항목을 두어 수역의 한계를 정하고 있는데 (b) “일본 선박이나 선원들은 ‘다케시마(독도)’(북위 37도 15분, 동경 131도 53분) 의 12마일 이내로 접근하거나 이 섬에 어떠한 접촉도 해서는 안 된다” 고 명기하고 있는 것이다.

SCAPIN 677 및 1033에 의거하여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반론한 한국 측 각서에 대해 일본은 1952년 4월 25일자 각서로서 반론해 왔다. ‘다케시마(독도)’는 시마네현 오치군 고카무라에 속하는 섬이며 “일본 정부 조사에 따르면 ‘다케시마’가 Dokdo로서 한국에 속해 있었다는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것이었다. 이때 SCAPIN 677 및 1033에 대해 한국과는 다른 관점에서의 해석을 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SCAPIN 677에 대해서는 제1항과 제6항을 근거로 제3항에서의 독도 제외가 영유권과는 관련없다는 주장을 하였다. 정부 차원 또는 행정 차원의 권한 실행이나 실행 시도의 중단일 뿐이라는 것이 제1항에 나타나 있으며 제6항에서 연합국의 최종 결정이 아니라는 것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SCAPIN 1033에 대해서는 제3차 어구 확장을 지령한 SCAPIN 2046(1949. 9. 19) 제6항을 근거로 판단한다. 이에 의거하면 맥아더라인에 부여된 권한이 관련 지역 및 그 외 지역에서의 국가 관할권, 국제적 영역 또는 어업권에 대한 연합국 정책의 궁극적 결정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며 또 현재 맥아더라인이 폐지되었다는

2 모선식 어업(母船式 漁業): 1척의 모선(母船)과 다수의 소형 어선으로 이루어진 선단(船團)이 행하는 어업.

것이다.

SCAPIN 1033에서는 제5항에서 같은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데 “본 승인은 국민적 관할권, 국제적 경계 또는 관계구역이나 기타 어떤 구역내의 어업권에 대한 최종적 결정과 관련된 연합국 정책의 하나의 표현은 아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한 지적은 「일본 정부견해 ①」에서 나온다.

그리고 이어서 일본은 ‘다케시마[독도]’가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일본 영토에 속한다고 주장한 「일본 정부견해 ①」을 보내온다. 여기에 대해 한국은 역사적으로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논증한 「한국 정부견해 ①」로서 반론한다. 이후 새로운 자료와 역사적 사건을 제시하며 자국의 견해를 보완·강화하고 상대국 견해에 반론하는 패턴의 논증이 한일회담 종료시까지 지속되었다.³

2. 한일 정부견해와 논점의 종류

각각 3차 및 4차에 걸친 한일 정부견해를 총체적 견해,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 또는 역사적 사실과 이에 대한 해석으로 분류하여 표로 정리한 것이 <붙임 2> ‘1950~1960년대 한일 독도 논쟁 분석표’⁴다.

³ 1953. 9. 9 한국 정부견해 ①/1954. 9. 25 한국 정부견해 ②/1959. 1. 7 한국 정부견해 ③/1953. 7. 13 일본 정부견해 ①/1954. 2. 10 일본 정부견해 ②/1956. 9. 20 일본 정부견해 ③/1962. 7. 13 일본 정부견해 ④

⁴ 이 <붙임 2>에서의 ‘견해’는 각 정부견해에서의 독도 영유권과 관련한 총체적 견해를 적은 것이다. ‘근거사실’ 또는 ‘자료’는 이 견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된 역사적 사실이나 자료의 내용을 간략하게 적은 것이다. 텍스트에서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은 자료의 제목이나 사건명, 출전 등은 이후의 연구 성과 등을 참조하여 필자가 확정하여 명기해놓았다. ‘해석’은 각 자료에 대한 것을 서술되어 있는 대로 나누어 적어 넣은 것이다. 각각의 자료에 대한 해석을 하나로 묶어 종합적인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 표를 통해 한국은 ①~⑳, 일본은 ㉑~㉚, ㉛~㉜, ㉝~㉞의 역사 사료나 사건을 제시하며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한국 영토라는 것 또는 ‘다케시마[독도]’가 역사적·국제법적 관점에서 일본 영토라는 것을 논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논쟁을 쟁점별로 세분화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역사적인 측면에서는 울릉도와 독도의 명칭을 소재로 독도가 역사적으로 어느나라 땅이었느냐를 다투었다. 일본은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에서 다케

시마와 마쓰시마라는 이름으로 불려진 것과 마쓰시마의 경우 한국과의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된 사실이 없다는 지적을 한다. 한편 시볼트 지도(1840)가 원인이 되어 마쓰시마를 ‘다케시마’라는 이름으로 편입했다는 설명을 하고 “다케시마[독도]는 시마네현 오치군 고카촌에 속하는 일본 땅이며 수세기 동안 한국에 속해 있었다는 근거가 없음’을 주장한 것이다. (『일본 정부견해 ①』)

이에 대해 한국은 울릉도와 독도가 예전에 우릉 등의 이름과 우산이라는 이름으로 불린 것 및 근대에 들어 독도라는 명칭으로 불린 점을 들어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논증하였다. 『속중실록』의 안용복 기사, 독도를 ‘본국 소속’이라고 한 1906년의 울도군수 심홍택의 보고가 그 근거가 되었다. 더불어 독도라는 명칭이 나오게 된 배경을 ‘경상도 방언’을 근거로 설명하고 “일본이 독도가 일본 고유영토라는 근거로 제시한 것은 다케시마·마쓰시마라는 명칭에 관한 것뿐이며 한국 측 사료에 따르면 독도는 한국 영토임”을 논증한다. (『한국 정부견해 ①』)

이후 쟁점은 양국이 제시한 역사적 사료, 사건 등에 대한 해석과 재해석이라는 과정을 통해 더욱 세분화 되어갔다.

일본은 제②차 견해에서 우산도는 울릉도가 아니며, 안용복이 한 말은 허위가 많고, 심홍택이 울릉도를 방문한 일본 관리에게 선물을 받고 치하한 것으로 보아 독도를 한국 땅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반론한다. 동시에 『은주시청합기』 등의 일본 고문서와 고문헌 및 조선의 울릉도 쇄환정책을 들어 일본은 에도시대부터 ‘다케시마[독도]’를 실효지배했으나 한국의 실효지배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여기에 대해 한국은 제②차 견해에서 우산도는 울릉도이고 『속중실록』 등에서의 안용복 기사는 사실임을 재확인한다. 또한 안용복 기사와 관련하여, 17세기 일본 어부의 울릉도 도해 면허, 안용복 사건을 경과하면서 이들의 면허가 에도막부에 의해 중단된 사실, 그리고 안용복 사건 이후 정기적으로 수도사를 보내어 울릉도를 관리한 것 등을 들어 울릉도와 주변 해역이 조선의 주권하에 있음을 논증하였다. 이와 함께 심홍택이 일본 관리를 영접한 사실이 없다고 지적하나 근거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양국의 제②차 견해에서는 독도의 역사적 명칭에 대한 논점이 대략 (가) 우산도는 울릉도인가, (나) 안용복의 증언은 진실한가, (다) 17세기 일본 어부들이 에도막부로부터 받은 면허 및 도해 금지령은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가, (라) 1906년 심홍택의 행위의 진실은 무엇인가라는 논점으로 세분화 되어 쟁론되었다. 이후 양국의 제③차 견해에서는 세분화된 쟁점 각각에 대해 근거 자료와 해석을 보완하고 논리를 체계화시키고 있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역사적인 측면에서의 또 하나의 쟁점은 고문헌과 고지도 등에서의 일본인의 독도 인지 및 실효지배 관련 사항이다. 이는 일본의 제①차 견해에서 제시되었는데 이를 받아 한국의 제①차 견해에서는 울릉도와 독도의 지리적 접근성을 지적한다.

즉 “울릉도와 독도의 지리적 접근성은 국제법이 요구하는 역사적 권원 확립 요건을 만족시킬 제 사실(史實)이 존재했을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케 함”이라는 것이다. 이 쟁점은 한일협정 이후 울릉도에서 독도가 육안으로 보인다, 안 보인다라는 논쟁으로 발전하였다.

그리고 제②차 견해에서는 일본이 제①차 견해에서 제시한 『은주시청합기』, 「오야 규에몬 가쓰노부 수기」, 「일본여지로정전도」 등에 대한 반론이 이루어졌다. 즉 일본 어민의 울릉도 도해와 독도 경영과는 관계가 없다, 고문헌에서의 독도에 대한 기록은 울릉도 침략에 부수된 것이므로 무효이다, 고지도에서 보이는 당시 사람들의 독도에 대한 인식과 영유권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 등이다. 이 역시 한일협정 이후 자료 각각의 해석 그 자체로 논점이

나뉘어 쟁론되었다.

다음으로 국제법적인 측면에서는 1905년 일본의 독도 편입이 쟁점이 되었다. 일본은 제①차 견해에서 시마네현 고시, 나카이 요자부로의 강제 어업경영 등은 독도에 대한 ‘국제법상의 영유권 확립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서 국제법적 관점에서도 독도는 일본 영토에 속한다고 논증하였다. 이에 대한 한국의 제②차 견해는 ‘일본은 한국이 항의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무주지인적이 없는 독도를 편입하였으므로 불법’임을 강조하였다. 한일 의정서(1904. 2. 23), 제1차 한일협약(1904. 8. 22) 등의 한일조약이 그 근거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동시에 독도 편입을 전후한 시기의 문헌, 해군 보고서, 수로지 등을 들어 일본인이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식했음을 입증한다.

이와 같이 양국의 제①차 견해에서는 1905년 일본의 독도 편입이 일본은 실효지배·각의 결정·고시 등의 국제법 차원에서, 한국은 한일의정서·한일협약 등의 한일관계와 편입 전후의 일본인의 독도 인식이라는 차원에서 쟁점화되었다.

이에 이은 제②차 이후의 견해에서는, 각각의 견해에 대해 그것을 입증하는 추가적인 사료, 역사적 사건이 제시되며 보완되어간다.

제②차 견해에서 일본은, 1906년 일본 관리의 독도 조사, 토지대장 게재, 강제 어업면허 부가 등 독도 편입과 실효지배에 관련한 국내적 조치 등의 근거 사실을 추가하였다. 한편, 『대한지지』 등 독도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한국 문헌 등을 들어 한국의 제①차 견해에서의 ‘일본이 독도 편입 전후 독도를 자국령으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견해에 대응하였다. 한국은, 일본이 제②차 견해에서 제시한 각각의 사료, 역사적 사건 등을 재해석하는 한편, 1906년의 통감부 설치 등의 당시의 한일관계를 지적하며 일본의 독도 편입을 불법으로 규정하였다.

이어 제③차 견해에서 일본은 한국이 제②차 견해에서 시마네현 고시의 불법성을 지적한 것에 대해 팔마스 섬 사건(1928) 등의 관련 국제판례를 들어 반론하고 한국은 그 국제판례 관련 일본의 해석을 재해석함으로써 일본의 독도 편입을 불법으로 재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같이 국제법적 차원에서는 1905년의 일본의 독도 편입이 정당한가 아니면 불법인가가 따져졌는데, 독도 편입을 국제법적인 측면에서 보는 일본의 관점과 한일 관계사적인 측면에서 보는 한국의 관점이라는 특징을 엿볼 수 있는 쟁점이다. 그리고 각론적으로 제시된 견해들에 대한 해석 역시 대립되어 해석 그 자체가 세부 쟁점화 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때 쟁점화된 각각의 사료나 역사적 사건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는 <붙임 2>를 참고하기 바란다.

한편 1905년의 일본의 독도 편입이 정당한가 아니면 불법인가라는 쟁점에 부수하여 그 전후의 일본인 또는 한국인의 독도 인식이 문제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주 쟁점에 부수한 세부 쟁점으로서 하나의 카테고리 묶을 수 있다. 따라서 국제법적 차원에서의 독도 영유권 논쟁의 쟁점은 1905년의 일본의 독도 편입이라는 것과, 1905년 전후의 한국과 일본인의 독도 인식이라는 것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본다.

3. 독도 영유권 논쟁과 사료적 특징

위에서 1950~1960년대에 한일 간에 오고 간 양국의 독도 관련 정부견해와 쟁점을 정리하여보았다. 한국 정부견해는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한국 영토’라는 것이고 일본 정부견해는 ‘독도는 역사적·국제법적 관점에서 일본 영토’라는 것이다. 그리고 각각의 견해를 논증하기 위한 자료, 역사적 사건 등이 제시되었는데 이에 대한 상대국의 재해석, 반대되는 사실이 기술된 자료의 제시 등의 반복을 통해 쟁점이 세분화되어간 경향이 있다.

역사적 측면에서는 ‘우산도는 독도인가’, ‘안용복의 증언은 진실한가’, 17세기 일본 어부들이 에도막부로부터 받은 면허 및 도해 금지령은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가, 1906년 심홍택의 행위의 진실은 무엇인가, 일본 고문헌이나 고지도에서 보이는 일본인의 독도 인지 및 실효지배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쟁점으로 세분화되어간 것을 볼 수 있다.

국제법적 측면에서는 일본의 독도 편입이 정당인가 불법인가를 주 쟁점으로 하여, 각론적으로 제시된 견해를 입증하는 역사적 사건, 사료 해석 각이 쟁점화 되었다. 그리고 부수하여 편입 당시의 일본인의 또는 한국인의 독도 인식이 쟁점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본고의 취지에 따라 포커스를 사료에 맞추어보면, 이러한 과정은 대부분 근거 자료의 단락적 발췌·인용에 따른 해석 또는 역사적 사건(사실)에 대한 서로 다른 맥락에서의 파악에서 비롯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처음 한국이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는 근거로 제시한 SCAPIN 677을 예로 들어 보자. SCAPIN 677을 둘러싼 논쟁은 한일 제②차 견해에서 제④차 견해까지 지속되는데 한국은 SCAPIN 677의 제3항에 의거, 일본은 제1항과 제6항에 의거하여 같은 견해를 반복 제시하고 있다. SCAPIN 1033, 즉 맥아더라인 역시 마찬가지다.

즉 같은 자료에서 서로 다른 부분을 보고 있거나 같은 사건에서 서로 다른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논쟁 과정에서 정반합의 전개 없이 반론에 직면하면 또 다른 서로 다른 부분이나 측면을 늘려가는 것으로 대응해 온 것이다. 예를 들면 SCAPIN 677 해석에 대해 일본은 제②차~제④차견해를 통해 SCAPIN/1 및 1953년 델레스 성명 등을 추가로 제시하며 제①차 견해에서의 해석을 견지하였다. 한국 역시 제①차 견해에서의 해석을 제③~④차 견해에서도 견지한다.

같은 자료나 사건(사실)에 대한 다른 맥락에서의 해석은 이 외의 쟁점 관련 자료나 사건(사실)에서도 동일하다. 예를 들어 『세종실록』 지리지나 『(신증) 동국여지승람』의 기사는 한국에서는 우산도=독도 기사, 일본에서는 우산도=울릉도 기사로서 해석되고 있다.

17세기 안용복 증언과 일본인의 울릉도 도해 관련 사실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는 그가 독도가 일본의 마쓰시마로서 우산도라고 한 것이 중시되는 한편 일본에서는 일본인의 울릉도 도해 과정에서 독도에 대해 알게 된 것이 중시되고 있다.

나카이 요자부로의 독도 편입 청원서와 관련하여, 한국에서는 그가 독도

를 조선 영토로 생각했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일본에서는 그가 독도에 서 강치 어업을 경영, 실효지배한 것에 포커스를 맞춘다.

일본의 독도 편입에 대해서는, 일본은 국제법적 절차를 따랐으므로 정당하다고 하고 한국은 당시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화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므로 불법이라고 한다. 이 견해와 관련되어 있는 근거자료 각각에 대한 해석도 쟁점화되어 있다.

1905년 전후의 일본인 또는 한국인의 독도 인식에 대해서는 서로에게 유리한 자료 또는 사건(사실)을 양적으로 늘려간 경향이 있는데 역시 같은 자료의 다른 부분에서는 또는 다른 역사적 맥락에서는 상대국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것과 같은 매우 중의적인 자료들이 대부분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일 독도 영유권 논쟁에서의 근거 자료(사료 또는 사건(사실)) 대부분이 한국 측 근거 자료인 동시에 일본 측 근거자료라는 특징이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동일한 자료에서 서로 다른 부분이 발췌·인용된 결과 나타나는 특징이다. 발췌·인용을 통해 전체 텍스트 또는 어떤 통사적·공시적으로 기승전결을 이루고 있는 사건(사실)이 갖는 의미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만큼 자의적 의미 규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 지엽적으로 세분화된 쟁점에 매몰됨으로써 쟁점의 줄기 또는 본질이 자칫 망각되는 현상이 자주 일어난다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은 제②차 견해에서 『은주시청합기』 등의 고문헌, 「오야 규에몬 가쓰노부 수기」 등의 고문서, 「(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 등의 고지도를 근거로 “도쿠가와 3대 장군 이에미쓰 시대에 막부가 요나고 주민 오야 무라카와의 ‘다케시마[독도]’ 지배를 허가했고, 울릉도 도항시 ‘다케시마[독도]’가 중계지로 사용되었으며 어로도 행해졌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은 제②차 견해에서 『은주시청합기』 등의 고문헌에 대해서는 “일본의 울릉도 방면 침략시대에 저작된 것으로 증거로서 무효, 1696년 일본 국민의 울릉도 방면 출어가 금지됨”이라는 견해를 제시하고, 「(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 등의 에도 시대 중기 이후의 고지도에 대해서는 “고지도에서 보이는 당시의 일본 인민들의 독도에 대한 정확한 지리적 지식과

독도 영유 문제와는 관계 없음”이라는 지적을 한다.

이러한 한국 측 답변은 문제의 본질이 정확히 지적된 것이었다. 일본 측 주장은 옛날에 일본인이 울릉도 도해 중에 독도를 인지했다, 독도에서 강치를 잡기도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근거가 되고 있는 『은주시청합기』 등의 고문헌은 ‘다케시마^[독도]’가 아닌 다케시마^[울릉도]에 대한 기록물들이다. 다시 말해 에도 시대에 다케시마라고 불렀던 울릉도에 대한 일본인의 인식과 도해의 역사를 기록한 기록물들인 것이다.

여기에 당시 마쓰시마라고 불렀던 독도도 언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단지 울릉도와 함께 한 섬 또는 울릉도에 부속된 섬으로서의 명칭, 오키 섬 또는 울릉도와의 거리 정도의 정보만 언급되어 있을 뿐이다. 즉 일본은 옛날 일본인의 울릉도 인식과 도해의 문제를 현재적 관심에 따라 독도 인식과 도해의 문제로 치환시켜 논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은주시청합기』 등이 “일본의 울릉도 방면 침략시대에 저작된 것으로 무효”라는 한국 측 답변이 나왔다고 본다.

「(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 등의 고지도 역시 마찬가지다. 에도 시대 일본 서해안 지역에서 제작된 지도 중 일본 서북쪽 먼 바다에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라는 이름으로 두 개의 섬을 그려놓은 지도들이 있다. 일본 측은 이런 지도들로서 일본인의 독도 인식에 근거한 ‘다케시마^[독도]’ 영유권을 논한 것이다.

그런데 이 논리는 전혀 성립되지 않는다. 마쓰시마^[독도]만 있다면 모를까 다케시마 즉 울릉도도 같이 그려져 있는 지도를 근거로 영유권과 결부된 일본인의 독도 인식을 논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울릉도를 일본 영토로 인식했다면 가능하다. 그러나 국가적 영유 차원에서 울릉도가 일본 영토인 적이 없었다. 즉 지도상의 인식의 문제와 영유권 문제는 별개인 것이다. 한국 측 답변에서 “일본 고지도에 대해서는 고지도에서 보이는 인식과 영유권과는 하등 관련 없음”이라고 한 이유일 것이다.

한편 두 섬을 조선의 영토로 인식한 지도들이 있다. 역시 마찬가지로의 지

적이 가능하다. 일본인이 조선 영토로 인식했기 때문에 두 섬이 조선 영토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일본인이 두 섬을 일본 영토로 인식하는 것으로 두 섬 모두 일본 영토가 되어버린다. 고지도상의 인식의 문제와 영유권 문제는 별도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최근까지 『은주시청합기』, 「(개정) 일본여지로정전도」 등의 해석을 둘러싼 논쟁은 지속되어 왔다. 일본인의 울릉도·독도 소속에 대한 인식이라는 문제가 영유권 문제로 치환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은 이 지엽적이고 세부적인 논쟁에의 매몰과 함께 묻혀버린 듯 하다.

Ⅲ. 맺음말

1950~1960년대의 독도 논쟁은, ‘다케시마[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일본 측 주장에 대한 한국 측 반론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3, 4차에 걸쳐 주고 받은 한일 정부간담회를 통해 한국은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 관점에서 한국 영토임을, 일본은 ‘다케시마[독도]’가 역사적·국제법적 관점에서 일본 영토임을 논증하였다.

그리고 양국이 각각 자료와 해석을 제시하고 상대국이 재해석 하는 과정을 통해 ‘우산도는 독도인가’, ‘1905년의 일본의 독도 편입은 정당한가’ 등의 쟁점이 다시 몇 개의 쟁점으로 세분화 되어 간다.

한일 독도 논쟁에서의 쟁점의 세분화는 근거 자료에 포함된 독도 관련 의미의 중의성에서 비롯된다. 그 중의성은 동일한 자료에서 서로 다른 부분이 발췌·인용된 결과 나타나는 특징이다. 발췌·인용을 통해 전체 텍스트 또는 어떤 통사적·공시적으로 기승전결을 이루고 있는 사건(사실)이 갖는 의미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만큼 자의적 의미 규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논쟁기 이후의 논쟁 형태까지 염두에 두고 본다면 세분화된 쟁점에 매몰됨으로써 쟁점의 줄기 또는 본질이 망각된 경향이 있다. 일본인의 울릉도·독도 소속에 대한 인식이라는 문제가 영유권 문제로 치환되는 경

우가 왕왕 있는 것이다.

그리고 논쟁기에 제시된 논점의 종류, 논리의 형태, 자료 및 해석의 종류와 범주가 이후 약간 수정 보완되어 지금에 이르렀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논쟁기를 되돌아봄으로써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강구해 볼 수 있다는 의미다.

결론적으로 지난 논쟁의 명확한 파악 위해 자료가 발굴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시사하는 많은 자료가 이미 제시되어 왔으나 동시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의미로도 해석되어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 경우 유사한 자료의 양적 확충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다.

물론 독도 영유권은 독도 논쟁에 어떤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일본 측이 어떤 문제를 제기하였든 또는 한국 측의 해석에 어떤 문제가 있든 그것과는 관계 없는 것이다. 한일 논쟁을 통해 또는 이 논쟁에서의 우위 선점 등에 힘입어 독도 영유권이 성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므로 그것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파악해야 할 필요는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동안 해온 바와 같이 왜 독도가 한국 영토이고 일본 영토가 아닌지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왜 일본이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하고 한국 영토가 아니라고 하는지에 대해 더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새로운’ ‘중요한’ 자료 발굴도 이와 관련하여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사료로 본 독도 논쟁사 - 새로운 자료 발굴의 방향성 모색을 위한 전사(前史)로서

<붙임 1> 독도 관련 '새로 발굴된 자료' 목록

보도·방송 일자	매체	제목	발굴(소개) 자료	해석(기사 내용 요약)
1996. 10. 4	연합 뉴스	"독도 한국 영토 입증하는 일본 古地圖 발견"	하야시 시헤이 [林子平, 1738~1793]의 「삼국여지통람로정도(三國輿地通覽路程圖)」	독도를 일본 이름인 竹島로 표기하고 그 위에 '조선의 땅'이라고 못박음
1998. 3. 24	연합 뉴스	"러시아 해군이 그린 최초의 독도 그림 등 공개"	1854년 러시아 푸차친 제독 함대 팔라스함 소속 시르게프 대령이 독도를 관측하면서 3.5마일(6.5km), 5마일(9.2km), 14마일(26km) 거리에서 그린 것. 1857년에 해군 보고서를 통해 발표, 1861년 해군성 「항해지침」, 1882년 「한국동해안도」 등에 수록	이 지도에서 독도의 동쪽 섬은 '올리부차', 서쪽 섬은 '메넬라이'로 명기되어 있으나 (이 지도가) 조선동해안이라는 점에서 러시아가 이들 섬을 명백히 한국 영토로 보고 있음을 입증
			1856년 프랑스 해군성 「수로지」 수록 독도	1855년 11월 17일 프랑스 함정 콩스탕틴호가 동해 통과시 승무원이 그린 지도. 독도에서 28km 떨어진 곳에서 독도를 그림
			1886년 모리킨세키 「대일본 해륙전도부 조선 류큐 전도(大日本海陸全圖附朝鮮琉球全圖)」	竹島로 표시된 울릉도와 松島로 명시된 독도가 조선의 영토에 편입
2005. 2. 27	연합 뉴스	"'독도는 한국 땅' 일본 고지도 발견"	1785년 하야시 시헤이 「조선팔도지도」	한반도 전체를 노란색으로 채색한 이 지도에는 북위 39도에 울릉도와 독도(우산국)가 하나의 큰 섬으로 그려져 있고, 울릉도 우측 바다가 '일본해'가 아닌 '동해'로 표기되어 있음
2005. 3. 22	YTN	"일본 고지도, '독도' 영토에서 제외"	1300년경 「대일본국도」, 「일본변계도」	제3자인 주일영국대사가 만든 고지도집에 나온 일본지도에 독도가 표시되어 있지 않음.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
2005. 8. 10	한국일보	"여기 봐, 한국 땅이라 돼 있지!"	1910년경 「대일본분현지도(大日本分縣地圖)」 중 「조선전도」	독도를 '다케시마'라는 이름으로 명확하게 조선 영토에 포함
			1910년경 「대일본분현지도(大日本分縣地圖)」 중 「시마네현전도」	권위 있는 이 지도의 제작자가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식하지 않았음
2005. 2. 27	매일경제	"'독도는 한국 땅 입증지도 발견'"	1785년 하야시 시헤이 「조선팔도지도」	북위 39도에 울릉도와 독도(우산국)가 하나의 큰 섬으로 그려짐
	경향신문	"독도 명백히 日 영토 밖에 위치"		북위 39도와 40도 사이에 울릉도와 독도(우산국)를 하나의 큰 섬으로 묶었고 '궁송(弓崇)'이라는 글과 '동(東)'이란 글 기입
2005. 2. 27	경향신문	"'독도는 한국 땅' 지도 잇달아 발견"	1951년 3월 영국 정부가 작성한 지도	일본 영토에서 독도가 제외되어 있음(매일신문). 1951년 2월에 마련된 1차 초안에는 독도, 울릉도, 제주도까지 일본령으로 포함시켰다가 확인을 거쳐 정정

보도·방송 일자	매체	제목	발굴(소개) 자료	해석(기사 내용 요약)
2005. 4. 4	한국 일본	"日 사료 아무리 뒤져도 독도는 한국 땅"	1876년 「대일본전도(大日本全圖)」	일본의 각 지역 명칭이 상세히 적혀 있지만 '다케시마'는 없음
			1870년 이노 다다타카[伊能忠敬]의 「관판실측일본지도(官版實測日本全圖)」	이노 다다타카의 지도에서 시마네현에 독도는 없음
			1926년 작성, 1930년 수정 「육지측량 부출판지도구역일람도」	독도 없음. 1905년 시마네현에 강제편입시킨 이후에도 일본 정부가 관리하지 않았음
2006. 6. 18	연합 뉴스	"315년 전 고지도 '독도는 한국땅'"	1691년 이시카와 유센[石川流宣] 「해산조류도(海山潮陸圖)」	일본 시마네현 북쪽에 위치한 오키 섬의 오른쪽에 울릉도와 독도를 합친 섬이 그려져 있고 이 섬에는 '한당(韓唐)' 표시
2006. 10. 25	연합 뉴스	""독도는 조선 땅" 디지털 공개"	1892년 스즈키 게이사쿠[鈴木敬作] 「조선국전도(朝鮮國全圖)」 1893년 오스가 류타쿠[大須賀龍澤] 「대일본전도(大日本全圖)」	일본 메이지 정부가 독도를 시마네현에 강제편입시키기 전에 독도를 한국 땅으로 보고 있었음
2007. 7. 5	연합 뉴스	"독도는 신라 땅' 표기 고지도 발견"	7세기 교키[行基]의 「행기도(行基圖)」	현재의 울릉도와 독도를 기러기들이 쉬었다가 가는 곳이라는 의미로 '안도(鴈島)'로 표기. '안도'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신라 땅이라는 해설도 기록됨
2007. 12. 4	조선닷컴	"우산도는 역사 독도였다"	박세당(1629~1703) 「서계잡록」	박세당이 배를 타고 울릉도에 갔다 온 승려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 "대개 두 섬(울릉도와 우산도)이 그다지 멀지 않아 한 번 큰바람이 불면 달을 수 있는 정도다. 우산도는 지세가 낮아, 날씨가 매우 맑지 않거나 최고정상에 오르지 않으면 (울릉도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기록
2008. 2. 22	경향신문	"독도는 한국 땅" 입증할 고지도 발견"	1894년 「신찬조선국전도」	마쓰시마와 다케시마라고 표시한 섬들이 한국 본토와 똑같이 열은 황색으로 칠해져 있고 일본과 중국 땅은 무색. 독도를 '마쓰시마'로 표기한 것은 당시 일본에서 울릉도와 독도의 명칭이 혼란스러웠기 때문임
2009. 1. 3	연합 뉴스	"독도 영토 제외 법령 첫 발견"	「조선총독부 교통국 공제조합이 소유한 일본 재산 정리에 관한 정령 시행에 관한총리부령」[총리부령 24호(1951. 6. 6)] 「구령에 의해 공제조합 등에서 연금을 받는 자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 제3항 규정에 기초한 부속도서를 정하는 명령」 [대장성령 4호(1951. 2. 13)]	일본의 부속도서에서 독도 제외
2009. 1. 12	연합 뉴스	"日, 현행법령서도 '독도' 영토서 제외"	1960년 「대장성령 43호」 및 1968년 「대장성령 37호」	일본이 전후 연금 수급자 선정 및 일본 점령지역 회사의 재산 정리 등을 목적으로 1951년 제정한 총리부령24호와 대장성령 4호를개정한 것. "일본의 부속도에서 울릉도와 독도,제주도를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유효

사료로 본 독도 논쟁사 - 새로운 자료 발굴의 방향성 모색을 위한 전사(前史)로서

보도·방송 일자	매체	제목	발굴(소개) 자료	해석(기사 내용 요약)
2009. 6. 5	연합 뉴스	“독도특위, ‘독도 한국령 표기’ 고지도 발견”	1832년 네덜란드 왕립도서관 소장 지도	한국 영토는 노란색, 일본은 초록색, 중국은 붉은색으로표시, 울릉도와 독도는 한국령 표기
2010. 4. 14	파이낸셜 뉴스	“고지도도 ‘독도는 조선 땅’”	1894년 「일본조선지나삼국지도(日本朝鮮支那三國地圖)」	일본 본토는 분홍색으로, 독도와 울릉도는 조선과 마찬가지로 연한 녹색으로 각각 표시. 당시 일본인들이 독도와 울릉도를 조선 땅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을 나타냄. 특히 일본은 그동안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표기하면서 ‘다케시마’가 독도라고 주장해 왔으나 이 지도에서는 독도는 ‘마쓰시마[松島]’로, 울릉도가 ‘다케시마’로 표기되어 있어 눈길을 끌
2010. 4. 8	주간 동아 정치	“19세기 클라프트 지도 ‘독도는 한국 땅’”	올리우스 클라프트, 1832년 하야시 시헤이의 『삼국총람도설(三國總攬圖說)』 번역 출간본, 271쪽	울릉도, 죽도, 우산도 있음. 우산국이 3개의 섬을 포괄해 이름이며 우산도가 바로 독도임을 알 수 있음
2011. 5. 3	연합 뉴스	“동해 ‘조선해 표기’ 1800년대 고지도 발굴”	1835년 미노사쿠 소고[箕作省吾] 제작 지도	동해를 조선해로, 태평양 쪽 일본 동쪽 바다를 대일본해로 표기
2012. 3. 28	문화 일본	“‘독도는 한국 땅’ 입증 고지도 첫 공개”	1892년 오노 에이노스케[小野英之助] 『보통학전서』 제16편 「만국신지도(萬國新地圖)」 수록 「대일본국지도(大日本國地圖)」	일본 본토는 황색으로 채색했지만, 울릉도와 독도는 채색을 하지 않아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님을 보여주는 지도로 국내 첫 공개
			1895년 고토 쓰네타로[後藤常太郎] 『대일본분현지도(大日本分縣地圖)」	시마네현 관내의 위치와 거리 등을 매우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는데 독도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1904년 하마모토 이사부로[實本伊三郎] 「극동일로청한사국대지도(極東日露淸韓四國大地圖)」	우측 하단에 「조선신지도」를 부록으로 제시해 조선을 더 자세하게 나타냈는데 울릉도와 독도를 강원도와 동일하게 연한 보라색으로 채색
2012. 7. 27	SBS	“독도, 일본 땅 아니다”日 학자 고지도 공개”	1880년 일본 내무성 지리국 「대일본전도(大日本全圖)」	정부 공식 지도로서 당시 러시아와 분쟁 중인 쿠릴열도의 조그만 섬까지 꼼꼼히 표시어 있지만, 독도는 흔적도 없음
			1895년 「일본전도(日本全圖)」	청일전쟁 당시 승리의 대가로 받은 타이완을 일본 땅으로 새로 표기했지만 독도는 없음

방송 일자	매체	제목	발굴(소개) 자료	해석(기사 내용 요약)
2012. 8. 28	국민일보	“독도는 조선 영토’ 표기… 日 근대교과서 첫 공개”	1887년 오카무라 마쓰타로 「신찬지지(新撰地誌)」 2권 수록 「일본총도(日本總圖)」	일본 주변 섬을 가로줄로 표기해 일본 영토임을 밝히면서 울릉도와 독도는 같은 표시로 조선 땅임을 분명히 확인
			1905년 「소학지리용신지도(小學地理用新地圖)」 수록 「대일본제국전도(大日本帝國全圖)」	류큐의 부속섬은 물론, 1894년부터 식민화한 대만, 일본 북부의 지시메[千島] 열도까지 꼼꼼히 일본의 영토로 표시, 독도는 포함되지 않음
			1886년 「일본사요(日本史要)」	대마도 등 주변 군도를 모두 자국 영토로 주장, 독도에 대한 표기는 나타나 있지 않음
2013. 5. 22	KBS 오사카	“일본 고지도도 발견 ‘독도 조선 땅’”	1785년 하야시 시헤이 “삼국접양소도(三國接壤小圖)”	동해에 위치한 2개의 섬에는 울릉도와 독도의 일본식 이름인 ‘죽도’ 라는 명칭이 한자로 쓰여 있음. ‘죽도’는 ‘조선이 가지고 있다’며 정확히 표기
2013. 4. 28	제주신보	“독도가 한국 땅임을 알리는 고지도 일본에서 발견”	1717년 갯신[月心] 「성자여향」	조선통신사와 나는 대화를 정리한 책 지도를 보면 울릉도 옆에 독도의 옛이름 ‘우산도(于山島)’가 선명함
2013. 5. 21	뉴스천지	“日 지식인 단체 ‘독도는 한국 땅’ 18세기 일본 고지도 공개”	1775년, 1778년 「일본흥지로정전도(日本興支路程全圖)」	1775년 지도에는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시되어 있지만 일본 막부 정부가 다시 조사한 후 펴낸 1778년 지도에서는 독도가 제외
2013. 8. 14	경북매일	“日 독도편입은 허구’ 일본 고지도 나와”	1905년 동경시 수문관 「일로교전국동전국대지도(日露交戰極東戰局大地圖)」	「한국전도」에 독도와 울릉도가 표시되어 한국 영토임을 알 수 있음. 독도는 강원도 쪽으로 붙어 있어 당시 일본이 독도의 위치조차 자세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2013. 10. 24	아시아경제	“일본 독도 동영상에 정부’ 고지도’ 복원 공개 ‘맞붙’”	1844년 미쓰쿠리 쇼고[箕作省吾] 「신제여지전도(新製輿地全圖)」	세계를 동반구와 서반구로 구분하여 표시, 조선과 일본 사이 해역을 ‘조선해’로 표기, 프랑스 인이 만든 세계지도를 바탕으로 제작
2013. 10. 24	연합뉴스	“‘독립기념관’ 패전 일본정부 독도를 영토로 인식 안 해”	1948. 7. 3 일본 건설성 지리조사소 발간 「주코쿠 및 시코쿠 지방도」(1/500,000)	독도를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할 것을 명령한 1946년 연합국 각서 677호를 계승한 지도
2013. 10. 24	충청일보	“독도는 우리 땅’ 희귀자료 2점 공개”	1942년 아유사 와 신타로[鮎澤信太] 「대일본해(大日本海)」(경성사출판부)	태평양을 일본해로 명시, 동해를 한국의 바다로 표시
2014. 8. 12	Korea Daily	“독도는 한국 땅’ 일본 고지도 또 발견”	1785년 「삼국통람여지로정전도(목판본)」	독도(죽도)를 ‘조선의 것’이라고 명시했으며 색상도 조선과 같은 색으로 표시
			1844년 「신제여지전도」	동해가 조선해로 표기됨

자료로 본 독도 논쟁사 - 새로운 자료 발굴의 방향성 모색을 위한 전사(前史)로서

보도·방송 일자	매체	제목	발굴(소개) 자료	해석(기사 내용 요약)
2014. 8. 24	연합 뉴스	““독도는 한국 땅” 인정한 일본 정부 지도 첫 공개”	1951년 8월 「일본영역참고도」	1951년, 8월 해상보안청 수로부 작성 지도, 1951년 10월 일본 국회가 대일평화조약을 비준할 때 제출한 부속지도로서 독도 주변에 반원을 그려 일본 영토에서 명확히 제외
2014. 11. 27	경북 매일 신문	““독도는 한국 땅” 日 문서도 나왔다”	1951년 일본 마이니치 신문간행 「대일 평화조약」 및 부속도 「일본영역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결 후 일본 마이니치 신문이 평화조약에 조인된 내용을 일본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발간한 백서,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닌 한국 영역으로 표시됨
2015. 2. 25	강원도민일보	“독도 한국령 입증 고지도 공개”	1895년 「일청한군용정도(日淸韓軍用精圖)」	각 국가와 국가 사이의 국경선이 명확하게 그려져 있으며 조선과 일본 사이에는 동해 바다 상에 국경선을 분명하게 표시하고 있어 당연히 독도는 조선의 국경선 안에 표시, 조선의 영토임을 분명히 함
2015. 4. 14	KBS	““독도는 조선 땅” 일본 정부 공식지도 첫 발견”	1897년 「대일본제국전도(大日本帝國全圖)」	1897년에 일본 농상무성이 제작한 지도로서 울릉도와 함께 독도가 하얀색 조선 영토로 표시
2015. 7. 17	국민일보	“독도는 조선의 것”...1802년판 일본지도 발굴	1785년 및 1802년 하야시 시헤이[林子平]대삼국지도(大三國地圖)」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땅임을 상징하는 노란 색깔로 함께 칠해져 있고 지금까지 발견된 고지도 중 유일하게 독도 이름과 함께 '조선의 것(朝鮮ノ持之)'으로 표기하고 있음
2015. 7. 20	경북 매일	““독도=한국 땅” 19세기 日 지도 발견”		
2016. 2. 21	중앙일보	“일본 고지도가 보여주는 독도는 한국 땅”	1887년 일본 문부성 허가 「신찬지지(新撰地誌)」 부속 「일본총도」 1897년 일본 문부성 검인 일본 지리교과서 「일본지」 부속지도 1785년 「삼국접양지도(三國接壤地圖)」 1895년 일본군 제작 군사용 정밀지도 「일청한군용정도(日淸韓軍用精圖)」	울릉도와 독도가 함께 나란히 한국의 영토임을 알 수 있게 하는 가로줄 속에 포함됨. 일본의 영토는 또 다른 가로줄로 표기함으로써 독도와 구분 일본 영토는 붉은색, 조선 영토는 흰색으로 표시됨, 독도도 흰색으로 표시되어 일본 영토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음 동해 가운데 두 섬 중 큰 섬을 '죽도' 라고 적은 뒤 조선의 것이라고 표기 국가 사이의 국경선이 범례에 따라 그려졌고 독도와 울릉도가 우리나라 국경선 안에 그려져 있음

보도·방송 일자	매체	제목	발굴(소개) 자료	해석(기사 내용 요약)
2016. 8. 29	연합 뉴스	“1938년 발행 조선어사전 초판본 찾았다”	문세영 『조선어사전』(1938, 초판본) 379쪽	‘독’을 돌의 사투리와 홀로독(獨) 등 두 가지로 설명, 당시 사람들이 독도와 석도를 같은 말로 사용했음을 보여주는 자료
2016. 10. 24	세계일보	“독도는 조선 땅 인정 일지도 교과서 발견”	일본 농상무성 지질조사소 편 「일본제국전도」(1888, 1892) 아마카미 만지로(山上萬次郎) 「중등교과용 지도 외국부」(1902) 및 「여자교과용 지도 외국지부 상」(1903)	일본 측 독도보다 작은 일본 섬에 산 표기가 되어 있지만 성인봉이 있는 울릉도나 산봉우리로 이뤄진 독도에는 산을 나타내는 표시가 없음. 일본 영토로 인식하지 않아 측량대상에서 제외 독도가 일본 국경선 밖에 있음
2016. 10. 25	세계일보 11면	“독도 영토주권 입증 자료 2점 공개”		
	YTN	“일제강점기 시마네현 지도에 ‘독도’는 없었다”	1912년 일본 문부성 간행 중학교과용 지리부도 「최근일본지도」	국가 전도에 울릉도와 독도를 표기하였으나 시마네현이 속해 있는 주고쿠 지역 지도에 독도 표기 없음
	KBS	“‘日’독도는 일본 땅 아냐”... 신자료 공개”	1946. 1. 5 아사히 그래프 45권 1호	아사히신문이 1923년부터 2000년까지 발간한 뉴스 화보로 제2차 세계대전 후 바뀐 세계의 영토지도 수록, 일본영역을 사선으로 그려 넣은 지도에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누락

사료로 본 독도 논쟁사 - 새로운 자료 발굴의 방향성 모색을 위한 전사(前史)로서

<붙임 2> 1950~1960년대 한일 독도 논쟁 분석표

출전	견해	근거 사실 또는 자료	해석
한국 1952. 2. 12 각서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님	① SCAPIN 677(1949. 1. 29) ② SCAPIN 1033(1949. 6. 22)	연합국이 일본 영토에서 독도를 제외시켰음 독도는 맥아더라인 밖에 위치함
일본 1952. 4. 25 각서	'다케시마(독도)'는 시마네현 오치군 고 카촌에 속하는 일본 땅이며 수세기 동안 한국에 속해 있었다 는 근거 없음	㉔ SCAPIN 677 (1949. 1. 29) 제1항 ㉕ SCAPIN 677 (1949. 1. 29) 제6항 ㉖ SCAPIN 2046 (1949. 9. 19) 제6항	독도에 대한 정부 차원 또는 행정 차원의 권한 실행 또는 실행 의도의 중단은 의미할 뿐임 포츠담선언 제8조에서의 일본의 '제소도'에 대한 궁극적 결정과 관련된 연합군의 정책이 아님 맥아더라인은 관련 지역 및 그 외 지역에서의 국가 관할권, 국제적 영역 또는 어업권에 대한 연합국 정책의 궁극적 결정이 아니며 지금은 폐쇄되었음
1953. 7. 13 일본 정부 견해①	-	㉗ 이수광, 『지봉유설』 권2 지 리부(地理部) 섬(島)(1633) ㉘ 1694년 9월 조선 예조참판 이여(李胤)가 쓰시마 번주에게 보낸 서신 ㉙ 시볼트(Philipp Franz Balthasar von Siebold), 『일 본도(日本圖)』(1840)	예전에 다케시마 또는 이소타케시 마라고 했던 섬은 울릉도라 고 하는 섬이며 다케시마는 마쓰시 마로 알려져 있었음 필립 프란츠 본 시볼트가 1840년에 제작한 지도의 실수로 유럽 지도에 서는 울릉도가 마쓰시마로 표기되 게 되었고, 그 결과 앞의 명칭과 뒤 의 명칭이 뒤바뀌게 되었음. 이 부정 확한 명칭이 일본에서도 사용되어 울릉도가 마쓰시마로 표현되고 명 백히 마쓰시마라고 불리던 작은 섬 에 '다케시마'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 었음 1693년(일본 元祿 6)에 일어난 한 일 간의 분쟁 이후 막부 지시에 따 라 일본인이 어로를 위해 다케시마 (울릉도) 근처로 가는 것이 금지되었 으나 그때의 다케시마는 지금의 '다 케시마(독도)'와는 관계없음. 1881년 (일본 明治 14) 일본 정부가 일본인 이 어로 및 벌목을 위해 가는 것을 금지한 섬은 '다케시마(독도)'가 아 닌 울릉도였음 울릉도와 관련된 한일 간 어떤 분 쟁에서도 '다케시마(독도)'가 이슈가 된 적은 없음

출전	견해	근거 사실 또는 자료	해석
			고문헌과 고지도 등은 지금의 '다케시마(독도)'가 일본에서 예전에 마쓰시마라하는 이름으로 알려졌었고 일본 영토로 간주되었다는 것을 보여줌
국제법적 관점에서 독도는 일본 영토에 속함		㉔ 「시마네현 고시」 40호 (1905. 2. 22)	일본 정부는 한국 병합 이전인 1905년(일본 明治 38)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 40호로 '다케시마(독도)'를 시마네현 오키도사 관할하에 둠. 이는 국제법상의 영유권 확립 요건인 영토 편입 의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임.
		㉕ 나카이 요자부로의 「량코도 영토편입 및 대하원(リャンコ島領土編入並に貸下願) (1904. 9. 29)	일본인 나카이 요자부호가 일본 정부의 공식 허가를 받아 '다케시마(독도)'에 漁船을 짓고 바다사자를 잡은 이후 '다케시마(독도)'는 제2차 세계 대전 이전까지 일본인에 의해 효과적으로 개발되었음. 이 역시 국제법상의 영유권 확립 요건인 실효지배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임
		① SCAPIN 1033 제5항	제5항에서 국가주권과 어업권에 대한 최종 결정 관련 연합군의 정책을 나타내는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으므로, SCAPIN 1033이 결코 '다케시마'에 대한 일본의 주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님
		② Memorandum from GHQ/SCAP to the Japanese Government AG 800.217(25 Apr 52) DS (SCAPIN 1033 폐지 건)	1952년 평화조약 체결에 앞서 맥아더라인은 1952. 4. 25자 각서에 따라 폐지되었음
		㉘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제2장 제2조 (a)항	독립 한국에 포함되는 섬으로 울릉도, 거문도, 제주도만 언급하고 있음
		③ SCAPIN 2160(1951. 7. 6) (독도를 미국 폭격훈련구역으로 지정)	평화조약 대표 조인국인 미국이 일본과 협정하여(1952. 2. 28자) '다케시마(독도)'를 미군 연습장으로 지정한 것은 '다케시마(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전제임
			1905년 시마네현 고시 40호 및 나카이 요자부로의 독도 강제 어업 경영은 국제법상의 영유권 확립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 따라 독도는 일본 영토로 규정되었으며 일본의 어업권을 제한한 맥아더라인은 이미 폐지되었음 또 독도가 미공군 연습장으로 지정된 것은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것을 의미함

사료로 본 독도 논쟁사 - 새로운 자료 발굴의 방향성 모색을 위한 전사(前史)로서

출전	견해	근거 사실 또는 자료	해석	
1953. 9. 9 한국 정부 견해①	일본이 독도가 일본 고유영토라는 근거로 제시한 것은 '다케시마, 마쓰시마'라는 명칭에 관한 것뿐이며 한국 측 사료에 따르면 독도는 한국 영토임	③ 『세종실록』 권153 지리지/강원도/삼척도호부/울진현 (1454)	“우산과 울릉이 현의 동쪽 바다 가운데 있는데 이 두 섬의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좋으면 서로 바라다 보인다”고 함	울릉도와 독도 명칭 관련, 한국에서 울릉도는 우릉·무릉·울릉 등으로, 독도는 삼봉도의 우산으로 불렸음 현재의 독도라는 명칭은 경상도 지방(원문대 로임)의 사투리임. ‘독’은 ‘돌’을 의미하며 독도는 ‘돌섬’이라는 뜻인데 ‘isolated island’라는 의미의 독도라는 명칭과 발음이 같으므로 적당히, 상징적으로 독도라고 불리게 되었음
		④ 『(신증)동국여지승람』 권 45, 울진현/우산도 울릉도조 (1531)	김자주의 보고에 따르면 독도는 삼봉도라고 불렸음	
		⑤ 『숙종실록』 권30 숙종22년 9월 무인조	1696년 안용복이 울릉도와 독도에 가서 두 섬이 한국 영토이니 일본 배가 울릉도 독도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함	
		⑥ 1906년 울도군수 심흥택 보고서 (『각관찰도안』, 『보고서호외』, 1906. 4. 29 / 이명래 보고서)	“울도군 소속 독도”라는 구절이 있음. 1910년 이전에 독도가 울도군수에 의해 관리되었다는 사실에 논란의 여지 없음	
			-	지리적으로 독도는 오키보다 울릉도에서 가까움. 날씨가 좋으면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임. 울릉도와 독도의 지리적 접근성은 국제법이 요구하는 역사적 권원 확립 요건을 만족시킬 제 史實이 존재했을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케 함
		일본은 한국이 항의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무주지인 적이 없는 독도를 편입하였으므로 일본의 독도 편입은 불법임 편입 이후에도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것은 제 史料가 증명하는 바임 평 화 조 약 은 SCAPIN No. 677을 재확인한 것이며, 동 조약에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만 들어간 것은 한국 섬들에 대한 대표성 때문임	⑦ 『한일의정서』(1904. 2. 23) ⑧ 제1차 한일협약 (1904. 8. 22) ⑨ 시마네현 교육회 편, 『시마네현사(島根縣史)』(1923) 제5장 ⑩ 1904 쓰시마함 보고서(쓰시마함 함장 해군 중좌 仙頭 武英이 수로부장에게 보낸 1905. 1. 5자 보고서 67호) ⑪ 한일신협약/정미7조약 (1907. 7. 24) ⑫ 『한국수산지』(1908. 5)	독도는 무주지인 적이 없으며 한국이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독도가 편입되었으므로 항의할 수 없었음 나카이 요자부로는 독도를 한국 영토라고 믿고 있었음 울릉도 주민 수십 명이 매년 이 섬에 여사를 세우고 섬 근처에서 어로에 종사한다고 보고하였음 1907년 신한일조약에 따라 일본이 공개적으로 한국의 내정 간섭, 통감부에서 추천한 일본 관리들이 한국의 수산을 조사하였는데 그 보고서에 독도는 한국에 속한 섬으로 참조되었음

출전	견해	근거 사실 또는 자료	해석	
1954. 2. 10 일본 정부 견해②		㉓ 히바타 셋코, 「일본해에 있는 '다케시마'의 일조관계에 관하여」, 『역사지리』 제55권 제6호 (1930)	한국 강원도에 속하는 '다케시마(독도)'와 울릉도는 한국 영토의 최동단으로서 일본해에 있다고 함	
		① SCAPIN 677(1949.1.29) - 제3항	일본 정부의 해석 관련, 일본 영토에 관한 한 평화조약에는 이 SCAPIN 조항과 모순되는 조항이 없으므로 SCAP의 처리를 그대로 재확인하여준 것임	
		㉔ 일본 해군성, 『조선연안수리지』 제3편 「조선동안」(1933)	일본이 독도를 편입 이후에도 독도는 울릉도에 속했으며 울릉도 어민에 의해 경영됨	
		㉕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제2장 제2조 (a)항	여기에서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만 열거된 것은 그 대표성 때문이며 그 밖의 한국 해안의 수많은 섬들을 한국 영토로부터 분리함을 의미하지 않음	
		㉖ 일미행정협정에 의한 합동 위원회가 독도를 폭격훈련구역에서 삭제 (1953. 3)	미공군은 한국 정부 항의에 따라 1953. 2. 27 독도를 미공군 연습지에서 제외하였다고 공식적으로 통고해 왔음	
	우산도는 지금의 독도가 아닌 울릉도며 안용복 증언에는 허위가 많고 한국 측이 제시한 제 역사적 사실 및 SCAPIN 관련 해석은 달리 해석됨	③ 『세종실록』 권153 지리지/강원도/삼척도호부/울진현 (1454)	우산도와 삼봉도는 지금의 '다케시마(독도)'가 아닌 울릉도임. 또 김자주의 보고는 「동국여지승람」이 아닌 「속중실록」 기사임. 한국 고문헌과 고지도에서 '독도'라는 명칭은 찾아볼 수 없음	한국 측은 문헌이나 사실 인용에서 부정확하며 해석 오류가 많음
		④ 『(신증)동국여지승람』 권 45, 울진현/우산도 울릉도조 (1531)		
		㉗ 정원용, 『문헌촬록』 (1850)		
		⑤ 『속중실록』 권30 속중 22년 9월 무인조	『속중실록』 기사는 안용복이 귀국 후 비변사 취조를 받았을 때 거짓 공술을 한 것이므로 내용에 허위가 많음. 안용복이 울릉도에서 일본어선의 울릉도·독도 접근 경고서는 일본 어민은 울릉도에 도항하지 않았음. 당시 조선국 정부는 안용복을 불법출국죄로 체포하여 유형에 처함	
		⑥ 1906년 울도군수 심흥택 보고서 (『각관찰도안』 「보고서호외」, 1906. 4. 29/ 이명래보고서)	심흥택은 조사단으로부터 독도에서 포획한 감치 1마리를 받고 치하함. 만일 군수가 당시 '다케시마(독도)'를 울릉도에 속한 섬으로 취급하였으면 당연히 그러한 응대는 안했을 것임	
⑨ 시마네현 교육회 편, 『시마네현사(島根縣史)』(1923) 제5장	나카이가 오키도청에 제출한 '다케시마(독도)'에 관한 설명은 편자의 오해에 근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사료로 본 독도 논쟁사 - 새로운 자료 발굴의 방향성 모색을 위한 전사(前史)로서

출전	견해	근거 사실 또는 자료	해석
		<p>⑬ 히바타 셋코, 「일본해에 있는 '다케시마'의 일조관계에 관하여」, 『역사지리』 제55권 제6호 (1930)</p>	<p>이 논문이 발표된 1930년에는 '다케시마(독도)'는 시마네현에 소속되어 있었고 조선 강원도 관할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명백히 필자의 오류임. 필자는 예전에 다케시마라고 불렀던 것이 울릉도며 지금의 '다케시마'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었음</p>
		<p>⑭ 일본 해군성, 『조선연안수로지』 제3편 「조선동안」(1933)</p>	<p>수로지는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편찬되는 것으로 섬의 귀속과는 관계없음. 우연히 '다케시마(독도)'가 울릉도 부근을 항행할 때에 관계있는 섬이므로 울릉도항에 병기했을 뿐임. 동시에 '다케시마(독도)'는 오키열도 부근을 항행하는 경우에도 관계가 있으므로 '본주연안수로지 제2권' 2편 '본주복서안남서부'항에 '다케시마(독도)'가 오키열도 및 '다케시마(독도)'로 되어 있음</p>
		<p>⑮ 「본주연안수로지」 제2권 제2편 「본주복서안남서부」 항</p>	<p>수로지는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편찬되는 것으로 섬의 귀속과는 관계없음. 우연히 '다케시마(독도)'가 울릉도 부근을 항행할 때에 관계있는 섬이므로 울릉도항에 병기했을 뿐임. 동시에 '다케시마(독도)'는 오키열도 부근을 항행하는 경우에도 관계가 있으므로 '본주연안수로지 제2권' 2편 '본주복서안남서부'항에 '다케시마(독도)'가 오키열도 및 '다케시마(독도)'로 되어 있음</p>
		<p>⑩ 1904년 쓰시마함 보고서</p>	<p>『조선연안수로지』에 따르면 '다케시마'의 東方島에 어부용 고위소옥이 있으나 풍랑 때문에 심히 파괴되어 있다고 함"이라는 한 구절 뿐임. 한국 측이 인용한 구절은 편자가 들은 이야기를 기록한 후년의 '다케시마(독도)'의 사정이며 군함 쓰시마의 보고는 아님. 또 보고에는 울릉도에서 오는 사람으로 되어 있고 울릉도 주민은 아님. 이 사람들은 울릉도를 근거로 전복·미역 채취를 위해 '다케시마'에 온 일본인 및 이들에게 고용된 조선인을 가리킴</p>
		<p>⑦ 「한일의정서」(1904. 2. 23)</p>	<p>한일협약 제2항의 외교 고문은 미국인이었고, 한일의정서는 인용이 부정확함. 한일의정서는 원래 러일전쟁 시 한국의 영토보전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에 따라 군락상 필요한 지점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정한 규정에 불과하고 '다케시마(독도)' 영토편입조치와는 관련 없음</p>
		<p>⑧ 제1차 한일협약 (1904. 8. 22)</p>	<p>한일협약 제2항의 외교 고문은 미국인이었고, 한일의정서는 인용이 부정확함. 한일의정서는 원래 러일전쟁 시 한국의 영토보전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에 따라 군락상 필요한 지점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정한 규정에 불과하고 '다케시마(독도)' 영토편입조치와는 관련 없음</p>

출전	견해	근거 사실 또는 자료	해석
		㉔ SCAPIN/1 (1951, 12, 5) ㉕ 1953년 8월 8일자 달레스의 야마미 군도 권리포기 성명	SCAPIN677에 의거하여 일본 정부의 행정권이 정지된 남서제도 중 북위 30도와 29도 간의 섬들이 SCAPIN/1에 의해 일본 정부의 행정관할하로 복귀. 1953년 12월 야마미군도 행정권도 일본 측에 반환됨. 또 남은 남서제도 및 이우후암 남쪽 남방제도, 오키노토리시마, 미나미토리시마에 대해서도 일본에 '잔존 주권'이 있음이 명백해짐. 행정권이 정지된 하보마이 군도에 관해서도 일본이 평화조약에 의거 권리, 권한 및 청구권을 포기해야 할 열도 중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달레스 미 전권에 의해 명백히 되어 있음. 이상의 사실상의 조치에서 보아, 총사령부 각서와 평화조약 사이에는 관계가 없는 것이 명백함
일본 측은 에도시대부터 '다케시마(독도)'를 실효지배했다는 근거를 가지고 있으나 한국의 실효 지배 근거는 확인 안 됨		㉖ 『은주시청합기』(1667) ㉗ 「오야 규에몬 가쓰노부 수기」[大谷九右衛門勝信手記] ㉘ 「오야 규에몬 가쓰후사가 나가사키 봉행서로 제출한 구상서」(1741) ㉙ 『죽도도설』(1750~1763) ㉚ 『장생죽도기』(1801) ㉛ 『죽도도(竹島圖)』(1724) ㉜ 『일본여지로정전도』 및 에도시대 중기 이후의 고지도	개국 이전의 일본에는 국제법의 적용이 없었으므로 당시 실제로 일본에서 일본 영토라고 생각하고 일본 영토로 취급, 외국과의 분쟁이 없는 것으로 영유조건을 충족시킴. '다케시마(독도)'는 예전에 마쓰시마라는 명칭으로 일본인에게 알려졌었고 일본 영토의 일부로 생각되어졌으며 또 일본인에 의해 항해상·어업상 이용됨. 한국이 '다케시마'를 옛날부터 인지하고 이것을 이용하고 있던 것을 확인할 수 없음. 조선은 초기부터 잠기간 공도정책(空島政策)을 취하였으므로 울릉도에서 더욱 먼 바다의 고도인 다케시마에까지 경영의 손을 뻗었을 리 없음

사료로 본 독도 논쟁사 - 새로운 자료 발굴의 방향성 모색을 위한 전사(前史)로서

출전	견해	근거 사실 또는 자료	해석
일본은 국제법에서 요구하는 영토취득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한국은 옛날부터 '다케시마'를 영유하고 유효하게 경영하지 않았음.		㉠ 조선의 공도정책	한국이 '다케시마'를 옛날부터 인지하고 이것을 이용하고 있던 것을 확인할 수 없음
		㉡ '다케시마' 영토 편입에 관한 각의 결정(1905. 1. 28)	국가적 영유 의사 확인 충족
		㉢ 「시마네현 고시」(1905. 2. 22)	국가적 영유 의사 공식 충족
		㉣a 시마네현 지사 마쓰나가 부키치[松永武吉]의 '다케시마' 조사(1905. 8)	근지속적 실효지배 확립
		㉣b 시마네현 제3부장 진자이 요시타로 일행 40명의 '다케시마' 조사 (1906)	
		㉣c '다케시마'를 관유지로서 토지대장에 기재	
		㉣d 시마네현령 제18호 「어업취득규칙」(1905. 4. 4) 개정 및 나카이 등 4명에게 '다케시마' 갭치 어업 정식 면허 부여 (1905. 6. 5)	
		㉣e '다케시마'가 마이즈루 진수부에 해군 재산으로 이양됨. 아와타 조지호가 갭치 어업권 획득. 마이즈루 진수부 사령관이 '다케시마' 사용 심득 명령서 교부	
		㉣f 현재, 『대한지리지』(1910)	한국 영토의 동쪽 한계를 동경. 130도 35분으로 함. 여기에 '다케시마(독도)'는 포함되지 않음. 현재는 학부 편집국장으로서 당시의 권위자였음
㉣g 박은식, 『한국통사』(1915)	1905년 전후 한국 측은 '다케시마(독도)'를 자국영토로 생각하지 않았음		

출전	견해	근거 사실 또는 자료	해석	
1954. 9. 25 한국 정부 견해②	우산도는 현재의 독도이며 안용복 진술은 허위가 아님. 그 결과 에도막부는 2차에 걸친 울릉도 도해금지 조치를 취했고 1837년에도 금지조치가 취해졌음. 일본측이 제시한 근거자료에 대한 재해석 및 반박	③ 『세종실록』 권153 지리지/강원도/삼척도호부/울진현 (1454)	“우산과 물릉의 두 섬이 울진현 정동쪽 해중에 위치되고 이 두 섬의 거리가 그리 원격이 아니기 때문에 일기가 청명한 때에는 이 두 섬이 서로가 망견할 수 있다.”고 함	우산도는 현재의 독도이며 우산도 삼봉도 울릉도가 동일한 섬의 이칭에 불과하다는 일본의 견해에는 근거 없음
		④ 『(신증)동국여지승람』 권 45. 울진현/우산도 울릉도조 (1531)	“우산도와 울릉도 이 두 섬은 울진현의 정동쪽 해중에 위치”하였다고 함 “일설 우산울릉본일도”라는 구절은 막연한 일설에 지나지 않음	
		㉓ 정원용, 『문헌촬록』(1850)	조선 말기의 단순한 개인 隨錄. 『세종실록』과 같이 역사적·지리적 사실과 그 변천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는 문헌적 가치는 전혀 없음	
		⑤ 『속증실록』 권30 속증22년 9월 무인조	마쓰시마는 우산도이고 우리나라 땅이라고 함	
		⑥ 『증보문헌비고』 권31 (1908)		안용복 관련 『속증실록』의 기사는 안용복 사건의 전말을 제시하여 주는 역사적 사실임
		⑥ 안용복의 1차 출어 (1693)	울릉도(다케시마)와 울릉도로부터 단지 49해리의 거리에 있고 또 시마네현 오키도로부터 약 86해리의 해중에 있는 그 부속도(독도)가 한국의 영유라는 것을 재확인하고 이후 일본인들의 이 지역으로의 출어를 금지케 함 1696년 안용복 2차 출어 후에도 일본인의 불법범경이 있었고 조선은 이후 3년에 한 번씩 수도사를 파견함	
		⑦ 에도막부의 울릉도 도해 금지령(1696)		
		⑧ 하마다의 하치에몬[八右衛門] 사건 (1837)	헌종 3년(일본 天保8, 1837) 다케시마(울릉도)에서 밀무역한 이와미국 하마다번 하치에몬을 사형에 처함. 조선 정부의 안용복 추방은 연양수역 출입 금지라는 국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며 결코 국토의 주권문제와는 관계가 없음 조선의 주권을 일본국 정부에 재인식시키는데 혁혁한 공적이 있었다는데 비추어 사형에서 감형되어 유배된 것에 불과함	
		⑨ 에도막부의 다케시마(울릉도) 도해 면허(朱印) (1618)	1618년 호키의 어민에게 ‘朱印’을 하사한 것은 울릉도가 당시 조선의 주권하에 있었다는 증거임	

사료로 본 독도 논쟁사 - 새로운 자료 발굴의 방향성 모색을 위한 전사(前史) 로서

출전	견해	근거 사실 또는 자료	해석	
		⑥ 1906년 울도군수 심흥택 보고서	1906년 심흥택이 간다[진자이/神西] 일행 영접한 사실 없음	제국주의 일본이 한국에 강요하였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이를 무효로 인정하고 있는 소위 모든 관계조약과 협정 등을 구실로 불법적으로 한국 영토에 상륙하여 조사 등을 자행할 수 있었음
		⑦ 「한일의정서」(1904. 2. 23)		
		② 1906. 2 통감부 설치		
		⑨ 시마네현 교육회 편, 「시마네현사(島根縣史)」(1923) 제5장 - 나카이 요자부로 이력서	나카이가 일본의 독도 시마네현 편입 1년 전에 독도를 한국 영토라고 믿었던 것은 사실임	
		⑬ 히바타 셋코, 「일본해에 있는 '다케시마'의 일조관계에 관하여」, 「역사지리」 제55권 제6호 (1930)	저자는 자기의 지식대로 '다케시마와 울릉도는 일본해 최동단에 있는 한국 영토이다' 라고 명기	
		⑭ 일본 해군성, 「조선연안수로지」 제3편 「조선동안」(1933)	다케시마(울릉도)의 위치, 지세, 산물과 기타 사항을 자세히 기술	만일 다케시마가 본래부터 일본의 속도였다면 일본 본주 연안 수로지에서 그 위치, 지세, 산물 등을 상세히 기술하였을 것임
		⑩ 「본주연안수로지」 제2권 제2편 「본주북서안남서부」 항	다케시마의 이름만 기재	
		⑩ 1904년 쓰시마함 보고서	“울릉도로부터 독도에 온 사람은 일본인과 그들에 고용된 한국인이다” 라고 하는 일본 정부의 단언은 전연 근거가 없는 말임	어느 부분은 전함의 보고에 근거를 두고 또 어느 부분은 수로지의 편찬자가 전문에 의하여 후에 첨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 일본 해군성이 수로지를 공간지로서 편일화한 것이므로 수로지 편찬자가 임의로 허구한 사실을 기재한 것은 결코 아님
		⑧ 제1차 한일협약 (1904. 8. 22) - 제2항	일제는 한국 외교권을 탈취하기 위해 스스로를 앞잡이로 고용, 책임은 일제에 있음. 일본 정부가 '잠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실상은 당시 일제 정부는 영구적으로 근본적인 침략 계획하에 모든 것을 수행함	
		① SCAPIN 677(1949. 1. 29)	1946년 1월 29일자 스캐핀 677은 1951. 12. 5 스캐핀 각서 또는 미국 정부에 의하여 일본 정부의 행정관리권을 회복하였다고 하나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이들 섬은 미국을 유일한 관리권자로 지정한 국제연합의 신탁통치하에 있었던 섬에 지나지 않음	
		③ SCAPIN/1 (1951. 12. 5)		

출전	견해	근거 사실 또는 자료	해석
		㉠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제2장 제2조 (a) 항	3개의 주요도서의 열기는 결코 독도를 한국 영유에서 제외하려 하는 것은 아님. 울릉도의 하나의 속도로서 독도가 이 평화조약에 의하여 울릉도와 같이 한국 영역으로서 승인되어 있다고 하는 의미로도 해석
		㉡ 요나고 오야·무라카와 양가의 울릉도 출어	요나고의 오야무라카와 양가는 울릉도 방면에 원양 출어하는 허가를 얻은 것뿐이지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다케시마(독도)를 지배하도록' 하게 한 것이 아님
		㉢ 『은주시청합기』(1667)	일본의 울릉도 방면 침략시대(1614~1697)에 저작된 것으로 증거로서 무효, 1696년 일본 국민의 울릉도 방면 출어 금지라는 일본 측 결정을 조선 정부에 통고함
		㉣ 『오야 규에몬 가쓰노부 수기(大谷九右衛門勝信手記)』	고지도에서 보이는 당시의 일본 인민들의 독도에 대한 정확한 지리적 지식을 지적하고 있으나 이는 독도 영유 문제와 하등 관계가 없는 것임. 지도의 가치에 대하여서는 원도가 없으므로 한국 정부의 견해를 제시할 방법 없음
		㉤ 조선의 울릉도 수토관 파견	3년에 한 번씩 울릉도와 독도에 수토관이 파견되었음
		㉥ 조선의 공도정책	울릉도와 그 속도인 독도에 대한 영유권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일본의 국제법에 의한 '다케시마(독도)' 영유 요건은 충족되지 않음		㉦ '다케시마' 영토 편입에 관한 각의 결정(1905. 1. 28)	독도는 한국 영토로 결코 국제법상 선점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시마네현 고시'(1905. 2. 22)	암암리에 시행된 것으로 외국에는 물론 일본의 일반국민에게도 알려 있지 않음
일본의 독도에 대해 말하고 있는 소위 역사적 사실 근거가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사실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함		㉨ 일본 해군성, 『조선연안수로지』 제3편 「조선동안」(1933)	1904년 이래 일본제국은 한국의 강제점령을 목적으로 측량기타의 명목하에 공공연히 한국 침략
		㉩ 「본주연안수로지」 제2권 제2편 「본주북서안남서부」 항	
		㉪ 현재, 「대한지지」(1910)	한국을 개설하기 위한 서책이므로 무인고도의 이름을 굳이 기입할 필요가 없었음. 즉 저술 목적이 다른데 있었음
		㉫ 일본 문부성 인가 학교용 현대지도	일본 문부성이 인가한 학교용 현대지도는 독도를 일본 영토의 일부로서 취급하고 있지 않음
		㉬ 일본전국교육도서 주식회사 간행 「표준세계지도」 제6판도 (1952. 6. 10)	한자 '다케시마'의 음표를 '다케시마' 대신 로마자로 CHUKDO, 일본 가나 CHYUKUDO 로 표기
		㉭ 다부치 도모히코 「한국신지리」(제국백과사전 134권, 1906년 제판) 308항 및 「조선전도」	'다케시마(독도)'를 한국 영토로 기술
		㉮ 「한국연안수로지」 개정 제2판 (1907)	"한국인은 '송도'라고 쓰고 일본 어민은 '리양고도'라고 호칭하고 있다"고 함. 한국인은 '독도(돌섬)'라고 하는 매우 적당한 이름을 사용하고 일본인은 '리양팔력스'라는 외래의 이름만을 사용하였다는 것을 일본 정부(해군성)가 인정하였다는 것을 표시
		㉯ 「일본역사사전」 제1권 (662항 c항 16~17항)	현재의 '다케시마'라는 이름이 울릉도의 일(-) 속도의 호칭으로서 사용되게 되고 그 외국명이 '리양쿠-르' 운운 이라고 주기

사료로 본 독도 논쟁사 - 새로운 자료 발굴의 방향성 모색을 위한 전사(前史)로서

출전	견해	근거 사실 또는 자료	해석	
1956. 9. 20 일본 정부 견해③	우산도는 울릉도이고 우산 울릉 이도 이명(二島二名) 설은 명확한 것이 아니며 우산도에 관한 설명은 울릉도를 가리키는 경우도 있음	㉠h 『삼국사기』	우산국은 울릉도를 가리킴	우산·울릉 이도설(二島說)을 취하고 있는 문헌도 전문이 시종 울릉도에 관한 설명이고 우산도에 관해서는 구체적 설명이 되어 있지 않음. 이는 이제 문헌의 편자에게 문제의 섬에 관한 실지의 견문을 기초로 한 명확한 지식이 결여되었기 때문이고 우산도에 관한 지식은 후대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발전은 없었음
		㉠i 『고려사』 「지리지」	『삼국사기』의 입장 답습. 기술 말미에 于山·武陵 양도설(兩島說)을 의심하고 있음	
		㉠j 『세종실록』 권153 지리지/강원도/삼척도호부/울진현 (1454)	于山·武陵 이도설을 말하고 있으나, 주기(注記)에서는 이 두 섬이 울릉도이며 신라시대의 우산(于山)이라고 말하고 있음	
		㉠k 『(신증)동국여지승람』 권 45, 울진현/우산도 울릉도조 (1531)	이도설을 채택하고 있으면서도 이도일명(二島一名)일지 모른다는 의심을 하고 있음	
		㉠l 이수광, 『지봉유설』 권2 지리부(地理部) 섬(島) (1633)	일도이명(一島二名) 설을 고집	
		㉠m 『태종실록』 권33 태종 17년 2월 입술조		
		㉠n 『세종실록』 권33 태종 17년(1417) 2월 입술조	우산도에서 大竹, 水牛皮 기타 산물(產物) 이 나고 86명이 거주하였다고 함	
	일본은 예전부터 독도를 인식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었으나 한국은 공도 정책 등 울릉도를 포기하고 있었으며 근대에 들어 겨우 사람을 살게 했음. 독도는 울릉도보다 더 멀기 때문에 한국이 경영할 가능성은 거의 없음	㉠o 『권기(權記)』(1004)	울릉도를 '우르마 섬'이라고 함	
		㉠p 『고려사』 권134 열전, 47, 신우 5년 7월조	일본인의 울릉도 도해에 대해 기록	
		㉠q 에도막부의 '다케시마(울릉도) 도해 면허(朱印)'(1618)	조선 시대의 울릉도 공동화(空洞化)에 따라 일본인의 왕래 증가, 임진왜란 후(1593)약 100년에 걸쳐 완전히 일본인의 어채지가 되었음	
		㉠r 오야 규에몬 「죽도도해유래기발서공」(1656)	마쓰시마(독도) 도해면허의 근거. 울릉도를 오고갈 때마다 배를 대는 곳으로서 또는 강치 및 전복 채취지로서 이용된 것은 당시 마쓰시마라고 불렀던 지금의 '다케시마(독도)'임	
		㉠s 『은주시청합기』(1667)		
	㉠t 『오야 규에몬 청서(大谷九右衛門請書)』(1681)	'다케시마(독도)'의 위치·지형 등을 기록		
	㉠u 『죽도도(竹島圖)』(1724)	막부 명령에 따라 호키의 이케다 번이 제작. 다케시마를 정확히 표현한 것으로서 당시의 일본인이 다케시마를 잘 알고 있었다는 증거		
	㉠v 『숙종실록』 권30 숙종22년 9월 무인조	안용복의 일방적 진술이며 허위가 많고 자기 행동을 과장시키기 위해 없는 일을 만들었음. 사인(私人)의 행동으로서 '다케시마(독도) 영유를 주장하는 근거가 되지 않음		
	㉠w 『은주시청합기』(1667)	마쓰시마(松島/지금의 다케시마) 및 다케시마(울릉도)로서 일본의 북서부의 한계로 봄		

출전	견해	근거 사실 또는 자료	해석
		㉔p 「죽도에 관한 7개조 반답서(竹島に関する七箇條返答書)」	'이 섬은 원래 일본의 땅으로……'라는 문구가 있음
		㉔o 「오야 규에몬 청서(大谷九右衛門請書)」(1681)	'대유원 시대인 50년 이전에 아베 시로고로의 주선으로 울릉도를 배령하고……'라는 구절이 있음
		㉔㉓ 에도막부의 '다케시마(울릉도) 도해 면허(朱印)」(1618)	오야·무라카와 양가의 울릉도 도해 면허는 '朱印狀'이 아님. 다케시마(울릉도)에 관한 도해면허로서 이 섬의 독점적 경영에 대한 면허임.
		㉔n 오야 규에몬 「죽도도해유래기발서공」(1656)	1656년 또는 그 이전에 역시 마쓰시마(독도) 도해 면허됨
		㉔㉒ 에도막부의 울릉도 도해 금지령(1696)	마쓰시마=독도와는 관계없음
		㉔㉑ 「죽도도설」(1750~1763)	'오키국 마쓰시마(隱岐国松島)라고 함
		㉔㉐ 「장생죽도기」(1801)	마쓰시마(독도)를 '본조 서해의 끝 땅(本朝西海のはて地)' 이라고 함.
		㉔㉔ 조선의 공도정책-『속종실록』 권25, 숙종19년 11월 정사조	'三百年空棄之地'라고 함 1618년에서 1692년 까지 오야·무라카와 양가는 한 번도 울릉도에서 조선 본토 사람을 만난 적이 없음
		㉔㉑ 조선의 울릉도 개척(1884)	1884년의 일임
		㉔㉒ 「속종실록」 「태종실록」의 수토관 보고	울릉도에 관한 보고임
		㉔㉓ 「오야 규에몬 청서(大谷九右衛門請書)」(1681)	'마쓰시마(독도)에서 약간의 일을 본다'고 함
		㉔㉒ 「이케다의 로주 아베 분고노카미에의 반답서(池田一老中阿部豊後守への返答書)」(1695. 12. 26)	'마쓰시마(독도)에서 전복을 조금 잡는다'고 함
		㉔㉑ 「마쓰다이라 호키노카미 각서(松平伯耆守覚)」(1696. 1. 23)	'다케시마(울릉도)에 가는 길에 마쓰시마(독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함
		㉔㉐ 「장생죽도기」(1801)	'다케시마(울릉도)에 갈 때 반드시 마쓰시마(독도)에 들러'라고 함

한국의 수토관 파견은 막부의 도해금지조치 이후의 일로서 울릉도는 거의 300년에 걸쳐 버려져 있었음
울릉도 경영에 관해 그렇다고 한다면, 하물며 이 섬보다 아주 멀리 떨어진 바다에 있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소암도인 지금의 다케시마(당시의 마쓰시마)에까지 한국 측의 경영 손길이 뻗었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음

사료로 본 독도 논쟁사 - 새로운 자료 발굴의 방향성 모색을 위한 전사(前史)로서

출전	견해	근거 사실 또는 자료	해석
		⑰ 에도막부의 울릉도 도해 금지령(1696)	막부가 도해금지조치를 취한 것을 다케시마=울릉도에 대해 서임
		⑱ 하마다의 하치에몬(팔우위문) 사건 (1837)	하마다번(浜田藩) 家老 오카다 다노모(岡田頼母)의 부하 하시모토 산베(橋本三兵衛)가 하치에몬에 대해 다케시마(울릉도) 도해의 명목을 마쓰시마(독도) 도해로 하는 방법도 있다고 일러줌
지금의 '다케시마(독도)'는 마쓰시마라는 이름으로 예전부터 일본인에게 알려졌고 일본 영토의 일부로 생각되었으며 일본인에 의해 이용되어 왔음. 메이지 38년(1905)에 이르러 동년 1월 28일의 각의 결정 및 동년 2월 22일의 시마네현 고시를 거쳐 이 섬을 정식으로 시마네현에 편입시킴		①u 메이지 시대에 들어서의 일본 어민들의 '다케시마(독도)' 개척 ※ 자료 불특정	1887년 오키도민의 독도에서의 강제 및 전복 채집 및 1903년 독도에서 본격적으로 어업 시작
		②f「시마네현 고시」(1905. 2. 22)	당시의 일본이 영토 취득시의 관행적 고시 방식, 외국 통고는 영토취득의 절대적 요건이 아님
		③v 1928년 팔마스 섬 사건 ④w 1931년 크립퍼튼 섬 중재 재판	
		⑤x 미국의 팜 선점	당시의 일본이 영토 취득시의 관행적 고시 방식, 외국 통고는 영토취득의 절대적 요건이 아님
일본은 근대에 들어 국제법상 적법한 절차를 통해 다케시마를 편입했으며 다케시마(독도)가 한국의 영토였다는 법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 이상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제2조 관련 한국 측의 해석은 성립하지 않음		① SCAPIN 677(1949. 1. 29)	연합국최고사령관의 권한은 점령 관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동 범위에 제약되었고 기간도 점령 관리 기간 중으로 한정됨. 점령 목적 달성을 위해 비점령국의 영토권의 행사에 어떤 제한을 가하는 취지의 지령을 발하는 경우는 있어도, 그것은 일본 점령 관리가 행해진 기간의 일로서 각서 제6항에 있는대로 일본 영토의 최종적 결정과는 관계없음
		② SCAPIN/1 (1951. 12. 5)	일본 정부의 정치상 또는 행정상의 권력의 행사가 정치되어 있던 제주도 중 북위 30도에서 29도까지 사이의 남서제도는 평화조약이 발효되기 전에 일본 정부에 반환됨
		③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제3조에 규정된 북위 29도 이남 남서제도, 이후암 남쪽 남방제도 및 오키노도리시마 및 미나미 도리시마에는 잔존주권(殘存主權)이 형성되어 있었음
		④ 1953년 8월 8일자 달레스의 아미미 군도 권리포기 성명	하보마이군도는 일본이 평화조약에 의거하여 권리, 권한 및 청구권을 포기해야 하는 지시마 열도 중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평화회의시 달레스 미 전권임에 의해 명백해진 남서제도 중 아미미군도에 관해서는 그 후 일본 정부에 행정관할권이 반환됨
			일본 정부의 행정권 관할로 반환된 제도가 국제연합의 신탁통치하에 있었다는 견해는 북위 29도와 30도간의 남서제도(南西諸島, 연합국 최고사령관이 관리)도 아미미군도(奄美群島, 미국이 행정·입법·사법상의 권력을 행사)도 한 번도 국제연합 신탁통치하에 놓인 적은 없음

출전	견해	근거 사실 또는 자료	해석	
1959. 1. 7 한국 정부 견해③	독도는 역사상·지 리상으로 또한 부인 할 수 없는 법 이론 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엄연한 영토의 일부	㉨ 「삼국사기」	우산국을 울릉도라 하고 또는 울릉 도를 우산국이라고 하였다고 해도 그 어느 것도 울릉도 부근의 무인소 도가 우산국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 하였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임	지리적 지식이 발달되 지 않았던 시대는 일 도(一島)에 이명(二名) 이 혼용되다가 정확한 지식의 획득과 더불어 이도이명(二島二名) 으로 분리 지칭되어 짐. 일본 메이지 초기 에 울릉도를 마쓰시마 와 다케시마라는 이명 으로 혼칭하다가 이후 분리된 것과 같음
		③ 「세종실록」 권153 지리지/ 강원도/삼척도호부/울진현 (1454)	주기에 '우산 무릉 양도를 울릉도라 고 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본문에서 는 명백히 서로 다른 이름의 두 섬 으로서 인지하고 있음	
		㉩ 이수광, 「지봉유설」 권2 지 리부(地理部) 섬(島) (1633)	일개 사인(私人)의 기록임	
		㉪ 정원용, 「문헌촬록」(1850)	일개 사인(私人)의 기록임	
		㉫ 「증보문헌비고」 권31(1908)	우산과 울릉은 이도(二島)이며 「여 지지」에 따르면 '우산은 즉 왜의 마 쓰시마이다'라고 함	
		㉬ 「죽도고증」(1881)의 「다케 시마(울릉도) 개척론, 및 「마쓰 시마(울릉도) 개척론」	외무성 공신국장이 “마쓰시마(독도)라는 이름은 일본인이 명명한 것이나 실은 '조선 울릉도에 속한 우산이다'라고 함	
		㉭ 「은주시청합기」(1667)	일본 측 해석은 오독(誤讀)임	
		17세기 일본 어민의 울릉도· 독도 도해 (㉮, ㉯, ㉺s, ㉻t, ㉼ 등 자료)	일본인은 삼국시대부터 특히 고려왕조 말기에 이르러서는 한국의 연안 각지와 내륙에까지 깊이 출몰 입국하여 한국의 인민과 재산을 구략함. 당시 일본인들의 노략을 위한 도해가 비단 울릉도 일대에만 그쳤던 것이 아니었음. 당시에 일본인 들이 한국 연해 각지를 구략함으로써 그 구략지구에 관한 지 리를 숙지하였던 것임	
		안용복 사건 관련 (㉽, ㉾ 등 자료)	다케시마(울릉도) 도해 금지령 이후의 마쓰시마(독도) 도해는 일종의 침구 행위임	
		다케시마·마쓰시마 명칭 혼 란 관련 (㉿ 등 자료)	이러한 명칭의 혼란은 무엇보다도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당 시 일본인의 지리적 지식이 명확치 못하였다는 것을 증명하 는 것이며 또 이러한 지리적 지식의 결함은 결국 이것이 일 본의 관할권 외에 속하였던 것을 증명하는 것임	
		한국의 우산도 관련 (③, ④, ⑤ 등 자료)	신라 지증왕 당시에 우산국이 신라에 귀속하였다는 사실과 그 우산국은 조선 초기에 이르러서는 분명히 울릉·우산 양 도를 포함한 것으로 인지되어 관찬지리지를 비롯한 기타 공 사기록에 수록되었고 따라서 울릉도의 속도인 우산도 즉 독 도도 영역의 일부로 분명히 간주하고 있었음이 확실함	
		일본의 독도 편입 관련 (㉿, ㊀ 등 자료)	이러한 일본의 국내 조치는 적어도 1905년 당시까지 일본국 이 독도를 그 영토의 일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었지 않았다는 하나의 유력한 반증을 제시함. 왜냐하면 일본 측이 진실로 독 도의 영유권을 확립하였다면 그 당시에 새삼스러이 이를 일 본국의 영토로 편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임	
		㊁ 「시마네현 고시」(1905. 2. 22)	비밀리에 고시한 것이 맞음	

사료로 본 독도 논쟁사 - 새로운 자료 발굴의 방향성 모색을 위한 전사(前史)로서

출전	견해	근거 사실 또는 자료	해석
		㉗ 일본 문부성 인가 학교용 현대지도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시하지 않음
		㉘ 일본전국교육도서 주식회사 간행 『표준세계지도』 제6판도 (1952. 6. 10)	한자 竹島를 한국어로 표음
		㉙w 1931년 크립퍼튼 섬 중재 재판	하와이 정부에 대한 통고가 있었음. 하와이에서 발행되는 『폴리네시아』 지상에 영문으로 '크립퍼튼 섬에 대한 프랑스 주권의 수립을 공고한 것
		㉙v 1928년 팔마스 섬 사건	'통고가 필요 없다'고는 하지 않음. 다만 팔마스도와 같은 주민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은밀한 주권의 행사란 불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아프리카 대륙의 토지의 선점에서 보는 바와 같은 통고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정된 것임
		㉚x 미국의 팜 선점	1890년의 미국 대법원 판결. 문제의 섬이 명백히 무주의 지역이라는 확증이 선 연후에 비로소 그 섬의 미국으로의 편입을 결정하기로 된 것.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 통고를 하지 않았던 것이고 이 사건은 순전히 국내적 사건으로서 외국과의 분쟁이 야기된 일이 없음
		㉚ 1888년의 국제법회의	선점에 관한 요건으로서 은밀한 고시가 아니라 외국에 대한 통고를 요구하고 있음
		㉛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독도가 원래 일본의 영토가 아니므로 조약 2조에 의거하여 원래의 한국 영토 일체를 대한민국에 반환해야 함
		㉜ 청일전쟁(1895)	독도의 처리는 포츠담 선언부터 일본 항복 후의 기본정책에 이르는 일련의 문서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그러한 용의 없이 스캐핀 제 677의 6항만으로 전체를 왜곡하려는 일본의 태도는 부당함
	㉝ 러일전쟁(1904)		
	㉞ 제1차 한일협약(1904. 8. 22)		
		㉟ 카이로선언(1943. 11. 27)	일본 영토를 청일전쟁 이전의 상태로 환원한다고 하였음
		㊱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일본에 편입한다는 적극적인 규정이 없는 한 일본에서 분리가 확정된 지위에는 아무런 변동 없음
		㊲ SCAPIN 677(1949. 1. 29)	독도는 차인점 도서로서 인접 제스도와는 명백히 구별됨. 1947년 6월 19일 일본에 대한 항복 후의 기본정책에 따라서 일본의 영토는 인접 도서에만 국한되었음. 독도는 연합국 최고사령관이 관리하는 주변 소도도 아니고 또 한국 독립 후 중공의 입법 및 사법권의 행사에 유보된 지역도 아님. 독도에 일본의 소위 잔존주권이 설립된 일도 없음
			한국은 대일평화조약에 앞서 이미 1948년 8월에 독립을 달성한 이래 독도의 관리통치를 회복하였으며 그러한 상태에서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당사국에서 정식승인을 받고 있었음

출전	견해	근거 사실 또는 자료	해석
1962. 7. 13/ 일본 정부 견해④	일본의 독도 실효지배의 역사와 오래된 지식	에도시대 고문서와 고지도 (M, m, Mm, ㉔, ㉕, ㉖, ㉗, ㉘, ㉙, ㉚, ㉛, ㉜, ㉝ 등 자료)	일본은 오래전부터 독도에 대해 알고 실효지배해 왔음
		다케시마(울릉도) 도해금지령과 그 이후의 자료(㉞, ㉟, ㊱, ㊲ 등 자료)	
		㉚ 곤도 모리시게, 「변요분해도고(辺要分解図考)」	1696년 1월에 울릉도 경역을 포기하였으나 지금의 '다케시마(독도)' 도항은 금지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일본 영토라고 생각하고 있었음
		㉞ 하마다의 하치에몬(팔우위문) 사건 (1837)	
조선이 다케시마를 인지했었다는 증거는 없음		조선의 고문헌 (㉡h, ㉡i, ㉢, ㉣ 등 자료)	조선 고문헌에는 이명일도(二名一島) 또는 이명이도(二名二島)의 양설이 있음. 이명일도설도 일도이명일지 모른다는 의심을 품고 있음. 이도설을 지지하는 편자가 우산도 명칭 거론 시 시종 울릉도 관련 설명을 함
		㉤ 『중보문헌비고』 권31 (1908)	일본 측이 마쓰시마라고 명명하여 경영했던 섬(지금의 다케시마)이 있었던 것을 알고 고문헌에 나온 우산도를 그 마쓰시마에 적용한 것에 불과함
		㉡j 『태종실록』 권33 태종 17년 2월 임술조	대죽(大竹), 생저(生苧) 등 산물이 있으며 15호 86명의 인민이 사는 섬으로 보고함
		㉡a 『신증동국여지승람』 「팔도총도」	우산도가 울릉도와 조선본토 중간에 크게 그려져 있음. 이 우산도는 실재하지 않는 섬임
안용복 증언은 국법을 어기고 해외에 나간 범인이 귀국 후 취조당할 때 한 공술로서 허위 및 신뢰성 결여		㉤ 『속중실록』 권30 숙종22년 9월 무인조	안용복은 조선에 없는 「鬱陵子山兩島監稅將」 또는 「鬱陵監稅官」이라는 관직을 사칭함 1693년 울릉·우산 등의 섬을 조선 경계로 삼는다고 쓴 서계를 에도막부가 주었으나 쓰시마 번주가 그 서계를 빼앗았기 때문에 그 불법행위를 소원하기 위해 1696년에 안용복이 두 번째로 일본에 도래하였다고 하였으나 조일 간 외교문제는 쓰시마 번주가 담당하고 있으며 에도막부가 그러한 서계를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 또한 1696년 6월의 안용복의 2차 도래에 당혹한 일본 측이 울릉도에 도해한 오아가 어부들 15명을 처벌했다고 증언했으나 그 이전인 1월 28일에 오아가 어부들에 대해 다케시마(울릉도) 도해 금지령이 내려져 있어 오아가 어부들이 울릉도에 도해할 수 없었음
		㉤ 『중보문헌비고』 권31 (1908)	
메이지 시대 마쓰시마가 울릉도를 가리키는 명칭으로 쓰였음		㉦ 시볼트(Philipp Franz Balthasar von Siebold), 「일본도(日本圖)」(1840)	유럽의 측정 오류에 기인한 다케시마, 마쓰시마 명칭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1905년 마쓰시마(독도)를 편입할 때 '다케시마'로 명명한 것임
		㉧y 『죽도고증』(1881)의 「다케시마(울릉도) 개척론」 및 「마쓰시마(울릉도) 개척론」	외무성 공신국장이 "마쓰시마(독도)라는 이름은 일본인이 명명한 것이나 실은 조선 울릉도에 속한 우산이다"라고 한 것 관련, 공신국장의 말이 아니며 여기에서의 마쓰시마는 독도가 아님. 1880년 9월 군함 아마기의 조사로 이 마쓰시마는 울릉도로 밝혀지고 다케시마는 울릉도 부근의 죽서(땃섬)으로 밝혀짐

사료로 본 독도 논쟁사 - 새로운 자료 발굴의 방향성 모색을 위한 전사(前史)로서

출전	견해	근거 사실 또는 자료	해석
국제법상 일반적으로 조약상 특별한 의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영토 취득을 다른 나라에 통고하는 것이 의무적이지 않음		㉔ 「시마네현 고시」(1905. 2. 22)	일본이 근대국가로서 '다케시마(독도)' 영유 의사를 재확인한 것
		㉕ 1905. 2. 22 「시마네현보(島根縣報)」	
		㉖ 1905. 2. 24 「산음신문(山陰新聞)」	
		㉗ International Law 1, 8판 559항	
		㉘ Traite de Droit International Public Tome 1, 441항	
		㉙ 1928년 팔마스 섬 사건	
		㉚ 1931년 크립퍼튼 섬 중재 재판	
전후의 일본 영토는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 따라 처음으로 처리되었음		㉛ 1888년 국제법학회 선언	1885년 베를린 의정서에 규정된 것과 같은 통보의 의무는 팔마스 섬 사건 또는 크립퍼튼 섬 중재재판과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어떤 방법으로도 영토취득이라는 공시성(公示性)이 부여되면 이것으로 충분함
		청일전쟁 이후의 일본제국의 일련의 침략행위 및 1904년 한일의정서가 일본의 '다케시마(독도)' 편입과의 관계 (㉜, ㉝, ㉞, ㉟, ㊱ 등의 자료)	
		㉜ 카이로 선언(1943. 11. 27)	'다케시마(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 한국에서 약취(略取)한 것이 아님
		㉝ SCAPIN 677 (1949. 1. 29) 제6항	연합국에 의한 일본의 '제소도'에 대한 최종적 결정이 아님
		㉞ 1947. 6. 19 「일본에 대한 항복 후의 기본정책」	'다케시마(독도)'의 귀속을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이 아님
		㉟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제2장 제2조 (a) 항	SCAPIN 677에 따라 행정분리된 울릉도, 제주도, 독도 세 섬 중 울릉도 및 제주도 두 섬에 관해 일본의 포기를 규정하고, 독도에 대해서는 어떤 규정도 하고 있지 않음

출처:

외교통상부 문서, 독도문제, 1952-53, 분류번호 743.11JA, 등록번호 4565

외교통상부 문서, 독도문제, 1954, 분류번호 743.11JA, 등록번호 45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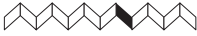
외교통상부 문서, 독도문제 1955-59, 분류번호 743.11JA 등록번호 4567

외교통상부 문서, 독도문제, 1960-64, 분류번호 743.11JA 등록번호 4568

외교통상부 문서, 독도문제, 1965-71, 분류번호 743.11JA

위 내용은, 외무부 정무국 편, 1955, 『독도문제개론』, 외무부; 외교통상부 국제법률국(편), 2012, 『전면 개정판 독도 문제 개론』, 외교통상부에 정리되어 있다.

동 문서 중 한일 간 왕복 구술서는, 신용하, 2000, 『독도연구총서 7 독도영유권 자료의 탐구 제3권』, 독도연구보전협회; 신용하, 2001, 『독도연구총서 8 독도영유권 자료의 탐구 제4권』, 독도연구보전협회에 해제와 함께 정리되어 있다. 또한 한일 독도 영유권 논쟁기에 대한 경과 및 왕복각서 목록, 참고문헌 등 자세한 것은 정영미, 2015, 『일본은 어떻게 독도를 인식해 왔는가』, 한국학술정보 참조.



『만남의 바다—독도와 센카쿠, 국경지대에서 바라본다』

류큐신보 · 산인주오신보 공저, 『만남의 바다—독도와 센카쿠, 국경지대에서 바라본다』 (이와나 미서점, 2015)

琉球新報 · 山陰中央新報, 『環りの海—竹島と尖閣 国境地域からの問い』 (岩波書店, 2015)

양기호 성공회대학교 교수

전후 70주년이 지났음에도 동북아지역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영토와 역사 문제, 협한과 반일이 중층적으로 겹쳐지면서 갈등과 대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역사반성과 화해협력, 평화체제와 신뢰구축, 동아시아 공동체의 모색은 찾아보기 어렵다. 반목의 기저에는 영토문제를 둘러싼 내셔널리즘과 국가이익이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동아시아 국경분쟁의 상당수가 해양 경계선이나 도서 영유권을 둘러싼 분쟁이다. 러일 간 쿠릴열도, 중일 간 센카쿠열도(중국명 다오위다오 [釣魚島], 일본명 센카쿠열도 [尖閣諸島]), 그리고 한일 간 독도 문제가 그렇다. 지금까지 발생하였거나 진행중인 도서영유권 분쟁사례는 약 30개 지역에 달한다. 이 가운데 1/3이상이 해양 경계선이나 도서 영유권을 둘러싼 분쟁이다.

최근 들어 주목할 점은 영토문제의 쟁점과 해법이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가히 영토문제, 쟁점, 해법이 변용을 거듭하는 영토·영해 레짐(regime)의 변화를 목도하고 있다. 2016년 7월 중국과 필리핀 간 남중국해 도서분쟁은 유엔해양법협약 중재재판소(PCA) 판결에 따라 필리핀의 영유권이 인정되

었다. 중국의 역사적 영유권 주장은 수용되지 않았고, 압초를 가공한 인공 섬은 도서로 인정받지 못했다. 러일전쟁 이래 영토분쟁의 대명사였던 쿠릴 열도 문제는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검토 중인 2개 섬 반환과 러일 공동통치라는 '새로운 접근법(New Approach)'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다.

영토문제 못지 않게 중대한 쟁점으로 등장한 것이 한중일 간 어업권 갈등이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은 국내 수산업에 큰 피해를 끼치고 있고 양국 관계에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다. 어족자원 고갈과 어획량 감소는 서해안 어민들의 시름을 깊게 하고 있다. 세계 생선소비량의 1/3을 차지하는 중국은 무분별한 남획으로 주변국과 마찰을 빚고 있다. 2016년 6월 한일 간 어업협상이 결렬되어 어업문제도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 어민들의 일본 내 배타적 경제수역(EEZ) 조업이 불가능해지면서 피해액은 무려 100억 원을 넘어섰다. 생활권 차원에서 어민의 이익보호를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영토와 영해, 영공은 더 이상 국가주권과 외교협상에 한정되지 않고, 주민들 생계에 영향을 미치는 지극히 사회경제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영토문제는 영토주권, 내셔널리즘, 포퓰리즘뿐만 아니라, 해양 자원, 조업권과 개발이익 등에 영향을 받고 있다. 국가주권이 미치는 영유권 개념만으로 다양하게 얽힌 복합한 문제를 분석하기 어렵다.

영토문제는 국가 간 외교라는 중앙정부의 독점영역이지만, 지방정부와 시민단체의 요구나 운동에 영향받아 종종 종속변수가 되기도 한다. 2012년 4월 일본의 극우정치가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慎太郎] 도쿄도지사는 민간모금을 통한 센카쿠열도 매입을 추진하였다. 이에 일본 민주당 정권은 센카쿠를 국유화하였고 중일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일본의 지자체가 기어·기념의 상징을 설정하고, 이를 국가수준으로 상향시켜서 영토분쟁을 유발하는 정치적인 과정은 새삼 기억에 새롭다. 일본 시마네현[島根県]에서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한 것이나, 이시가키시[石垣市]에서 센카쿠의 날을 제정한 것이 대표사례다. 2005년 2월 시마네현이 일방적으로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한 것은 한국 정부와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그해 3월 노무현 정부가 대

일 신독트린이라는 강경책을 발표한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일본 내 영토·영해에 관한 출판물은 방대한 분량에 달하고 있다. 일본 전자서적 판매망인 요도바시 닷컴(www.yodobashi.com.)에서 검색한 결과, 영토에 관한 출판물은 1377건, 영해에 관한 책은 135건이다(검색일: 2016년 10월 20일 현재). 이 가운데 독도는 463건, 센카쿠는 711건, 북방영토는 323건으로 집계되어 출판물 숫자로만 본다면 센카쿠, 독도, 쿠릴열도 순으로 관심이 높았다. 그런데 여기서 다루는 류큐신보·산인쥬오신보 공저 『만남의 바다-독도와 센카쿠, 국경지대에서 바라본다』(이와나미서점, 2015)는 지금까지 영토·영해 관련 서적과 약간 차이가 있다. 굳이 말하자면, 영토·영해 문제가 중앙정부 간 영유권 분쟁에 초점이 맞추어졌던 기존 연구흐름에서 약간 비껴서 있다. 이 책은 한국과 일본, 중국과 일본, 일본과 타이완 간 영토문제를 국경지역에 거주하는 생활자의 시각에서 바라보고자 시도하고 있다. 오히려 지역주민과 생활영역의 관점에서 영토문제와 도서분쟁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신선하고 자극적이다. 지역의 관점에서, 생활자의 관점에서 영토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신문들의 공동작업으로 만들어진 작품이다. 센카쿠열도에 가까운 오키나와현(沖縄県)의 대표 언론인 『류큐신보[琉球新報]』, 시마네현의 대표 신문인 『산인쥬오신보[山陰中央新報]』가 공동으로 연재한 시리즈물을 책자로 펴냈다.

『류큐신보』는 오키나와현에서 가장 오래된 대표적인 신문매체다. 판매부수는 약 15만 부로 현재 전체 신문부수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보수적인 논조를 지니고 있지만, 미군기지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은 다른 지역신문과 마찬가지로 다르다. 시마네현의 지방신문인 『산인쥬오신보』는 시마네현, 돗토리현(鳥取県)을 서비스 지역으로 하며, 판매부수는 약 18만 부다. 독도 관련 기사와 사설을 다수 게재하며, 극단적인 영토 내셔널리즘에 반대하고 있다. 위의 신문들은 영토문제를 중앙정부가 독점적으로 보도하는 시각과 방식에 의문을 느끼고 있었다. 양 신문이 공감한 부분은 역시 접경지에서 생활하는 지역주민의 시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영토문제는 국가 간의 쟁점으로만 다루어지고 있으나, 국경지역과 해역은 변경주민에게 생활권과 교류

권이기도 하다. 영토문제를 둘러싸고 내셔널리즘이 고양되면서 국민감정은 악화되고, 정부정책은 강경한 대책으로 기울기 일쑤다. 그러나 일단 분쟁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국경지역 주민들이다. 독도와 센카쿠를, 오키나와와 타이완을 그리고 동북아시아를 두 번 다시 분쟁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었다.

북아사히 닷컴의 서평에서 요시오카 게이코[吉岡桂子] 『아사히신문』 편집위원이 표현한 것처럼, 영토와 영해는 스스로 서 있는 위치에 따라 시점이 바뀐다. 살고 있는 장소에 따라 풍경도 바뀐다. 국경의 바다는 지도상에 국경선이 그어져 있지만, 지역주민의 눈에 비치는 것은 생활을 지탱해주고, 파도가 밀려오는 바다다.¹ 이 책은 주변국과 분쟁이나 갈등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당사자로서 지역주민에 눈높이를 맞추고 있다.

이 책은 직접 현장에서 얻은 생생한 목소리를 전하는 르포라이터 방식을 취하고 있다. 시마네현과 오키나와현 어민들을 직접 취재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듣고자 한국, 중국, 타이완을 찾아갔다. 치열한 영토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한 유럽과 아시아의 사례를 취재하기도 하였다. 이 책은 오키노시마초 [隠岐の島町] 섬에서 이시가키 섬까지, 타이완에서 중국까지, 한국의 경상북도와 시마네현 지역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도서분쟁을 해결한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정부, 전쟁으로 인해 수차례나 강제로 국적이 바뀐 프랑스와 독일 경계인 알자스-로렌 주민들, 국제연맹의 개입으로 자치권을 획득한 발트해 올란드군도(Landskapet Åland)까지 방문하여 생생한 지역민의 인터뷰를 전하고 있다. 이 책은 국가 내셔널리즘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주제로 실감나는 어민들의 생활모습과 결부시켜 영토문제에 접근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취재 기간은 2013년 3월부터 6월까지 62회에 걸쳐서 현장르포 중심으로 시리즈물을 연재하였다. 이 책은 2013년 일본신문협회에서 수여하는 저작상을 수상하였다. 공

1 북아사히닷컴 사이트는 <http://book.asahi.com/reviews/reviewer/2015042000008.html>(2015. 04. 19)을 참고할 것.

통주제를 화두로 지방 언론사가 상호간 교류와 연계를 시도한 점도 공동수상 배경이 되었다.

이 책은 경계지역 주민, 특히 도서지 어민들의 조업

권과 생활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중 간 어업문제를 비롯하여 각국 간에 갈등이 높아지고, 불법조업과 어자원 남획의 문제가 더 이상 새삼스럽지 않다. 이에 따라 영토·영해의 쟁점이 변화하면서 이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이 필요해지고 있다. 중일 간, 한중 간, 한일 간, 일본과 타이완 간 조업권과 어획량을 둘러싼 갈등이 심각해지면서, 도서 영유권 문제의 분화와 변용이 두드러지고 있다. 1994년 유엔 국제해양법이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허용한 이래, 한중일 3국은 상호간 1997년 11월 중일어업협정, 1998년 11월 신 한일어업협정, 2000년 8월 한중어업협정, 2013년 4월 일본과 타이완 간 어업협정을 각각 체결하였다.

최근 들어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이 한국 어민들의 생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것은 중일 간에도 예외가 아니다. 이 책은 먼저 일본 측의 어려운 사정을 구체적으로 전하고 있다. 이시가키 섬의 일본 어민들이 센카쿠 근처에 중국 어선이 대량 출몰하면서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2012년 9월 일본 정부가 센카쿠 섬을 국유화하면서 중국 관용어선의 출몰이 두드러지게 잦아졌다. 주변해역의 긴장이 높아진 것도 두말할 나위가 없다. 조업 중 빈번히 해상보안청과 연락을 하면서 중국 어선과 충돌을 피해야 하는 부담이 늘었다. 연료비 급등에 따른 부담, 어업자원 감소 등으로 센카쿠 열도 조업량은 매년 줄어들고 있다.

2013년 일본과 타이완 간 어업협정은 센카쿠분쟁에서 중국과 타이완 간 연대를 우려한 일본 정부가 타이완에 상당부분 양보한 것이었다. 이 책은 북위 27도 이남지역이 잠정수역으로 설정되어 센카쿠열도 어장에 타이완 어선의 조업이 허가되면서 일본 어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참치 어획량이 많은 해역을 타이완에게 상당부분 양보하였고, 이에 대한 오키나와 어민의 불만이 높았다. 오키나와현 어업협동조합회가 도쿄로 상경하여 외무성, 농림수산성을 방문하여 재협상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일본 지자체도 대책을 세우기 시작하였다. 해양보전과 개발을 추진하고자 2011년 오키나와현 다케토미초[竹富町]가, 2013년 이시가키시[石垣市]가 해양기본계획을 책정하였다.

이 책의 장점은 일본 어민의 주장과 불만 못지않게 한국, 중국, 타이완 어민들의 호소를 그대로 싣고 있다는 점이다. 의란현(宜蘭縣) 소오진(蘇澳鎮)은 타이완에서 오래된 전통적인 어촌으로, 총인구 43,300명 중 어민이 약 4할에 달한다. 크고 작은 800척의 어선이 있고 연간 수산업 매출은 1,100억 원이 넘는다. 어업을 생계로 이어가는 타이완 어민들은 영유권보다 어업권을 요구하고 있다. 원래 타이완에서 다오위다오는 영유권 문제 이상으로 어업권의 성격이 강하다.

어업문제의 최전선에 있는 타이완 의란현 소오진 어민들은 황금어장을 둘러싸고 일본 오키나와현 이시가키시의 어민들과 계속해서 대립해왔다. 다오위다오 근해 어장은 지난 100년 동안 이들에게는 생활의 터전이었다. 매년 4~7월에는 수백 척의 어선이 출어해서 참치를 잡아왔다. 타이완 어민은 잠정수역 내 조업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반면, 일본 측 EEZ와 겹쳐진 이시가키 어민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2012년 9월 센카쿠열도 국유화에 대한 중국의 반발도 전하고 있다. 중국 내 125개 도시에서 반일 시위가 연일 발생하였으며,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해안도시뿐만 아니라 내륙지방에서도 더욱 격렬해졌다. 근대 이후 서양의 침략에 시달린 중국은 영토문제에 민감하다. 그러나 중국이 대국답게 영토문제에 자제심을 발휘하고 있다는 현지 주장도 전하고 있다. 중국은 홍콩을 155년 만에, 마카오를 440년 만에 돌려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무력행사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중국인의 영토의식, 치욕의 역사, 냉정한 대응 등 복잡한 감정을 엿볼 수 있다고 적고 있다.

이 책은 어업협상으로 인하여 변경지역 어민이 불이익을 받은 사례는 한 일어업협정도 마찬가지라고 강변하고 있다. 1996년 시작된 한일 어업협정에서 EEZ가 겹치면서 중간수역 범위가 예상외로 확대되었고, 한국 측에 오징어와 털게어장을 잠식당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독도 주변이 중간수역에 포함되면서 사실은 한국이야말로 억울한 입장이다. 2016년 6월 한일 어업협정이 결렬되면서 일본은 수개월째 양보하지 않고 있다. 일본 EEZ 내 어획량을 대폭 줄여서 한국 측에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고 있다. 1999년 체결

한 한일 어업협정은 한일 중간수역에서 조업이 가능하나, 일본 EEZ에서는 일본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일본의 고집스런 자세는 한국 정부가 2013년 결정한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반발로 해석되고 있다. 더구나 일본 정부는 2015년 10월부터 독도 인근수역에서 일본 권역을 강화하려는 EEZ 관련 신규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서 양국 관계에 장애물이 될 전망이다.

이 책은 어족자원에 대한 관심도, 수산업계의 활동량, 어선 숫자와 어획량 등을 종합적으로 산정한 각국 어업세력의 강약 정도가 자원획득 경쟁에 크게 반영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어업세력이 강한 나라가 자원관리를 늘려나가고 남획을 서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동중국해를 중심으로 한중일 각국의 어업세력의 분포도를 살펴보면 중국, 한국, 일본 순으로 강하다. 1980년대 수산업 전성기를 자랑하던 일본이 가장 약해지고, 증가에서 감소세로 돌아선 한국이 두 번째로 크고, 그리고 최근 들어 생선 중심의 식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중국의 어업세력이 폭발적으로 커져 가장 강하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것은 중국 어선들의 한국 영해 내 불법조업과 한국 해경의 단속에 대한 폭력적인 대응이다.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5도 해역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 어선은 하루 평균 131척에 이른다. 단속 중인 인천해경 고속단정이 중국 어선에 부딪쳐 침몰하면서, 해경이 불법조업과 폭력저항을 엄단하기 위해 함포사격도 불사하겠다고 항의했을 정도다.² 중국인들의 소득증가와 식생활 변화, 사양산업인 한국 수산업에 비해 활발한 중국 내 수산업 투자, 서해안의 풍부한 어족자원, 중국 정부의 관리통제가 미치지 못하는 불법조업 등은 한국 측의 적극적인 대책과 아울러 새로운 어업질서로의 재편을 요구하고 있다.

이 책은 도서분쟁의 평화로운 해결을 모색하면서 흥미롭게도 영토문제를 해결한 몇 가지 사례를 들고 있다. 말레이시아-싱가포르 간 페드라 브랑카(Pedra Branca) 섬 분쟁은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을 수용하면서 마무리되었다. 하얀 섬으로 불리는 페드라 브랑카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에 둘러싸인 군도로, 어선들이 휴식하는 기지섬이기

² 『연합뉴스』, 2016. 10. 13 보도.

도 하다. 말레이시아반도에서 약 14km, 싱가포르에서 약 44km, 인도네시아 빈탄 섬은 이보다 더 가깝다. 1989년 싱가포르의 리관유[李光耀] 수상은 영유권 소송을 제소하였다. 2008년 5월 양국 간 영토분쟁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싱가포르에 영유권을, 말레이시아에 남쪽 암초의 소유권과 어선들의 조업권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고, 양국은 중재안을 수용하면서 영토분쟁은 마무리되었다. 가장 중요한 근거로 삼은 것은 1953년 말레이시아가 영국령 싱가포르에 도서 영유권을 주장한 적이 없다는 문서를 보낸 것이었다. 양국 간 우호관계, 그리고 경제적 상호의존, 중재수용에 대한 정치적 관용이 평화적 해결을 일구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모두 영국 지배하에 있었고, 독도 편입시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로서, 성격이 크게 다르다는 현지 언론인의 발언도 전하고 있다.

또 하나 시사점이 풍부한 사례는 러시아, 스웨덴, 핀란드 3국 간 올란드군도를 둘러싼 분쟁이다. 올란드군도는 발트해의 군사적 요충지로 약 2만 8천 명의 주민들이 6,500개 섬에 걸쳐서 거주하고 있다. 올란드군도는 스웨덴 귀속에서 러시아가 진출하면서 영유권이 넘어갔다. 1917년 러시아혁명 이후 핀란드가 독립하면서 양국 간 영유권 분쟁이 발생하자, 국제연맹이 개입하였다. 결국 1921년 핀란드 주권하에 올란드 주민의 자치권을 보장하면서 비무장, 중립화되었다. 매년 약 3천억 원의 재정지원을 핀란드 정부에서 받고 있지만, 올란드 주민들은 자치권과 비무장 중립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해운, 관광 등에서 해양산업이 성황을 누리면서 경제적으로도 성장하고 있다.

알자스-로렌(Alsace-Lorraine)은 인구 약 186만 명의 알자스 지방, 약 235만 명인 로렌 지방을 포함하는 지역으로 프랑스 동북부에 소재하고 있다. 국제분쟁을 전쟁으로 해결하는 시대에 살았던 국경지대 주민은 전쟁의 희생물이 되었다. 1870~1945년까지 독일 간 전쟁이 세 차례나 벌어지면서 알자스-로렌 주민들은 네 번이나 국적이 바뀌었다. 독일어를 배우다가 금지당하고, 프랑스어를 익혔다가 다시 독일 문화권으로 바꾸도록 강요받았다.

군사력에 직결되는 석탄과 철광은 항상 전쟁에서 자원쟁탈의 대상이었다. 전후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과 서독 아테나워 수상의 협력으로 1952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가 설립되었다. 분쟁과 증오를 넘어서서 평화와 화해를 추구해온 독불 간 대화는 1963년 엘리제조약으로 결실을 맺었다. 여기에는 매년 2회 이상 양국 정상회담, 각료급 회담, 청소년 교류를 포함하고 있다. 독불 협력은 1993년 유럽연합이 탄생한 강력한 추진력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2006년 독일과 프랑스는 양국 공동의 역사교과서를 만들어 교재로 사용하고 있을 정도다. 독불 간 청소년 교류사업은 2012년까지 양국에서 약 750만 명이 참가하였다. 2011년 현재, 양국 간 교환유학생은 6만1천 명, 자매도시는 2,200개에 달하고 있다.

이 책은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국경분쟁을 바라보고자 한다. 변경지 주민에게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는 매우 중요하다.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오키나와현 내 어업종사자는 5,822명에서 3,929명으로 줄어들었다. 시마네현도 약 7천 명에서 3,689명으로 절반 정도로 감소하였다. 일본인 1인당 어패류 섭취량도 매년 줄어서 2000년 92그램에서 2010년 72.5그램으로 크게 낮아졌다. 어획량 감소로 고민하는 오키나와 어민들은 센카쿠열도 근처에서 잡히는 참치를 브랜드화하여 상품가치를 높였다. 이시가키 섬의 야에야마(八重山) 어협은 센카쿠 참치를 상표등록하였고, 나하시(那覇)는 참치를 시어(市魚)로 결정하였다.

국경을 넘는 어민들의 대화는 양국 간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다. 2013년 5월 타이완에서 센카쿠열도 주변 해역 내 조업방식을 논의하는 어업위원회가 열렸다. 한일 간 중간수역의 조업협의를 민간 어업단체가 참가하고 있다. 대개조업은 한일 양국 간 민간협약과 별도로 연 1회 어로장회의가 열린다. 이 책은 센카쿠 문제의 평화적 해결수단으로서 오키나와현, 중국, 타이완의 삼각무역구상을 제창한다. 가장 가까운 타이완과 무역을 활발하게 하면서 물가를 안정시키고 소득을 늘릴 수 있다. 상호 호혜관계를 발전시키면서 긴장완화를 기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외교방식이라고 강조한다. 타이완에 가까운 요나구니초(与那国町)는 독자적으로 책정한 자립비전에 근거하여, 주재원 파견이나 중학생 홈스테이 등 교류사업을 지속해가면서 타이완과 관계를 강화하였다. 2011년에는 국경지역 지자체 공무원과 연구

자들이 모여서 '경계지역 연구자 네트워크 JAPAN'을 발족시켰다.

분쟁으로 치닫기 쉬운 영토 내셔널리즘에 빠져 사고를 정지하지 말고, 갈등과 대립을 넘어서서 다양한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 경계지역 한중일 그리고 타이완의 지방정부가 주체가 된 해양 거버넌스(Ocean Governance)를 구축하여 의사소통과 신뢰구축을 모색해나갈 필요가 있다. 해양 거버넌스는 해양 이용과 관련된 규범, 제도적 장치 그리고 실제적인 정책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간주할 수 있다. 경계지역의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갈등해소를 도모할 수 있다. 자발적 참여와 자율성을 바탕으로 수평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새로운 형태의 상호작용과 협력을 시도하는 것이다.³

이 책은 동남아, 유럽에서 분쟁해결 사례를 교훈삼아 영토 내셔널리즘을 넘어서서 스스로가 가능한 첫 발걸음을 내딛고자 하였다. 국경이 아닌 생활터전을 둘러싸고 주변국 어민들과 대화하는 자세는 모든 일본인들에게 국경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묻고 있다. 그동안 중앙정부의 영유권 주장에 편승하여 그저 단편적인 지식과 편협한 영토론에 집착하여 보도한 지역신문의 무책임한 자세에 대한 반성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중앙정부가 확정하고 주장하는 영토문제에서 국경 접점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지역주민의 시각이 배제되어 있다고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지방신문이 오히려 주변국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역 언론의 책임은 없는 것인가 하는 반성이 연재의 출발점이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의식은 평화적인 해결이 중요하며, 내 고장이 분쟁지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이었다.

영토문제는 금방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러니 일본인들은 경직된 사고에 빠지지 말고, 역사적 경위를 살펴보면서 상대국의 입장을 이해하고자 노력하고, 그 목소리에 열심히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한다. 국경을 맞댄 변경지역 주민들은 대부분 고령화되었고 마을은 쇠퇴하고 있다.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하고 상호의존을 높이면서 공동으로 활성화시키는

것도 영토문제를 극복하는 보완적인 대안이다.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영토분쟁은 결코 일어나지 말아야 할 국가폭력에 다름 아니다.

3 우양호, 2010. 08. 「지방정부 해양행정의 문제점과 발전방향-해양 거버넌스 구축을 중심으로」 17(2)을 참고할 것.

이 책이 영토 내셔널리즘에 구속되지 않고, 평화를 희구하는 경계인들의 모습을 부각시킨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국경을 넘어서 변경지 주민끼리 상호이해와 교류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생활자의 시점, 분쟁지 역화하지 않는 두 가지 모두 중요하다. 그러나 이 책은 어민의 생활을 중시 하지는 의도와 달리 일본 측 피해상을 나열하고 있어서 거부감이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다. 상대국의 부당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도 부적절하고 매우 유감스럽다. 영토·영해 문제도 기존 일본 정부의 논리와 입장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예를 들면, 센카쿠열도는 류큐왕국의 조공 사신이 중국행 항로표지로서 인식하고 있었고, 독도의 경우 돛토리나 시마네의 어부들이 어업거점으로 먼저 발견했다는 것이다. 둘 다 일본이 오래전부터 존재를 인식하고, 주변 해역을 이용해왔다고 강변하고 있다. 독도와 센카쿠에 대한 왜곡된 억지주장은 그대로며, 기존 주장을 발췌, 편집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럼에도 변경지 주민의 생활자 시각에서 중앙정부의 영토 내셔널리즘을 극복하고자 노력한 점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비교적 균형잡힌 시각을 추구하고자 노력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이 책 제목을 직역하면 『돌고 도는 바다- 독도와 센카쿠, 국경지역에서 묻는다』가 가깝다. ‘메구루(廻る: めぐる)’의 의미는 주변을 돌다, 에워싸다, 돌아오다 등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다. 그야말로 바다에는 물결이나 파도가 여기저기 돌아다닌다. 한국, 중국, 일본의 국경을 의식하지 않는 물결과 파도가 서로 만나서 따라 흐르거나 부딪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일부러 ‘만남의 바다’로 번역하였다. 이 책이 영토와 영해가 국경을 가르는 분리대라고 인식하기보다도, 바다라는 생활권에서 사람들의 만남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중일 중앙정부도 영토 내셔널리즘을 넘어서서 교류와 협력의 미래상을 실천해나가는 모습이 더욱 늘어나기를 기대하고 싶다.

서평 | 「만남의 바다-독도와 센카쿠, 국경지대에서 바라본다」



영토·해양 일지

도시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2016년	국내	국외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8~9일 : 군(軍), 동해서 독도 방어훈련 실시 16~18일: 군(軍), 서해 중부해상서해상기동훈련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8일 : 일 외무성, 한국 정부에 독도 방어훈련 항의. "다케시마(竹島·독도) 영유권에 관한 우리나라(일본)의 입장에 비추어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도 덧붙임 9일 : 중·러 군함 센카쿠 접속수역 동시항행, 중국 군함은 첫 사례 15일 : 일본 방위성, 중국 정보수집함이 가고시마(鹿児島)현 인근 영해 침범 문제 제기, 중국은 '항행의 자유' 주장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8일 : 군(軍),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12일 : PCA, 중국-필리핀 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중재결정, 중국의 남중국해 구단선을 인정하지 않고, 타이핑다오(太平島) 등 암석으로 규정, 중국은 판결 수용 거부, 반발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일 : 경북 울릉군, 독도박물관 재개관 2일 : 외교부, 일 방위백서 '독도영유권 주장' 강력 항의 및 주한무관 초치 10일 : '독도 한국령 첫 표시' 1947년 표목사진 원본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2일 : 일, 방위백서에 12년 연속 "독도는 미해결 일본 고유의 영토"로 표기 3일 : 북, 탄도미사일 일본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착탄 6일 : 센카쿠열도에 중국 정부 선박, 어선이 함께 접근, 일본 항의 9일 : 일 외상, 중국 대사를 초치해 동중국해 사건에 대해 엄중경고

영토·해양 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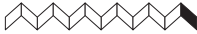
2016년	국내	국외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일 : 국회, '국회 독도방문단' 광복절에 독도 방문 계획 발표 • 15일 : 국회, 여야 국회의원 독도방문단 독도 시설 점검 • 22일 : 군(軍),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개시. 한미 해상기동훈련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일 : 중, 고해상도 지구관측위성 가오편[高分] 3호 발사 성공. 관계자가 "중국의 해상주권과 이익을 수호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 밝힘 • 11일 : 중국 어선, 일 접속수역서 모두 퇴거 • 13일 : 일 외무성, '국회 독도방문단' 방문 계획 항의 • 17일 : 중 해경선, 일 접속수역에 진입 • 24일 : 한중일 외교장관회담 개최. 중·일 간 센카쿠 문제 격화 • 25일 : 북, 잠수함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일 방공구역 내 낙하 • 28일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규탄 언론성명 채택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일 : 중·일 정상회담(항저우), 중국의 해양진출 등 현안에 대해 접점을 모색하였으나 이견을 확인하는데 그침 • 12일 : 러·중, 남중국해에서 첫 대규모 연합훈련 개시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일 : 해경 고속단정, 불법조업 중국 어선의 총돌로 침몰 • 11일 : 정부, 불법 중국 어선 단속강화 대책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일 : 중 시진핑, '남중국해 우군' 캄보디아 취임 후 첫 방문 • 20일 : 일, 해저 화산분화로 여의도 24배 면적 영해 확대 추진 발표 • 22일 : 미, 남중국해서 '항행의 자유' 작전 재개

2016년	국내	국외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 해경, 불법조업 중국 어선에 최초로 공용화기 발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일 : 일, 센카쿠 등 무인도서 무장충돌 대비 첫 훈련 • 17일 : 일,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과 군사훈련 등 방위협력 강화 추진계획 '비엔티안 비전' 제시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일 : 일, '주인 없는' 외딴 섬 277곳 국유화 방침 발표

규정 및 규칙

나

-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칙
- 편집위원회 규정
- 간행 및 논문 심사 규정
- 논문 심사 내규
- 투고 요령



{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칙 }

제정 2007. 9. 21. 규칙 제19호
개정 2010. 5. 28. 규칙 제43호
개정 2015. 12. 23. 규칙 제105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하거나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등 연구의 진실성을 침해하는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 가. "위조"라 함은 자료나 연구 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나. "변조"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자료, 과정 및 연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 다.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과정 및 연구 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거나 자신이 이미 발표한 연구 결과를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부당하게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연구부적절행위"(이하 "부적절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기타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당해 주장이나 증언에 반하는 사실을 간과한 자는 제보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4.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위원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5. “예비조사”라 함은 본 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보된 사실에 대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예비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6.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재단 소속의 연구자와 재단을 통하여 연구비를 지원 받은 자 및 재단 학술지에 원고를 게재한 자 등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3. 예비·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예비조사위원회, 조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5.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조사결과의 처리, 후속조치 및 재심의의 처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1. 위원회는 사무총장, 한중관계연구소장, 한일관계연구소장, 독도연구소장(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논총편집위원장이 수행한다. <개정 2015. 12. 23>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당연직 이외의 위원은 재단 부연구위원 이상의 연구직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연구직 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 자를 간사로 한다.
5.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5조(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제보 및 증거보전)

1. 제보자는 위원장에게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위원회는 제보에 대한 증거보전을 위하여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검증시효)

1.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2. 5년 이전의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라 하더라도 재단의 운영상의 장애를 초래하거나, 재단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를 조사할 수 있다.

제8조(예비조사위원회)

1. 위원회는 제6조 제1항에 의한 제보를 접수한 경우 예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3인 이내의 위원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예비조사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3.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 1) 제보내용이 부정행위와 부적절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 3) 제보일이 시효 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4.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9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1.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

대)를 구성하여야 한다.

2.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3.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위원회의 구성)

1. 조사위원회는 5인 내지 7인의 조사위원으로 구성하며 당해 연구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3인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2. 조사위원으로 전문성과 객관성을 가진 외부 인사를 2인 이상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조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11조(기피·제척·회피)

1.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 또는 조사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2. 당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건의 심의·의결 및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
3.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위원 및 조사위원은 위원회에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4. 기피 또는 회피 신청에 대한 결정에 기피 신청된 위원이나 회피 신청한 위원은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조사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1.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조사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조사위원회는 조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대상 연구와 연구자에 게 부당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13조(진술 기회의 보장) 조사위원회는 혐의 사실에 대해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4조(결과보고서의 제출)

1. 조사위원회는 조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 과제
 -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 4) 관련 증거 및 증인
 -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주장 내용과 그에 대한 판단 및 처리결과
 - 6) 조사위원 명단

제15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1. 위원회는 재단 소속 연구자의 행위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징계 및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재단을 통하여 연구비를 지원받은 자의 행위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조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연구윤리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이사장에게 징계 또는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6조(결과의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피조사자 및 제보자에게 통지한다.

제17조(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비밀유지의 의무 등)

1. 위원회와 조사위원회는 제보자를 보호하고 피조사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상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3. 위원, 조사위원,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이사장 및 관계 임직원은 심의·의결·조사 기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같다.

제19조(경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지침)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제19호, 2007. 09. 21>

이 규칙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43호, 2010. 05. 28>

이 규칙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05호, 2015. 1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와의 관계) 이 규칙은 직제규정 부칙(제68호) 제2조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

[편집위원회 규정]

1. 편집위원회는 영토·해양 및 동해표기 관련 연구 분야의 전문연구자로 구성하고,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2.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의 『영토해양연구』 발간사업 담당부서장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이사장이 지명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재단 소속 편집위원 중에서 실무를 총괄할 편집이사를 임명한다.
3. 편집위원의 유고 시 편집위원회는 차기 호 논문 심사가 있기 전에 새로운 편집위원을 선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1) 『영토해양연구』의 편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2) 『영토해양연구』에 게재하기 위한 일체의 논문류에 대한 심사
 - 3) 『영토해양연구』 게재 특집 및 일반 논문, 연구노트, 자료해제, 서평, 일지 등에 대한 기획과 심사
 - 4) 기타 『영토해양연구』 관련 사업에 대한 기획과 심의
5.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영토해양연구』의 편집과 간행을 총괄한다.
6. 재단 소속 편집위원은 『영토해양연구』의 편집과 간행에 따른 실무를 담당한다.

7. 편집위원회는 『영토해양연구』 발간 전에 개최하고, 편집위원회의 진행절차는 편집 및 토의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편집이사는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고자료 및 보고사항을 사전에 준비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 간행 및 논문 심사 규정 〕

1. 『영토해양연구』에는 다음과 관련된 특집, 논문, 연구노트(탄보 등), 자료소개, 서평 등의 글을 게재한다.
 - 1) 독도와 관련된 주제
 - 2) 영토 및 해양과 관련된 주제
 - 3) 본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논문

2. 『영토해양연구』는 6월 30일, 12월 31일 매년 2회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를 다음과 같은 과정과 내용으로 심사한다.
 -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모든 원고를 논문 제목, 형식요건, 원고분량의 적절성, 재단 목적에 대한 부합성 등을 기준으로 1차 심사하고, 참석 편집위원 과반수 통과 관정을 얻어 2차 심사에 회부한다.
 - 2) 편집위원회는 투고원고 중 논문류의 경우 편당 관련 전공자 3인의 심사자를 선정하여 2차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2차 심사 때에는 공정성을 위해 필자명을 반드시 지운 뒤 심사한다.
 - 3)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된 논문을 편집위원회의 정해진 양식에 따라 ‘수정 없이 게재(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네 등급으로 판정한 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중 B·C등급의 경우 수정사항이, D등급의 경우에는 게재 불가 이유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 4) 편집위원회는 심사 통과 논문 편수가 『영토해양연구』의 일반적인 분량을 초과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기획과 심사 성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게재 순위를 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과 심사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일체를 대외 비로 한다. 이외 투고자는 게재가 결정된 논문이라 할지라도 심사위원회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5.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투고자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보한다. 논문은 아래와 같은 항목에 의하여 심사한다.
 - 1) 논문 제목의 적절성
 - 2) 형식요건 및 체제의 정연성
 - 3) 논리성 및 독창성
 - 4) 학술적 가치
 - 5) 인용자료의 적절성
 - 6) 분량의 적절성
 - 7) 요약문의 적절성
6. 편집위원회는 『영토해양연구』에 투고된 일체의 원고에 대해 심사 종료 후 돌려주지 않는다.

[논문 심사 내규]

1.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다음의 네 가지로 처리한다.

1) 게재 가 : 3인 모두 A로 판정한 경우

예 : (A, A, A)

2) 수정 후 게재 : 3인 모두 B 이상으로 판정한 경우 / 2인이 A로, 나머지 1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 (A, A, B) (A, B, B) (B, B, B) (A, A, C)

3) 수정 후 재심사 : 2인이 A와 B 이하로 판정하고 나머지 1인이 C로 판정한 경우 / 2인이 B 이상으로 판정하고 나머지 1인이 D로 판정한 경우 / 1인이 A나 B로 판정하고 2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 (A, B, C) (A, B, D) (B, B, C) (B, C, C) (A, C, C)

4) 게재 불가 : 2인 이상이 C나 D로 판정한 경우(A, C, C와 B, C, C는 제외) / 1인이 D로 판정하였는데 A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예 : (A, C, D) (A, D, D) (C, C, C) (B, B, D) (B, C, D) (C, C, D) (D, D, D)

5) 재심사 : 2인이 B 이상으로 정하였는데 1인이 D로 판정한 경우, D 판정 1건에 대해서만 심사위원을 교체하여 재심사함.

2. 편집위원회는 논문 편수가 『영토해양연구』의 수록 분량을 초과하거나 또는 편집위원회의 기획상의 우선순위 등의 사정에 따라 심사 통과 원고 가운데 일부를 필자의 양해 하에 차기 호 또는 차차기 호에 실을 수 있다. 이 가운데 단순히 『영토해양연구』 수록 분량 초과만이 원인일 때에는 투고 및 심사 성적 순위로 해당 호 게재를 결정한다.

3. 심사 결과 통보는 심사위원이나 과정을 대외비로 한 상태에서 심사 결과와 수정 제의 및 게재 불가 사유를 통보한다.

{ 투고 요령 }

1. 『영토해양연구』는 전문적인 학술지로서 논문, 서평, 연구노트(단보 등), 회고와 전망, 영토·해양 관련 일지, 자료소개 등이 게재된다. 투고하고자 하는 원고는 3월 31일 또는 9월 30일까지 투고신청서와 함께 『영토해양연구』 편집위원회 앞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원고는 반드시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 『영토해양연구』 편집위원회 메일(tas@nahf.or.kr)로 보내야 한다. 또한 최종 원고 제출 시 사진(해상도 300dpi 이상) 및 기타 자료는 별도 제출한다.
3. 원고분량은 200자 원고지 100장 내외를 기준으로 하되 충분한 논지 전개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50장 이내로 초과할 수 있다. 그림과 사진의 수량은 원고분량에 포함하지 않으나 논지 전개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한다.
4. 원고는 제목, 필자(소속기관, 직위), 머리말, 본문, 맺음말, 국문 및 영문초록, 국문 및 영문 주제어, 참고문헌(필요 시)의 순서로 구성한다.
5. 논문의 목차와 소제목은 머리말부터 순서에 따라 I > 1 > 1) > (1)로 번호 매김을 한다.
6. 인용문헌은 가급적 각주로 표기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참고문헌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7. 각주에서 현대문을 인용할 때에는 “필자”, “연도”, “논문”, “서책(출판사)”, “쪽수”의 순서로 한다. 앞서 인용한 문헌을 재인용할 때에는 바로 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위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바로 위 이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앞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인용한다.

예) 김홍도, 2010a, 위의 글, 78쪽.

홍길동, 2002, 앞의 글, 29쪽.

8. 각주에서 고중세 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작자(필요시)”, “서책”, “편목”, “인용문”의 순서로 한다. 이중 고중세문헌은 필요할 경우 판본명이나 영인본명을 밝힐 수 있고, 인용문 중 전략, 중략, 후략 등은 “……”로 표기한다. 이외 본문 중의 인용문은 문장 가운데에 삽입되는 경우 “ ” 표시로 묶고, 인용문이 길어 문단을 나눌 경우에는 “ ” 표기 없이 서술한다.

예) 東北人, 『東北集』(東北文化社影印本), “東北有高士, 東北公賢裔鶴擁, 是人世”

9. 서양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책명은 이탤릭체, 논문은 큰따옴표로 표기하고 다음과 같은 순서와 방식으로 인용한다.

예) V. G. Childe, 1932, “Chronology of prehistoric Europe : a review,” *Antiquity* 6, pp. 206~212.

10. 참고문헌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본문의 인용처를 밝히고자 하는 곳에 괄호를 치고 그 안에 필자와 인용문헌의 간행연도 및 필요 시 인용 쪽수를 표기한다.

예) (동북인, 2006 : 24)



영토해양연구 Vol. 12

초판 1쇄 인쇄 2016년 12월 20일

초판 1쇄 발행 2016년 12월 30일

펴낸이 김호섭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록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임광빌딩

전화 02-2012-6065

팩스 02-2012-6189

ISSN 2234-3296

비매품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제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